

북한 이해

1997



통일교육원

북한 이해

이 책은 통일교육원에서 북한에 대한 이해를 돋기 위해 발간한 표준교재입니다. 각급 교육기관 등에서 널리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 이해/차례

I. 개 관 11

제 1절 북한 이해의 관점/13.

제 2절 북한체제의 구조와 논리/19

제 3절 북한체제의 생존전략/23

II. 북한의 정치 27

제 1절 정치체제의 역사적 형성과정

1. 소련의 점령정책과 북한정권의 수립/29
2. 김일성의 권력공고화와 유일체제의 형성/32
3. 김정일 후계체제의 구축/34

제 2절 정치체제의 규범적 구성원리

1. 주체사상의 형성 배경/36
2. 주체사상 내용의 변화과정/38
3. 주체사상의 한계/41

제3절 정치체제의 권력구조

1. 수령의 유일적 영도체제/42
2. 노동당의 위상과 체계/44
3. 국가기관/48

제4절 김정일정권의 과제

1. 독자적 통치방식의 확립/70
2. 경제난의 해결/71
3. 국제적 고립 탈피와 남북관계 개선/72

III. 북한의 군사 75

제1절 북한군의 성격과 기능

1. 혁명무장력으로서의 기능/77
2. 김정일 정권 강화수단으로서의 기능/79

제2절 북한군의 조직과 제도

1. 군사지휘체계 및 군사기구/80
2. 군사제도/83

제3절 북한의 군사전략/87

1. 선제기습전략/88
2. 속전속결전략/89
3. 배합전략/89

제4절 북한의 군사력

1. 상비전력/90
2. 예비전력/94
3. 전략무기/96
4. 최근 군사력 동향/100

IV. 북한의 경제 103

제1절 북한 경제체제의 성립과정과 전개

1.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확립과정/105
2.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전개/109
3. 계획경제의 단계별 추진과정 및 성과/118

제2절 북한 경제체제의 운영원리와 특징

1. 계획경제의 운영원리와 그 모순/122
2. 계획경제체제의 특징/131
3. 계획경제체제의 문제점/136

제3절 북한 경제의 현황과 당면과제

1. 국민소득과 경제성장/140
2. 재정규모/143
3. 산업구조와 부문별 현황/146

-
- 제 4 절 북한의 무역구조와 대외개방정책
1. 무역구조의 변화와 제도개혁/153
 2. 대외개방정책의 모색/159
 3. 대외개방정책의 문제점과 당면과제/168

- 제 5 절 북한 경제체제의 한계와 향후진로
1.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모순 내재/171
 2. 경제개혁 추진의 제약조건 상존/172
 3. 대외개방정책의 한계/173
 4. 북한 경제체제의 향후 진로/174

V. 북한의 대외관계 179

제 1 절 변화된 대외환경/181

- 제 2 절 북한의 대외정책
1. 대외정책의 기조/184
 2. 대외정책의 전개/193
 3. 주요국가와의 외교실태/200

제 3 절 북한의 대외정책과 남북관계/212

VI. 북한의 교육과 문화·예술 217

제 1 절 북한의 교육

1. 교육이념과 목표/219
2. 교육정책과 교육제도/221
3. 교육과정과 주요내용 및 교육방법/228
4. 유아교육과 사회교육/236

제 2 절 북한의 문화·예술

1. 북한문화의 특성/239
2. 전통문화와 공산주의적 도덕/242
3. 문학예술/243

제 3 절 교육·문화·예술의 한계와 과제/249

VII. 북한의 사회구조와 사회정책 253

제 1 절 사회정책과 계급구조/255

1. 계급정책/256
2. 계급구조/259

제 2 절 사회통제정책

1. 사회통제원칙/263
2. 사회통제방식/265

제 3 절	사회보장정책
1.	북한 사회보장제도의 성격/271
2.	국가사회보험/274
3.	보건의료/277
 VIII. 북한주민의 생활..... 285	
제 1 절	주민생활 규제원리/287
제 2 절	경제생활실태
1.	소득수준/288
2.	소비수준/291
3.	경제난과 경제생활의 변화/302
제 3 절	직장생활과 노동실태/306
1.	직업의 선택/307
2.	노동실태 및 휴가/310
3.	직업의식 및 노동의식의 변화/314
제 4 절	가정생활의 실상과 여성의 위치
1.	북한의 가족정책과 여성정책/318
2.	가정생활의 실상/322

제 5 절 종교생활실태

1. 종교에 대한 규정 및 종교정책/332
2. 현재의 종교실태/336
3. 북한주민의 종교의식/339

IX. 북한체제의 변화가능성 343

제 1 절 북한체제의 변화방향/345

제 2 절 김정일정권의 정책전망

1. 대내정책 전망/348
2. 대외정책 전망/349
3. 대남정책 전망/349

〈부 록〉

- ◇ 북한의 사회주의헌법/355
- ◇ 북한의 조선로동당 규약/379

I

개관

제 1 절 북한 이해의 관점	13
제 2 절 북한체제의 구조와 논리	19
제 3 절 북한체제의 생존전략	23

● 이 장의 요점 ●

- 북한이해의 중요한 목적은 북한체제의 명분과 실제적인 억압 사이의 괴리를 설명하는 데에 있다. 북한체제는 본질적으로 전략, 전술의 이중성을 구사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 북한체제는 당과 국가체계 위에 수령이 군림하는 전체주의적 독재체제이다. 그리고 수령을 구심점으로 하는 권력구조, 체제신화와 신격화, 역사해석과 문화예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일관성있게 지배하는 논리체계로서의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형성되었다. 따라서 수령은 주체의 핵이 되고 당은 수령을 중심으로 한 정치적 조직으로 된다.
- 모순의 극대화로 표현될 수 있는 북한체제가 현재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생존전략은 개방과 개혁을 통한 근본적 전환을 실천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지금 북한에게 개방 이외의 대안은 없다. 사상론을 앞세우며 사회주의의 고수를 주장하는 한 북한의 변화는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제 1 절 북한 이해의 관점

우리는 여전히 각축(角逐)의 시대에 살고 있다. 세계공동체의 건설을 추구하며 평화와 번영을 이야기하는 시대에 새삼스럽게 전쟁을 환기시키는 것은 무엇때문인가? 물론 공산체제의 붕괴와 냉전체제의 해체를 통해 이데올로기의 전쟁은 끝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모든 형태의 전쟁이 끝났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냉전 이후의 급격한 변화를 우리는 ‘세계화’의 개념속에 정립시키려는 역사적 전환기에 서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새로운 시대를 상징하는 세계화가 이 시대의 모든 문제를 치유할 최선의 대안은 아니라는 점이다. 세계화의 추세가 가속화하면서 자본, 정보, 서비스 등의 유동성을 제공하는 공간이 확대, 심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반면에 세계화의 물결과 더불어 근대사회의 통합을 주도해 온 국가, 민족의 역할은 오히려 축소, 약화되는 경향을 나타낸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순적 현상은 공산주의의 붕괴와 더불어 세계도처의 분쟁과 내전에서 나타난 민족주의의 대두에서 뚜렷하게 찾아볼 수 있다. 20세기의 민족주의 돌풍은 냉전질서의 해체를 초래하였지만 냉전 이후 세계의 폭력을 주도하는 구심점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냉전기간에 깊숙이 파묻혀 있던 좌우 이데올로기 이외의 요소들이 모든 폭력의 대의명분으로 전위되어 새로운 전쟁을 야기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공산주의 이후의 역설적 상황에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에 주목하게 된다. 그것은 어떤 국가나 민족을 막론하고 자신의 생존과 이

익을 위해 새로운 시대에 적응할 틀을 구축하고자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다. 한반도의 현실에서 그것은 새로운 세계질서 속에서의 남북관계의 변화이고 통일한국의 틀을 짜는 일이 될 것이다. 다만, 문제는 공산주의와 전체주의 이후를 논하는 시대에 아직까지 북한이 예외지역으로 남아있다는 사실에 있다. 이데올로기의 전쟁이 새로운 형태로 이행되는 시대에 공산주의의 고수와 그것을 위한 전쟁불사의 위협이 한반도에 상존한다는 사실은 시대착오적 현상이며 민족적 비극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현상황을 반드시 극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우리는 남북한의 화해협력과 공존을 통한 통일을 추구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상호간의 신뢰구축과 이를 위한 상호 이해일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북한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관점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다. 우리에게 북한은 절대로 믿을 수 없고 상대할 수 없는 존재로만 보기에는 여전히 중요한 통일의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바로 여기에서 북한체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것이다.

예측하기 어려운 북한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은 대체로 두 가지로 표현될 수 있다. 그 하나는 북한의 변화를 전제로 한 것으로서 북한을 민족통일의 동반자로 보고 남북화해 및 대화를 통한 통일의 가능성을 믿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련의 군사적 도발 행위에서 보듯이 북한이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는 한 남북의 진정한 화해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볼 수 있다. 다른 하나는 북한의 불변과 대북불신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화해와 협력을 통한 평화적 통일의 가능성을 부정하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북한이 변화의 대세를 단호히 거부하면서 사회주의의 고수를 천명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이 체제유지를 위해 제네바 핵합의와 함께 개방의 몸짓을 해 온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볼 때, 북한문제의 접근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객

관적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북한을 정확히 이해한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점에 있다. 우리가 보기에도 분명히 이상하지만 결코 불합리하다고만 보기 어려운 것이 북한이기 때문이다. 분명한 것은 북한도 체제의 생존과 이익을 중요시한다는 점에서는 예외가 아니라는 점이다. 다만 사회주의를 포기하면서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지는 않겠다고 거부하고 있을 뿐이다. 북한이라고 해서 역사의 흐름과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회피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북한에 대해 정확한 이해와 예측을 못한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지금까지의 북한연구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북한체제에 대한 정보나 자료수집의 제약 및 사실성의 결여를 들 수 있다. 그것은 당기관지 「로동신문」이나 정부기관지 「민주조선」 등의 신문, 당이론잡지 「근로자」 그리고 김일성과 김정일의 저작집 등 의 자료가 북한의 선전도구로 사용되어 왔기 때문이다.

둘째, 객관성의 문제를 들 수 있다. 분단상황에서 북한이라는 인식대 상에 대해 객관적 분석보다도 당위, 주관, 감정 등이 우선적으로 작용해 왔기 때문이기도 하다.

셋째, 기존의 연구가 정치영역에 지나치게 편중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경제, 사회, 문화 등에 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북한의 전반적인 모습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도록 해 왔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북한체제의 성격을 북한에 대해 갖고 있는 주관적 인상에 기초하기 보다 객관적인 방법에 기초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도달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북한사회주의의 특성을 보여 줄 비교분석과 함께 정치논리에 입각한 단순한 수직적 접근을 넘어서 보다 구체적인 경제·사회·문화적인 측면까지 포괄한 수평적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북한체제의 명분과 그 명분하에 자행되는 억압적 현실 사이의 커다란 괴리를 설명하는 것은 북한 이해를 위한 중요한 목적이기도 하다.

북한체제는 구심점으로서의 수령의 존재와 이데올로기적 기초로서의 주체사상 그리고 사실상의 일당지배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특히, 북한 체제의 최대의 특징은 최고지도자의 존재와 역할을 가장 중요시한다는 점에 있다. 북한에서 최고지도자는 수령을 가리키며, 수령은 단결과 영도의 중심으로서 인민대중의 운명을 개척함에 있어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당의 최고영도자로 규정된다.

이렇게 볼 때, 북한은 1995년 10월 발표된 “조선로동당은 김일성 당이다” 제하의 논문에서도 강조된 것처럼 수령중심의 체제라고 할 수 있다. 분명한 것은 북한이 결코 공화국이나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왜곡된 1인독재체제일 뿐이라는 점이다. 혁명적 수령관을 촉매로 주체사상이 지배권력의 합리화를 위한 도구로 되었을 때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하는 북한의 민주주의는 이미 권위에 대한 비판의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가 아니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지금까지 북한체제는 국내외적 위기 속에서 혁명을 실현하기 위한 독자적인 구조와 논리를 갖는 체제로 변화되어 왔다. 이러한 북한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북한체제의 기원, 구조, 기능, 변화 가능성에 대한 각 분야별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이상의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이 책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제2장에서는 북한 체제의 발생 기원과 배경, 규범적 구성원리, 유일체제의 확립과정과 제도화 등에 관해 살펴 보고자 한다. 그리고 북한의 앞날을 가늠할 김정일 정권의 주요과제에 대해 검토할 것이다.

제3장에서는 정치체제유지와 국방의 기능을 수행하는 북한군의 성격, 조직체계 및 제도, 대남혁명전략과 맞물린 군사전략 등을 검토할 것이다.

제4장에서는 북한경제체제의 특성과 그 구조적 모순, 경제난의 원인

과 당면과제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대외개방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할 것이다.

제5장에서는 변화된 국제환경 속에서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북한의 대외정책 및 남북관계의 진전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제6장에서는 북한의 교육정책, 문화 및 예술에 관한 내용과 특징을 살피고 그 제도와 기능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이다.

제7장에서는 북한사회체제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우선 사회구조와 사회정책의 기본방향에 대해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의 사회계층구조와 사회통제정책, 사회보장정책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고자 한다.

제8장에서는 주민생활실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주민들의 경제생활, 직장생활 및 노동실태, 가정생활과 여성의 위치, 종교생활 등을 검토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9장에서는 북한체제의 변화가능성에 대해 변화유형과 김정일정권의 정책 전망을 검토할 것이다.

이러한 검토를 함에 있어 북한의 실체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인식을 위해 이 책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목하여 논지를 전개하고자 한다.

첫째, 북한체제의 최대의 특징은 수령의 존재와 역할에 있다. 그 독재체제의 성립배경으로서 혁명과 전쟁의 요소는 대안으로서의 독재체제 형성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북한이 정권 초기부터 지금까지 전쟁분위기를 통해 긴장을 지속시킴으로써 내부결속과 체제유지를 도모해 왔다는 사실은 이를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배경은 북한의 군사주의와 전략, 전술의 이중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북한체제의 존속을 위협하는 요인으로서 외적 문제보다도 내적 문제가 훨씬 결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북한은 구조적 한계로 인해 근본적으로 작동불가능한 경제체제와 개혁 없이는 궁극적으로 자멸을 초래하게 될 정치체제를 고수하고 있다. 그것은 역설적으로 북한에서 선

전하는 외부의 위협이 강력한 내부결속을 위해 필요 이상으로 지나치게 강조됨으로써 북한체제의 생명을 연장시켜 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경제난과 김일성 사후 정치적 불안정이라는 위기상황에서도 북한은 변화를 거부하면서 어떻게 체제를 유지시켜 왔고 유지시키려고 하는가? 북한지도부가 현재의 절박한 상황을 인정하고 변화의 불가피성을 인식하면서도 개방과 개혁을 과감하게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것은 개방의 물결이 필연적으로 몰고 올 체제붕괴의 가능성은 우려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판단아래 북한이 생존전략을 성취시키기 위해 채택한 전술이 이중성이라고 할 수 있다. 통미봉남(通美封南), 개방과 도발로 상징되는 북한의 이중성이 대내, 대외, 대남 등의 영역에 걸쳐 독립적 또는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본론에서 분석, 검토할 것이다.

셋째, 어떤 체제든지 한계는 있게 마련이며 그 점에서 체제변화는 불가피한 현상이다. 그리고 북한의 변화는 권력정상에서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사회주의권의 몰락에도 불구하고 북한체제가 존속해 온 원인이 내부결속을 위해 ‘우리식 사회주의’의 고수를 역설해 온 북한지도부의 체제이데올로기에 대한 확고한 신념에 있다면, 북한체제가 변화하는 출발점은 북한지도부의 내부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에 있어서 수령의 영도를 달성하기 위해 체제를 유지, 발전시키는 것은 최고의 목표이기 때문이다. 체제의 변화를 결정하는 것은 구조 속의 행위자의 정치적 선택이라는 점에서 볼 때, 경제위기만으로 북한체제가 붕괴한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 요컨대, 현재 북한의 문제는 내부모순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점과 북한의 변화는 권력정상에서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제 2 절 북한체제의 구조와 논리

1945년 8월 15일 해방과 더불어 북위 38도선 이북지역에는 스탈린체제가 도입되었다. 그 후 그 곳에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사회주의체제의 특성을 지니면서도 당 및 국가체계 위에 수령이 군림하는 북한특유의 전체주의적 독재체제가 출현하였다.

1967년 5월 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15차 전원회의를 계기로 정적들에 대한 수정주의 비판과 숙청투쟁을 통해 주체사상을 유일 지도사상으로 하는 체제가 구축되기 시작했다. 즉, 1967년 이후 ‘위대한 수령’이라는 용어로부터 그것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권력구조, 체제신화와 신격화, 역사해석과 문화예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일관성있게 지배하는 논리체계로서의 주체사상에 기초한 북한체제가 만들어졌던 것이다.

북한은 1980년 10월 제6차 당대회에서 “맑스-레닌주의의 창조적 적용”이라는 내용을 삭제하고 “주체사상을 자기활동의 지도지침으로 삼는다”고 함으로써 주체사상을 당의 유일지도이념으로 분명하게 표명하였다. 그리고 북한은 1992년 개정헌법 제3조에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람 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을 자기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고 규정하여 주체사상만이 국가활동의 지도지침임을 분명히 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주체사상이 북한체제의 성격을 규정하는 정수(精髓)임을 알 수 있다.

이제 북한사회에서 맑스-레닌주의는 공식이데올로기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고 주체사상이 그 기능을 대신하고 있는 것이다. 그 점에서 볼

때, 오늘의 북한체제는 ‘주체사회주의’체제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북한 사회주의체제에서 독점적 지위를 점하고 있는 당의 위상과 역할에 주목하게 된다. 개정헌법에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¹⁾고 규정한 것처럼 당의 지도적 역할은 사회주의체제에 있어서 신성불가침의 헌법원리로 되어 있는 것이다. 그것은 당의 지도성을 부정하는 것이 곧 사회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며, 당과 사회주의를 등식화하는 논리라고 볼 수 있다. 이 논리는 북한체제에 있어서 ‘조선노동당=주체사상’이라는 논리로 해석된다.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북한에는 제도화된 직위로서의 국가주석과 노동당 총비서를 능가하는 ‘수령’이라는 개념이 있다.

그 점에서, 조선노동당 규약에 명시된 “조선로동당은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주체사상, 혁명사상에 의해 지도된다”는 규정은 북한 정치체제의 특성을 말해주는 핵심적 단서를 제공한다. 특히, ‘위대한 지도자’ 김일성 수령 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그리고 지금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장군님 등의 찬양은 북한체제의 개인우상화작업을 확인시켜 주는 대목이라고 하겠다.²⁾

요컨대, 북한체제를 이데올로기와 권력구조의 차원에서 성격 규정할 경우 우리는 그 특성을 주체사상과 수령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여기서 수령은 주체의 핵이 되며 당은 수령을 중심으로 한 정치적 조직으로 설명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북한은 사실상 수령의 유일적 영도아래 통치

1) 북한헌법 제11조.

2) 평양방송, 「우리는 김일성 민족이다」, 1996. 7. 8. 이 정론에서는 수령의 위대성을 강조하면서 “김일성의 품에서 새로 태어나고 자라난 김일성 민족의 전두에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장군님께서 서 계신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승계체제의 정당화를 위해 이러한 찬양과 우상화작업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예컨대, 1995년 8월 27일 로동신문 논설을 통해 북한은 “당은 수령이며, … 김정일은 곧 당”이라고 주장하면서 ‘김정일=수령’이라는 점진적 상징조작을 시도하고 있다.

되는 전체주의적 독재체제가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수령 중심의 체제 논리는 1995년 당 창건 50주년을 앞두고 김정일이 발표한 논문에서도 다음과 같이 강조되고 있다.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떠나서 령도적 정치조직으로서의 당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으며 대중과 결합되지 않고는 혁명과 건설을 승리으로 이끌어 나갈 수 없다. 수령을 중심으로 수령, 당, 대중이 일심동체가 될 때 가장 공고하고 위력한 혁명의 주체를 이루게 되며 그것은 혁명과 건설의 위대한 추동력으로 된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당은 수령의 당으로,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실현하는 정치조직으로 건설되어야 하며 인민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루어야 한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는 수령의 사상체계이며 수령의 령도체계이다.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것은 당을 수령의 당으로 건설하기 위한 기본방도이다. …로동계급의 당은 전당이 수령의 사상으로 일색화되고 수령의 유일적 령도 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사상적 순결체로, 조직적 전일체로 되어야 한다.”³⁾

이상에서와 같이, 북한에서의 수령은 단결과 영도의 중심으로서 인민 대중의 운명을 개척하는 데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당의 최고영도자로 규정되는 동시에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최고뇌수’로 규정된다. 여기서 사회정치적 생명체란 인민대중이 혁명의 자주적 주체로 되기 위해 당의 영도 밑에 수령을 중심으로 하여 조직사상적으로 결속됨으로써 영생하는 생명력을 지닌 생명체를 의미한다. 따라서, 여타 현대사회주의 정치체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제도적으로 보장된 당의 지도성 및 당의 무오류성은 북한정치체제에서는 수령의 영도와 수령에 대한 충실했성 그리고 수령의 무오류성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전제상의 오류 야말로 북한정치체제로 하여금 역사왜곡과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체

3)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문헌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p. 43~45 ; 김정일, “조선로동당은 김일성 당이다”(10. 2), 『월간북한동향』, 통일원, 1995. 10, pp. 173~174.

계적인 거짓말만을 구사하도록 만들 것이다.

다음으로 경제적 측면에서 본다면, 북한에서 생산수단은 국가와 협동 단체만이 소유하고 있으며, 북한의 경제체제는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을 목표로 한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제 체제는 모든 경제적 의사결정과 집행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으며, 하부조직은 중앙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방식으로 운용되는 경직성을 나타내 게 되어 있다. 북한은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하기 위하여 “정치적 지도 와 경제기술적 지도, 정치 도덕적 자극과 물질적 자극을 옳게 결합시키는 원칙”⁴⁾을 표방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라는 ‘주체사상’의 명분 아래 인민대중의 노동력을 경제정책 추진의 주요 수단으로 삼고 있다.

한편, 북한사회는 사회전체에 확대·보편화된 집단주의를 바탕으로 한 고도의 폐쇄적 통제체제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즉, 북한은 외부로부터의 정보유입을 전면적으로 차단하고, 주민들의 거주이전의 자유마저 허용하지 않고 있어서 북한주민들은 평생을 사상과 조직의 통제속에서 살도록 되어 있다.

더욱이 ‘공산주의적 새인간’ 양성이라는 명분 아래 지속적으로 정치사상 교육과 정치적 목표에 종속된 문화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 전군간부화, 그리고 전군현대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4대군사노선’을 내세우며 북한사회를 병영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북한사회는 그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지상낙원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지금의 북한사회는 경제파탄과 군비증강의 극단을 치닫고 있는 모순의 극대화로 표현될 수 있다.

4) 북한헌법 제32조.

제 3 절 북한체제의 생존전략

사회주의권의 몰락과 세계질서의 재편과정에도 불구하고 유독 사회주의의 고수를 천명하고 있는 북한체제가 경제위기를 타개하고 나름대로의 생존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생존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체제의 성격 및 체제이데올로기는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

체제의 형성과 변화에 있어서의 주요 변수로 우리는 정치적, 경제적 변수, 그리고 상황변수를 생각한다. 정치체제 및 이데올로기라는 정치적 변수와 시장경제 또는 계획경제라는 경제적 변수를 교차시키면서 체제 변화의 방향을 잡아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북한이 처한 어려움은 주체사상에 의해 지나치게 경직화된 체제를 주체사상 논리의 변화없이 세 계화의 맥락이라는 현실 속에서 어느 정도 적응시킬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1990년대로 들어서기 전까지의 북한은 경제적 어려움과 외교적 고립에 처할 경우 대내적으로는 체제를 더욱 경직화하고 대외적으로는 대결적 정책을 전개해 왔다. 그러나 1990년대의 북한은 대미관계개선 노력에서 보듯이 보다 적극적인 대외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전환의 가장 큰 이유를 우리는 북한의 경제위기에서 찾고 있다.

북한경제의 위기는 계획경제체제의 구조적 모순의 누적과 구 사회주의권의 몰락으로 인한 경제난의 가중에서 비롯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생존전략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개방과 혁신을 통한 근본적인 전환을 실천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그러나 북한은 아직도 현명한 생존전략을 선택하지 않고 있다. 지금

북한에게는 시간도 없고 개방 이외의 대안도 없는 것이 분명한 현실이다.

지금까지 북한은 임시방편으로 제한적 개방과 체제단속의 이중전략을 구사하며 이익을 취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우리식 사회주의’의 고수를 앞세워 이미 붕괴된 사회주의국가와의 차별성을 강조하면서 체제유지에 주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체제의 궁극적 생존과 발전의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본다.

이와 같이 주체사상의 고수와 체제변화의 양립이 불가능한 것이라면 우리의 결론은 비교적 분명해진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체제의 생존을 위해서는 주체사상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며, 그것은 정치적 측면에서 비민주적 성격을 탈피하고 경제적 측면에서 비효율성을 극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참 고 문 헌

1. 최명 외, 『북한개론』, 을유문화사, 1990.
2. 통일원, 『'95 북한개요』, 통일원, 1995.
3. 이종석, 『현대북한의 이해』, 역사와 비평사, 1995.
4. Eric Hobsbawm, *The Age of Extremes*(New York: Pantheon Books, 1994).
5. Carol Barner-Barry & Cynthia A. Hody, *The Politics of Change* (New York: St. Martin's Press, 1995).

II

북한의 정치

제 1 절 정치체제의 역사적 형성과정	29
제 2 절 정치체제의 규범적 구성원리	36
제 3 절 정치체제의 권력구조	42
제 4 절 김정일정권의 과제	70

● 이 장의 요점 ●

- 북한은 수령·당·인민대중이 통일체를 이룬다는 주체사상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에 입각하여 ‘우리식 사회주의’와 수령의 유일적 영도를 강조하는 체제로서, 사회주의적 요소보다 김일성·김정일 유일체제확립에 더 역점을 두어온 전체주의체제였다. 김일성 사후 북한은 김일성 ‘유훈교시’에 따른 정책 추진과 함께 김정일에 대한 우상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 북한의 정치체제는 그 동안 사상혁명의 기치하에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하여 의식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를 개조하는 데 주력해 왔다. 특히 북한 주민에게 수령과 당에 대한 충성심을 고취하여 체제유지 및 결속을 다지고 있다.
- 북한의 정치체제는 군부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는 체제이다. 정권수립 이전에 인민군을 창설(1948. 2)한 점에서도 짐작할 수 있지만, 최근에는 ‘군민(軍民)일치운동’을 통해서 군사중시 기풍을 선동하고 당·정권기관의 고위인사들에게 ‘혁명적 군인정신’을 따르라고 호소하는 등 더욱 시대착오적 체제로 몰아가고 있다.

제 1 절 정치체제의 역사적 형성과정

1. 소련의 점령정책과 북한정권의 수립

북한은 스탈린 팽창주의에 의한 군사점령정책을 통해 공산화되었다.

우선 소련점령군에 의한 북한의 소비에트화는 각 도인민위원회(道人民委員會)를 조직하여 일제로부터 접수한 행정권을 인계받아 행정의 공백을 메우는 일로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로마넨코 소장은 평양에 있던 건국준비위원회(건준) 평남지부(대표 조만식)와 조선공산당 평남지부(대표 현준혁)를 통합하여 ‘임시 인민위원회’를 조직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평안남도 인민정치위원회’(1945. 8. 27)가 구성되었으며, 이와 유사한 단체들이 북한의 나머지 4도에도 속속 조직되었다. 1945년 10월 8일 로마넨코는 북한 전체를 통치할 중앙행정단위를 조직하기 위해 북한 5개도에 설치되었던 임시인민위원회 대표자대회를 소집하였으며, 이 회의 결과로 1945년 10월 28일 ‘5도행정국’이 발족되었다. 이 5도행정국은 소련군정 하에서 각급 인민위원회를 중앙에서 통일적으로 지도하는 기구였다.

한편 당시 소련 점령군의 초미의 관심사는 소련에 충성하는 공산당을 어떻게 조직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서울에는 박현영 중심의 ‘조선공산당’(1945. 9. 11)이 조직되어 있었으며, 각 도에는 조선공산당 도당지부가 조직되고 있었다. 소련군정은 북쪽의 조선공산당 5도책임자를 중심으로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을 만들었다. 북조선분국의 설치는 북한에다 서울과는 별개의 공산당을 조직하여 김일성으로 하여금 그 지도권

을 장악케하려는 소련군 사령부의 의도에서 유래한 것이다. 북한의 주장에 의하면 이것이 마르크스-레닌주의 원칙에 입각한 맨 처음의 조선공산당 조직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분국은 1945년 12월 17~18일 「분국」 3차 확대집행위원회에서 「북조선공산당」으로 명칭을 바꾸었으며, 이 때 김일성이 위원장으로 등장한다. 북한에서 소련점령군의 도움 아래 공산주의체제의 핵심적 요소인 공산당의 결성으로 공산당지배체제가 미숙하게나마 구축된 것이다. 그 후 북조선공산당은 김두봉의 신민당과 합당(1946. 8)하여 「북조선 노동당」으로 출범하였으며 이들은 공산당 통치를 위한 내적 기반을 점차 강화하기 위하여 강력한 중앙통치기구를 계획하게 된다.

즉 김일성은 1946년 2월 8일 「북조선 정당사회단체 5도행정국 및 각 도 인민위원회 확대회의」를 개최하고 이 회의에서 북한내에 중앙정권기구의 창설이 필요함을 역설함으로써 마침내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조직하게 되었다. 이로써 북한에서 공산당이 지도하는 단독 정권기관의 골격이 나타난 것이다. 또한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는 5도행정국의 기능을 계승하게 되었다.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는 최고 집행권을 행사하는 동시에 임시법령을 제정하고 공포할 권한을 함께 가지고 있는 기관이었다.¹⁾

소련 점령당국은 김일성을 통치자로 만드는 작업과 함께, 1946년 11월에 북한의 각 도·시·군 인민위원회 선거를 실시토록 하고 1947년 2

1) 북한은 정권의 제1단계인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인민민주주의 독재의 기능을 수행하는 인민정권(人民政權)이라 하였다.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는 바로 「20개조 정강」을 발표하여 이른바 「민주개혁」을 위한 계획을 제시하였다. 이 개혁은 「토지개혁법령」(1946. 3. 5)을 비롯하여 「중요산업국유화법령」(1946. 8. 10), 「로동법령」(1946. 6. 24), 「남녀평등에 대한 법령」(1946. 7. 30), 「선거법령」(1946. 6. 4), 「농업현물세에 관한 결정서」(1946. 6. 27) 등을 통해 추진되었다. 이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무상물수 무상분배」의 원칙에 따라 강행한 토지개혁이었다.

월에는 면·리 인민위원회 선거를 실시하였다. 이 선거를 통해 도·시·군 인민위원회를 개최, 최고입법기관으로서 북조선 인민회의 설치를 결의하고, 1947년 2월 21일 북조선 인민회의를 통해 「북조선 인민위원회」가 공식 출범하였다.²⁾ 1947년 2월부터 국가수립이 선포(宣布)된 1948년 9월까지 인민회의는 5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였는데, 제1차 회의에서 는 재판소장을 선출하고, 검찰소장을 임명하였으며, 1947년 11월에는 헌법을 기초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1948년 2월 8일에는 조선 인민군이 창설되었다. 그리고 1948년 4월 29일 북조선 인민회의는 특별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헌법초안」을 승인했다.

1948년 8월 25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실시되고, 9월 2일부터 9월 10일까지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1차회의에서 헌법을 채택(9.8) 한 후, 9월 9일 김일성을 수상으로 하는 내각을 승인함으로써 소련의 위성국(衛星國)이 한반도 북쪽에 탄생하게 되었다. 정권수립 이후 1949년 6월 24일 남로당과 북로당 제1차 전원합동회의를 개최하여 합당을 함으로써 오늘날 북한의 「조선로동당」이 창당되었고, 위원장에는 김일성이 선출되었다.

소련은 북한정권이 성립하기까지는 물론, 그 이후에도 계속 배후조종과 감독을 계속하였다. 최근 러시아가 공개한 문서에 의하면 1948년 1월 20일자로 스티코프 장군에게 북조선 인민회의 의제와 회의개최 허락 을 요청한 사실, 당시 조·소간에 11개 협정이 체결된 후 북한에서 시행 되어야 할 제반조치들을 나열하고 있는 1949년 3월 19일자 스티코프 의 편지 등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2) 북한은 민주선거에 의해서 북조선인민위원회가 수립되었다고 해서 '임시'를 삭제하였으며, 북한은 북조선 인민위원회가 북한에서의 '첫 프롤레타리아 독재정권'으로서 그 지도 하에 북조선 인민들은 사회주의로 이행하는 길에 들어섰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김일성의 권력공고화와 유일체제의 형성

해방 이후 북한에는 조만식을 중심으로 한 민족주의세력, 현준혁·박현영 등 국내공산주의세력, 김두봉 등 중국공산당과 함께 항일투쟁을 한 연안파(延安派), 소련군과 함께 들어온 혀가이 중심의 소련파, 김일성 추종세력 등 다양한 정치세력이 존재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선노동당은 김일성 중심의 북조선공산당과 김두봉 중심의 조선신민당, 그리고 박현영 중심의 남조선노동당이 시차를 두고 합당하여 창당된 것이며, 여기에 소련파가 가세하였다. 김일성은 이러한 정적(政敵)들을 소련의 비호 하에 테러와 통일전선전술 등 이중정책을 구사하며 제거해 나갔다.³⁾

점령 초기 현준혁과 조만식을 제거한 김일성은 6·25전쟁과 그 직후 정적들을 숙청하여 권력기반을 공고화하였다. 1951년 11월 당중앙위원회 4차 전원회의에서 당부위원장 겸 조직담당서기인 혀가이는 전쟁의 소란 속에서 당증을 버리고 달아난 당원들에 대해 ‘책벌을 기계적으로 적용’한 과오, 당의 성장을 저해한 ‘온갖 관문주의 경향’, ‘관료주의·형식주의의 사업작풍’ 등으로 비판받았다.⁴⁾ 즉 그는 당원심사를 엄격히 하여 60만 당원 가운데 45만명을 추방함으로써 당세를 약화시켰다는 것이다. 또한 1952년 12월 당중앙위원회 5차전원회의에서 박현영은 이승엽 등 그의 추종세력과 함께 김일성을 실각시키고, 수상이 되려 했다는 반역죄와 미제의 간첩활동을 했다는 죄목으로 비판받은 후 1955년 12월 처형되었다.

또한 소련파 박창옥과 연안파 최창익 등은 1956년 6월에 김일성이 제

3) 자세한 내용은 전현준, 『북한의 권력엘리트 연구』, 민족통일연구원, 1992 참조.

4) 김준엽·김창순 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차회의에서 진술한 김일성동지의 보고”, 『북한연구자료집』, 제2집,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74, pp. 165~176.

1차 5개년계획에 필요한 자금조달차 동구(東歐)를 방문하는 사이에 반(反)김일성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1956년 8월 당중앙위원회 제3기 ‘8월 전원회의’를 통해 숙청되었다. 이후 김일성은 1957년 5월 30일 당상무위원회를 열고 「반혁명 분자와의 투쟁을 전당적, 전인민적 운동으로 전개할 데 대하여」라는 결정서를 채택하고 ‘중앙당 집중지도사업’을 단행하여 전 북한사회를 공포분위기로 몰아갔다. 이 때 숙청사건을 ‘8월 종파주의사건’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와중에서 김두봉, 최창익, 한빈 등 연안파는 완전히 축출되었으며, 소련파의 상당수는 소련으로 피신했으나 박창옥 등은 처형되었다.

남로당계와 연안파·소련파에 대한 숙청을 마무리지은 김일성은 항일빨치산운동을 전개했던 ‘빨치산파’의 일부까지도 숙청하였다. 즉 1962년 12월 당중앙위 제4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4대군사노선이 제기되어 국방력 강화문제가 당면과업으로 등장하자 김일성은 4대군사노선에 반기를 든 빨치산파 중에서 갑산파(甲山派)의 박금철(당정치위원 겸 비서)과 이효순(당정치위원 겸 비서) 및 그들의 추종자들을 1967년 3월에 모두 숙청하였다. 한마디로 김일성의 권력공고화 과정은 피의 숙청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1967년 5월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5차 전원회의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며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전개하기로 결정하여 주체사상이 북한의 통치이데올로기로 확립됨으로써 김일성 유일체제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다. 이 시기부터 김일성은 영도와 사상의 유일성을 확보하면서 스스로를 ‘수령’이라고 부르기 시작하였다.

1969년에는 허봉학(군 총정치국장 겸 대남담당비서), 김창봉(민족보위상), 최광(군 총참모장)과 김광협(부수상) 등도 축출하였다. 이들을 축출한 이유는 첫째, 6·25전쟁에서 인민군의 경험을 무시하고 한국지형

에 맞지 않는 고도무기체계(高度武器體系)만을 강조하였다는 것과 둘째, 이들이 군부 내에 파벌을 형성하려 했고, 유일사상체계를 문란시켰다는 것 등을 들고 있다. 그리하여 1970년 제5차 당대회 무렵에는 북한의 지도층은 김일성에 대한 충성파로 일색화되었으며, 이른바 ‘유일사상체계’와 ‘유일영도체계’가 확립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김일성 유일체제는 1972년 12월 개정된 「사회주의헌법」을 통해 제도화되었다.⁵⁾

3. 김정일 후계체제의 구축

유일체제가 구축된 이후 김일성은 장자인 김정일을 후계자로 삼아 부자세습체제를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김정일은 1973년 2월부터 착수된 ‘3대혁명소조운동’의 책임을 맡은 바 있으며, 동년 9월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7차 전원회의에서 당중앙위원회 비서로 선출된 데 이어 1974년 2월 개최된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8차 전원회의에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으로 선출되어 김일성의 유일한 후계자로 추대되었다.⁶⁾ 또한 김정일은 1974년 3월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라는 혁명적 구호를 제시하고, 1975년 11월부터 시작된 ‘3대혁명 붉은기 쟁취 운동’을 주도하였다. 그러나 당시 김정일은 ‘당중앙’이라는 호칭으로 불리우기 시작하였을 뿐 이러한 내용이 공개된 것은 아니었다.

5) 1948년 헌법에서 주권의 대표기관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라고 규정되었는데 반해, 사회주의헌법에서는 국가수반이며 국가주권을 대표하는 국가주석제를 신설함으로써 국가수반의 기능과 정치권력의 실질적인 행사를 결합시켜 김일성의 유일영도체제가 제도화 되었다. 북한 스스로도 사회주의헌법의 주요 특징을 “국가기관들의 모든 활동에서 수령님의 유일적 령도를 확고히 실현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데 있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는 결국 김일성이 권력투쟁 과정에서 획득한 권력기반을 헌법에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6) 『조선로동당력사』, 조선로동당출판사, 1991, p. 473.

김정일이 김일성의 후계자로 공식 지명된 것은 1980년 10월에 개최된 제6차 당대회이다. 김정일은 제6차 당대회에서 당중앙위원회 정위원(서열 4위), 당정치국과 상무위원회 위원, 당비서국 비서, 당군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면서 김일성의 후계자로서 공식적으로 등장하였다. 제6차 당대회 이후 김정일은 주요 대외문제를 제외한 대부분의 대내 정책을 당조직을 통해 관리, 후계자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⁷⁾ 김정일은 1982년 3월 “주체사상에 대하여”라는 논문을 발표하여 주체사상을 심화, 발전시키는 한편, ’80년대 속도창조운동,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 배우는 운동, 전당의 주체사상화, 준법기풍 양양, 8·3 인민소비품 생산운동(1984) 등을 주도하였다. 이 시점에서 김일성과 김정일은 대외업무와 대내 업무를 나누어 업무분담을 하였다.

한편 김일성은 1986년 5월 31일 김일성 고급당학교 창립 40돐에 즈음하여 집필한 강의록 “조선로동당 건설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 당의 위업을 계승함에 있어서 그 기본은 수령의 후계자 문제를 바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후계자문제는 “정치적 수령의 지위와 역할을 계승하는 문제”라고 규정하는 한편, “우리 당에서는 혁명위업의 계승문제가 만족스럽게 해결되었습니다”⁸⁾라고 언급하여 김정일 후계체제의 성립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였다.

이후 김정일은 1990년 5월에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1차회의에서 확대 개편된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으며, 1991년

7) 김정일의 등장과정과 후계체제의 전개에 대해서는 Chong-Sik Lee, “Evolution of the Korean Worker’s Party and The Rise of Kim Chong-Il”, *Asian Survey*, Vol. XXII, No.5(May 1982), pp. 434~448; Young-hwan Jo, “Succession Politics in North Korea:Implication for Policy and Political Stability”, *Asian Survey*, Vol. XXVI, No. 10(October 1986), pp. 1092~1117 참조.

8) 김일성, “조선로동당 건설의 역사적 경험,” 『조선중앙년감 1987』, 조선중앙통신사, 1987, p. 64.

12월 24일 개최된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19차 전원회의에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되었다. 김정일은 1992년 4월 20일 원수 칭호를 수여받은 이후, 1993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5차회의에서 국방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았다. 이로써 김정일은 당·정·군 모두에 걸쳐 통치자적인 입지를 확고히 구축하였다.

한편 1994년 7월 8일 김일성 사후 김정일은 인민군최고사령관의 직함을 가지고 유일체제를 공고히 하려하고 있으며, 공식적인 권력 승계는 1997년 7월 8일 이후로 추정되고 있다.

제 2 절 정치체제의 규범적 구성원리

1. 주체사상의 형성 배경

북한에서 ‘주체’의 문제가 공식적으로 처음 제기된 것은 1955년 12월 28일 당 선전선동원대회에서 김일성이 행한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 데 대하여”라는 연설에서이다. 이제까지 소련에 대하여 충성을 다하였던 김일성이 ‘주체’문제를 거론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대외적으로는 1953년 스탈린의 사망이 사회주의국가들의 독자노선을 부추기는 계기가 되었다. 즉 흐루시초프는 이제까지의 소련 중심의 1국사회주의에서 다른 사회주의국가의 독자노선을 허용하는 ‘사회주의에로의 다양한 길’(many ways to socialism)을 인정하게 되었다. 유고의 티토노선(Titoism)의 인정이 그 예이며, 김일

성이 ‘주체’문제를 제기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⁹⁾

대내적으로는 이제까지 스탈린주의를 바탕으로 통치하였던 김일성이 스탈린의 사망과 함께 당내의 소련파, 연안파의 도전을 받게 되었다. 김일성은 당내의 도전세력을 견제하고 지도력을 강화하기 위해 스스로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상적 입장의 확립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김일성은 소련파, 연안파들을 소련과 중국을 기계적으로 따르는 비주체적인 사람들이라고 몰아 숙청을 단행하였다. 예컨대, 김일성은 소련파의 우두머리이고 당선전부장을 지낸 박창옥에 대해서는 소련을 무비판적으로 모방하고 조선의 프롤레타리아 문학과 인민의 투쟁역사를 소홀히 다루었다고 비난하였다. 또한 그는 허가이(소련파)와 박일우(연안파) 등이 소련식이 옳으니 중국식이 옳으니 하여 분파작용(分派作用)을 야기, 당의 기강을 약화시켰다고 비판하였다.

김일성이 토착 공산주의자로서 ‘조선혁명의 주체’임을 자부하는 박현영을 미제의 간첩으로 몰아 숙청한 뒤 ‘주체’를 제기하였다는 것만 보더라도 이것이 권력투쟁과 얼마나 깊은 관련이 있는가를 짐작케 한다. 즉 ‘주체’ 문제가 표면상으로는 교조주의, 형식주의, 사대주의의 배격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김일성에게 도전했던 반대파들의 제거수단이었던 것이다.

또한 북한은 주체사상의 역사적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일혁명 투쟁과 ‘주체’를 연결시켰다. 즉 김일성은 “간고하고 복잡한 항일혁명 투쟁을 승리으로 이끌어 나가는 데서 우리 앞에 나선 중대한 문제는 우리 혁명의 주체를 튼튼히 세우는 것이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이후 항일 투쟁의 전통을 확대하여 ‘주체’의 역사적 기원을 날조하여 선전하였다. 즉 북한은 ‘주체’를 ‘주체사상’으로 발전시키면서 김일성의 통치이데올

9) 김갑철·고성준, 『주체사상과 북한사회』, 문우사, 1988 ; 민족통일연구원, 『북한체제의 실상과 변화전망』, 1991 ; 윤병익, 『북한의 주체사상』, 통일연수원, 1992 ; 도홍렬, 『김일성주체사상, 그 사실적 검증』, 남북문제연구소, 1993 참조.

로기로서의 권위와 독자성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1975년에는 주체문제를 제기한 연대를 1926년이라고 하였으나, 그 후 1982년 김정일은 1930년 6월 카륜(長春)에서 열린 「공청(共青)」 및 「반체청년동맹」의 간부회의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조작하고 있다.¹⁰⁾

2. 주체사상 내용의 변화과정

북한은 1966년 8월 12일 “자주성을 옹호하자”라는 「로동신문」의 논설을 통해 주체사상을 당의 자주노선으로 공식 천명하고, 이러한 당지도사상으로서의 주체사상은 1967년 12월에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4기 1차회의에 이르러 비로소 국가 차원에서 다루어지게 된다. 이 회의에서 김일성은 국가활동의 당면과업인 ‘공화국정부 10대 정강’을 발표하면서 주체사상의 구현을 국가 모든 부문의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즉, ‘공화국정부 정강’ 첫번째에서 “공화국정부는 우리당의 주체사상을 모든 부문에 걸쳐 훌륭히 구현함으로써 나라의 정치적 자주성을 공고히 할 것”을 규정하였던 것이다. 이 당시 주체사상의 내용은 “사상에서의 주체, 정치에서의 자주, 경제에서의 자립, 국방에서의 자위”의 4개 노선에 국한되었다.

주체사상의 체계화작업은 1970년대 들어서서 더욱 본격화되었다. 1972년에 주체사상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사상, 즉 “자기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자기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자신에게 있다”라는 사

10)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 『김정일동지의 문헌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pp. 13~14.

상이라고 규정함으로써 보편적 이론화과정을 겪게 된다. 북한은 주체사상을 인민대중의 역할에 기초한 혁명의 전략전술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김일성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기 때문에 인민대중은 마땅히 혁명과 건설에 대하여 주인다운 태도를 가져야 하며, 주인다운 태도는 자주적 입장과 창조적 입장을 통해 표현된다고 하였다. 결국 주체사상은 당과 국가의 지도원칙으로서 뿐만 아니라 인민대중을 동원하는 기능까지도 가지고 있는 것이다.

1980년 제6차 당대회에서 주체사상이 당의 ‘유일적 지도사상’으로 규정된 이후, 1982년에는 주체사상을 “전면적으로 심화 발전시킨 것이며 전일적으로 체계화”했다는 김정일의 ‘주체사상에 대하여’가 발표된다.

여기서 주체사상은 김일성 우상화와 결합되어 ‘수령’의 통치명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되었다. 즉 “인민대중이 역사의 주체로서 역할을 다하려면 지도와 대중이 결합되어야 합니다. 인민대중은 역사의 창조자이지만 옳은 지도에 의해서만 역할을 다할 수 있습니다. 혁명운동에서 지도의 문제는 당과 수령의領導문제입니다. 로동계급이 어떻게 의식화, 조직화되는가의 문제와 어떻게 역사적 사명을 다하는가의 문제는 수령의 올바른領導를 받는가 받지 못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위의 인용문에 의하면 수령의 지도를 받지 못하면 인민대중이 혁명의 임무와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되고 있다. 이것은 바로 수령의 유일적 통치체계를 정당화하기 위한 논리인 것이다. 따라서 주체사상은 김부자 정권유지의 수단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주체사상은 1980년대 후반 고르바초프의 개혁·개방노선에 대응하여 체제수호를 뒷받침하는 이론적 변화를 나타낸다. 김정일은 1986년 7월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라는 논문에서 ‘혁명의 주체는 수령·당·인민대중의 통일체’라고 명시하였다. 이것은 주체사상이 1980년대 이전 사회주의건설을 위해 인민의 동원을 선

동했던 주체사상이 아니라 중국의 실용주의와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라는 개혁바람 앞에서 체제수호를 위한 내부결속을 선동하는 사상으로 변하였음을 의미한다. 중요한 것은 김정일이 이 논문에서 수령·당·인민대중의 통일체를 ‘사회정치적 생명체’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개별적인 사람이 육체적 생명이 있는 것과 같이 사회에도 사회정치적 생명이 있는데, 이 사회정치적 생명을 수령이 준다는 것이다. 결국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은 김일성의 신격화와 수령을 중심으로 한 북한체제의 결속을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정일은 수령·당·인민대중의 통일체 속에서 수령의 위치와 역할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영생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은 많은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인 만큼 거기에는 사회적 집단의 생명활동을 통일적으로 지휘하는 중심이 있어야 합니다. 개별적 사람들의 생명의 중심이 뇌수(腦髓)인 것 같이 사회정치적 집단의 생명의 중심은 이 집단의 최고 뇌수인 수령입니다.” 결국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은 수령의 1인 통치를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 수령의 절대적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한 술책이며, 인민의 절대적 복종을 설득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1990년대에 와서 김정일은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1991년 5월에는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라는 담화를 발표, 인민대중의 중요성을 내세움으로써 소련·동구에서 일어난 민중봉기를 예방하려는 의도를 밝힌 바 있다. 주체사상에서 말하는 주체의 단위는 ‘개인’이 아니라 ‘인민대중’이다. 즉 공산주의자들의 집단을 주체의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개인이 아님은 분명히 인식되어야 한다.

3. 주체사상의 한계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주체사상은 1980년대 중반을 넘기면서 그 강조점이 변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주체사상은 1980년대 중반까지는 대외적으로는 소련과 중국의 영향력을 배제하려는 목적이 강하였고, 내적으로는 혁명과 건설을 위한 대중동원과 김일성·김정일부자 우상화를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었다고 한다면, 1980년대 후반에는 주로 체제의 정당화 및 수호기능을 강조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주체사상은 북한사회에 기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발전의 장애요인으로 대두하면서 북한체제의 위기의 근원으로 작용하고 있다. 예컨대 오늘날 자본주의시장으로 단일 통합된 세계환경에는 다양화와 다변화로 맞서야 함에도 유일적 지도사상에 얹매여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김정일은 최근에 들어와서 행복한 생활에서 차지하는 물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상 중심의 기존 주체사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것은 북한이 주민의 복지를 외면할 수 없는 다급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사람에게 있어서 육체적 생명이 귀중하다. 이런 의미에서 육체적 생명을 요구하는 물질생활은 사람의 1차적인 요구를 실현하는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인민대중은 국가와 사회의 주인인 것만큼 마땅히 유족하고 문명한 물질생활을 누려야 한다”¹¹⁾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북한은 아직도 ‘사상의식의 결정적 역할’에 대해서 인식의 변화를 하지 않고 있다. 즉 경제건설은 인민대중을 사회주의 사상으로 무장시키는 사상사업을 앞세우는 기초 위에서 진행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상기 김정일의 주장과 모순

11) 김정일,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로동신문」, 1994.11.1.

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기존 수령 중심의 1당독재체제의 틀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이므로 곧 그 한계성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회주의국가는 개혁·개방을 통해 인류의 보편가치인 자유와 복지, 인간 존엄성이 보장되는 체제로 변화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아직까지도 주체사상의 절대성과 혁명성을 포기하지 않고 있으므로, 결국 주체사상은 북한의 발전을 방해하는 족쇄(足鎖)가 될 것이다.

제 3 절 정치체제의 권력구조

1. 수령의 유일적 영도체제

북한은 ‘권력의 소재’(所在) 측면에서 보면 반대당이 없는 1당독재체제로서 당이 국가보다 우위에 있는 체제¹²⁾이다. 북한은 1992년 4월에 개정된 사회주의헌법에서 당과 국가간의 관계를 분명히 하였다. 즉 헌법 제11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헌법에 당의 지위를 규정했다는 것은 당이 북한권력의 원천임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실제로는 수령의 유일적 영도하에 통치되는 체제이다. 이러한 영도체제는 주체사상에서의 수령론(首領論)이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북한에서 수령의 유일적 영도가 주장되기 시작한 것은 주

12) 이상민·고성준 외, 『전환기의 북한사회주의』, 대왕사, 1992, p. 125.

체사상이 당의 유일사상으로 강조된 시점(1967년)과 일치하고 있다. 그리고 1974년 「유일사상체계 확립을 위한 10대원칙」이 발표됨으로써 수령에 대한 무조건적·절대적 충성을 요구하고 있다.

김정일은 「주체사상에 대하여」를 통해 “당은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사상을 유일적 지도사상으로 하여 모든 정책을 집행한다”고 지적하고, “수령의 유일적 령도체계란 수령의 사상을 지도지침으로 하여 혁명과 건설을 수행하며, 수령의 사상과 명령, 지시에 따라 전당·전군·전민이 하나같이 움직이는 체계”라고 규정하였다.¹³⁾ 북한에서의 수령은 인민대중을 의식화·조직화하여 하나의 정치적 역량으로 단합시키는 통일 단결의 중심이며, 과학적 이론과 전략전술로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을 승리에로 이끌어가는 영도의 중심으로 설정된다.¹⁴⁾ 김정일은 “수령은 단결과 영도의 중심으로서 인민대중의 운명을 개척하는 데서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뇌수가 인간활동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수령복’(首領福)¹⁵⁾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으며, 또한 권력승계는 바로 수령의 지위와 역할을 승계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수령의 유일적 영도는 북한 권력 체계의 가장 큰 특징이다. 다른 사회주의 국가가 당 중심체제인 반면 북한은 수령 중심체제이다. 예컨대 중국의 경우 법적인 직위인 당주석, 국가주석이 최고권력을 대표하고, 다른 상징적인 직위를 거론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13)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14) 김정일,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로동신문」, 1991. 5. 27.

15) 계웅태 당비서 연설문, 「로동신문」, 1994. 8. 28.

2. 노동당의 위상과 체계

(1) 노동당의 성격

북한의 정치사전에 의하면, “당이란 일정한 계급의 리익을 수호하며 그의 요구와 지향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계급의 선봉대이다. 로동계급의 당은 수령의 혁명사상을 실현하기 위한 선진투사로서 조직되며 수령의 혁명사상을 지도지침으로 하고 수령의 유일적 령도밑에 혁명과 건설을 진행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노동당은 계급적 당이며, 수령의 사당(私黨)으로 되어 있다. 수령체제에서 당은 수령에 영도되는 대상으로 취급되고 있는 것이다. “당이 수령의 사상과 영도를 받들지 않고 수령의 위업을 계승하지 않는 당은 혁명적 당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주장되어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북한의 노동당은 계급 정당이면서 동시에 수령의 당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김정일은 노동당을 “사회주의 사회의 유일한 향도적 력량”이라고 규정하고, 당의 지위와 역할은 다른 어떤 정치조직도 대신할 수 없다고 하였다. 북한에는 외견상 집권당인 노동당뿐만 아니라 ‘천도교청우당’과 ‘조선민주당’과 같은 우당(友黨)이 있다. 그러나 이들 제 정당 가운데 노동당만이 유일하게 집권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당 일당체제이다. 그리고 “정권기관과 근로단체들은 로동계급의 당의 령도를 받아야”하며 “로동계급의 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들은 사회주의 사회의 향도적 력량이 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또한 “사회주의 사회에 대한 령도권을 로동계급의 당이 아닌 다른 정당의 수중에 넘기는 것은 결국 사회주의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결국 북한은 노동당에 의한 1당독재체제인 것이며, 나아가서 노동당은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것을 당 건설의 기본노선으로 하여 전당(全黨)에 수령의 사상체계, 영도체계를 세워 나감으로

써 당이 1인독재체제 확립에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당은 북한 정치체제의 틀에서 보면 인민대중을 지도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상급기관이지만 수령의 영도를 받는 하급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는 김정일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전되고 있다. 즉 김정일이 당적 사상체계를 당의 유일사상체계라는 말로 바꾸었다고 한다. 유일이라는 두 글자로 당의 통일단결과 조직사상적 기틀을 만들었다고 한다.

최근 북한은 수령과 당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선전하고 있다. 즉 “전체인민이 수령을 친어버이로, 당의 품을 어머니품으로 믿도록”¹⁶⁾하는 것이다. 이는 북한 주민에게 당의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한 전술로 보여진다.

(2) 노동당의 조직과 체계

노동당의 조직원칙은 사회주의적 통치구조의 기본원리인 ‘민주주의 중앙집권제’이기 때문에,¹⁷⁾ 이에 따라 노동당의 조직과 운영 및 활동체계가 전면적으로 규제되고 있다. 여기에서 ‘민주주의’는 당 지도기관이 선거에 의해서 구성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중앙집권제’는 모든 권력이 종국적으로 최고권력기관에 집중되어 당원은 당조직에 복종하고 소수는 다수에 복종하며, 하급 당조직은 상급 당조직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의 주장에 의하면 ‘민주주의 중앙집권제’는 본질에 있어서 중앙집권제를 선행시키는 조건에서의 민주주의이다.¹⁸⁾ 바로 여

16) 김정일, “사회주의는 과학이다,”『로동신문』, 1994. 11. 1.

17) 장명봉, “북한 헌법상의 권력구조,”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편, 『북한의 법과 법이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88, p. 123.

18) 위의 책, p. 125.

기에서도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는 민주주의와 중앙집권제의 상호관계의 특징이 있다.

김정일은 민주주의보다 중앙집권적인 규율을 더 강조하고 있다. 예컨대 “당안에서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은 중앙집권적인 규율에 의해서 보장된다”고 하면서, “당중앙의 지시에 따라 모든 당원들이 한사람같이 움직이는 중앙집권적인 사업체계와 질서가 될 때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이 확고히 보장될 수 있다”고 하였다. 노동당의 조직운영에서 민주주의적 원칙보다 중앙집권제의 원칙을 우선하는 것은 수령의 영도를 실천하는 조직으로서의 역할에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당적 영도는 전 사회 부문에 대해 예외없이 적용된다. 그것은 부문별, 단계별로 전국적으로 조직된 당위원회, 당세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국가기관은 물론 근로단체, 일반공장, 기업소, 농장도 그 당적 영도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당의 기구로서 최고지도기관은 당대회이며, 당대회는 5년에 한번 개최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당대회와 당대회 사이에는 당중앙위원회가 최고지도기관의 역할을 한다. 당중앙위원회는 6개월에 1회 이상 전원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전원회의가 개최되지 않는 기간에는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당의 모든 사업을 조직·지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해당 시기에 당이 직면한 문제 등을 토의·결정하며,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및 당중앙위원회 총비서와 비서를 선거하고 비서국과 군사위원회를 조직한다. 특히 비서국은 필요시 당인사 및 당면과제 등 당내 문제를 토의·결정하며 그 결정의 집행을 조직·지도하는 핵심부서이다.

그리고 지방당조직이 전국적으로 거미줄처럼 짜여져 있다. 도(직할시)·시(구역)·군 단위에 중앙당의 당대회, 당중앙위원회에 해당하는

각급 당대표회와 당위원회가 있고 1급과 2급의 공장·기업소에는 공장 당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시·군당위원회 밑에는 초급당조직이 있으며 초급당위원회 밑에는 분초급당위원회와 부문당위원회, 당세포가 있다. 당의 최하기층 당조직은 당세포이다. 초급당조직은 당원 31명 이상이 있는 단위에 두며, 당세포는 당원 5명에서 30명까지의 단위에 조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노동당과 군의 관계

북한에서 정치역량을 강화하고자 함에 있어서 강조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주적인 정치군인을 꾸리는’¹⁹⁾ 문제이다. 이는 당이 군을 얼마나 잘 장악할 수 있느냐의 문제와 직결된다. 그러므로 북한의 당규약(黨規約)은 당이 군부를 통제하는 장치를 규정하고 있다.²⁰⁾ 즉, 당중앙위원회 내에 군사위원회를 조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조선인민군대 내에도 당조직을 두고 있다. 당규약 제7장 46조에 “조선인민군은 항일무장투쟁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계승한 조선로동당의 혁명적 무장력”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어 47조에 “조선인민군 당위원회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 직속하며 그 지도밑에 사업하고 자기사업에 대하여 당중앙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군대 내에는 조선인민군 당위원회의 집행기구로서 당의 정치사업을 유일적으로 조직 지도하는 총정치국이 있으며, 대대급 이상에는 정치부가 있다. 연대급 부대의 경우 ‘정치부장’, ‘정치부연대장’이 있고 당에서 직접 파견한 ‘정치위원’이 있다. 앞의 두 직책은 당일꾼이지만 뒤의

19) 허종호, 『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리론』, 사회과학출판사, 1975, p. 278.

20) 정영태, 『김정일의 군사권력기반』, 민족통일연구원, 1994, p. 15.

‘정치위원’은 당의 대표역할을 한다. 만일 연대장이 당노선에 어긋나는 계획과 명령을 할 때 정치위원은 제동을 걸어 당의 노선에 맞도록 유도 할 만큼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²¹⁾ 따라서 당은 여러 조직을 통해 군을 지도·감독함으로써 군에 대한 막강한 통제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리고 군대 내에는 당의 지도를 받는 청년동맹(구 사로청조직)이 있다. 김일성은 “사로청조직은 우리당의 믿음직한 보조자이며 후비대”라고 하고, 인민군대 내의 하사관과 병사들은 대부분이 청년동맹원임을 주장하고 있다. 사로청조직은 당조직 지도부에서 지도한다. 당이 군을 지도·통제하는 데 사로청까지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김일성 사망 이후부터 정치·경제 위기를 관리하기 위해 군부의 영향력이 점차 강화되고 있어, 앞으로 당·군관계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군의 이을설 원수, 백학림 차수 등의 권력서열이 당비서를 제칠 정도로 군부의 위상강화가 나타났으며, 노동당 50돐 기념행사에서 최광 인민무력부장이 보고하고, 사회안전부 정치국장 장성우 대장이 제병지휘관을 한 것으로 보아 점차 군부 중심체제로 감으로써 군부의 위상과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 예컨대 당·행정 고위간부들로 하여금 군의 건설현장을 방문 캐 하고 군지휘관은 방문한 이들에게 ‘혁명적 군인정신’을 따라 배우도록 목청을 높이고 있다.

3. 국가기관

북한의 권력구조에서 당(黨)은 정책결정기능을, 국가기관은 정책집행기능을 담당한다. 배에 비유하면 당은 ‘키’의 역할을, 국가기관은 ‘노’

21) 김정일, “인민군대 당조직과 정치기관들의 역할을 높일 데 대하여,” 1969. 11.

의 역할을 한다. 키를 바로 잡고 노를 저어야 배를 제대로 몰고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확고한 당의 영도하에 사회전반에 대한 통일적지도를 하는 것이 북한 국가기관의 기본기능이다.

국가기관은 1992년 개정헌법에서 부분적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데, 북한은 이 개정헌법을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성과를 법적으로 고착시키고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반영한 정치헌장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주요과업을 규제한 백과총서”라고 평가하고, “근로대중을 중심에 놓고 그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 원칙을 체계화하였으며 헌법구성체제도 창조적으로 개척한 주체헌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개정헌법에 나타난 특징은 첫째, 북한 스스로가 강조하는 바와 같이 ‘주체헌법’이라는 것이다.²²⁾ 즉 이념적 측면에서 “맑스-레닌주의의 창조적 적용”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주체사상을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고 하였다. 이는 1980년 10월 제6차 당대회에서 당의 이념을 김일성 주체사상으로 수정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둘째, 개정헌법에서는 당면한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한 대외경제개방 정책의 법적 근거로서 외국인의 합법적 권리보장, 외국법인 또는 개인들과의 기업 합영과 합작 장려 등을 명시하였다(제37조).

셋째, 김정일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김일성 이후에 예상되는 김정일시대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국방위원회를 중앙인민위원회에서 분리, 독립기관으로 격상시키는 등의 권력구조를 개편하여, 김정일의 권력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22) 정노관, “개정헌법의 특징과 북한체제의 향배,” 「극동문제」, 1993. 7, pp. 15~67.

넷째, 제4장에 국방이라는 별도의 장(章)을 새로이 만들어 군의 사명을 사회주의제도의 보위에 두고 4대군사노선의 관철을 명시함으로써 사회주의체제의 고수를 위한 군의 역할과 성격을 헌법에 구체화하였다.

그러나 이번 개정헌법에서 북한이 표방하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의 실현과 ‘인민대중을 위한 복무’의 문제는 오히려 후퇴를 보이고 있다. 즉 인민의 최고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의 권한을 확대하고, 반종교선전의 자유를 삭제하여 신앙의 자유를 일부 허용(제68조)하는 등 부분적 변화를 보여주고 있으나, 별도의 ‘국방’의 장(章)과 당의 국가기관 영도조항 신설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인민의 주체성보다는 당과 군의 권한 강화가 더욱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1) 입법기관

1) 최고인민회의

헌법상 최고인민회의는 입법권(立法權)을 행사하는 최고주권기관이나, 실제로는 명목상의 권한을 갖는 형식적인 추인기관에 불과하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의 임기는 5년이며, 정기회의는 1년에 1~2회, 임시 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대의원은 인구 3만명을 단위로 1명이 입후보하여 가부(可否)투표를 통해서 선출된다. 그러나 1992년 10월 7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를 통과한 선거법에서는, “한 선거구에 등록되는 대의원후보 수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규정해 복수후보 등록을 가능하게 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개정헌법에서는 최고인민회의의 권한이 대폭 확대되었는데, 특히 주요 국가기관장의 선거·소환과 경제·예산의 심의영역에서 권한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다. 종래의 주석선거권에 소환권(召還權)이 추가되었을

뿐만 아니라 신설된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선거·소환, 위원장의 제의에 의해 국방위원회 위원의 선거·소환, 주석의 제의에 의한 총리의 선거·소환 그리고 정무원 총리의 제의에 의한 부총리와 각부장의 임명 등이 그 대표적 예이다.

또한 종전에 경제발전계획과 국가예산에 대한 승인에 그쳤던 권한을 이에 대한 심의권까지 확대하였는가 하면, 필요시 최고인민회의가 조직한 국가기관들의 사업정형을 보고받고 대책도 수립할 수 있게 하였다. 그 외에 조약의 비준·폐기에 대한 결정권, 전쟁과 평화에 관한 문제의 결정권도 갖는다. 아울러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에 대한 불가침권도 확대되어 기존에는 최고인민회의 또는 그 상설회의의 승인이 없는 한 불체포 특권만 가졌으나, 불처벌권이 추가되었다. 또 상설회의의 권한이 확대되어 최고인민회의와 함께 입법권을 행사하는 기관으로 격상되었고, 회의 정족수도 종전에는 대의원 재적인원의 1/2 이상이었으나 2/3 이상으로 강화하였다.

최고인민회의는 국가정책과 법안을 작성·심의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통일문제와 외교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통일정책위원회(1990. 5)와 외교위원회(1990. 11)를 설치하였다. 1990년 5월의 최고인민회의 제9기 1차회의에서는 김정일을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으로, 1993년 4월 제9기 5차회의에서는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최고인민회의의 권한확대는 민주화나 의회주의에로의 전환보다는 북한 주민들의 정치적 불만을 제도적으로 해소하려는 데 있는 것 같다. 따라서 체제를 개혁·개방한다기 보다는 체제수호를 위한 조치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2) 지방인민회의

지방인민회의는 도(직할시)·시(구역)·군 단위에서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출한 대의원들로 구성되는 지방주권기관으로 임기는 4년이다. 지방인민회의의 임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 (i)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 및 지방예산과 그 집행 정형에 대한 보고의 심의·승인
- (ii) 해당 지역에서 국가의 법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 수립
- (iii) 해당 인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과 해당 행정 경제위원회 위원장, 해당 재판소의 판사와 인민참심원에 대한 선거 또는 소환
- (iv) 해당 행정경제위원회의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에 대한 임명 또는 해임
- (v) 해당 인민위원회와 하급 인민회의, 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정·지시 폐지

(2) 행정기관

1) 주 석

주석제는 1972년에 제정된 사회주의헌법에서부터 신설된 제도로서 제정 당시의 목적은 김일성에게 최고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 1972년 헌법상 주석의 지위는 국가의 수반(首班)이며, 국가주권을 대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인민군 최고사령관, 국방위원회 위원장 등 군사력의 지휘·통솔권을 장악하도록 하였으며, 최고국가지도기관인 중앙인민위원회를 지휘도록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1992년 개정헌법에서 주석은 ‘국가주권의 대표자’가 아닌 ‘국

가의 대표자'가 되었다. 따라서 군사지휘권 등 모든 군사관련 기능과 권한을 삭제하였으며, 소환제도를 만들어 그 위상을 약화시켰다. 또한 조약의 비준 및 폐기권을 중앙인민위원회로 이관하여 주석은 '공포권'만을 행사하도록 하였으며, 해외주재 외교대표의 임명·소환도 중앙인민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주석이 발표만하도록 하였다. 주석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조정에 맞추어 4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였다. 그리고 부주석은 주석의 사업을 돋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최고인민회의 제9기 6차회의(1993. 12. 11)에서 부주석을 2명에서 4명으로 늘렸다. 즉 박성철, 이종옥 외에 김영주와 김병식이 추가되었다. 현재 김일성 사망 이후 2년 반이 경과하였음에도 북한의 주석자리는 계속 공백으로 놓여 있다.

2) 중앙인민위원회

중앙인민위원회는 주석인 김일성의 유일적 지도를 뒷받침하기 위해 1972년에 제정된 헌법에 신설한 기구이다. 신설 당시 이 기구는 국가주권의 최고지도기관으로서 대내외정책을 세우고 국방 및 정치보위사업을 지도하는 등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개정헌법에서는 군사 및 국방에 관한 사항은 국방위원회에 이관함으로써 명목상 국가주권의 최고지도기관으로 남게 되었다. 반면에 국가기관들의 법준수 집행지도와 법집행에서 제기되는 문제처리,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의 비준·폐기 등의 기능이 새로이 추가되었다. 아울러 중앙재판소와 중앙검찰소를 지도하는 규정과 중앙인민위원회 산하 부문별 위원회 성원들을 임명·해임하는 내용도 신설되었다. 인적 구성면에서도 신설 초기에는 위원들의 대부분이 당정치국비서, 정무원 총리나 부총리 같은 당 고위간부직을 겸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일부 정치국 위원과 '도당책임비서'들로 구성됨으로써, 개정헌법에서 중앙인민위원회는 비군사적 영역과 행정실무만을 지도하는 기구로 격하되었다.

지방인민위원회는 당해 인민회의 휴회중의 지방주권기관이나, 실제로 인민위원회는 지방당 간부, 행정경제위원회 간부, 지방검찰소 및 재판소 소장, 지방사회안전국 국장 등으로 구성되어 그 지방의 전반적인 사업을 지도하고 있기 때문에 상설 주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인민위원회는 당해 인민회의의 결정을 공포할 권한과, 매년 1~2회에 걸친 인민회의 정기회 및 임시회 소집권을 가지고 있고, 지방인민회의 대의원 임기만료후 새 대의원이 선출될 때까지 자기의 업무를 계속 수행함으로써 실질적인 지방주권기관이라 할 수 있다.

3) 국방위원회

1992년 개정헌법의 특징은 ‘김정일의 헌법’이라고 할 정도로 그의 권한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정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국가주석, 중앙인민위원회가 수행하게 되어 있던 군사관련 제반 기능과 권한을 국방위원회로 통합함으로써 군사정책 수행의 일원화 및 김정일의 군부장악을 법적으로 뒷받침하였다.

또한 기존헌법에서는 국방위원회가 중앙인민위원회에 속하는 하나의 부문위원회에 불과하였는데, 개정헌법에서는 주석 다음의 국가기관으로 격상시켜 놓았다. 그리고 주석의 당연직이었던 국방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토록 함으로써 당시 동 위원회 제1부위원장이었던 김정일의 군최고사령관 취임을 합법화하였다. 이는 김정일의 군부장악을 통해 세습체제를 확고히 하겠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며, 김정일의 권력기반을 제도적으로 공고히 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국방위원회는 ‘국가 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이며, 무력사용(武力使用)에 관한 전반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군사간부의 임명·해임은 물론 유사시 전시상태와 동원령을 선포하는 등 주요 군사문제의 결정과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되어 있다(제114조, 제115조).

4) 정무원

①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인 정무원(政務院)은 최고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의 행정적 집행기관이다. 정무원은 주석과 중앙인민위원회의의 지도하에 사업을 수행하는 합의제 기관으로 총리, 부총리, 위원장, 부장들과 그밖에 필요한 성원들로 구성되며 임기는 5년이다.

정무원은 사업집행을 위하여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두고 있다. 전원회의는 정무원 성원 전원으로 구성되며, 국가관리사업에서 나서는 새롭고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한편 상무회의는 총리, 부총리 및 그밖에 총리가 임명하는 정무원 성원들로 구성되며 전원회의에서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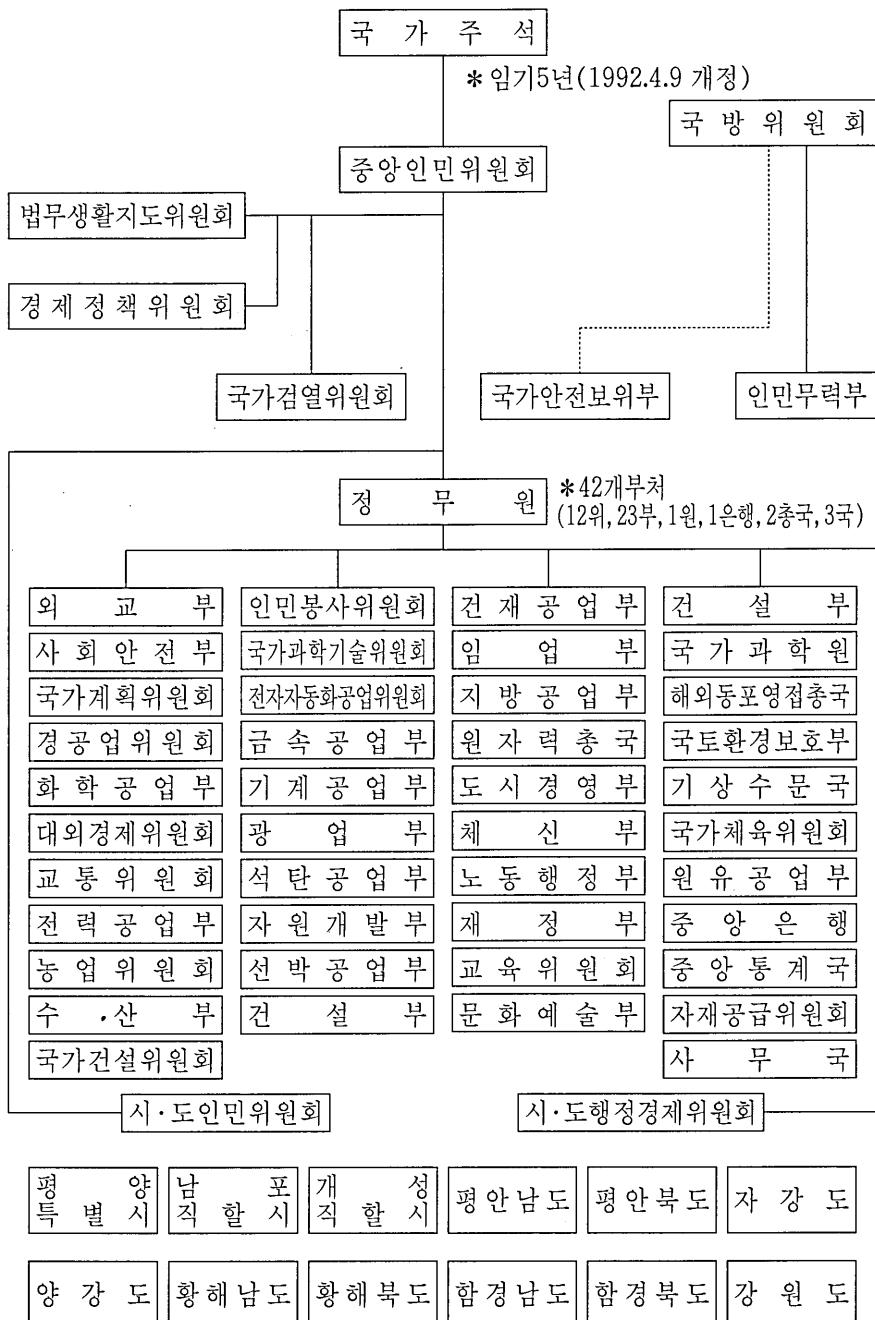
정무원은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의 작성·집행, 국가예산의 편성·집행, 화폐·은행제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대책 수립, 외국과의 조약체결 및 대외사업 수행, 사회질서의 유지, 국가·협동단체의 소유와 이익 보호, 공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 수립, 정무원의 결정·지시에 위배되는 행정경제기관의 결정·지시·폐지 등의 권한을 갖는다.

북한의 정무원은 12위원회, 23부, 1원, 1은행, 2총국, 3국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자기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주석 및 중앙인민위원회에 책임을 진다(표 2-1 참조).

총리는 주석의 제의에 의하여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출된다. 또한 부총리와 위원장, 부장, 그밖에 정무원 성원의 임면(任免)에 관한 제의권(提議權)을 갖는다. 총리도 정무원의 한 구성원이며, 새로 선거된 총리는 정무원 성원을 대표하여 최고인민회의에서 주석 앞에 선서한다.

부총리의 지위와 권한에 관한 현법상의 규정은 없으나 부총리는 1개 분야 이상의 업무를 관할하고 때로는 수개의 부(部)를 통할·조정하는 권한을 갖는다고 한다. 이러한 조정작용을 통하여 총리를 보좌하는 지위

〈표 2-1〉 북한 행정기구표



자료 : 통일원, 『북한권력기구도』, 1996.

를 갖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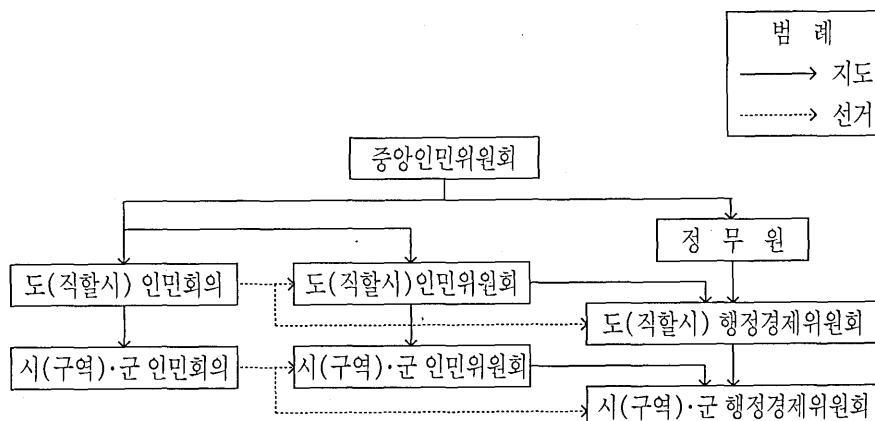
② 지방행정기관

지방행정기관으로는 각 도(직할시)·시(구역)·군 인민위원회와 행정경제위원회가 있다(표 2-2 참조). 1972년 헌법에서 지방행정기관인 각급 지방행정위원회가 신설되면서, 지방인민위원회는 해당 인민회의 휴회중 지방주권기관으로 그 성격이 바뀌었다. 그 후 1981년 경제지도위원회의 신설과 더불어 행정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해당 인민위원회에 통합함으로써 인민위원회는 인민회의 휴회중의 지방주권기관의 기능외에도 집행기관적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1985년 경제지도위원회가 행정경제위원회로 개편됨에 따라 인민위원회의 행정집행기능도 신설된 행정경제위원회로 다시 넘어가게 되었다.

가) 지방인민위원회

헌법상 지방인민위원회는 ‘당·정 합의기관’이라고 볼 수 있다. 지방인민위원회는 지방당간부, 지방인민회의 및 지방검찰소와 지방재판소 소장, 지방사회안전국장, 공장·기업소의 책임자 등 해당 지방의 인사들로

〈표 2-2〉 지방행정기관 조직체계



자료 : 통일원, 『북한권력기구도』, 1996.

구성되어, 그 지방의 전반적 사업을 지도하는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나) 지방행정경제위원회

지방행정경제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기관으로 해당 지방의 행정경제사업의 조직·집행, 해당 인민회의, 인민위원회와 상급 인민회의, 인민위원회, 행정경제위원회와 정무원의 결정·지시·집행,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 작성·실행, 지방예산의 편성·집행, 해당 지방의 사회질서 유지, 국가·협동단체의 소유와 이익 보호, 공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 수립, 하급 행정경제위원회 사업지도, 하급 행정경제위원회의 그릇된 결정·지시·폐지 등의 권한을 가진다. 아울러 지방행정경제위원회도 자기 사업과 관련한 결정과 지시를 낸다.

지방행정경제위원회는 해당 지방주권기관의 행정적 집행기관이자 중앙행정기관의 집행기관이기도 하다. 따라서 지방행정경제위원회는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지방주권기관인 해당 인민회의와 인민위원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그 사업지도를 받아야 하며, 아울러 정무원과 상급 행정기관에 복종하고 그 사업지도를 받아야 한다. 즉 행정이 이중종속에 놓여지게 된다.

다) 특별지방행정기관

주권기관의 행정적 집행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관으로는 각 지역계획위원회, 도농촌경리위원회, 시·군협동농장경리위원회, 도건설위원회, 지방철도국, 도량공업위원회, 통계국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지방행정기관 중에는 1960년대부터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일반지방행정기관과는 달리 단독종속제 기구조직원칙이 적용된다. 물론 지방인민위원회가 상설적 지방주권기관으로서 해당 지역내의 기관, 기업소, 단체들의 사업을 지도하기 때문에 이중종속제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고 할 수는 없다.²³⁾

(3) 사법기관

북한에서도 재판은 검사가 공소를 하고, 변호사가 범죄자를 변호하며, 판사가 이에 대해 판결을 하는 등 외형상으로는 남한에서와 유사한 형태로 이루어지나, 그 내용에서는 우리와 판이하다. 즉 북한에서는 재판소와 검찰소 등 사법기관이 노동당의 사법정책을 집행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강력한 무기’로서 기능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당에 예속되어 있어 독자적인 결정을 할 수 없다. 북한의 재판제도는 헌법과 재판소구성법 및 형사소송법 등에 규정되어 있다.

1) 재판기관

북한의 재판소는 중앙재판소를 정점으로 하여, 그 밑에 도(직할시)재판소, 지방의 인민재판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특별재판소인 군사재판소와 철도재판소가 있다. 중앙재판소 소장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소환하고, 중앙재판소 판사와 인민참심원은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에서 선거·소환한다.

① 중앙재판소

중앙재판소는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에서 선거로서 선출된 판사와 인민참심원으로 구성되며(헌법 제101조), 북한의 최고재판기관으로서 모든 재판소들의 재판사업을 감독하고 사법행정사업을 지도·감독한다(동법 제160조).

중앙재판소의 재판사업에 대한 감독은 확정된 판결·판정에 대한 비상

23) 신영호, “북한행정법의 체계와 특색,” 세종연구소편, 『북한법 체계와 특색』, 1994. pp. 169~170.

상소사건의 심리와 도(직할시)재판소, 군사재판소 및 철도재판소의 제1심 판결·판정에 대한 상소·항의사건의 심리를 통하여 한다. 나아가 중앙재판소는 필요에 따라 어떤 재판소의 관할에 속하는 제1심 사건이든지 이를 직접 재판하거나 같은급 또는 같은종류의 다른 재판소에 보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심급제도의 의의를 반감시키는 동시에 하급심에 대한 강력한 통제를 가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중앙재판소는 최고인민회의, 주석 및 중앙인민위원회의 지도를 받으며 자기 사업에 대하여 그 앞에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160조, 제161조).

중앙재판소는 판사인 재판장 1명과 인민참심원 2명으로 구성된 부에서 제1심 형사 또는 민사사건을 심리하며, 특별히 법령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된 부에서 사건을 심리한다(재판소구성법 제31조). 도재판소 및 해당 특별재판소의 판결·판정에 대한 상소·항의사건과 중앙재판소 이외의 각 재판소의 확정판결 및 판정에 대한 비상상소사건과 재심사건은 판사 3명으로 구성되는 부에서 심리하며,²⁴⁾ 상소·항의사건이나 비상상소사건을 심리하는 경우에는 인민참심원의 관여가 배제된다(동법 제36조, 제37조).

② 도(직할시) 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는 도(직할시)인민회의에서 선거로서 선출된 판사와 인민참심원으로 구성되는데, 이와 같이 선출된 판사와 인민참심원의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의 임기와 같으며,²⁵⁾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는 중앙재판소 판사 및 인민참심원에서와 같다(헌법 제153조).

도(직할시)재판소는 자기 관할 도(직할시)안의 인민재판소들의 재판

24) 중앙재판소 이외의 모든 재판소의 확정판결·판정에 대한 비상상소사건과 재심사건에는 중앙검찰소 검사가 참가한다(재판소구성법 제37조).

25) 도(직할시)·시·군 인민재판소의 판사 및 인민참심원의 임기는 모두 4년이다.

사업을 감독하며 사법행정사업을 관장하고, 관할 도(직할시)내의 반국가범죄와 사형 또는 1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이 규정된 일반범죄사건을 제1심으로 재판하며 관할 도(직할시)내의 인민재판소의 제1심 판결·판정에 대한 상소·항의사건을 제2심으로 재판한다. 아울러 도(직할시)재판소는 중앙재판소와 함께 하급재판소의 재판사업, 변호사사업, 집행사업, 공증사업을 지도할 권한과 책무를 가지고 있다.

또한 도(직할시)재판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해당 인민회의 앞에 책임을 지며(동법 제161조), 중앙재판소의 사법행정사업상의 지도와 사법정책상의 지시를 따를 의무가 있다. 도(직할시)재판소에서는 중앙재판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소·항의사건의 심리에는 인민참심원의 관여가 배제되고 판사 3명으로 심리한다.²⁶⁾

③ 인민재판소

인민재판소는 최하급재판기관으로 시(구역)·군인민위원회에서 선거로 선출된 판사와 인민참심원으로 구성되며, 수개의 시·군 단위별로 설치되어 있다. 도(직할시)재판소와 특별재판소 및 중앙재판소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일반범죄사건 및 법령에 의하여 그 관할에 속하는 민사사건(노동·이혼·사건 포함)을 심리하는 재판활동을 하며, 그 외에 중재·법령해설·자료폭로·법률상담 등 군중정치사업도 하도록 되어 있다. 인민재판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판사인 재판장 1명과 인민참심원 2명으로 제1심 재판을 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판사 3명으로 재판한다(재판소구성법 제31조).

인민재판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해당 시·군인민회의 앞에 책임을 지며, 중앙재판소와 도(직할시)재판소로부터 재판사업에 대한 감독을 받고, 주석과 당의 사법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중앙재판소의 지시에 따를

26) 법무부, 『북한연구(III)-형사소송법-』, 1993, p. 36.

의무가 있다.

④ 특별재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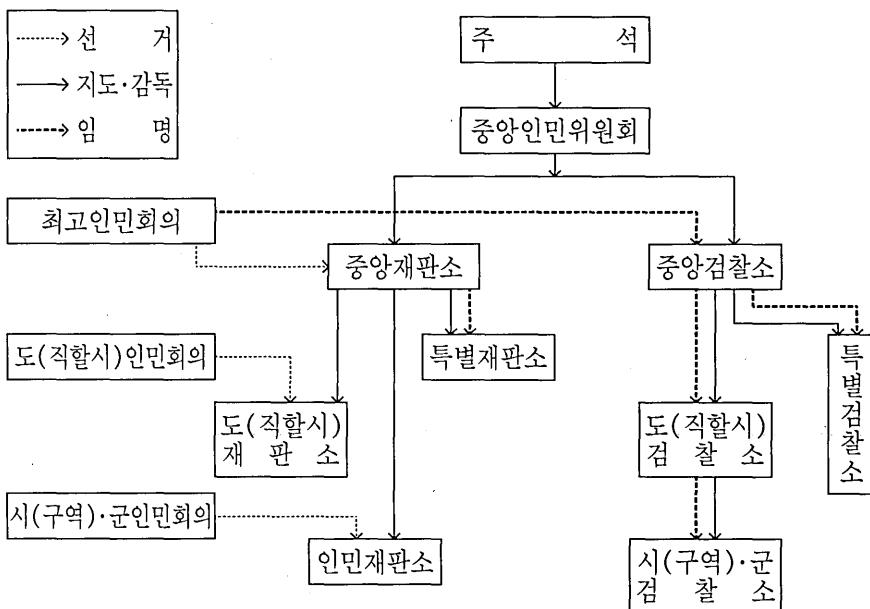
북한에서는 특별재판소로서 군사재판소와 철도재판소를 두고 있는데, 군사재판소는 조선인민군대와 사회안전기관에, 철도재판소는 철도운송부문에 조직되어 있다. 특별재판소의 소장과 판사는 중앙재판소에서 임명·해임하며, 특별재판소의 인민참심원은 해당 군무자회의 또는 종업원 회의에서 선거한다. 특별재판소를 제외한 각급 재판소는 판사와 인민참심원을 임명하는 기관이 동일하나 특별재판소만은 판사와 인민참심원을 임명하는 기관이 다르다는 특색이 있다.

군사재판소는 조선인민군 및 조선인민경비대 군인·사회안전원이 범한 죄, 군사기관·사회안전기관의 종업원이 범한 죄, 기타 법에 의하여 그 관할에 속하는 범죄사건을 관장하고, 철도재판소는 철도운수부문의 종업원이 범한 죄와 철도운수사업의 정상적 활동을 침해한 범죄사건을 관장한다. 특별재판소의 제1심 판결·판정에 대한 상소·항의사건은 중앙재판소에서 심리하며, 이 경우 인민참심원의 참여는 배제되고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판부에서 제2심이자 최종심인 재판을 한다. 특별재판소도 중앙재판소로부터 재판사업상의 감독과 사업행정상의 지도를 받으며, 당과 주석의 영도하에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법을 노동계급적 입장에서 해석하고 적용할 의무를 부담한다.

2) 검찰기관

북한헌법은 우리 헌법과는 달리 검찰소를 헌법기관으로 보아 헌법에 검찰소의 구성, 임무 및 내부관계 등에 관한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북한헌법이 검찰에 관하여 이와 같이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공산주의사회에서 검찰소가 지니고 있는 특유한 의의 내지 기능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표 2-3〉 북한의 사법·검찰조직 체계



자료 : 통일원, 『'95 북한개요』, p. 110.

우리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수사 및 공소제기와 그 유지에 필요한 행위를 하고, 범죄수사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를 지휘·감독하며, 법원에 대하여 법령의 정당한 적용을 청구하고, 재판집행을 지휘·감독하는 권한을 가진다. 북한의 검사도 범죄수사²⁷⁾와 공소제기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는 우리 형사소송법상의 검사와 큰 차이가 없으나, 재판집행에 대한 지휘는 재판소에서 하며 특히 북한의 검찰은 ‘사회주의적 준법성의 유일성 확립’을 위한 이른바 사법감시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우리와 구분적인 차이가 있다.

27) 북한에서는 수사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예심에 검사가 직접 참가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검사는 예심원이 작성한 기소장의 승인여부를 결정하면 되는 등 직접 수사를 행하는 수사참여적인 역할보다는 수사를 지휘·통제하는 역할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북한연구소, 『북한의 개정형사소송법 개요』, 1992, pp. 85~86.

따라서 북한의 검찰기관은 최고인민회의와 주석, 중앙인민위원회에 책임을 지는 중앙검찰소의 통일적인 지휘하에 이른바 ‘사회주의 준법정신’의 유일성을 확립하는 의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겠다(헌법 제166조, 제167조).

북한의 검찰기관은 재판기관의 체제에 대응하여 중앙검찰소를 정점으로, 그 밑에 도(직할시)검찰소, 시(구역)·군검찰소 그리고 특별검찰소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의 검찰소 조직체계는 중앙검찰소가 검찰사업을 통일적으로 지도하며, 모든 검찰소는 상급검찰소와 중앙검찰소에 절대 복종하도록 함으로써 ‘검찰동일체적(檢察同一體的) 체제’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검찰동일체적 체제’는 전국에 걸쳐 사회주의 준법성을 보장하려는 검찰업무 수행의 획일성과 신속성을 보장하는 한편, 당의 사법정책과 법령해석의 통일성을 확립하고, ‘당의 독재체제 강화를 위한 도구’로서의 기능을 다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²⁸⁾

중앙검찰소는 모든 검찰사업을 총괄적으로 지도하며, 모든 하급검찰소는 상급검찰소에 복종하도록 되어 있다. 중앙검찰소에는 소장과 부소장이 있고 그 산하에 일반감시부, 예심감시부, 재판감시부, 특별감시부 등의 실무부서가 있다. 일반감시부는 행정기관, 생산기관 등에 대해 국가계획의 실천여부와 사업실적, 운영방법, 인사관리, 재정관리 등을 검열한다. 예심감시부는 내부기관에 출장하여, 그들이 취급하고 있는 피의자들의 예심업무에 대한 감시 및 지휘와 각급 검찰소 예심감시부의 형사·민사·행정재판에 관여한다. 그리고 간부부, 행정경리부, 기요부(機要

28) 북한의 각급 검찰소는 ‘초급당’ 조직을 갖고 있으며, 이 ‘초급당’을 통하여 각종 지시, 정책노선을 각급 검찰소에 하달하며 각급 검찰소의 구성원들은 당의 지령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이들 구성원은 당적을 가져야 하며, 검사들도 의무적으로 각종 당대회, 학습회, 역사연구회 등에 참석해야 한다.

部) 등의 행정부서가 있다. 중앙검찰소장의 임명·해임은 최고인민회의가 하고(헌법 제91조 13항), 각급 검찰소 검사의 임명·해임은 중앙검찰소가 하도록 되어 있다(동법 제164조). 중앙검찰소는 자기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주석, 중앙인민위원회에 책임을 진다(동법 제167조).

도(직할시)검찰소에는 자체 소속기관으로 일반감시부, 재판감시부, 특별감시부가 있고, 그 밖에 기효과와 경리과가 있다. 시(구역)·군검찰소는 각 시(구역)·군 단위별로 설치되어 있다. 각 검찰소에는 소장과 부소장이 있고, 약간명의 검사(대개 3명)와 서기를 두고 있다.

3) 변호사제도

북한의 변호사제도는 규정상으로는 ‘당사자 대등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보충하는 우리의 변호사제도와 비슷하나, 실제로는 개인의 권익을 보호하기보다는 국가나 당의 이익을 옹호하고 관철하는 것을 우선하고 있다. 즉 북한의 변호사제도는 형식상으로 존재할 뿐, 실제에 있어서는 당과 국가의 정책이 주민들에게 정확히 침투되고 잘 실천되도록 노력하는 것뿐으로서, 그 본래의 기능과 임무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1948년 제정된 ‘변호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변호사 제도를 규율해 왔으나, 1993년 12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으로 ‘변호사법’²⁹⁾을 채택하고, 1994년 4월에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7차 회의에서 이를 승인하였다.

사회주의국가의 변호사단체는 당이나 국가기관이 사법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효과적으로 통제·감독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에 불

29) 북한의 ‘변호사법’은 5장 31조로 이루어져 있다. 제1장 변호사법의 기본, 제2장 변호사의 권리와 의무, 제3장 변호사 자격, 제4장 변호사 보수, 제5장 변호사 조직으로 구성되었다.

과하고, 변호사단체의 법적 성질, 국가기관과의 형식적 독립과 무관하게 실질적으로는 국가기관 산하의 한 하부기관 또는 사업단위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그러한 변호사단체는 설사 관련법률에서 자치권이 부여되고 있다 하더라도 필연적으로 당이나 국가기관의 사법정책에 종속될 수 밖에 없고, 이는 사회주의국가에서의 변호사의 역할에 비추어 볼 때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또 사회주의국가에서는 국가로부터 독립해 있고 경제적으로 존속가능한 개개인의 변호사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단체가 하나의 법률사업 경영단위로서 개개의 변호사를 제쳐두고 법률상 방조를 요구하는 당사자로부터 사건을 수임하고 일괄적으로 변호사 보수를 받아 조직체를 운영해 나가고 있는 바, 이러한 활동도 변호사단체의 커다란 존립목적이라 할 수 있다.

새로운 변호사법에 따르면 ‘조선변호사회’는 북한 변호사들의 조직으로서, 각급 변호사위원회를 상무기관으로 둔다고만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조선변호사회라는 단체의 법적 성질도 분명하지 않고 변호사법상 아무런 권한도 주어져 있지 않으므로 그 전의 북조선변호사회와 마찬가지로 상무기관인 각급 변호사위원회간의 연락을 긴밀히 할 목적으로 설치된 협의기관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선변호사회는 상무기관으로서 중앙과 도(직할시), 해당 부문들에 각급 변호사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그 중 평양에 위치한 중앙위원회는 (i) 변호사 자격 심사, (ii) 변호사 자격박탈 심사, (iii) 변호사 보수기준의 결정, (iv) 다른 나라 변호사조직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하는 등의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조선변호사회 중앙위원회나 각급 변호사위원회는 그 실질이야 어떻든 국가사법행정기관에 소속된 하부기관 또는 사업단위는 아니며 국가사법행정기관에서 독립하여 독자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라고 할 수 있다. 변호사

위원회의 법적 성질에 관해서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사회단체법인³⁰⁾으로 파악된다. 변호사위원회는 변호사 보수를 기초로 하여 독립적인 재산을 가지고 있고, 위원장,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되어 통일된 단위로 활동할 수 있는 조직적 기구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4) 법무생활지도위원회

북한에서 사회주의법무생활의 개념이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김일성이 최고인민회의 제6기 제1차 회의(1977. 12)에서 “인민정권을 더욱 강화하자”는 제목의 연설을 통하여 관료주의에 반대한다는 과제를 제기하면서부터이다. 이 때까지는 사회주의법무생활에 대하여 개념정리도 되어 있지 않았으나, 김일성의 지시에 따라 법무생활지도위원회가 지방의 말 단주권기관까지 설치되고, 이어 김정일이 헌법공포 10주년기념을 즈음하여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할 데 대하여”라는 기명논문을 발표(1982. 12. 15)하면서 그 실체가 확립되게 되었다. 그 후 1992년 사회주의현법이 다시 개정되면서 그 제18조에서 “국가는 사회주의법률제도를 완비하고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사회주의법무생활에 관한 내용이 헌법에 명문으로 포함되게 되었고, 이로써 북한사회에서 사회주의법무생활의 개념이 정착되기에 이르렀다.

김정일의 위 논문에 의하면, 사회주의법무생활은 “국가의 법질서에 따르는 근로인민대중의 자각적인 규율생활이며 법규범과 규정에 기초하여 사람들을 통일적으로 움직이고 공동생활을 실현해 나가는 국가적인

30) 북한의 법인에는 국가적 법인, 협동단체법인, 사회단체법인 등 3가지 종류의 법인이 있다. 국가적 법인에는 예산제 국가기관과 독립채산제 국영기업소가 있고, 협동단체법인에는 협동농장과 생산협동조합이 있으며, 사회단체법인에는 직업동맹, 농업근로자동맹,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민주녀성동맹 등이 있다. 사회주의적 조직체가 법인으로서의 자격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선 독립적인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다음으로는 통일된 단위로 활동할 수 있는 조직적 기구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조직활동”으로 정의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정의되는 사회주의법무생활은 근로인민대중의 자발적인 규율생활을 강조하는 측면을 제외하면 사실상 그 의미에 있어 사회주의준법성과 별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북한이 사회주의준법성과 별도로 이와 비슷한 개념인 사회주의법무생활을 들고 나온 것은 처음에는 인민정권기관의 공무원들 중에서 팽배해진 관료주의, 법위반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없으나, 결국 주체사상과 이에 이어지는 김일성·김정일의 부자세습체제를 지키기 위하여 보다 강력한 주민통제수단 내지 통제기구가 필요하였던 때문이 아닌가 짐작된다. 사회주의준법성이 기존의 권력메커니즘이나 기관 등에 의해 보장되기는 하지만, 사회주의법무생활이라는 기치아래 새로운 비정규적 사회통제수단 내지 통제기구를 만들고 이에 따라 공무원 등 북한사회의 주도적 인사들을 더욱 더 효과적으로 통제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할 것이다.

① 조직

1977년부터 김일성의 지시에 따라 중앙주권기관에서부터 말단지방주권기관에 이르기까지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가 하나씩 조직·설치되었다. 그리고 그에 관한 규칙이 1980년 1월 18일자로 중앙인민위원회 정령의 형식으로 채택되었다고 하나 어떤 연유에서인지 아직까지 공포되지 않고 있다.

법무생활지도위원회는 중앙인민위원회와 각 도(직할시)·시·군의 지방인민위원회 산하의 협의체로 조직되어 있다. 중앙법무생활지도위원회는 국가주석, 중앙당비서, 당조직지도부장, 사회안전부장, 중앙검찰소장 등 5~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급 지방법무생활지도위원회는 인민위원회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검찰소장, 사회안전부책임자, 검열위원회위원장, 당책임비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인민위원회위원장이 법무생활지도위원회의 위원장을, 인민위원회서기장이 법무생활지도위원회의

서기장을 각각 겸하고 있다.³¹⁾

② 권 한

법무생활지도위원회는 주로 국가·경제기관의 간부가 권력을 남용하지 않도록 법적으로 통제하고 전사회에 혁명적 준법기풍을 확립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따라서 동 위원회는 국가검열기관, 검찰기관 등의 감독통제기관을 동원하여 법의 준수·집행상황에 대한 검열을 강화하고, 국가법질서를 위반한 자들의 행위를 심사하여 여러가지 종류의 제재를 가하거나 중대한 경우에는 형사재판에 넘기도록 조치한다. 즉 법의 준수상황에 대한 검열을 통하여 밝혀낸 각종 사회 및 경제사범에 대한 징계처벌과 형사처벌의 방침을 결정하는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재판소나 검찰소 등의 다른 정상적인 국가기관의 권한을 형해화(形骸化)하고 있는 것이다.

③ 활동 방법

동 위원회는 하부조직을 가지지 않는 비상설 합의체기관으로서, 스스로 또는 국가검열기관, 검찰기관, 사회안전기관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권한의 구체적 행사는 제기된 문제를 집단적으로 심의하여 위원의 일치된 합의에 따라 채택한다고 하나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원칙에 따라 국가주석, 당중앙 등의 방침에 순응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은 당연하다.

31)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6차 회의(1993. 12. 10)에서 법령 제21호로서 승인된 북한의 ‘지방주권기관구성법’에 따르면, “지방인민위원회는 해당 지역 안의 사회주의법무생활을 장악 지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26조 제9호).

제 4 절 김정일정권의 과제

1. 독자적 통치방식의 확립

기존 사회주의체제의 후계자는 전임자의 것과는 다른 나름대로의 정당화 이데올로기를 창출하여 자신의 집권을 정당화하였다. 예컨대 고르바초프는 페레스트로이카라는 기치아래 자신의 체제를 정당화하였으며, 등소평은 사회주의시장경제제도로써 정당화하였다.

김정일은 김일성과 같은 항일투쟁의 공적이 없기 때문에 김일성에 비해 카리스마가 부족하므로 김일성식 통치방법이 아닌 독자적인 통치방식을 마련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만일 김정일이 과거처럼 최고통치자에 대한 개인숭배를 바탕으로 당·정·군을 모두 장악하는 수령이 되어 혁명1세대와 같은 독재정치를 할 경우, 체제의 폐쇄성과 경직성으로 인해 외교적 고립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경제난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시행착오를 거듭할 것이므로, 북한 주민들의 생활은 더욱 피폐해져 주민들의 지속적인 지지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북한 주민들은 김일성의 카리스마와 우상화교육 때문에 무조건적 충성을 해왔으나 김정일체제하에서는 물질적인 유인(誘因) 없이 주민들의 무조건적 충성을 유도해 낼 수는 없을 것이다. 김정일도 “사회주의 사회의 새세대 지도자의 품격과 자질은 주로 당 생활과 사회주의 건설의 실천속에서 단련되고 세련되는 과정에서 형성된다”고 하였으며, 「사회주의는 과학이다」에서 주체사상의 구현과 혁명전통 옹호계승 등을 강조하고, ‘인덕정치’(仁德政治), ‘광폭정치’(廣幅政治)를 주장하며, 1996년부터 붉은기 사

상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나름대로 독자적인 통치방식을 모색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추측을 낳게 하고 있다. 따라서 김정일은 김일성 없는 ‘김일성체제’를 유지하면서 독자적인 통치방식을 확립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하겠다.

2. 경제난의 해결

김정일은 무엇보다도 날로 심각해져 가는 경제난을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북한경제는 당의 지령과 정치적·도덕적 자극에 의한 경제 운영의 한계성 및 1970년대 차관도입 이후 외채의 누증, 동구사회주의 국가의 몰락으로 인한 교역상대국 상실 등에 따라 심각한 위기상황에 있다. 특히 1992년부터 시작된 러시아의 원유공급에 대한 국제가격 책정 및 경화결제 요구와 1993년부터 시작된 중국의 경화무역 거래방식 요구가 북한의 경제를 더욱 압박하고 있다. 따라서 자력갱생을 내세운 북한식 ‘주체경제’는 파탄 직전에 놓여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북한경제가 1990년 -3.7%, 1991년 -5.2%, 1992년에 -7.6%, 1993년 -4.3%, 1994년 -1.7%, 1995년 -4.5%로 6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특히 식량 부족에 따라 주민생활은 위협받고 있으며, 에너지 부족으로 인해 산업활동이 위축되어 있다. 1995년, 1996년의 중첩되는 수재는 이러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김정일은 주민들의 경제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는 물질적 인센티브제도의 도입과 더욱 적극적인 대외경제개방을 통해서 새로운 기술과 경영방식, 그리고 해외자본을 들여와 효과적인 경제발전을 도모해야 할 과제에 직면해 있다. 현재 북한은 협동농장에서 분조계약제를 도입하여 생산목표를 낮게 부과하고 초과생산량에 대해서는 자유처분이 가능

하게 조치했다고 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나진·선봉 등 제한개방을 하고 있으며 이것을 더욱 확대하고자 하는 의사를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경제문제 해결을 위한 대외개방은 주민들의 의식변화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체제유지와 경제개방을 어떻게 조절해야 하느냐가 관건이 되고 있다.

3. 국제적 고립 탈피와 남북관계 개선

사회주의국가들의 개혁·개방과 냉전시대의 종언에도 불구하고 ‘우리식 사회주의’를 고수하며 개혁·개방을 외면하고 있는 북한은 현재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있다. 따라서 김정일체제는 탈냉전시대의 상황 가운데서 국제적 고립을 탈피하기 위하여 대서방관계를 개선해나가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우선 북한은 미국과 핵협상을 타결함으로써 국제적 고립을 부분적으로는 해결할 수 있어도 핵문제의 근원적인 해결, 즉 과거 핵개발에 대한 투명성 보장 등이 아직도 문제로 남아 있고, 북·미간의 ‘기본합의문’을 북한이 성실히 이행하는 문제도 많은 단계를 남겨두고 있는 만큼 북한의 대서방 관계개선은 용이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북한의 고립탈피문제는 남북관계의 진전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현재 북한은 대외적으로 유엔 동시가입, 미·일과의 관계개선 추진 등으로 국제사회에서 남한과 공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내에서는 남북관계의 개선을 회피하면서 ‘하나의 조선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우리가 대북 ‘포용정책’을 펴는 데 반해 북한은 우리를 ‘따돌리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대미평화협정 체결, 조문(弔問)문제, 국가보안법 철폐 등 비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하여 남북관계 개선에 난관을 조성하고 있

다. 특히 1996년 후반에는 잠수함 침투사건을 촉발시키기까지 하였다.

남한 및 서방국가들은 북한의 생존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안정과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책임있는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에 함께 노력하고 있으나, 북한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북한은 미국과의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면서 서방 및 남북관계의 개선을 통해 생존의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이미지 개선은 남북관계 개선에 달려있음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김학준, 『한국문화와 국제정치』, 박영사, 1992.
2. 민족통일연구원, 『북한 권력엘리트 연구』, 1992.
3. _____, 『북한의 변화와 김정일정권의 장래』, 1994.
4. _____, 『주체사상의 내면화 실태』, 1994.
5. _____, 『주체사상의 이론적 변화』, 1993.
6. 이동훈외 공저, 『북한학』, 박영사, 1996.
7. 서재진, “김정일 정권하의 북한체제전망,” 『국책연구』, 1994.
 가을호.
8. 양성철, 『북한정치론』, 박영사, 1991.
9. 통일원, 『북한실태』, 1996.
10. 최성, “수령체계의 구조적 작동메카니즘과 특징적 성격,” 『통일문제연구』, 6권 1호.
11. 혀문영, “김정일정권의 권력기반과 정책전망,” 『극동문제』, 1994.
 10월호.
12. 최종철 외 공저, 『북한의 생존전략』, 보성문화사, 1995.
13. 이용필·양성철 공저, 『북한체제 변화와 협상전략』, 박영사, 1996.
14. 구종서 외 공저, 『남북한 통일시나리오』, 삼성경제연구소, 1996.

III

북한의 군사

제 1 절 북한군의 성격과 기능	77
제 2 절 북한군의 조직과 제도	80
제 3 절 북한의 군사전략	87
제 4 절 북한의 군사력	90

● 이 장의 요점 ●

- 북한의 군은 ‘당의 군대’ ‘수령의 군대’ ‘혁명의 군대’라는 성격을 띠고 있으며, 김정일 정권 강화 기능과 함께 이른바 ‘남조선 혁명과 해방’을 위한 혁명무장력으로 규정되고 있다.
- 북한의 군사전략은 선제기습공격과 전·후방 동시공격으로 초전부터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함과 동시에 기동화부대를 종심 깊숙히 고속으로 돌진시킴으로써 미군의 추가적인 병력증원 이전에 남한 전체를 석권한다는 단기 속전속결을 그 핵심으로 하고 있다.
- 북한은 105만5천여명에 달하는 상비군 병력을 보유하고 있다. 북한의 추계 인구를 2,300만명으로 기준할 경우 인구 1,000명당 45명에 해당하는 군인 구성 비율을 보이고 있다. 상비군에다 현역에 준하는 교도대를 비롯한 예비병력까지 고려한다면 북한은 ‘동원된 상태’의 병력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제 1절 북한군의 성격과 기능

오늘날 이 지구상의 모든 국가들은 그들 국가안보의 최종수단으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대부분 나라들의 국가안보개념은 “국내외의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그 나라의 국가목표와 국가이익을 보호한다”는 방어적 의미를 지닌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북한의 군은 이러한 자체 생존을 위한 방어적 소극적 개념에 더하여 소위 ‘남조선 혁명과 해방’이라고 하는 노동당과 수령의 정치적 목적을 실현키 위한 혁명무장력(革命武裝力)으로서, 그리고 당의 수위(首位) 및 수령(首領)으로 일컬어지는 김정일 유일독재지배체제 강화 수단으로서의 성격과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1. 혁명무장력으로서의 기능

북한의 노동당 규약은 “조선로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여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 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 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다”(당규약 전문)고 규정하고, 북한의 군, 즉 ‘조선인민군’은 “조선로동당의 혁명적 무장력”(제46조)이며,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해 서슴없이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진정한 혁명전사(제48조)가 되어야 함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군은 ‘당의 군대’, ‘혁명의 군대’, ‘수령의 군대’라는 성격을 띠고 있으며, 대내적으로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이어진 유일독재지

배체제를 수호하는 역할과 함께 대남면에서는 ‘남조선 혁명과 해방’을 통한 ‘전 한반도의 공산화’라고 하는 당과 수령의 정치적 목적을 실현키 위한 무력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북한은 남한을 ‘미제국주의의 식민지’로 규정하고 그들이 한반도에서 치루어야 하는 전쟁의 성격을 ‘민족해방전쟁’으로 정의할 뿐만 아니라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붕괴시키는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강조함으로써 한반도의 적화통일을 위하여 군사력을 필요에 따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하려는 의도를 정당화시켜 왔다.

북한의 노동당이 국방력강화 이유를 “적들이 도발하는 전쟁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도 도리어 우리가 남조선에서 혁명력량이 자라고 인민들의 투쟁이 높아져서 우리의 지원을 요구할 때에 남조선혁명을 지원할 준비를 잘하기 위한 것”¹⁾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데서도 이러한 ‘남조선혁명전략’과 ‘무력적화전략’간의 밀접한 연관성이 잘 드러나고 있다.

김일성은 민족해방투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무장을 들어야 정권을 잡을 수 있다. 무장을 들지 않고서는 정권을 잡을 수 없다. … 주권을 쥐려면 무장투쟁을 해야하며 선거놀음을 해가지고는 정권을 잡을 수 없다. … 모든 투쟁형태들 가운데서 가장 적극적이며 가장 결정적인 투쟁형태는 조직적인 폭력투쟁, 무력투쟁, 민족해방투쟁인 것이다.”²⁾

결국 북한이 오늘날까지도 ‘남조선 해방’ 운운하며 그들의 인민군을 ‘혁명의 군대’라고 지칭하는 것은 그들이 아직까지도 무력에 의한 한반도 적화혁명을 포기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1) 조선로동당편,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로작해설, 제11권』, 조선로동당출판사, 1990. 2, p. 81.

2) 「조국통일」, 1968. 2. 28.

2. 김정일 정권 강화수단으로서의 기능

북한의 군이 당적 혁명적 군대로서의 성격과 더불어 ‘수령의 군대’로서의 성격이 있음은 앞서 지적된 바 있거니와 이러한 ‘수령의 군대’로서의 인민군 성격은 군간부들의 군창건기념대회 보고나 각종 간행물 및 방송논설 등을 통해 계속 강조되고 있다. 예컨대 1990년 4월 25일 북한 중앙방송은 “조선인민군은 당의 군대 수령의 군대”라는 제하의 군창건 58주년 기념논설에서 “당의 의도가 신속·정확히 침투되고 전군이 숨을 쉬어도 당과 함께 숨쉬고 당의 의도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것이 우리 군대의 자랑찬 면모”라면서 “당의 명령집행을 위한 자휘체계는 오직 수령과 당만을 굳게 믿고 따르려는 열화같은 충성심에 기초하고 있다”고 하는가 하면, 1991년 12월 28일자 「로동신문」에서 “조선인민군은 그 창건도 혁명의 수령에 의하여 실현되고 그 강화발전도 수령의 령도 밑에 이루어졌으며 그의 모든 승리와 영광도 수령의 품속에서 마련되었다”고 주장함으로써, 북한의 군을 김일성 독재체제와 연결시켜 ‘김일성 수령’ 개인의 군대로 사병화(私兵化)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그 동안 군경력이 없는 김정일을 인민군 최고사령관 (1991. 12. 24) 및 원수(1992. 4. 20)에 이어 국방위원회 위원장 (1993. 4. 9)으로 추대하고 그를 ‘당·국가·군대의 수위’로 호칭하면서 인민군을 ‘김일성의 군대’임과 동시에 ‘김정일의 군대’로 사병화하는 등식을 표방해 왔으며, 1994년 7월 김일성 사망 후에는 김정일을 ‘당과 인민의 수령’, ‘위대한 어버이’, ‘당과 국가와 혁명무력의 최고 수위’ 등으로 호칭하면서 김정일이 유일무이한 통치자임을 부각시키고 있다.³⁾ 인

3) 1994년 7월 20일 평양방송은 “인민에게 있어서 어버이수령은 곧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 (김정일)이고, 지도자 동지는 곧 우리 수령”이라는 ‘정론’을 폈다.

민무력부 제1부부장 김광진은 당기판지 노동신문(1995. 7. 19)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의 군을 ‘김정일의 군대’로 규정한 바 있으며, 현재 북한의 각종 군사집회에서는 북한군이 “그 어떤 역경 속에서도 김정일을 결사옹위하는 총폭탄이 될 것”을 구호화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북한 인민군은 그 역할에 있어서 수령에 대한 종속적 측면을 지니고 있는데, 북한의 군은 ‘남조선혁명과 해방’을 위한 중요한 무력수단인 동시에 김정일에 충성을 다하는 무력집단으로서 김정일 정권의 기반을 강화해 주기 위한 핵심요소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⁴⁾

이러한 북한군의 성격과 역할은 군사제도나 군사전략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제 2 절 북한군의 조직과 제도

1. 군사지휘체계 및 군사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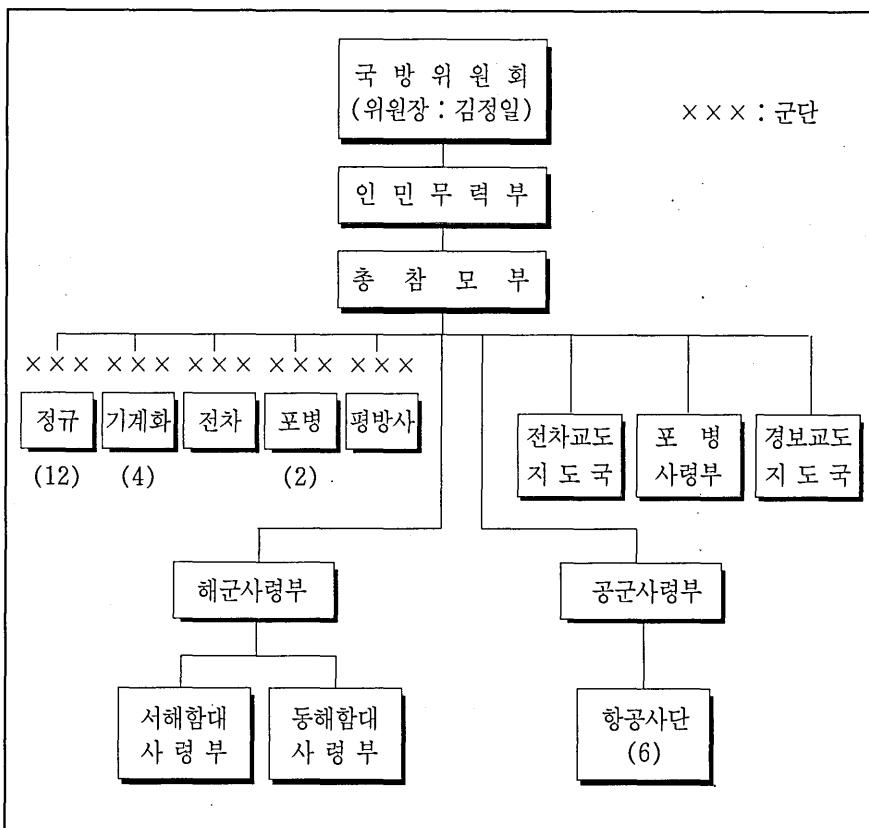
(1) 군사지휘체계

북한 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은 국방위원회이며, 동위원회 위원장이 일체의 무력을 지휘·통솔한다. 그리고 국방위원회의 직접적 통제를 받는 인민무력부가 실제적인 북한 군사지휘체계의 주축을 이루고 있다. 북한은 인민무력부 예하에 총참모부를 두어 총참모장이 지상군의 각 군단과 전차·경보 교도지도국과 포병 및 해·공군 사령부를 직접 지휘·

4) 정영태, 『김정일의 군사권력기반』, 민족통일연구원, 1994. 10, p. 13.

통제하는 단일군 지휘체계를 갖추고 있다. 현재 김정일이 인민군 최고사령관, 국방위원장으로서 북한의 일체의 무력을 장악하고 군정권과 군령권을 행사하고 있다.

〈표 3-1〉 북한의 군사지휘체계



자료 : 국방부편, 『국방백서 : 1996~1997』, p. 46.

(2) 군사기구

1) 국방위원회

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으로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한다.⁵⁾ 구헌법에 따르면 주석이 전반적 무력의 최고사령관,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일체의 무력을 지휘·통솔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1992년 4월 개정헌법에서는 동조항을 삭제하고 국방위원장이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하도록 규정하였다. 국방위원회는 전반적 무력과 국방 건설사업을 지도하고, 주요 군사간부를 임명 또는 해임하며 유사시 전시 상태와 동원령을 선포한다. 현재 위원장은 김정일 최고사령관이며, 부위원장은 최광 인민무력부장이 맡고 있다.

2) 당군사위원회

당군사위원회는 당중앙군사위원회⁶⁾와 각급 지방당위원회의 군사위원회로 조직되어 있다. 당중앙군사위원회는 군사정책 수행방법을 토의·결정하며, 인민군을 포함한 전무장력 강화와 군수산업 발전에 관한 사업을 조직·지도하며, 군대를 지휘한다(당규약 제27조). 이처럼 당중앙군사위원회는 군사력의 운용에 관한 제반 정책의 최고결정기관으로 되어 있다. 지방당위원회의 군사위원회는 당중앙군사위원회의 지도를 받아 당의 군사정책 집행방법을 토의·결정하며, 전시동원체제의 검토, 민병조직의 관리·운영 및 민병훈련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다.

3) 인민무력부

인민무력부는 1982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7기 1차회의의 결정에 따라 정무원으로부터 분리되어 중앙인민위원회 직속기관으로 운영되어 오다가 1992년 헌법개정으로 국방위원회가 중앙인민위원회와 동격으로

5) 북한헌법 제111조 및 113조.

6) 1984년 2월부터 당중앙위 군사위원회를 당중앙군사위원회로 개칭, 군사위원회 임무를 군사정책 결정 및 지도에서 군 지휘권까지 부여하여 기능을 강화하였다. 통일원, 『'95북한개요』, p. 479.

격상, 개편됨에 따라 인민무력부는 사실상 군사부문의 집행기구로 국방위원회의 직접 지도와 통제를 받고, 예하에 총참모부를 두고 있으며, 총참모장이 지상군의 각 군단과 전차·경보 교도지도국과 포병 및 해·공군 사령부를 직접 지휘·통제한다.

인민무력부의 구성상 양대축을 이루고 있는 조직이 총참모부와 총정치국이다. 총참모부는 군사지휘 계통이며, 총정치국은 당적 지도를 받아 군을 지도하는 정치지도계통이다.⁷⁾

2. 군사제도

(1) 병역제도

북한에서는 군의 입대 여부를 각 행정지역별 군사동원부가 결정한다. 북한의 모든 남자는 14세가 되면 초모대상자(招募對象者)⁸⁾로 등록하고, 고등중학교를 졸업하는 만16세가 되면 군입대를 위한 2차례의 신체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고등중학교를 졸업하는 해에 사단 또는 군단에 현지 입대하게 된다. 전문대학 졸업자도 역시 졸업하는 해에 입대 한다.

그러나 신체검사 불합격자, 성분불량자(반동 및 월남자가족 중 친가 6촌, 외가 4촌 이내, 월북자, 형복무자 등) 이외 특수분야종사자 및 정책 수혜자(사회안전부원, 과학기술·산업필수요원, 예술·교육행정요원, 군사학시험 합격 대학생, 부모 고령의 독자)들은 정책적 이유로 징집에서 제외하고 있다.⁹⁾

7) 정영태, 앞의 책, p. 47.

8) 북한은 징집이란 말 대신 ‘초모’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전시에는 17세~45세까지 ‘초모’ 대상이 된다. 이 용어는 조선시대 병조에서 군병을 모집할 때 사용되었다.

9) 통일원, 『'95 북한개요』, p. 487.

근무연한은 내각결정 148호에 의거, 지상군은 3년6개월, 해·공군은 4년으로 정해 있으나 실제로는 7~10년씩 근무하고 있다. 그 중에도 특수부대(경보병부대, 저격부대)요원은 10~13년간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다.¹⁰⁾

군복무를 마치게 되면 제대와 동시에 직장을 배치받게 되며 직장에서 1~2년간 근무하고 대학진학을 하기도 한다. 군지휘관은 김일성군사종합대학과 강건종합군관학교 등 각종 군사학교를 통하여 양성되는데 본 과정은 2~3년의 과정으로 되어 있다.

(2) 병영생활

병영생활중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복무규율로 「군무생활 10대 준수사항」이 있는데, 그 내용의 요점은 (i) 군사규정의 철저한 준수, (ii) 무기의 정통(精通)과 철저한 관리, (iii) 군사명령의 철저한 집행, (iv) 당 및 정치조직에서 준 분공의 어김없는 집행, (v) 국가기밀·군사기밀·당조직 비밀의 엄숙한 유지, (vi) 사회주의적 법과 질서의 철저한 준수, (vii) 군사정치 훈련에 어김없는 참여, (viii) 인민에 대한 사랑 및 인민재산의 침해금지, (ix) 국가재산과 군수물자의 철저한 보호, (x) 군대안의 일치단결 등이다.¹¹⁾

복무중 규정상으로는 연1회의 정기휴가(15일)가 허용되어 있고, 결혼이나 부모사망시 10일간의 특별휴가가 있으나 제대로 준수되는 경우

10) 북한에서의 인민군 복무기간은 「내각결정 제148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에 우선하여 노동당의 군사정책 결정 및 인민무력부의 방침에 따른다.

11) 「군무생활 10대 준수사항」은 1977년 11월 30일 조선인민군 제7차 선동원대회에서의 김일성연설 “정치사업을 잘하여 인민군대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자”에서 인민군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점을 지시한 것으로 그 자세한 내용은 『김일성 저작집 32』, 조선로동당출판사, 1986, pp. 518~524 참조.

는 거의 없다. 평상시의 외출·외박·휴가 등이 제한되는 대신 연 1회 휴양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부대급식에서 주식은 보급되나 부식은 부대 자체적으로 영농 등을 통하여 해결하고 있다.¹²⁾

(3) 군계급구조

북한 인민군의 계급은 군관(軍官) 15종, 하전사(下戰士)6종으로 나뉘어져 있다. 군관의 경우는 (i) 원수급에 대원수, 원수, 차수 (ii) 장령급에 대장, 상장, 중장, 소장(iii) 상급군관에 대좌, 상좌, 중좌, 소좌 (iv) 하급군관에 대위, 상위, 중위, 소위 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하전사의 경우는 (i) 하사관에 특무상사, 상사, 중사, 하사(ii) 일반병은 상등병, 전사로 구분되어 있다. 차수 계급을 신설한 이후 북한군 장성계급서열은 원수—차수—대장—상장—중장—소장 등 6계급 구조였으나, 1992년 4월 13일 김일성의 80회 생일을 이틀 앞두고 김일성을 대원수로 추대함으로써 7계급 구조로 되었다. 그러나 1994년 김일성의 사망으로 현재 북한에는 대원수가 없는 상태이다.

한편 김정일은 1991년 12월 24일 당중앙위원회 제6기 19차회의에서 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된 데 이어 1992년 4월 21일 군창건기념 60돐에 즈음하여 ‘원수’로 전격 추대되었다. 그는 군최고사령관이 된 지 4개월만인 동년 4월 23일 김정일은 「인민군최고사령관 명령 제0024 호」를 발표, 오진우(인민무력부장)를 비롯한 최광(총참모장) 등 8명에게 원수별과 차수별을 직접 달아주는 등, 총 664명의 군장성에 대한 승진인사를 단행하였다. 이어 김정일은 1993년 7월 19일 「인민군최고사령관 명령 제0040호」를 발령, 1차 진급에서 누락된 6·25전쟁 참전 원

12) 통일원, 앞의 책, p. 490.

로 군관 및 장성 99명(중장 14, 소장 85명)을 승진시켰는가 하면, 1994년 4월 15일 당민방위부장 김익현을 대장에서 차수로 승진시켰다. 또한 1995년 10월 8일 북한은 국방위원장 김정일 명의로 오진우 사망(1995. 2. 25) 이후 공석이던 인민무력부장에 최광을 임명함과 동시에 당중앙군사위 및 국방위원회 명의로 최광, 이을설에게 원수칭호를, 조명록, 이하일, 김영춘에게 차수 칭호를 수여하고 김하규 등 14명에 대한 승진인사를 단행했다.

이러한 이례적인 승진인사 단행은 김정일에 대한 충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사기진작책의 하나로 해석되며 나아가서 최근 무더기 훈장수여에서도 군 선무책(軍宣撫策)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또한 북한은 김정일이 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된 직후, 군창건 60주년 기념훈장(1992. 3)과 조국해방전쟁승리 40주년 기념훈장(1993. 3), 군복무기간별 국가표창(1993. 9) 등을 새로이 제정했는데 이 역시 군 선무책의 하나로 해석된다. 이러한 사례는 1993년 9월에 제정·발표된 ‘군복무기간별 국가표창’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이 표창은 1956년 6월 김일성의 지시에 따라 제정되어 근 20여년간 북한군의 사기양양책으로 장기복무자들에게 수여해 오다가 1975년경 수여가 중단되었는데, 당시 북한은 “매년 너무 많은 병사들에게 표창이 수여되어 표창의 권위가 실추된다”는 이유로 이 표창을 폐지했었다.

북한이 이번에 ‘군복무기간별 국가표창’을 다시 제정한 것은 1975년 이후 장기복무한 전장병들을 대상으로 표창을 수여하여 최근 군내에 일고 있는 불평불만을 다소나마 완화하는 한편, 군최고사령관인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북한은 이에 앞서 휴전 40주년을 맞아 「전국노병대회」에 참석한 노병(6천명)들에게 새로이 제정된 ‘전승 40주년 기념훈장’을 무더기로 수여하고 군원로들이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김정일에게 충성을 다할 것”을 강조한 바도 있다.

(4) 군내 당조직

인민군대 내에는 각급 단위의 당조직이 구성되어 있어 인민군에 대한 정치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실질적으로 군에 대한 당의 통제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인민군대 내 중앙에는 「조선인민군당위원회」가 있고, 대대급 이상에 「당위원회」, 중·소대 단위에는 「당세포」 및 「당분조(黨分組)」가 각각 조직되어 있다. 또한 당위원회와는 별도로 군내에 정치기관을 조직해 놓고 있는데 인민무력부 산하에 인민군 총정치국, 대대급 이상 부대에는 정치부가 있다. 이들은 각기 사단과 연대 단위에 정치위원, 대대와 중대 단위에는 정치지도원을 파견하여 작전·훈련 등 모든 군사업무와 군대 내 정치사업을 조정·감독하고 있으며, 모든 명령서에 정치위원의 서명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부서제도(副署制度)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인민군 내에는 부대단위에 따라 ‘김일성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이 조직되어 있는데, 이는 각급 당조직과 정치기관의 지도 밑에 비당원을 노동당에 결속시키기 위한 조직이다. 이와 같이 북한은 인민군대 내에 이중 삼중의 감시·통제조직을 갖추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제 3 절 북한의 군사전략

북한의 군사전략은 ‘남조선 해방’이라고 하는 적화통일전략의 하위개념으로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전략’의 추진으로 전단계 결정적 시기를 조성한 후, 후단계에서는 무력으로 남조선을 해방시킨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군사전략은 그들의 통일전략과 같은 맥락에서 고려되

어야 한다.

북한의 군사전략은 선제 기습공격과 전후방 동시공격으로 초전부터 대공황을 조성하여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함과 동시에 전차, 장갑차, 자주포로 장비된 기동화부대를 고속으로 중심 깊숙히 돌진시킴으로써 미군의 추가적인 증원 이전에 전남한을 석권한다는 단기 속전속결전략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6·25남침과 중동전, 월남전 등을 교훈삼아 수립된 이와 같은 단기 속 전속결전략은 현대전의 보편화된 특징이기도 하며, 미군의 군사적 능력과 대한민국의 인적·물적 잠재력 그리고 현재의 대치상황과 한·미동맹 관계 및 연합방위태세 등을 감안할 때, 북한으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유일한 대남군사전략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은 '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재래식무기와 장비를 중심으로 질보다는 양 위주의 전력증강을 지속해 왔으나 단기 속전속결의 대남군사전략을 수립한 이후부터는 전·후방 동시공격능력과 고속중심공격능력 그리고 선제기습타격능력의 제고에 일관함으로써 '80년대말에 이미 군사력의 전진배치와 기계화군단의 편성, 대규모 특수부대의 확보와 장거리 포의 추가배치 등 단기속전속결의 준비를 완료한 것으로 판단된다.¹³⁾ 이와 같은 단기속전속결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북한의 군사전략은 다음과 같다.

1. 선제기습전략

선제기습전략은 정규군에 의한 대규모 선제기습공격으로부터 비정규군인 무장특공부대의 우회기습공격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전개되는 개

13) 국제문제연구소편, 『방위연감 1995~1996』, 국방부, 1996. 11, p. 169.

념이다.

특히 군사잠재력면에서 열세인 북한은 선제기습전략을 통하여 북한 전체인구와 비슷하고, 북한 GNP의 수배가 되는 경인지역(京仁地域)을 조기 탈취하려고 기도할 것이다. 현재 북한군의 공격·기동장비의 집중 및 전진 배치동향 등을 미루어 보아 북한은 선제기습전략을 지속적으로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2. 속전속결전략

단기결전 내지 전격전 형식의 속전속결전략(速戰速決戰略)은 흔히 ‘속도전’으로 별칭되고 있다. 북한은 이를 위해 기계화·기동화·경량화된 전력을 확보하는 한편, 개량형 스커드미사일의 양산(量產)을 비롯한 지상군 및 공군의 화력증강, 고속상륙정 및 화력지원정 증강 등 속전속결 능력 확보를 위한 무기체계의 획득과 유지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한국의 심장지대인 경인지역의 전략적 중요성과 휴전선과의 지리적 근접성은 북한이 이 전략을 변함없이 추구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특히 이스라엘과 아랍간의 전쟁, 포클랜드전쟁 및 걸프전 등은 북한에게 속전 속결전략의 효용성을 시사해 주는 실례(實例)가 되었다.

3. 배합전략

배합전략(配合戰略)이란 모택동의 유격전략과 소련의 군사전략을 결합하여 한반도 실정에 맞게 만든 이른바 주체적 전략이라는 것으로서, 대규모의 정규전과 비정규전인 유격전을 배합하여 “상대를 도처에서 공격하는 전선 없는 전쟁”으로 남한 전역을 동시 전장화(戰場化)한다는

것이 그 핵심내용이다.¹⁴⁾ 이는 전선에 상대방 주력군을 고착시켜 두고, 후방에서는 인민항쟁을 유발시키면서 전면공세를 취한다는 것이다.¹⁵⁾

김일성은 제5차 당대회에서 행한 사업총화보고에서 ‘국방력 강화’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산과 강, 하천이 많고 해안선이 긴 나라이다. 우리나라의 이와 같은 지형조건을 잘利用하여 산악전과 야간전투를 잘하고 대부대작전과 소부대작전, 정규전과 유격전을 옳게 배합하면 비록 최신 군사기술로 발톱까지 무장한 적이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격멸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의 지난 조국해방전쟁의 경험이 이것을 증명하여 주며 오늘 월남전쟁에서의 경험이 또한 이것을 증명하여 주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¹⁶⁾

제 4 절 북한의 군사력

1. 상비전력

(1) 병력 및 육군 기동부대의 특징

1996년 10월 현재 북한의 상비전력은 육군 92만명, 해군 4만7천명, 공군 8만8천명으로 1995년보다 1만5천명 증원된 총 105만5천여명으

14) 1972년 4월 19일자 「로동신문」은 “김일성 군사선집 제1권 출판에 즈음해서”라는 논설에서 “유격전법과 현대전법을 배합하고 유격대의 활동과 전인민적 항쟁을 결합하는 것은…적들을 도처에서 공격하며 소멸하여 조국땅을 완전히 해방할 수 있게 하는 탁월한 전략 전술적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15) 백광일, “북한의 군사환경과 군사전략,” 『한반도주변의 군사환경』, 세종연구소, 1988, p. 25.

16) 『김일성 저작집 25』, p. 294.

로 판단된다. 북한의 이같은 병력수는 한국의 총병력 69만여명의 1.5배 규모이다.

북한의 지상군은 인민무력부 예하에 2개 포병군단과 4개 기계화군단을 포함하여 20개 군단사령부와 전차교도지도국, 포병사령부 그리고 특수부대를 관장하는 경보교도지도국으로 편성되어 있다. 사단 및 여단급 부대는 보병 60개 사단 및 여단, 기계화보병 25개 여단, 전차 13개 여단, 특수부대 25개 여단, 포병 30개 여단 등 총 153개 사단 및 여단으로 편성되어 있다.¹⁷⁾ 이 중에서 특히 기계화부대의 증강과 함께 특수작전부대를 포함 약 65%가 평양~원산선 이남의 전방지역에 전진배치되어 있는데, 이는 강습 돌파 위주의 전격전 수행을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 지상군부대의 특징은 기계화, 전차 및 특수부대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다는 점이다. 북한은 최근 수년간에 기계화 및 전차사단을 한반도지형에 적합한 여단급 부대로 개편하고 전차, 기계화, 자주포 포병군단 등을 창설하여 현대전 수행을 위한 전력구조로 개편해 놓았다. 또한 세계 최대 규모인 10만여명의 비정규전 능력을 가진 특수부대를 갖고 있으며, 해상 및 공중으로 동시 침투할 수 있는 인원만도 2만여명에 달 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이러한 병력현황으로 보아 레이다에 잘 탐지되지 않는 250여대의 AN-2기, MI계열 공격 헬기 140대와 한국군에서도 활용하고 있는 휴즈 500계열 헬기 80여대를 이용하여 후방 깊숙히 침투시킬 전략이 예견되며, 이는 유사시 정규·비정규전 부대의 배합전으로 남한의 전·후방지역을 동시 전장화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¹⁸⁾

한편, 북한은 평양과 원산을 잇는 평원선 이남지역에 10개 군단 60여 개 정규사단 및 여단을 전진배치해 놓고 있으며, 공격시에 증원될 군단

17) 국방부편, 앞의 책, p. 46.

18) 백종천, 『북한의 군사력과 군사전략』, 통일연수원, 1990, p. 48.

및 인민무력부 예하 예비부대를 대부분 기동화·차량화·기계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격시 이용할 쟁도진지를 전방 전개지역에 대량으로 구축해놓고 있어 추가적인 준비나 부대의 재배치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기습공격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¹⁹⁾

(2) 주요장비

1) 지상장비

북한의 지상군은 신·구형 무기를 혼합한 전투장비를 대량 보유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북한의 지상군 주요장비 중 전차는 주력전차인 T계열전차(T-54/55/59 등) 2,750여대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신형 T-62 및 경전차 800여대, 구형인 T-34 전차 250여대를 포함하여 총 3,800여대의 전차를 보유하고 있다. 북한의 전차 보유대수는 한국의 총 전차 보유대수 2,050여대의 약 2배 수준이다. 남북한 모두 우수한 대전차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 전차의 효율성에 다소 의문의 여지가 있기는 하나, 전장중심(戰場從深)이 짧은 한국의 수도권 지형을 고려할 때, 신·구형 전차를 대량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

포병에 있어서 북한은 8,300여문(76.2/100/122/130/152/160밀리 등 다양한 구경)의 곡사 및 평사포와 2,700여문(구경 107/122/132/240밀리)의 방사포, 그리고 고사포 등 12,500여문에 달하는 방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북한 지상군이 보유하고 있는 T-62 전차, M-1973 전투형 장갑차, 각종 자주포, 방사포, AT-3/4대전차 미사일, 개량형 SCUD 미사일 등

19) 국방부편, 앞의 책, pp. 47~48 참조.

은 성능면에서 현대화된 무기들이며, 북한은 현재 구소련 T-72형 전차를 모방한 천마호를 생산하고 23밀리 자주대공포를 도입·생산·배치하는 등 장비현대화에 주력하고 있다.

2) 해상장비

북한 해군은 총 800여척의 전투함, 잠수함 및 지원함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60%의 함정을 전방지역에 전진배치해 놓고 있다.

전투함은 경비함, 유도탄정, 어뢰정, 화력지원정 등 430여척이며 지원함은 상륙함, 공기부양정 등 335여척, 잠수함은 35척이다. 북한의 함정은 구형함정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지형상 동·서함대로 분할되어 동해 470여척, 서해 330여척으로 분리·운영해야 하는 불리한 점이 있으며, 소형함정으로 구성되어 있어 원해작전능력은 취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어뢰정, 유도탄정 등 소형 고속정의 다수 보유와 전진배치로 전방 접적해역에서의 대함 기습공격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유도탄정은 사정거리 45km의 STYX 대함미사일을 장착하고 있고, 다수의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어 남한 전해역에서 수상함에 대한 해상교통로 교란, 기뢰부설, 특수부대요원의 은밀한 침투 등을 가능케 하고 있다.

또한 동·서 해안에 사정거리 95km에 달하는 SAMLET 및 SILKWORM 지대함미사일을 배치해놓고 있는 바, 현재 전방에 배치된 SILKWORM은 서해의 인천외항과 동해의 속초외항까지 공격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북한 해군은 1개 소대급의 무장병력을 태우고 서해와 같은 간만의 차가 심하고 개펄이 많은 곳에서도 목표지역에 기습상륙시킬 수 있는 공기부양정(고속 상륙정, 시속 50노트 이상) 130여척을 자체 건조하여 작전 배치하였는데, 개전초 동시 다발적인 기습공격이

가능하다.²⁰⁾

3) 항공장비

북한 공군은 MIG-23/29 등 60여대, 주력기종인 MIG-19/21, IL-28, SU-7/25 등 460여대, MIG-15/17계열 320여대, AN-2기를 비롯한 지원기 510여대 및 헬기 290여대를 포함하여 총 1,640여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다. 북한은 전투기의 50%를 전방지역에 전진배치하고 있어 MIG-21/23/29 및 SU-7/25기는 현기지에서 발진하여 중부 및 남부지역까지, MIG-15/17/19기는 수도권까지 공격이 가능하다. 이 중 1950년대에 생산된 MIG-15/17기는 구형임에도 불구하고 부품을 북한이 직접 생산하고 정비가 손쉬워 가동률이 높은 바, 전장 중심이 짚은 한반도에서 제한된 공중공격 및 대지공격 등에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한국 공군에 비해 숫자적으로 우세하나 대체로 공군 전술기의 성능과 대지공격 능력면에서 취약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북한 공군은 그들의 전력을 양적 증가와 더불어 속도, 항속거리, 무장 및 전자전 능력을 구비한 무기체계 방면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북한은 MIG-23/29 전투기와 SU-25 근접지원전투기 및 IL-76 수송기 등 신예기를 도입하여 전술항공전력의 질적 증강을 도모하고 있다.

2. 예비전력

북한은 4대군사노선의 하나인 전민무장화에 따라 14세부터 60세까지 인구의 약 30%를 동원대상으로 하여 현재 660만여명에 달하는 예비전

20) 국방부편, 위의 책, pp. 48~49.

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들은 개인화기로부터 공용화기에 이르기까지 각종 전투장비를 지급받은 상태에서 비상소집 및 병영훈련 등으로 연간 160시간 내지 500여시간의 훈련을 받고 있다. 북한은 1958년 중공군의 철수를 계기로 1959년 1월 민방위 성격인 ‘노농적위대’를 조직하였고, 1970년 9월에는 고등중학교(상급반) 군사조직인 ‘붉은청년근위대’를 발족시켰다. 1988년 4월 북한은 예비병력을 능률적으로 통합·지휘하기 위해 중앙당에 민방위부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1) 교도대

교도대(敎導隊)는 북한의 민간군사조직 중 가장 핵심체로서 만 17세 이상 45세까지의 주민(여자 : 17~30세)을 대상으로 행정단위와 직장 규모에 따라 사단과 여단으로 편성되어 있다. 교도대는 개인화기 100%, 공용화기 70~80%가 지급되어 있으며 훈련시간도 연간 320시간에 달하는 등 현역에 준하는 훈련 및 부대편성,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은 전쟁발발시 즉각 동원되어 후방방위 및 예비대로 투입되는데, 현재 교도대의 총병력은 약 164만명이다.

(2) 노농적위대

노농적위대(勞農赤衛隊)는 46세 이상 60세까지의 주민을 대상으로 직장 및 행정단위별 제대로 편성되어 있다. 민방위업무와 함께 직장 및 주요시설의 경계, 지역방어 및 대공방위를 기본임무로 하고 있다. 개인화기는 100%, 공용화기는 일부가 지급되어 있으며 훈련시간은 연간 240시간이고, 총 대원은 약 395만명이다.

(3) 붉은청년근위대

고등중학교 5~6학년 남녀학생(15~16세)으로 조직되며 학교단위 별로 중대 또는 대대급으로 편성되어 있다. 이들은 방학을 이용하여 7일 간 붉은청년근위대 야영훈련소에 입영하여 훈련을 받기도 한다. 주요 임무는 ‘반혁명적 요소’를 제거하여 북한체제를 사수하는 친위대로서 전투력 향상의 선도적 역할을 하며 유사시에는 군 하급간부 보완을 위한 후비대, 결사대로서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인화기는 100%, 공용화기는 일부가 지급되어 있으며, 연간 300시간에 달하는 훈련을 받고 있다. 현재 약 84만명의 대원으로 조직되어 있다.

(4) 인민경비대

인민경비대의 하전사는 정규군 초모대상자 중에서 선발되어 사회안전부 신병훈련소에서 3~4개월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아야 하고, 군관은 경비대 하사관 중에서 선발되어 인민경비대 군관학교의 정규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들의 주요 임무는 중요지역 및 철도, 해안의 경비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들은 소화기 및 공용화기를 100% 보유하고 있으며 정규군과 동일한 훈련을 받는다. 인민경비대의 규모는 약 14만명으로 조직되어 있다.

3. 전략무기

(1) 핵무기개발

북한은 영변에 원자력연구소를 세운 1960년대부터 소련 최대의 핵연

구소인 ‘듀브나 핵연구소’에 핵물리학자를 파견해 연구시키는 한편, 평성이과대학에 핵물리학과를 설치하여 졸업생을 핵연구단지에 집중 배치해왔다. 현재 북한에는 소련과 중국 등지에서 연수를 받고 돌아와 핵개발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 연구인력만도 2,500명 내지 3,000명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²¹⁾

북한은 1960년대 중반 소련으로부터 연구용 원자로를 도입한 이래 원자로 설계기술 개발에 힘써 1980년대 후반에는 자체 설계한 원자로를 건설·운영하는 단계에 이르렀으며, 이어 영변 원자력단지에 대규모 핵폐기물재처리시설(규모 : 180m × 20m × 6층건물 높이)을 건설하고, 동시설에서 핵재처리를 실시하는 등 1990년대 초에 이르러 핵연료 확보에서 재처리에 이르는 일련의 핵연료 주기 완성에 주력하였다.

북한은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고풍화약실험을 실시(1983~1988년 기간중 70여회)하였고,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제반능력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되어 핵물질을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으나, 핵무기 제조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북한이 1992년 4월 IAEA와 핵안전협정을 체결한 후 1993년 2월까지 IAEA에 의하여 6차례의 임시사찰을 받은 결과, 북한은 평화적 목적의 핵에너지 개발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플루토늄 생산에 적합한 원자로(1950~1960년 영국·프랑스의 플루토늄 전용생산 원자로 : 경제성, 안전성 결여)를 운영하고 있고, 방사화학실험실이라는 대규모 재처리시설을 건설중에 있었으며, 이들 시설에서 사용된 핵연료를 확보하여 재처리한 횟수만도 수회(3회 이상)라는 사실이 밝혀지는 등 사찰이 거듭될 수록 핵무기개발 의혹이 증폭되었다. 이에 북한은 1993년 3월 12일 NPT탈퇴를 선언하였다가 이를 유보하고 미국과의 협상에 매달렸다. 그

21) 「내외통신」, 주간판 제770호, 1991. 11. 15.

후 북·미간 3단계 고위급 회담을 통하여 대북경수로 제공 및 미·북한연락사무소 설치 등을 대가로 흑연감속로 원자로 건설 중단, IAEA사찰 수락 등에 합의하였으며, KEDO와의 협상을 통하여 경수로 공급협정에 합의하였다(1995. 12. 15). 그러나 기합의된 핵사찰을 거부하고 IAEA의 핵심시설에 대한 접근을 금지시키는 등 과거 핵투명성을 차단하고 있는 북한의 태도로 볼 때 핵문제의 완전해결 때까지 북한의 합의사항 이행 여부는 계속 주시되어야 할 것이다.

(2) 화학 및 생물학 무기

북한은 1960년대 초부터 화생무기의 연구시설 및 생산기구를 설치하여 무기개발 및 생산에 주력해 왔다. 지금까지 북한의 핵문제에 가리워져 군사쟁점으로 크게 부각되지 않고 있으나, 실제로는 생화학무기가 오히려 북한의 핵문제 보다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군사적 위협요인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은 현재 강계 등 3곳에 생화학무기 개발을 위한 연구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신의주, 안주, 순천, 함흥, 만포, 아오지, 청진 등 8곳에 생산시설을 가동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화생무기 저장시설도 군사분계선 바로 북쪽 왕재봉을 비롯한 6곳이 있는데 비축량은 약 1천톤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화학무기의 종류로는 수포성·신경성·질식성·혈액성·최루성 등의 유독가스가 있으며, 생물무기의 종류로는 세균무기인 콜레라·페스트·탄저균·유행성출혈열 등 전염병 작용제가 있다. 또한 북한은 이들 세균을 배양·생산하여 생체실험까지 마쳐 놓고 다양한 화학무기 투발수단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즉, 북한은 유사시 전·후방을 동시에 화학공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 투발수단으로는 육상은 박격포, 야포, 방사포, FROG-5/7, SCUD 미사일 등이고, 해상은 화력

지원정, 공중으로는 전투기, 폭격기, 수송기 등이 있다.

한편 북한은 현재 개발된 생화학무기를 유사시 사용할 경우를 대비하여 전술부대훈련 등을 실시하면서 화학전에 대비하고 있으며, 군단과 사단급 부대에 화학무기 훈련시설을 구비해놓고 있음은 물론, 연대급까지 화학소대를 편성, 화생무기훈련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 장거리 미사일

북한은 1970년대 중반부터 미사일을 개발하기 시작하여 1986년에는 100% 독자적인 생산단계로까지 발전하였는데, 현재 연간 약 스커드 B/C 100여기의 생산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북한은 자체 개발한 미사일을 이란, 리비아 등 중동지역에 수출까지 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현재 사정거리 1,000km 이상인 지대지미사일 ‘노동 1호’를 개발, 시험발사한 데 이어 대포동 1·2호 등 신형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계속 추진중이다. 이로써 남한 전역은 물론이고 동경과 북경 등 동북아의 주요 지역까지 사정권내에 들어 있어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또한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장사정화기(長射程火器)는 사정거리 40 ~50km에 달하는 FROG-5 로켓 및 170밀리 자주포와 사정거리 70여 km에 달하는 FROG-7 로켓 및 240밀리 방사포 등으로서 휴전선 근접 지역에서부터 수도권 및 춘천·속초선을 연하는 지역까지 사격이 가능하다. 이들 장사정화기를 생산·배치하고 있는 목적은 수도권을 포함한 주요 도시와 전략표적을 공격함으로써 주민의 공포와 혼란을 야기하는 군사·심리적 효과를 겨냥한 것으로 판단된다.²²⁾

22) 국방부편, 앞의 책, pp. 54~55.

4. 최근 군사력 동향

북한은 1990년 이후 세계정세가 급변함에 따라 군사력만이 체제수호 및 대남 적화전략 추진의 유일한 수단으로 판단하고 전쟁 준비에 일관해 왔으며 이러한 전투준비태세 강화 움직임은 김일성 사망 이후 김정일 체제하에서도 지속되고 있다.

1995년 이후 주요군사력 증강 동향을 보면 정규군단이 없던 후방지역 1개 도의 지구사령부를 군단으로 증편함으로써 각 도별 방어체제를 구축하고, 장거리 화력과 후방지역 기습전력을 중점적으로 증강하고 있다.

북한은 장거리포인 170밀리 자주포 120여 문과 240밀리 방사포 140여 문을 생산하여 전방지역에 배치함으로써 최초 진지에서 이동하지 않고도 수도권을 포함한 주요 도시와 전략표적에 대한 공격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노동 1호에 대한 결함 요소 보완, 대포동 1, 2호의 엔진시험 준비 등 꾸준히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북한은 기존의 로미오급 또는 위스키급 재래식 잠수함과는 별도로 소형 잠수함 수척을 건조하여 일부는 작전 배치하였으며, 중국의 기술지원 하에 AN-2기 30여대를 자체 생산하여 이 중 20여대는 작전배치하였고 10여대는 시험비행중에 있다.

1992년 10월부터 1993년 7월까지 시한부 전쟁준비를 추진한 바 있는 북한은 군사시설의 지하 안전갱도 보강을 통해 중요 군수산업시설에 대한 전시의 지속적인 생산 보장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전쟁예비물자를 계속 비축하는 등 독자적인 전쟁수행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북한군의 훈련활동은 1994년 이후 우리나라와 유사한 지형을 선정하여 사단 및 군단급 부대의 공격훈련을 강화하고 있으며 동·서해에서 해·공군의 합동훈련, 공군의 협동 대지공격훈련, 공기부양정 및 AN-2기

를 이용한 침투훈련, 후방지역 준군사부대 동원훈련, 주민 등화관제 및 대피훈련 등 유사시에 대비한 실전적 훈련을 강화하고 있다.²³⁾

(표 3-2) 남북한 군사력 현황

구 분		한 국			북 한	
병 력		지상군	56만명		92만명	
		해 군	6.6만명	69만명 ¹⁾	4.7만명	105.5만명 ²⁾
		공 군	6.4만명		8.8만명	
지상군	부 대	군 단	11개			20개
		사 단	50개 ³⁾			54개
		여 단	21개			99개
	장 비	전 차	2,050여대			3,800여대
		장갑차	2,250여대			2,800여대
		야 포	4,700여문			11,000여문
해 군		수 상 전 투 함	180여척			430여척
		지 원 함	50여척			335척
		잠 수 함	4척			35척 ⁴⁾
공 군		전 술 기	530여대			840여대
		지 원 기	160여대			510여대
		헬 기	630여대			290여대
예 비 전 력 (병 력)		308만여명 ⁵⁾			660만여명 ⁶⁾	

자료 : 국방부편, 위의책, p. 64.

- 주 : 1) 방위병 제도 폐지에 따른 방위병 현역화로 병력 3만5천 증가, 해군에 해병병력 포함
 2) 지상군 해병병력 포함
 3) 해병사단 포함
 4) 북한 잠수함 35척 중 소형잠수함 9척 포함
 5) 한국 : 예비역/보충역
 6) 북한 : 교도대/노동직위대/붉은청년근위대/인민경비대

23) 국방부편, 위의 책, pp. 55~56.

참 고 문 헌

1. 국방부, 『국방백서 : 1996~1997』, 1996.
2. 민족통일연구원, 『김정일의 군사권력기반』, 1994.
3. _____, 『김정일 체제하의 군부역할 : 지속과 변화』, 1995.
4. 통일원, 『'95북한개요』, 1992.
5. 한국국방연구원, 『국방논집 : 제26호』, 1994.
6. 국제문제연구소편, 『방위연감 1995~1996』, 1995.
7. 신정현, 『한반도의 군비통제』, 예진출판, 1990.
8. 이규열·이정수 외, “특집 : 북한의 국방정책과 군사력,” 대륙연구소, 「북한연구」, 1992. 가을호.
9. 이춘근, “한반도의 군사정세,” 「극동문제」, 극동문제연구소, 1993.10월호.
10. 이석호, “북한군사력의 재평가,” 「국제문제」, 국제문제연구소, 1993.9월호.
11. 정영태, 『북한 군사정책의 전개양상과 핵정책 전망』, 민족통일연구원, 1993.
12. 정영태, 『김정일의 군사권력기반』, 민족통일연구원, 1994.
13. 하영선,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 청계연구소, 1989.
14. 함택영·리영희 외 공편, 『남북한 군비경쟁과 군축』, 경남대학 교 극동문제연구소, 1992.
15. 백종천, 『북한의 군사력과 군사전략』, 통일연수원, 1990.
16. 백광일, “북한의 환경과 군사전략,” 『한반도 주변의 군사환경』, 세종연구소, 1988.
17. 조선로동당편,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로작해설 : 제11권』, 조선로동당출판사, 1990.
18. _____, 『김일성 저작집 : 제25권~제32권』, 조선로동당출판사, 1986.

IV

북한의 경제

제 1 절 북한 경제체제의 성립과정과 전개	105
제 2 절 북한 경제체제의 운영원리와 특징	122
제 3 절 북한 경제의 현황과 당면과제	140
제 4 절 북한의 무역구조와 대외개방정책	153
제 5 절 북한 경제체제의 한계와 향후진로	171

● 이 장의 요점 ●

- 현재 북한은 6년 연속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직접적으로는 사회주의권의 붕괴, 연속된 자연재해의 발생에 기인하나 근본적으로는 북한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지난 각종 구조적 모순에서 비롯된 것이다.
- 북한은 당면하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무역제일주의'를 내세우며 신무역체계를 도입함과 동시에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개발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는 등 대외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 그러나 북한경제는 광범위한 경제개혁의 추진시 발생될 김정일 정권의 정치적 불안정, 경제개혁에 의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대외개방의 추진 등 각종 제약조건으로 인하여 그 희생 여부가 크게 의문시 되고 있다.

제 1 절 북한 경제체제의 성립과정과 전개

1.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확립과정

북한은 남북분단 직후부터 토지개혁, 주요 산업 국유화, 지하자원·산림·수역 국유화와 같은 사회주의화 개혁을 단행하여 계획경제 추진의 기초를 구축하기 시작하였으며, 1958년 8월에는 농업의 협동화와 수공업 및 중소상공업의 협동화를 끝냄으로써 생산관계의 사회주의화를 완료하였다.

(1) 토지개혁과 농업의 집단화

북한이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라는 중앙기구를 설립하고 가장 처음 실시한 사회주의 확립정책은 토지개혁이었다.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1946년 3월 ‘토지개혁법령’을 공포하고 무상몰수·무상분배에 의한 토지개혁을 실시하였다. 그 당시 북한의 농경지 약 200만 정보 중 100여만 정보의 토지가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분배되고 나머지는 모두 국유화 되었다. 북한의 토지개혁은 소련군이 북한에 주둔하는 가운데 사회주의체제의 수립을 위한 한 과정으로서 추진되었으며, 개별 농민의 복리증진을 위한다는 표면적인 이유와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토지개혁을 통해서 북한의 농업은 중소농층이 중심을 이루는 소상품 생산적인 소규모 개인농업이 지배하는 구조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소상품 경제의 조건에서는 농촌의 부흥과 농민의 생활개선은 어려

웠다. 따라서 북한은 소규모로 분산되어 있는 개인농업경영을 계획적으로 발전시키고 확대재생산을 전개해 나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농업의 집단화를 통한 사회주의적 협동화를 다음 단계의 혁명과제로 추진하였다. 토지국유화의 경제적인 목적은 전국의 토지를 통합하여 중앙집권적인 경제계획의 수행을 원활히 하고, 농업 부문으로부터 국가의 공업화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며, 농촌 노동력의 공업 부문 동원과 농업 경영의 대단위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것 등에 있었다.

먼저 1953년부터 농업협동조합¹⁾이 조직되기 시작하였다. 1953년 말부터 1954년 초에 걸쳐 1개 군에 1~2개씩의 농업협동조합이 만들어졌는데, 이러한 예비적 단계를 거쳐 1954년부터 집단화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²⁾. 북한은 농업집단화에 착수한 지 불과 5년만인 1958년 8월에 전농가를 협동조합에 가입시켜 농업의 집단화를 완료하였다.

북한의 농업집단화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북한의 농업집단화는 소련의 국영 농장형태인 소프호즈(Sovkhoz)를 채택한 것으로서 중국의 집단화에도 크게 영향을 받았다. 특히 농업협동조합의 기능과 조직은 중국의 인민공사와 매우 유사하게 이루어져 있어서 비슷한 시기에 추진된 중국의 인민공사 운동에 크게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주요 산업의 국·공유화

1946년 8월 북한 임시인민위원회는 ‘주요 산업 국유화 법령’을 공포하여 일체의 공장, 기업, 광산, 발전소, 운수, 체신, 은행, 상업 및 문화기

1) 북한의 농업협동조합의 형태에 관해서는 『경제사전(1)』, 사회과학출판사, 1985, pp. 408 ~409 참조.

2) 『경제사전(1)』, 사회과학출판사, 1985, pp. 407~408.

관 등을 국유화하였다. 그 결과 전체산업의 90% 이상인 1,034개소의 산업시설이 사회적 소유로 전환되었다.

국유화 조치는 사회주의체제의 확립에 가장 필수적인 조치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개인과 민간부문의 사적소유는 국가의 소유로 전환되어 생산관계의 사회화가 달성되기 때문이다. 북한의 국유화는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맑스의 이론 위에서 구축되었다³⁾. 맑스는 모든 생산물의 가치는 노동으로부터 발생되는 것이며, 자본주의의 사적 소유로 인하여 노동자의 땡이 자본가의 땡으로 이전되어 간다고 보았다. 이러한 현상을 자본에 의한 노동자 착취 형태의 하나로 보았는데 노동자 착취 현상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의 사적 소유를 사회주의의 전인민 소유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보았다.

한편, 북한은 개인이 경영하던 소규모의 공장·기업소와 상업에 대해서는 6·25전쟁 이전은 물론 휴전 이후까지도 부족한 생활필수품의 원활한 생산과 유통을 위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정책을 취해 오다가 결국 이것마저도 국·공유화하였다. 북한은 농업집단화와 마찬가지로 개인 상공업의 협동화를 1958년 8월 완료하였으며, 현재 상공업 부문은 전인민적 소유인 국영상업과 협동적 소유인 협동단체상업 두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의 공업부문에서의 완전한 사회주의체제로의 전환은 동유럽과 여타 사회주의 국가와 비교하여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

(3) 중앙계획기구의 설립

북한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의 구축을 위하여 중앙계획기구의 설립

3) 『경제사전(1)』, 사회과학출판사, 1985, p. 736.

을 추진하였다.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를 1946년 2월 구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중앙집권적인 행정기구로 개편해 나갔다. 동 기구가 중심이 되어 초기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핵심이 되는 생산수단의 국유화도 추진하였다. 동 기구는 1947년 2월 ‘북조선인민위원회로’ 개칭되었다. 동 기구는 북한의 초기 사회주의 설립과정에서 정치적인 중앙 행정기구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토지개혁과 주요 산업의 국유화 조치 등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의 구축에 필요한 개혁을 주도하였다. 즉 동 위원회는 1946년 3월 토지개혁법령을 제정하였고, 6월에는 노동법령, 8월에는 주요 산업의 국유화법령을 결정하였다.

따라서 ‘북조선인민위원회’는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확립에 필요한 혁명적인 조치를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수행한 통제기구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확립에 필요한 국유화 조치들은 ‘임시인민위원회’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된 이후 ‘북조선인민위원회’에 이양되어 지속적으로 수행되었다.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의 확립에 필요한 기본조치들은 동 기구를 통하여 1948년 9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될 때까지 계속해서 추진되었다. 그 후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필요한 경제계획과 자원배분 등 주요 경제정책은 당과 행정부로 구성되는 중앙통제기구에 의해 결정되는 체제를 유지하였으며, 이와 같은 고도의 중앙 집권적 경제체제가 현재까지도 지속되어 오고 있다.

북한은 생산수단의 전인민적 소유화를 통한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경제운영에 있어서 ‘계획’을 핵심기조로 하고 있다. 원래 사회주의 경제운영은 ‘소비와 시장’을 중시하는 자본주의와는 달리 생산과정과 ‘계획’을 중시하는데, 이는 자원분배, 투자 및 소비에 이르는 전과정을 통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북한의 경제체제도 중앙계획 기구에 의하여 생산비, 가격, 이윤, 임금, 노동력 및 물자 분배 등이 지령 성 명령지표의 형태로 각 경제단위 부문에 하달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고도로 중앙집중화된 계획기구에 의하여 경제체제가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자신들의 경제체제를 인민민주주의 경제체제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 이유는 각 지방과 기업이 계획의 작성에서부터 집행과 완성에 이르기까지 계획에 관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중앙에 보고해야 할 의무를 갖고, 이 과정에서 하위 경제단위들이 중앙에 보고할 내용에 대해 의논하고 건의하기 때문이다⁴⁾.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생산자, 소비자와 같은 각 부문의 경제주체들이 자율적으로 경제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강제적이고 명령적으로 경제가 운영되고 있다.

2.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전개

(1) 중공업 위주의 경제성장

북한이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를 구축하면서 채택한 경제성장 전략은 중공업 위주의 불균형 경제성장 정책이었다. 중공업의 발전육성은 북한의 핵심적인 경제개발 전략으로 추진되었다. 북한은 사회주의 공업화 전략을 “사회주의 공업화의 중심은 중공업의 선차적 발전에 있다… 기계 제작 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강력한 중공업을 창설하여야 자립적 공업체계를 확립하며 인민경제의 전면적 기술재건도 실현할 수 있다”⁵⁾라고 주장하면서 중공업 우선주의를 채택하였다.

북한은 기본적으로 생산수단 혹은 생산재를 생산하는 중공업 부문을 발전시킴으로써 생산력을 제고시키고 동시에 농업과 경공업의 발전도 보장될 수 있다고 인식하였다. 이는 북한의 경제사전에서 “지난날 자본

4) 『경제사전(1)』, 사회과학출판사, 1985, p. 96.

5) 『경제사전(1)』, 사회과학출판사, 1985, pp. 715~716.

주의가 정상적으로 발전하지 못하였던 조건에서 사회주의 길에 들어선 발전도상 나라들에서는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방법으로 사회주의 공업화를 실현한다. 또한 중공업을 먼저 발전시키는 데서도 중공업을 위한 중공업이 아니라 경공업과 농업 발전에 가장 효과적으로 복무하는 중공업부터 먼저 발전시킨다”⁶⁾고 밝힘으로써 경공업의 발전과 연관된 중공업 발전을 강조하고 있는 데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정책집행 과정에서 중공업의 절대우선 정책이 선택되었다.

북한이 중공업 우선 정책을 채택하게 된 데에는 소련의 영향이 가장 컸다고 볼 수 있다. 소련은 수많은 논쟁을 통하여 중공업 우선 정책이 중앙집권적 사회주의 계획경제에 가장 적합하고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자본주의와의 체제경쟁에서도 이길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중공업 위주의 불균형 성장전략이 채택된 이유로는 생산력을 확장시키는 중공업에 대한 투자의 장기적 수익이 소비재 생산 위주의 농업과 경공업에 대한 투자의 단기적 수익을 크게 능가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경우 사회총생산물과 순생산물도 저축과 더불어 더욱 빠르게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도 사회주의 계획경제에 핵심이 되는 생산수단을 공급하는 중공업 부문을 우선적으로 육성하여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루려고 하였다. 즉 급속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생산재 공급의 확대가 필수 불가결하다고 보았던 것이다.⁷⁾

이와 같은 중공업 우선 정책의 결과 북한의 경제구조는 급속히 중공업 위주로 재편되었다. 공업부문이 전체 사회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46년에는 23.2%에 불과했으나 1949년에는 35.6%로 증가하였고

6) 『경제사전(1)』, 사회과학출판사, 1985, p. 716.

7) 『경제사전(1)』, 사회과학출판사, 1985, p. 717.

1964년에는 62.3%로 확대되었다⁸⁾. 이 결과 북한은 소련과 평가리 등 일반 사회주의 경제체제와 마찬가지로 공업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경제구조로 전환되었다.

북한은 사회주의 계획경제 초기부터 이러한 중공업 위주의 불균형 경제성장 전략을 채택한 결과, 여타 사회주의 국가들이 보여준 것과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는 빠른 경제성장을 기록하였다⁹⁾.

그러나 북한의 공업총생산은 계획기간별로 볼 때 5개년 계획기간과 1차 7개년 계획기간에 최고조에 이르렀다가 차츰 증가율이 둔화되어 가는 추세로 나타났다. 이는 중공업 위주의 불균형 경제성장 전략이 단기적으로는 빠른 경제성장을 실현시키는 데 효율적으로 작용하였지만 장기적으로는 경공업 및 농업과의 연계성 부족, 생산요소의 투입방식의 불합리성 등으로 인하여 그 모순이 극대화되어 나타난 데 기인한다.

북한이 선택한 중공업 우선의 불균형 경제성장 정책은 인적·물적 자원을 총동원하고 투입물을 집중적으로 증가시키는 방법을 통하여 자본축적을 이루하는 것이었다. 즉 생산과정에 투입되는 생산요소의 생산성 보다는 자본재와 같은 생산요소의 양적 투입량을 경제성장의 주요 요인으로 보았다. 그 결과 북한 경제는 자본재의 투입 증가가 생산물의 증가를 크게 앞지르는 특이한 현상까지 보여 주었다.

그러나 실제 경제성장은 집중적인 자본투자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동투입 증가와 생산성 향상에도 크게 의존한다. 즉 산출물은 자본, 노동 등 투입된 생산요소와 그 요소의 생산성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중공업 위주의 공업화를 통한 자본량 투입의 증가에만 의존하였던 북한의 경제성장은 한계를 맞이 할 수밖에 없었다.

8) 『조선중앙연감』, 각년호.

9) 『조선중앙연감』, 1954~1955, pp. 50~60, 『당대회문헌집』, 정보부, 1974, pp. 162~200 및 『조선중앙연감』, 1961, p. 97 참조.

(2) 군사·경제 병진 정책의 추진

북한은 중공업 위주의 경제성장 전략을 군수산업의 육성과 결합시켜 동시적으로 추진해 왔다. 원래 소련, 중국 등의 사회주의 국가들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대립 및 경쟁의 과정 속에서 군사력 증강을 통한 힘의 우위를 절대적으로 원하고 있었고 이는 경제성장 전략과 연결되어 추진되었다. 따라서 북한도 중공업과 군수산업을 상호 연결시켜 발전시켜 왔다. 이는 북한의 군수산업이 대부분 기계공업을 중심으로 한 중공업과 계열화되어 있기 때문에 민수산업과 엄격히 구별할 수 없는 측면에서도 잘 알 수 있다.

북한의 군사비가 예산상으로는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병력이나 장비 등 군사력은 오히려 매년 강화되어 왔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중공업 분야와 군사분야의 상호연계성은 더욱 강화되어 왔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중공업의 발전 없이는 국방력을 강화시킬 수 없다는 논리를 기초로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이를 반영하는 좋은 사례이다.¹⁰⁾

경제발전과 군사력 강화를 동시에 추구한다는 이 정책은 1966년 10월 노동당 대표자 회의에서 제기되었고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채택된 아래 지금까지 북한 경제운영의 기본방침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1966년까지는 예산에서 군사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10% 정도에 불과하였으나, 1967~71년 동안에는 30% 이상으로 대폭 증액되었다. 북한은 1970년대 들어오면서 동서화해와 남북대화가 시작됨에 따라 군사비를 종전의 절반수준인 17% 수준으로 축소시켜 발표하기 시작하

10) 『김일성 저작집(19)』,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p. 294 및 『백과전서(4)』,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2, pp. 695~696.

였으나, 실질적으로는 군사비 지출을 축소해 왔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북한의 과도한 중공업 위주의 경제성장 정책과 군수산업의 연계는 소비재 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제약하는 근본 요인으로 작용하여 자원분배의 비효율성을 증가시키고 소비수준을 극도로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3) 경제관리제도 개혁의 시도

북한은 고도로 집중화된 계획경제체제의 운영과 중공업 위주의 불균형 경제성장 전략의 채택으로 경제적 비효율성이 누적되고 농업과 경공업의 발전이 상대적으로 크게 낙후하게 되자 부분적인 경제관리제도 개혁을 추진해 왔다.

북한이 중앙집권적인 계획경제체제의 모순을 완화하기 위하여 채택한 수단으로서는 1960년대 초반에 도입한 청산리 방법 및 대안의 사업체계, 협동관리체제의 재편성 그리고 독립채산제 등을 들 수 있다.

1) 청산리 방법과 대안의 사업체계

청산리 방법은 농촌의 협동조합과 농장 운영에 관한 제도로서, 근본 목표는 지방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시와 명령을 남발하는 관료적 경향을 감소시키는 데 두어졌다¹¹⁾. 따라서 이 방식은 계획부문의 입안자나 상위기구의 관료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기에 앞서 먼저 현장의 사정을 이해하고 현실을 반영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는 당 내에서의 개혁 작업도 유도하여 계획과정의 제반 절차를 간소화시키고 계획의 집행에 있어서도 다수의 참여가 보장되는 민주적인 과정을 중시하도록

11) 『경제사전(2)』, 사회과학출판사, 1985, pp. 498~499.

록 하였다.

대안의 사업체계는 농업 부문에 초점을 두었던 청산리 방법과는 달리 공업관리체계의 보완책으로 수립되었다¹²⁾. 이는 과거의 일인관리 방식을 집단지도체제로 전환시킴으로써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공장 책임자들이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요 목표가 있었다. 또한 이는 공장과 기업 차원에서 기술혁신을 도모하고, 정치, 행정, 경제 당국 간의 의사결정과정의 조정을 촉진시키며 중앙 계획부문과 지방의 계획 집행 말단기관과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데에도 목표를 두었다.

대안의 사업체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¹³⁾ 첫째, 공장 당 위원회의 집체적 지도와 책임 아래 생산활동을 관리하며, 공장 당 위원회에는 당간부, 행정간부, 기사장, 기술자, 근로자 등이 참여한다. 둘째, 집중적인 생산지도체제에 따라 계획작성, 생산 및 기술지도 사업은 기사장의 지도 하에 집중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며 자재공급사업, 후방공급사업 등 공장관리 전반에 대한 행정 및 경제활동은 지배인의 지도 하에 통일적으로 수행하도록 한다. 셋째, 중앙집권적인 자재 공급 체계로서 각 부 관리국, 공장, 직장, 생산현장의 순으로 생산을 조직하고 지도하며 상급기관이 자재를 책임 공급한다.

그러나 대안의 사업체계는 북한의 계획경제 관리체제의 기본 골격이 개인과 기업의 자율성, 창의성보다는 여전히 중앙계획기구를 통한 통제와 명령적 의사결정 전달과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실효성에 있어서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12) 『경제사전(1)』, 사회과학출판사, 1985, p. 460.

13) 『경제사전(1)』, 사회과학출판사, 1985, pp. 460~463.

2) 독립채산제의 도입

북한은 경제관리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독립채산제 제도를 채택하여 전체 기업에 확대·실시하였다. 북한이 도입한 사회주의 독립채산제는 각 국영기업은 은행신용의 이용과 독자적인 대차대조표를 작성하며, 물자구입과 판매에 어느 정도 융통성을 부여한다는 것이었다.¹⁴⁾ 이에 따라 사업의 평가에 있어서 화폐지표를 활용하게 되었고, 이익금은 국가에 대한 상납액을 먼저 공제하고 남는 것에 한하여 기업의 발전기금과 노동자의 복리후생에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¹⁵⁾ 따라서 북한의 독립채산제 도입은 공장, 기업 등의 경제활동이 지시된 계획에 따라 수행되고 있는가를 자금 회계측면에서 통제하는 데 두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독립채산제는 1962년 완전독립채산제라는 이름으로 도입되기 시작하여 1970년대 초부터는 중앙의 국영기업뿐만 아니라 지방공장을 포함한 공업 부문, 농업 부문, 그리고 비생산적인 유통부문에까지 확대·실시되었다.

1980년 6월에 소규모 지방산업 공장에도 독립채산제가 실시되도록 하는 방침이 수립되었으며, 1984년에는 비생산부문의 기관이나 기업에서도 완전독립채산제 또는 반독립채산제를 실시하는 등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북한이 채택한 독립채산제는 기업의 임금지불 자금, 상금, 기업 기금의 적립 규모 등 모든 경제관리를 정확히 규정화하고 고정재산의 관리·이용을 제도화하며, 재정의무 수행에 대한 엄격한 감독과 통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 실효성은 크지 않았다. 공장이나 기업이 독자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영역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

14) 『경제사전(1)』, 사회과학출판사, 1985, p. 443.

15) 『경제사전(1)』, 사회과학출판사, 1985, p. 443.

었다.

북한의 독립채산제 실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다. 첫째, 가격구조와 세제가 중앙계획기구에 의하여 결정됨으로써 시장의 수요공급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왜곡되어 있었다. 이러한 상태 하에서 기업의 이윤과 경영의 효율성은 기업의 생산활동과 무관하게 결정되기 때문에 기업의 효율성 제고를 유도하려는 방법은 효과를 거둘 수 없다. 따라서 독립채산제를 통한 기업의 경영 효율성 제고를 기하기 위해서는 계획가격의 시장가격화와 같은 경제환경의 개혁이 수반되어야 한다. 둘째, 지령성 계획지표가 계속 중요하게 작용하고, 생산제품, 원자재 및 요소시장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한 상황에서 기업의 경영자주권의 확대가 기업의 효율성으로 연결되지 못하였다. 셋째, 독립채산제의 실시는 상당히 많은 계획지표의 수행·감독을 지방정부로 내려 보내는 역할을 하였지만 이는 지방정부의 권한만 증대시키고 기업 경영자의 권한은 형식적인 것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기업 경영자에게 충분한 권한과 적절한 유인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업의 이윤이 장기적인 기업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되었다.

따라서 현재의 독립채산제 확대·실시 노력은 강력한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하에서 일부 하위 경제단위에 경제적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업단위와 계획기구 사이에 의사결정 과정을 조정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만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4) 대내 지향적 경제전략과 대외채무

북한은 소련 등 여타 사회주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소극적인 대외무역만을 가능하게 하는 대내 지향적 개발 전략을 추진해 왔다. 사회주의 국가들이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무역을 기피하고 자립경제를 구축하거나

나 사회주의권 국가들간의 역내무역을 실시해 온 데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본주의 국가들과 무역을 하게 될 경우 자본주의 국가들이 겪고 있는 인플레이션, 경기변동에 영향을 받기가 쉽고 나아가 자본주의 국가들의 제국주의적 공격을 받을 수 있다 는 것이었다.

북한도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수립하는 초기부터 자급자족 경제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수출의 확대와 같은 대외 지향적 개발 전략은 추진하지 않았다. 대외무역은 중공업 위주의 공업화 전략 추진에 필요한 기술이나 기계설비 중 최소한의 것만 수입하며, 이들의 수입에 필요한 외환의 확보를 위하여 일차상품을 수출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즉 북한의 초기 무역은 국내 공업 발전에 필요한 원자재와 자본재 수입에 주요 목표가 두어졌으며, 수출은 필요 원자재의 수입을 위한 외환 획득의 방편으로만 이용되었다.

따라서 북한의 교역대상국은 소련을 비롯한 과거 공산권 지역 국가들이었으며 주요 수입제품은 기계장비와 관련된 자본재였다. 자본재의 수입 비중은 1953~69년 중 22~35%를 차지하였다. 반면, 수출 품목은 광물 등 지하자원이 대부분이었다. 이 기간 중에 원자재의 국내 조달 비율을 60%에서 70%로 확대시키는 운동을 전개하는 등 내부 지향적 개발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6개년 계획기간 중인 1975년에 외채규모가 20억달러에 달함에 따라 서방국가에 대한 채무 불이행의 사태에 직면하는 등 대내 지향적 공업화 전략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었다. 당시 북한은 소련에 7억달러, 일본과 구서독에 각각 4억달러 및 1억 5,000만달러의 대외 채무를 지고 있었다. 이는 과다한 기계설비와 자본재의 수입으로 무역적자가 확대되고 북한의 수출품 가격이 하락함으로써 외환사정이 크게 악화된 데 기인하였다. 북한의 외환사정의 악화는 외채상환 계획의 재조정

을 가져오고 대서방 교역을 크게 악화시키는 결과를 발생시켰다.

북한의 대내지향적 중공업 위주의 불균형 경제성장 전략은 수출이 용이한 노동집약적 소비재 생산 분야의 낙후를 가져오고, 이로 인해 국제 경쟁력을 상실함과 동시에 공업 분야가 기술혁신에 의해 뒷받침되지 못하는 결과를 발생시켰다. 북한의 대내지향적 경제전략은, 단기적으로는 투입물의 집중화를 통해 고도성장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기술도입을 불가능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계획경제에 내재되어 있는 구조적 비효율성의 모순과 맞물리면서, 장기적으로는 국제경쟁력의 상실, 외채의 누적, 경제적 비효율성의 양산 등 북한 경제 내부의 문제를 증폭시키는 최대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3. 계획경제의 단계별 추진과정 및 성과

북한은 1947년부터 계획경제를 실시하였으나, 사회주의적 경제의 기본 틀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경제계획이 추진된 것은 1961년 제1차 7개년계획(1961~70년)부터이다.

그 이전에 실시된 주요 중·단기계획으로는 제1차 1개년계획(1947년), 제2차 1개년계획(1948년), 2개년계획(1949~50년), 6·25 전쟁 이후 전후 복구 3개년계획(1954~56년), 5개년계획(1957~61년) 등이 있었으며, 1960년대 이후에 북한이 추진한 주요 장기계획의 추진실적은 다음과 같다¹⁶⁾.

16) 국토통일원, 『북한 최고인민회의 자료집(1, 2, 3, 4)』 및 『북한경제개관』 참조.

(1) 제1차 7개년계획(1961~70년)

북한은 1950년대 후반의 5개년계획에서 구축된 공업기반을 더 한층 견고하게 발전시키고 주민생활의 향상을 목표로 하여 1961년 7개년계획에 착수하였다. 이 시기의 북한경제는 기계제작공업을 중심으로 한 중공업 육성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한 결과, 공업화를 위한 초보적인 기반조성이 불균형적인 상태로나마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그러나 제1차 5개년계획과 내용면에서 크게 차이가 없었으며, 그 실행을 무리하게 추진함으로써 중공업과 경공업을 비롯한 각 부문별 불균형이 보다 더 심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북한은 1960년대 초 아래 군사력 증강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4대 군사노선'을 채택하고 군비확장을 도모한 결과 주민들의 실질적인 생활수준이 향상되지 못하였으며, 1966년 10월 노동당 대표자대회를 통해 계획기간을 3년간 연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는 당초의 계획목표에 미달하였다.

(2) 6개년계획(1971~75년)

북한은 1970년 11월 제5차 당대회를 통해 3대 기술혁명 수행과 산업의 체질 개선을 목표로 한 6개년 계획을 마련하여 1971년부터 착수하였다. 6개년 계획 기간 중에는 서방으로부터 자본, 기술 및 설비의 도입에 관심을 기울인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이 6개년 계획은 노동력의 부족과 함께 공업발전의 가장 핵심이 되는 에너지, 특히 석유의 부족으로 그 추진과정에서 많은 애로점이 노정되었으며, 서방으로부터 도입한 차관 및 연불수입대금을 제 때에 상환하지 못함으로써 1975년 이후부터는 심각한 외채문제가 야기되어 동

계획이 끝까지 추진되지 못하고 중단되었다. 북한은 1975년 8월 동 계획을 1년 6개월 조기 완수했다고 발표하였으나, 그 후 2년간의 완충기를 설정하여 부진한 부문을 조정하는 데 주력함으로써 사실상 계획기간이 1년간 연장되는 결과를 가져 왔다.

(3) 제2차 7개년계획(1978~84년)

북한은 1977년 12월 최고인민회의 제6기 1차회의에서 제2차 7개년 계획을 채택하였다. 제2차 7개년계획은 인민경제의 주체화·현대화·과학화를 표방하고, 1977년에 비하여 국민소득 1.9배, 공업총생산 2.2배, 알곡 1,000만톤 생산 등을 주요 목표로 제시하였다. 제2차 7개년계획의 추진과 관련하여 특징적인 사항은 동 계획이 소련과 중국의 경제원조를 전제로 수립되었다는 점이다.

소련은 제2차 7개년계획의 지원사업으로 대안중기공장 및 북창알루미늄공장 신설, 김책제철소 확장공사 등 16개 대상의 건설지원과 석유, 코크스, 망간 등 자원의 안정적 공급을 약속하였고, 중국도 봉화화학공장 건설을 비롯한 4개의 공장을 건설해 줄 것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목표연도인 1984년이 지나도록 동 계획의 완수 및 추진 결과에 대해 일체의 발표를 하지 않다가, 1985년 2월 16일 국가계획위원회 중앙통계국에서 1984년 말을 기해 동 계획이 완료되었다고 발표하였다.

한편 북한은 ‘사회주의 경제건설 10대 전망목표’, ‘4대 자연개조사업’ 등 별도의 목표를 제시하고 경제건설에 박차를 가하였으나 별 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또한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제7기 3차회의(1984년 1월)에서 대외경제사업 및 무역확대 방침을 채택하고, 동년 9월 ‘합영법’의 제정·공포 등과 같은 대외개방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역시 실적은 부진했으며 2년간의 조정기간을 거쳐 제3차 7개년계획으로 넘어갔다.

(4) 제3차 7개년계획(1987~93년)

제3차 7개년계획은 제2차 7개년계획과 마찬가지로 인민경제의 주체화·현대화·과학화를 기본과업으로 제시하였으며, 국민소득 1.7배(연평균 7.9%), 공업생산 1.9배, 농업생산 1.4배, 10대 전망목표 실현 등을 계획목표로 설정하였다.

동 계획에서 특기할만한 사항은 기술혁신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제기하면서, 무역과 대외경제협력의 확대·발전을 크게 강조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들은 북한이 기술혁신을 종전처럼 노동력동원의 보조수단으로서가 아니라 경제개발의 관건으로 보고, 기술혁신을 위해 무역과 대외경제협력에 주력해야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북한은 제3차 7개년계획 기간 중 경제성장률의 목표치를 연평균 7.9%로 설정하였으나, 실적은 연평균 마이너스 1.7%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듯 북한은 1993년 12월 8일 당 중앙위원회 제6기 21차 전원회의를 통해 제3차 7개년계획이 목표에 미달하였음을 시인하였다. 즉 북한은 제3차 7개년계획이 대내외 정세가 가장 복잡하고 첨예화된 시기에 심각한 시련과 난관 속에서 추진되었음을 지적하고, 제3차 7개년계획이 제대로 추진될 수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로 사회주의 국가와 세계사회주의 시장의 붕괴로 이들 국가와 맺었던 장단기 무역협정의 이행이 거의 중단되고, 이들 국가와의 경제협력과 무역거래가 부진했음을 들었다.

이를 위해 앞으로 2~3년간을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위한 조정기간으로 설정하고 농업 제일주의, 경공업 제일주의, 무역 제일주의로 나아갈 전략적 방침을 추진할 것을 천명하였다. 이 기간 동안에 특히 수출생산 기지를 정비하고 수출품 생산을 확대·강화하며 해외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여 대외무역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을 결의하였다.

제 2절 북한 경제체제의 운영원리와 특징

1. 계획경제의 운영원리와 그 모순

(1) 사회적 소비와 개인소비

북한은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원리와는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경제를 운영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징적인 것이 소비에 대한 것이다. 사회주의 계획경제는 노동가치를 상품가치의 핵심으로 하여 구축되었기 때문에 노동가치를 실현시킬 수 있는 생산과정을 매우 중시한다. 그 결과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는 소비과정은 상품가치를 창조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소비과정을 철저하게 무시한다.

따라서 북한경제는 생산과정 위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적인 소비과정은 무시되었다. 결국 개인소비는 철저하게 억제되어 왔으며, 반면 사회적 소비가 강조되었다¹⁷⁾. 그 결과 북한에서도 구소련과 같이 사회적 소비, 즉 집단적 소비의 내용을 이루는 사회보험의 보장, 무상교육, 무상의료, 저렴한 주택공급, 탁아시설, 사회체육, 공동분배 등이 보편화되었다¹⁸⁾.

북한이 항상 자신의 경제체제가 우월하다고 선전하고 있는 사회보장,

17) 『경제사전(1)』, 사회과학출판사, 1985, pp. 318~319.

18) 『경제사전(1)』, 사회과학출판사, 1985, p. 650.

무상교육 등은 개인적 소비를 무시하고 사회적 소비를 중심으로 경제체제를 구축해 놓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타 사회주의 국가에서 보는 것처럼 이들 사회적 소비를 위한 공동의 소비제품의 질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사회적 소비제품을 생산, 공급하는 기업이나 단위들이 경쟁에 의하지 않고 계획당국에서 할당하는 지령성 명령지표에 의거, 타율적으로 경제활동에 임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이미 사회적 소비에 기반을 둔 소비제품은 질적인 측면에서 비교우위가 없다고 보고, 사회적 소비보다는 개인적 소비를 중시하는 개혁을 추진해 오고 있다.

(2) 자본과 토지의 무상 이용

자본주의 시장경제 하에서는 노동, 토지, 자본을 중요한 3대 생산요소로 간주한다. 이들 생산요소는 생산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그 대가로 각각 임금, 지대, 이자 및 이윤을 받는다. 그러나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생산에서 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노동뿐이므로 토지, 자본에 대한 대가의 지불은 노동가치 착취의 한 형태로 생각한다. 따라서 사회주의 국가들은 사회주의 국가건설과 동시에 토지와 자본 등 생산수단의 국유화를 추진하였고 이들 생산수단은 대가 없이 사용되었다. 토지의 사회화는 절대지대를 없애고 차액지대도 국가가 흡수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결국 지대는 사라진다는 것이다.

북한에서도 여타 사회주의 국가들과 동일한 지대와 이자의 개념을 적용시켜 왔다. 이와 같은 개념의 인식은 북한의 토지사회화와 산업국유화의 이론적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최소한의 지대와 이자, 이윤의 개념이 존재하고 있다. 즉 북한에서도 이자는 “우리나라에서 기업소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국가가 계획적으로 보장해 주는

조건에서 대부는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 적용된다. 은행의 대부금에 대하여서는 그 크기가 이용 기간에 따라 국가에 의하여 계획적으로 설정된 일정한 이자를 받는다. 이 대부이자는 기관, 기업소로 하여금 은행대부를 제때에 반환하기 위한 투쟁을 벌이게 함으로써 경영활동의 개선에 작용한다”¹⁹⁾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북한 사회주의 경제에 부합되게 하는 방향에서 이자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단지 이를 생산요소의 대가를 국가가 소유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자본주의 시장경제 하에서 존재하는 대가와는 전혀 다른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북한 경제체제는 지대와 이자, 이윤의 개념을 무시함으로써 많은 경제적 문제점을 야기하였다. 우선 지대와 관련된 가장 큰 문제점은 토지의 남용이다. 북한은 토지에 대한 기회비용으로서의 지대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토지의 비효율적인 사용이 일반화되어 있다. 또한 토지를 전인민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토지의 사용권 한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비경제적인 요소가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많은 모순이 야기되었다. 실제로 북한에서는 기회비용이 높은 토지의 경우 권한이 많은 노동당 조직이나 정부기관이 모두 그 사용권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 사용권 분배에 있어서 형평성이 크게 문제되고 있다. 이는 토지 남용으로 연결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자금의 이용에 있어서도 손익개념이 부재되어 있기 때문에 자금의 효율적 이용도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자금의 비효율적 배분과 이용이 만연되어 왔다. 특히 기업들의 투자 효과 제고를 위해서는 자금 투자의 기회비용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북한 경제체제하에서는 이러한 기회비용 개념의 부재로 인하여 기업들은 최선의 투자방안과 적정 생산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19) 『경제사전(1)』, 사회과학출판사, 1985, p. 536.

(3) 기업 이윤과 소득분배

북한에서의 기업 이윤은 기업에 의하여 창출된 순소득을 의미하며 이는 중앙에 납부하는 부분과 기업에 유보하는 이윤으로 나뉘어진다. 기업 이윤은 생산물의 가격에서 이의 생산에 투입된 제반 생산비용을 공제한 것으로서 형식적으로는 자본주의 국가에서의 기업 이윤과 비슷하다. 그러나 기업 이윤의 크기와 원칙을 정하는 과정, 이를 최종적으로 분배하는 과정은 자본주의 국가에서의 기업 이윤과 완전히 다르다.

북한에서의 기업 이윤은 자본주의에서처럼 기업의 생산비용 최소화나 생산의 극대화 그리고 이윤극대화 과정을 거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북한에서의 기업 이윤은 중앙계획당국에 의하여 기업의 생산과 경영활동의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경영활동을 자극하고 통제하는 수단의 하나로 이용된다²⁰⁾. 따라서 기업의 이윤은 해당 기업의 생산 제품 가격 결정 과정에서 동시적으로 결정된다. 대체적으로 북한의 기업 이윤은 설비, 자재, 노동력의 이용, 모든 재생산 단계에서의 경영 활동 수준, 생산과 관리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기업이 자체적으로 생산 비용을 충당하고 국가에 일정금액을 납부할 수 있는 선에서 결정된다.²¹⁾

북한에서는 기업의 이윤이 생산제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동시에 결정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격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계획 기구에 의하여 결정된다. 즉 상품가격을 어떻게 책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상품을 생산한 기업의 이윤량이 결정되는 것이다.

북한의 계획가격도 일반 사회주의 국가에서 이루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평균비용가격으로 산정되며, 이는 각종 기계설비와 자재 등으로 이루

20) 『경제사전(1)』, 사회과학출판사, 1985, p. 749.

21) 『경제사전(1)』, 사회과학출판사, 1985, p. 749.

어지는 고정비용, 임금 및 원재료 등으로 구성되는 가변비용, 기업 이윤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이윤을 구성하는 항목은 거래수입금, 국가기업 이익금, 기업 이윤, 유통비, 판매와 관련된 지출 등이다.²²⁾ 이 중 기업에서 국가에 상납하는 거래수입금과 국영기업 이익금은 북한 예산수입의 주요 원천이 되고 있는데 이는 확대재생산을 위한 인민경제비, 국방비, 사회문화 시책비, 국가관리비 등의 형태로 분배·지출된다. 기업의 이윤은 생산을 담당하는 기업에 귀속되는데 기업의 후생시설, 상여금 지급과 건물 보수, 환경미화와 같은 자체 유지비에 충당된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계설비, 원자재 구입비 등을 국가 예산에 편성되어 지급되기 때문에 기업이윤은 기업의 후생 및 자체 유지를 위해 사용된다.

북한에서는 기업의 이윤이 계획가격의 수준 결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계획가격의 결정 수준과 관계없이 기업의 자체적인 노력에 의하여 이윤을 증대시킬 것을 기대하고 있다. 즉 생산량과 판매량을 증가시키거나 생산비용을 하락시키는 방식으로 이윤을 증대시키기를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생산제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기업의 이윤 크기가 결정되기 때문에 기업 자체적으로 이윤을 증가시키는 데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기업은 구조적으로 자체적인 경영성과에 관계없이 자신들의 이윤이 결정되기 때문에 자연히 경영을 능동적으로 개선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 결과적으로 북한에서의 기업 이윤과 기업의 생산 및 경영활동 효율성의 낮은 상관관계는 사회 전체적으로 비효율적인 생산을 만연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2) 『경제사전(1)』, 사회과학출판사, 1985, p. 749.

(4) 계획가격의 결정

북한에서의 상품가격은 철저히 국가의 통제 아래 계획적으로 책정된다. 중앙의 가격관리기구가 가격의 표준과 기준가격, 가격책정 방법과 절차를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직접적으로 계획가격을 결정하게 된다.²³⁾ 북한의 계획가격 결정의 일반 원리는 소련, 중국 등 여타 사회주의 국가에서 사용한 것과 같다. 즉 상품가치로서의 가격은 노동가치와 노동이 창출한 잉여가치를 반영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가격결정체계는 노동비용을 근간으로 하는 사회적 필요노동가치의 정확한 산출에서 출발한다.

북한의 가격결정은 여타 사회주의 국가에서 적용되어 왔던 평균비용 합산 방식으로 고정비용, 가변비용에 경제적 잉여, 즉 이윤을 합하여 책정된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가격 책정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평균비용 합산 방식을 원용하였다. 다양한 상품가격은 이러한 기초비용가격에 적절한 수정이 더해져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생산품에 대한 계획가격은 이러한 기초가격의 상하 일정 범위 내에서 책정되어 왔다.

북한의 상품가격은 도매가격, 소매가격, 농민시장가격 등으로 나뉘어져 있다. 도매가격은 사회적 필요노동에 기초하여 국가가 획일적으로 정한 가격이다. 기업도매가격은 국영공장과 국가기업간에 거래되는 생산재 위주의 상품에 적용되는 가격으로 생산원가에 기업의 이윤 등을 합하여 책정된다. 동 가격은 국영기업간의 상품거래에 적용되는 가격으로서 동일한 전인민소유제 내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타 상품가격의 기초로 사용된다. 반면 산업도매가격은 기업도매가격에 거래수입금을 합산한 가격으로 소유제가 다른 부문간 상품거래시에 적용되는 가격이다.

23) 『경제사전(1)』, 사회과학출판사, 1985, p. 39.

이들 가격은 기본적으로 도매가격에 얼마간의 수정을 통해서 책정·결정 된다.²⁴⁾

소매가격은 주민들이 필요한 상품을 구입할 때 적용되는 가격으로서 거래수입금이 붙는 도매가격에 상업부가금을 첨가하여 결정한다. 농민 시장가격은 판매자와 구매자 합의에 의하여 결정되는 북한의 유일한 시장가격이다. 그러나 국가의 허용범위 안에서만 가격이 변동하기 때문에 제한적인 성격을 지닌 시장가격이다.

북한의 계획가격 결정에는 노동가치와 잉여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가 되고 있지만, 가격조정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상품의 계획가격을 가치와 무관하게 인위적으로 책정하는 경우도 많다²⁵⁾. 북한의 상품가격은 일반적으로 여타 사회주의 계획가격이 지니고 있는 특성과 마찬가지로 생활필수품, 대중소비품, 농산품의 가격은 낮게 책정되어 있으며 생산량이 한정되어 있는 대부분의 생산재나 가공산품, 사치품 등은 과대평가되어 있다.

북한의 계획가격은 생산비용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주요 산업별로 상당부분 적정 생산비용을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해당 상품의 생산기업이 계속해서 적자상태에서 생산활동을 하고 있다. 이로 인한 기업의 적자를 중앙재정에서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중앙계획기구에의 의존성이 높아지고 비효율적인 생산활동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평균비용 합산 방식에 의한 계획가격의 산정에는 자본이나 대출 형식의 자본, 토지, 다른 형태의 자원에 대한 기회비용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감가상각에 대한 비용부과도 실질적으로는 매우 낮은

24) 『경제사전(1)』, 사회과학출판사, 1985, p. 39.

25) 『경제사전(1)』, 사회과학출판사, 1985, p. 39.

수준이어서 고정자산의 손상이나 설비개조에 필요한 수준에 크게 미달된다. 이러한 기회비용 고려의 부재와 낮은 감가상각비의 산정은 각종 자원의 남용과 낭비를 가져 왔다.

나아가 북한의 계획가격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평가하고 동기를 부여해 주며 통제하는 기능들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 기업의 생산제품 가격이 낮게 책정되어 있을 경우 해당 기업의 효율성 추구 노력과는 관계없이 손실을 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들 기업은 경영의 효율성을 추구하지 않게 되고 효율성을 유도하는 인센티브 제도의 효과도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난다.

(5) 노동임금과 노동력 배치

북한에서 노동자의 임금은 노동보수 계획에 따라서 분배·관리되는데 주로 노동자·사무원의 생활수준, 상품 유통 규모, 소비와 축적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이 노동보수 계획은 보수의 형태에 따라 생활비 계획, 장려금 계획, 상금계획으로 구분하여 작성된다²⁶⁾. 생활비 계획에는 기본적으로 계획기간 내 지출되는 생활비의 총규모를 미리 규정하는 총생활비 계획과 노동자·사무원 1인당 평균지출 규모를 규정하는 평균 생활비 계획이 있다.

장려금 계획은 ‘국가기준 노동정량’보다 계획연도의 ‘노동정량’이 더 높아지는 경우에 지불되는 노동 임금 계획이다²⁷⁾. 이 계획은 장려금 계산 노력수와 기준 평균생활비, 계획연도의 노동정량 제고율, 장려금률 등에 기초하여 작성된다. 또한 상금계획은 노동정량을 높일 경우에 대비하여 기

26) 『경제사전(2)』, 사회과학출판사, 1985, pp. 192~193.

27) 『경제사전(2)』, 사회과학출판사, 1985, p. 268.

본 생활비 이외에 추가로 더 지불하는 근로자의 노동의욕 제고 목적의 임금계획이다.

북한의 임금구조는 직업, 산업 및 지역에 따른 차등임금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숙련노동자와 비숙련노동자간의 수직적 차등과 계획의 우선 순위에 따라 기업, 산업 및 지역간에 발생되는 수평적 차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업종별·지역별 임금격차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사회주의적인 이념에 매우 충실하던 천리마 운동 등의 기간에는 노동자의 최저임금과 최고임금의 차이가 평균 5배를 넘지 않으며 기술자들의 경우도 3 내지 4등급 정도로 분류되어 큰 차이를 두지 않았다. 여타 기간에도 일반적으로 북한 노동자의 임금 구조는 업종별, 산업별로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대체적으로 평균임금률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 업종은 건설업, 석유화학공업, 가공제품 생산분야와 같은 공업 분야이며 농업, 상업, 유통업, 소비재 생산 부문, 문화, 공공행정, 교육 등의 비생산적 서비스 부문은 평균임금률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임금격차가 별로 크지 않고 기업의 성과와 개별 노동자들의 공헌도가 상호 연계성을 지니지 않는 상태이다. 이러한 임금 수준의 정체와 평균주의적인 북한 노동자의 임금구조는 노동자들로 하여금 비생산적 노동윤리를 갖게 하고 낮은 노동생산성을 야기시켜 북한 경제의 침체를 부채질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에서 노동력 배치는 기본적으로 국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국가의 해당 행정기관이 기업 단위별로 필요한 인력에 대한 수요를 파악, 학교별 노동력 공급 가능성을 감안하여 배치한다. 국영기업은 일반적으로 국가가 노동력을 통일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종신고용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상황에 놓여 있다. 또한 각 기업은 국가의 노동 인사기관을 통해 할당된 노동자를 고용해야 하는 한편 이들을 해고할 수 없도

록 되어 있다. 개별 노동자들도 개인의 희망에 따라서 직장을 옮기는 것이 불가능하다. 특히 국영기업의 노동자들은 취업과 더불어 종신고용이 보장되고 주택, 의료 서비스 등 각종 복지제도, 자녀 교육 등의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직의 동기가 매우 낮다. 그리고 화폐적 임금보다는 주택과 같은 비화폐적인 소득이 더 많은데, 이는 개인 노동자들로 하여금 다른 부문으로의 이직을 불가능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앙계획당국에 의한 노동배치는 노동자들에게 높은 취업률과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지만 노동의 유동성을 극도로 약화시켜 노동력의 효율적 배분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따라서 국영기업과 같은 단위들은 항상 과잉고용이라는 노동고용의 비효율 상태에 직면해 있다.

2. 계획경제체제의 특징

(1) 사회주의적 소유제도

북한은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철저히 배제하는 등 지구상에서 가장 경직된 형태의 사회주의적 소유제도를 고수하고 있다. 북한은 사회주의적 소유에 대한 개념을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의 기초가 되는 생산수단과 생산물의 전사회적 또는 집단적 소유”라고 정의하고 있다.²⁸⁾

1992년 4월 개정 헌법에 의하면, “모든 생산수단은 국가 및 협동단체만이 소유할 수 있고 국가소유권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1977년 4월에 공포된 「토지법」에서도 토지는 국가 및 협동단체만이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동 법 제13조에서는

28) 『김일성 저작집(19)』,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p. 294.

“토지는 오직 국가만이 지배할 수 있으며 협동농장을 비롯한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들이 여러 방면으로 이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협동단체의 토지소유권도 실제로는 그 사용권에 지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주의적 소유제도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전인민적 소유(국가소유)는 전체인민의 소유로서 여기에는 “자연부원(自然賦源)의 전부, 공장·기업소의 절대다수, 운수, 은행 및 체신기관의 전부, 상업수매기관의 기본 부문, 도시와 농촌의 기본적인 주택폰드나 공공시설, 그리고 국가 기업소 생산물의 전부 등”이 이에 속한다.²⁹⁾

둘째, 협동적 소유는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체제로 이행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사회주의적 소유의 한 형태로서, “당과 국가의 지도와 방조 밑에 농민과 수공업자 그리고 중소상공업자들이 그들의 사적 소유인 생산수단을 통합하여 형성한 것”이라고 정의되어 있다.³⁰⁾ 현재 북한에서 협동적 소유가 지배적인 분야는 농업 부문으로서 협동농장이 그 전형이다.

이밖에 북한에서는 매우 제한적이나마 개인소유를 허용하고 있다.³¹⁾ 북한의 개인소유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 소유의 토대에서 발생한다고 하여 ‘사회주의에서의 개인소유’라고 강조된다. 개인소유의 대상은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이나 노동의 질과 양에 따라 받는 분배 몫과 그것으로 구입한 소비품들이다. 구체적으로 근로소득과 저축, 가정용품, 일용소비품 등이 개인소유의 대상에 포함된다. 협동농장원들의 ‘부업경리’

29) 『경제사전(1)』, 사회과학출판사, 1985, p. 206.

30) 『경제사전(2)』, 사회과학출판사, 1985, pp. 587~588.

31) 『경제사전(1)』, 사회과학출판사, 1985, p. 730.

생산물과 그 생산을 위한 약간의 소농기구들도 개인소유를 허용하고 있다.³²⁾ 이와 같은 개인소유물은 그 소유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상속권도 인정하고 있다.

(2)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

북한은 1948년 공산정권 수립시에 내각에 ‘국가계획위원회’를 설치하여 계획경제를 실시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하였으며, 1958년에는 토지 및 생산수단의 국·공유화가 완료되어 계획경제를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확립하였다. 현재 북한의 모든 경제운용은 정무원의 국가계획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노동당의 지침을 받아 작성하는 인민경제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에서 경제계획의 작성과 집행 및 감독은 국가계획위원회를 중심으로 하여 도·시·군 및 공장·기업에 이르기까지 일원화된 체계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계획위원회는 경제 전분야에 걸쳐 노동당의 정책을 계획화하고 그 집행을 감독하는 것을 임무로 하고 있다. 1965년부터 계획의 일원화·세부화 원칙이 강조된 아래 중앙기관과 지방의 계획위원회와 중앙 공장·기업 계획부서를 국가계획위원회의 직속으로 개편하여 경제 체제의 중앙집권화를 더욱 강화시켰다.

북한의 국가계획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정부의 경제기관과 함께 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에 따라 계획기간 중에 경제의 주요 방향을 설정하고 생산목표, 투자규모, 수익성, 자본축적, 사회적 임금수준 등 중요한 경제지표를 작성한다. 둘째, 지역별, 부문별 계획목표를 조정하며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 경제개발계

32) 『경제사전(1)』, 사회과학출판사, 1985, p. 730.

획과 연간계획을 작성한다. 셋째, 현행 계획 및 중장기 계획의 작성과 지역과 기업들에 대한 원자재, 연료, 기계설비와 일반 생산재의 분배와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며 이와 관련된 절차, 시한 및 방법도 도출·집행 한다. 넷째, 재정부와 공동으로 매년 통화계획을 세우고 국가 예산과 신용수준을 확정한다. 다섯째, 수출입 관계나 외국인 투자유치와 관련된 주요 사항, 외환관리와 관련된 내용을 대외무역부와 협력하여 결정하고 집행한다.

현재 북한의 경제체제는 기업으로부터 전반적인 인민경제에 이르기까지, 지방으로부터 중앙에 이르기까지 정연한 국가적 관리체계로 조직되어 있다. 이것은 중앙계획당국의 통제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계획의 일원화·세부화를 일관되게 추진하여 온 결과이다. 오늘날 북한의 중앙행정 기구인 정무원에는 계획관리 업무의 방대성으로 인하여 총 42개 기관(12위원회, 23부, 1원, 1은행, 2총국, 3국) 중 약 80%에 해당하는 기관이 경제관리기관으로 되어 있다.

북한은 이와 같은 계획의 일원화를 통해 계획화의 구조적 문제점인 주관주의와 기관본위주의, 지방본위주의를 없애고 ‘당의 정책적인 요구’를 관철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³³⁾ 또한 북한은 계획의 세부화를 “크고 작은 모든 경영활동을 빈틈없이 맞물리게 함으로써 경제발전에서 사소한 자연발생성의 요소도 허용하지 않는 계획화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³⁴⁾ 이처럼 계획의 세부화는 계획의 일원화와 함께 중앙집권화의 기본축 역할을 하고 있다.

33) 『김일성저작선집(4)』,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p. 173.

34) 『백과전서(1)』,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2, pp. 793~794.

(3) 국가 계획에 의한 기업관리

북한에서의 모든 생산수단은 사회적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들의 경영활동도 매우 제한적인 자율성을 지닌다. 북한의 기업관리제도는 정치적 조직체인 공장 당 위원회를 최고 지도기관으로 하고 당 위원회의 집체적 지도를 중심으로 대안의 사업체계에 의존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는 공장관리 운영에서 경영집단의 운영체계가 아니라 당 위원회를 통한 전생산자 지도체제라는 것이다. 당 위원회는 지배인, 당 비서, 기사장, 부지배인 등과 함께 직장장, 직장부문 당 비서, 작업반장, 일부 노동자를 비롯한 생산 현장 노동자들로 구성된다.³⁵⁾

북한에서 기업들의 모든 생산활동 계획은 계획지표별로 당의 검열과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다. 북한의 경제활동에서 당의 역할은 절대적인데, 이는 북한의 모든 기업들은 연간계획이 하달되면 공장 당 위원회에서 구체적 방안을 토론하여 당 결정서로 채택하고 노동자들에게 그에 해당하는 업무량을 나누어 주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³⁶⁾

당 내 경제활동 지도 기구들을 살펴보더라도 이러한 사실은 잘 나타나고 있다. 당 중앙위원회에는 중공업부, 경공업부, 기계사업부, 농업부, 재정부 등과 같은 경제부문별 지도기구가 있으며 정무원 해당 부서에도 하부 당 위원회가 조직되어 있다. 당의 경제지부 기구는 말단 기업에 이르기까지 조직화되어 있어서 항상 당 중앙의 결정과 지시내용을 획일적으로 수직 전달하며 경제정책 집행과정을 감독·통제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경제의 운영틀 안에서 모든 기업의 경제활동 내용들은 공장 당 위원회를 통하여 당 중앙위원회 해당 부서에 보고되어 통제와 조정을 받고

35) 『경제사전(1)』, 사회과학출판사, 1985, p. 461.

36) 『경제사전(1)』, 사회과학출판사, 1985, pp. 709~710.

있다. 결과적으로 기업의 모든 경영활동은 당 중앙위원회 의사와 결정사항에 근거하여 진행되도록 되어 있다.³⁷⁾

북한의 대안의 사업체계란 이러한 중앙집권적 계획체제를 골간으로 하여 부여된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의 자율성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북한에서 기업관리체제와 관련되어 추진된 대안의 사업체계가 지니는 성격은 중국에서 추진되어 온 ‘정기분리’(政企分離)를 중심 내용으로 하는 각종 기업관리체제 개혁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었다.

3. 계획경제체제의 문제점

(1) 관료조직의 경직성

북한의 경제관리상의 커다란 문제점으로는 관료조직의 경직성을 들 수 있다. 북한의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의 관리기구는 소련 사회주의로부터 온 것이다.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이 상부기관에서 수많은 계획을 입안하고 이를 다시 방대한 행정기구를 통해서 집행하게 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거대한 관료기구의 비효율성이다. 또한 상위기관에서 결정되는 경제계획 내용이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주로 결정되기 때문에 경제논리가 배제될 수밖에 없다. 또한 정해진 정책 순위와 명령성 지표에 따라서 경제활동을 하기 때문에 경제조직을 구성하는 각 단위에 재량권이 주어질 수 없고 하위 집행기관에 해당하는 기업의 활동은 경직될 수밖에 없다. 즉 행정 편의주의에 입각하여 행정상의 계통, 절차, 방법이 기계적으로 경제활동에 적용됨으로써 경제법칙에 따라 경제를

37) 『경제사전(2)』, 사회과학출판사, 1985, p. 175.

관리하고자 하는 노력은 기대될 수 없다. 기업간의 물자조달과 생산요소의 공급에 따르는 비용이 거의 모두 무상으로 처리되므로 이에 대한 회계적 문제와 효율성 문제의 의식조차도 없는 상태이다.

기업 내부에서도 정경일체화(政經一體化)의 논리에 의해 당시 기업 경영 일체에 대해 우위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경영인의 역할이 제약을 받게 된다. 중앙으로부터 관료적 행정계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수직적 조정과 통제는 기업들로 하여금 동등한 위치에서 상호간에 직접 적이고 수평적인 경제활동의 유대를 차단하므로써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없다. 북한의 수직적 조직화에 의한 계획경제체제의 운영은 효율성보다는 관료적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편리하도록 짜여져 있어서 기업간 분리, 기업 내에서의 부문간 분리, 국가 경제 내에서의 부문간 분리가 발생되고 있다.

또한 경제가 행정기관에서 요구되는 절차와 방법에 의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기구의 중첩이 생기고 의사전달의 순환과정이 번거롭게 되며 의사결정에 오랜시간이 걸리게 된다. 이로 인하여 경제적 효율성이 상실됨은 물론 경제활동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시기도 놓치게 된다. 행정적 관리방법에 의한 기업경영은 기업의 효율성에 기초가 되는 자율성을 극도로 제한한다. 그 결과 기업관리자들은 책임회피의 범위 내에서만 상부의 지시에 의존하려고 한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는 노동자의 진취적인 작업 의욕과 창의성에 의한 기술혁신을 기대할 수 없다.

계획경제의 운영에 적용되는 행정지도 방법은 기업의 손익에 대하여 직접적인 책임부과가 어려우며 기업경영의 적정성 여부나 계획목표 달성을 여부를 판정하는 데 있어서도 한계가 있다. 결과적으로 행정지도에 의한 판단과 결정이 경제문제의 해결에 적합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 기업, 중앙과 지방 모든 부문은 비효율성이 누적될 수밖에 없다.

또한 행정조직은 상품의 생산, 공급 및 판매조직과 상이하고 경제활동

의 객관적 수요도 충분히 반영시키지 못한다. 그 결과 행정조직에 의하여 인위적인 경제분할이 조성되고 경제의 각 부문간에는 합리적인 연계성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다.

(2) 비효율적 자원배분과 경제성장의 한계

북한의 경제성장 전략은 중공업 위주의 불균형 경제성장으로 이루어져 왔다. 북한은 일반 사회주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투입물의 양적 증대에만 의존하는 외연적 경제성장을 추진해 왔다. 외연적 경제성장은 투입요소의 생산성이나 투입요소간의 합리적 배분보다는 자본재의 집중적 투입을 통해서 산출물을 증가시키는 성장전략이다. 따라서 외연적 경제성장은 부가가치보다는 산출물량에 큰 관심을 기울인다. 이러한 외연적 경제성장 전략은 소련 사회주의뿐만 아니라 북한에서도 단기적으로는 눈에 띄는 고도성장을 가져 왔다. 주민의 개인소비를 억제시킴으로써 국내 저축률을 높일 수 있었고, 생산재 생산부문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로 자본재의 증가가 두드러져 급속한 국내자본 형성을 이루할 수 있었다.

그러나 외연적 경제성장 전략은 장기적으로 투입요소의 합리적 결합과 생산성의 제고에 실패함으로써 비효율성을 누적시키고 경제성장의 주요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그리고 자본의 과잉투자와 노동력의 비합리적인 배분도 기업의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북한의 계획경제는 생산과정을 중시하고 소비과정은 전적으로 무시하는 전통적인 사회주의 방식을 고수하여 왔다. 중공업 부문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는 소비재를 생산할 수 있는 경공업 부문의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데, 경공업과 중공업의 유기적 산업연관 관계의 부족은 장기적으로 중공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였다.

결과적으로 자본재 증가의 한계는 경제성장률을 하락시키고 이것은 투자증가율을 둔화시켜 다시 경제성장률을 하락시키는 악순환을 가져왔다.

(3) 생산성 제고와 기술혁신의 부족

북한의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 하에서는 생산성 제고나 기술혁신이 용이하지 않다. 북한의 경제체제는 여전히 과거 사회주의 국가에서 보는 바처럼 ‘생산을 위한 생산’을 계속하고 있다. 이는 사회적 생산이 소비자들의 선호와 기호를 중시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목표와 계획당국자들의 선호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이나 노동자들의 생산성 제고는 기업의 이윤 동기나 노동자 개인의 성과가 보상될 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북한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는 기업의 이윤 동기 추구가 극도로 제한되어 있으며 노동자들의 성과와 임금의 연계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생산성의 제고가 용이하지 않다.

또한 사회 전체적으로 소비를 경시하는 생산은 생산의욕을 감소시키고 소비자의 욕구나 수요에 맞지 않는 상품을 생산해 내도록 만들기 때문에 자원의 낭비만을 초래한다. 북한이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채택하고 있는 생산량 달성 성과지표들도 생산물 판정기준의 모호성, 계획 가격의 상품가치 왜곡, 생산비용의 불합리한 반영, 성공지표의 비합리적 통제 등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생산성 향상이 근본적으로 쉽지 않게 되어 있다.

북한의 계획경제 하에서는 기술혁신을 이룩하기도 용이하지 않다. 기술혁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자율성과 개인의 창의성이 최대로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개인과 기업이 독자적으로 신속하게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탄력적·분권적 경제조직이 활성화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제도는 개인과 기업의 독자적 의사결정 과정과 창의

적 행동을 제약하는 방식으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기술혁신을 유도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어 있다.

자본주의 발전이 기술혁신에 의해서 주도되어 왔음을 고려해 볼 때, 북한의 중앙 계획경제체제가 갖는 기술혁신의 한계는 북한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로 자리잡아 왔다고 볼 수 있다.

제 3 절 북한 경제의 현황과 당면과제

1. 국민소득과 경제성장

북한은 1960년대 중반 이후 지금까지 구체적이고 체계화된 통계자료를 발표하지 않고 있으며, 간헐적으로 발표하는 국민소득에 관한 통계도 그 개념이 서방의 GNP개념과는 상이하기 때문에 북한의 정확한 국민소득 수준을 평가하기는 어렵다.

북한은 총량부문의 경제지표로서 ‘사회총생산(물)’과 ‘국민소득’이란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여기서의 사회총생산물(GSP: Gross Social Product)이란 “일정한 기간에 사회의 모든 생산부문들에서 창조된 물질적 부를 전사회적 범위에서 개괄한 총량”을 말한다.³⁸⁾ 즉 사회총생산물은 공업, 농업, 건설, 화물수송 등 물질적 생산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생산적 노동에 의하여 창조된 생산물의 총계이므로 국가관리, 교육, 과학, 예술, 여객수송, 주택건설 등 비생산적 부문은 포함되지 않은 것이 개념상의 특징이다.

38) 『경제사전(1)』, 사회과학출판사, 1985, p. 754.

한편 국민소득(NMP:Net Material Product)은 “사회총생산 중에서 소비된 생산수단을 보상하고 그 나머지 부문 즉, 그 해에 새로이 창조된 가치”라고 정의하고 있다.³⁹⁾ 따라서 국민소득이란 사회총생산에서 고정 자본 감가상각 충당금(充當金)과 중간재 투입비를 제외한 부분을 의미 한다. 즉 북한의 국민소득 개념에는 비생산적 서비스 부문이 포함되지 않고 있으며, 본질상 간접세에 해당하는 ‘거래수입금’과 정부가 농업생 산이나 생필품생산 등에 지급하는 보조금 등이 가감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외국의 정보·군사분야 등의 연구기관은 여러가지 현실적 필요에 의하여 나름대로 자본주의적 개념에 부합하는 북한의 GNP와 1인당 GNP를 추계하고 있다. 우리 정부에서는 1990년부터 UN의 국민계정체계(SNA : System of National Accounts)에 따라 북한의 국민소득을 추정·발표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추계한 1995년 중 북한의 경상 GNP는 223억달러이며 1인당 GNP는 957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1995년 경상 GNP는 4,517억달러이며, 1인당 GNP는 10,076달러이다. 이를 경제규모면에서 평가해 볼 때 한국이 북한 보다 20배 정도 크고, 1인당 국민소득 수준도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추정되어 남북한간의 경제력 격차는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며, 북한의 1995년 1인당 GNP도 한국의 1977년 수준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북한경제는 지난 1990년부터 1995년까지 6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으로 경제규모가 25% 이상 감소하였다. 뿐만 아니라 1995년과 1996년의 연속된 여름 수해는 심각한 침체에 빠져 있는 북한 경제에 다시 한번 커다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제규모의 커다란 감소는 전 산업분야에서 동시적인 생산활동의 위축을 수반하고 있다.

39) 『경제사전(1)』, 사회과학출판사, 1985, pp. 220~221.

〈표 4-1〉 북한의 GNP 성장을 추이

(단위 : %)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성장률	3.0	3.0	2.4	-3.7	-5.2	-7.6	-4.3	-1.7	-4.6

자료 : 한국은행, 「북한 GDP 추정결과」, 각년호.

북한의 심각한 경제적 침체는 1991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분석된다. 1990년까지만 하더라도 북한 경제의 핵심이 되고 있는 중공업 부문의 감소는 0.4%에 불과하고 건설부문은 5.9%의 성장을 기록하고 있어서 경제 전반에 큰 위기는 느껴지지 않았다. 그러나 1991년 들어오면서 중공업 부문의 성장이 크게 하락하기 시작하여 전년대비 15.8%나 생산이 감소하였다. 이러한 생산감소 추세는 이후에도 계속되어 1992년에는 21.0%나 감소하였다. 중공업 부문의 부진은 경제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서 북한의 GNP 감소 폭도 1991년과 1992년에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93년과 1994년에는 중공업 부문의 마이너스 성장과 동시에

〈표 4-2〉 산업 부문별 성장을 추이

(단위 : %)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농 립 어 업	-10.2	2.8	-2.7	-7.6	2.7	-10.5
광 공 업	-2.9	-11.9	-15.0	-3.2	-4.2	-2.3
제 조 업 (경 공 업)	-1.5	-13.4	-17.8	-1.9	-3.8	-5.3
(중 공 업)	-6.2	-4.4	-7.3	5.0	-0.1	-4.0
건 설 업	-0.4	-15.8	-21.0	-4.2	-5.2	-5.9
서 비 스 업	5.9	-3.4	-2.1	-9.7	-26.9	-3.2
	0.3	2.5	0.8	1.2	2.2	1.5

자료 : 한국은행, 「북한 GDP 추정결과」, 각년호.

광업 및 건설업 분야의 커다란 침체가 경제후퇴를 주도하였다. 이러한 경제흐름을 살펴본다면 북한경제의 위기는 1991년과 1992년을 전후하여 발생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1990년대 들어오면서 계속해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경제의 모순이 누적되어 경제적 효율성을 상실, 경제성장에 필요한 원천적 동력을 잃어버렸다는 데에 있다. 북한 계획경제체제의 모순이 누적되어 온 가운데 구소련 등 사회주의 국가와의 경제협력이 급속하게 축소됨으로써 북한 경제의 침체가 가속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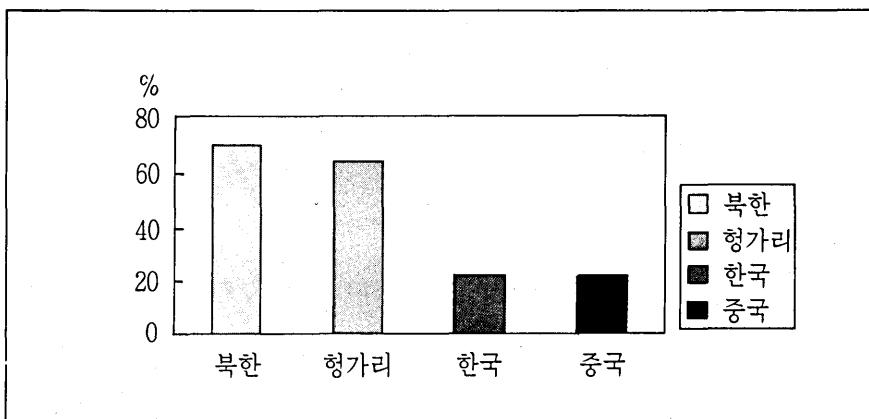
2. 재정규모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북한은 재정이 국민경제의 거의 모든 부문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나라보다 재정부담률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그 이유는 북한에서는 민간경제 부문이 극히 한정되어 있으며 국방, 공공복지, 사회간접자본, 시설자본 등 통상적인 예산 외에 공장이나 기업소의 재정 및 각종 보험이나 신용 등 금융기능까지도 정부예산에 포함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북한경제를 재정경제라고 말하기도 한다.

북한 재정의 중요한 기능은 계획경제 운영에 대한 자원배분 기능, 통제기능, 그리고 소득재분배 기능으로 요약할 수 있다. 재정계획은 계획기간에 기업소별 국가 상납 이윤액과 이것의 사용처를 항목별로 수립하는 것이다. 재정의 통제기능은 예산집행에 대한 사전적·사후적 감독을 통하여 실현되는데, 그 중 ‘예산총화’라고 불리는 예산결산의 승인은 사후적 통제기능을 의미한다.

북한의 재정도 여타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보는 것처럼 자본주의 국가들보다 GN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월등히 높다. 이는 국가가 개별기업의 자본형성 및 투자를 담당하고 의료, 교육, 주택 등 사회적 소비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북한의 경우는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에 비해서도 이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림 4-1〉 GNP대비 정부지출 규모



최고인민회의 제9기 7차회의(1994. 4. 7)에서 통과된 북한의 1994년 예산결산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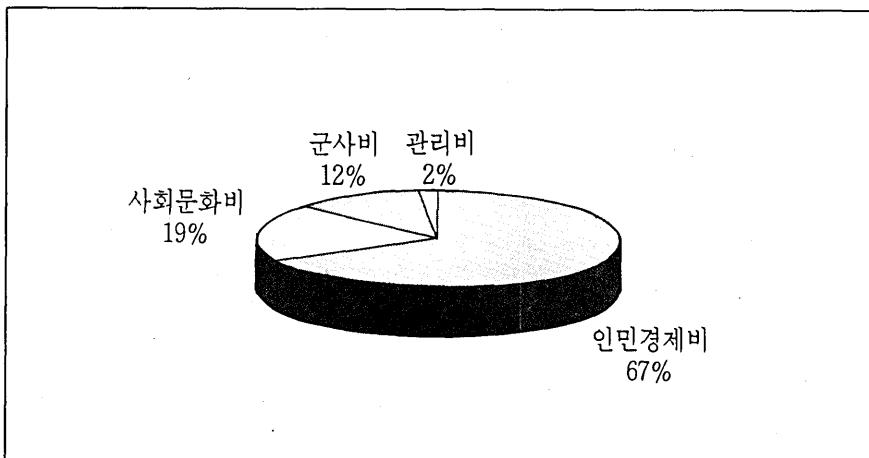
1994년도 예산집행 결과는 북한화(貨)로 수입 416억 20만원(193억 5,000만달러), 지출 414억 4,215만원(192억 8,000만달러)으로 1억 5,805만원의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발표되었다.⁴⁰⁾ 군사비는 예산지출총액의 11.4%(계획은 11.6%)인 47억 2,440만원으로 발표되었다. 그러나 1994년도의 실제 군사비는 예산상의 군사비와 함께 인민경제비, 사회문화시책비 등에 분산·은닉된 군사비를 포함할 경우 총예산 규모의

40) 『조선중앙연감(1995년판)』, 1995. 12. 30, 재정수입, 지출액의 美달러화 표시는 북한의 1994년 무역환율 미화(美貨) 1 달러당 인민원 2.16원을 통해서 산출한 것임.

30% 수준인 57.8억달러로 추정되고 있다.

1994년의 예산집행 결과의 특징은 재정흑자 규모가 1993년의 3억 2,823만원에서 1994년에는 1억 5,805만원으로 절반 이상 감소한 것과 총예산 지출에 대한 계획수행률이 99.8% 수준인 데 비하여 군사비 지출은 당초 계획보다 낮은 수준에서 집행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특징도 북한이 전전재정을 과시하기 위하여 매년 결산시마다 재정수입이 증가하고 흑자를 나타낸 것으로 발표해 왔기 때문에 신뢰성을 갖기가 어렵다.

〈그림 4-2〉 북한 재정지출의 부문별 비중



한편, 북한은 현재 1995년에 이어 1996년도에도 최고인민회의(제9기 8차회의)를 개최하지 않음으로써 '95년 예산집행의 결산 및 '96년 예산을 승인하지 못하고 재정을 과행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북한이 1996년도에도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있는 것은, 최고 인민회의 대의원 임기(5년)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대의원의 임기를 연장하는 등 특별한 상황 하에서 가장 큰 사안이되고 있는 국가 주석을 선거하지 않고 단순히 예산승인만을 목적으로 동 회의를 소집하기에는 정치적으로도 무리가 따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3. 산업구조와 부문별 현황

(1) 산업구조

북한은 1994년의 경제운용에 있어서 석탄 및 전력산업과 금속공업을 성장 선도부문으로 지정하고, 이들 산업시설들의 정상가동에 주력하는 한편, 주민생활 개선과 외화확보를 위하여 농업 및 경공업 부문의 생산 증가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그러나 1994년에도 이들 선도부문의 생산이 침체를 면치 못하였으며, 에너지 및 원자재의 부족현상 심화로 제조업 생산이 섬유제품 등 일부 경공업 제품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부진을 면치 못하였다. 더욱이 농업생산도 냉해 등의 영향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1995년에도 농업 및 경공업, 무역제일주의, 성장 선도 부문의 생산 정상화에 역점을 두고 경제를 운영하였지만, 결과적으로 북한 경제가 안고 있는 사회주의 계획경제 하에서의 구조적인 문제점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산업활동의 기본이 되는 에너지 및 원자재난이 가중되고 자연재해까지 겹쳐 실물부문의 생산활동이 전년보다 더 위축됨에 따라 농림어업과 광공업의 비중은 낮아진 반면, 음식·숙박, 정부부문 등 서비스 산업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또한 북한의 산업구조는 농림어업, 광업 등의 산업부문 비중이 전산업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후진국형의 산업구조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한정된 자원이 국방 및 군산복합형 중공업 부문에 상당부분 편중 배분되고 있어서 주민생활의 질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건설업과 서비스 산업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1995년 북한의 국민총생산 중 각 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농림어업 부문이 27.6%(한국 6.6%), 광공업이 30.5%(한국 27.2%), 서비스 부문이 30.3%(한국 49.8%)를 나타내고 있다. 공업의 부문별 구조

를 보면 북한은 군수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기계, 금속공업, 석유화학 등 중화학공업의 비중이 계속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반하여, 경공업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3〉 북한의 산업구조

(단위:%, 명목 GDP=100)

	1993	1994	1995
농 립 어 업	27.9	29.5	27.6
광 공 업	32.9	31.4	30.5
광 업	8.2	7.8	8.0
제 조 업	24.7	23.6	22.5
(경 공 업)	6.8	7.0	6.8
(중 공 업)	17.9	16.6	15.7
전 기 가 스 수 도	4.8	4.8	4.8
건 설 업	8.5	6.3	6.7
서 비 스	25.9	27.9	30.3
국 내 총 생 산	100.0	100.0	100.0

(2) 부문별 현황

1) 식 량

북한은 1995년 처음으로 국제기구에 식량을 요청하였다. 북한이 국제기구에 제출한 공식적인 문건에 의하면 1995/1996년의 총식량 수요는 764만톤으로 이 중 주식용은 487만톤, 비주식용은 277만톤인데, 생산은 376만톤에 그쳐 부족분이 388만톤에 달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식량사정에 대한 자체적인 발표는 북한의 식량생산이 구조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시인했다는 점과 국제사회에 공식적으로 자신들의 체제 내부의 문제점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를 지닌다.

북한의 식량사정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은 북한이 밝힌 예정 생산량이 567만톤인데 반하여 수요량에는 자연재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년 200만톤 가량의 식량이 부족하다는 측면에서도 잘 알 수 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공식적인 배급기준 등을 감안하여 1996년의 식량수요를 약 673만톤内外로 추정하고 '하루 두끼 먹기 운동' 등으로 매년 약 100만톤 정도를 절약해 왔기 때문에 실제 수요량은 570만톤 수준이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1995년의 실제 식량생산은 수해 등 자연재해로 345만톤에 그침으로써 약 225만톤이 부족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아직 북한이 전면적인 기아 상황에 빠져들고 있다는 조짐은 없지만 1996년까지 2년간 연속된 여름 수해로 인하여 1997년에도 계속해서 심각한 식량부족 상태를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즉 우리 정부는 1997년에도 1996년 북한의 실제 식량생산량이 369만톤에 그쳐 약 208만톤 정도의 식량이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다. 1997년 봄부터 추수기까지 심각한 기아상태가 발생되리라고 하는 전망도 구조적인 북한의 식량생산 부족과 아울러 연속된 여름 수해의 영향이 예상외로 클 것이라는 판단에 근거한 것이다. 전면적인 기아상태나 이로 인한 폭동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지만 한계상황을 맞고 있는 식량생산이 더욱 감소한다면 노인 및 아동의 영양실조와 아사상태는 심각한 상황에 이를 수도 있을 것이다.

(표 4-4) 북한의 곡물 생산현황

(단위 : 만톤)

연도	총생산량	쌀	옥수수	두류	기타
1992	426	153	211	218	407
1993	388	131	196	196	407
1994	412	150	213	173	312
1995	345	121	185	129	260
1996	369	134	197	121	253

자료 : 농촌진흥청, 「'96/'97 북한의 곡물 수급량 추정」 및 「'96 북한의 곡물 생산량 추정 발표」.

2) 에너지

북한의 에너지 공급량도 1990년대 들어오면서 큰 폭의 감소를 보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의 에너지 공급 감소는 산업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북한 공업의 중심이 에너지 다소비형인 중공업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에너지 부족으로 인한 산업생산은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으리라고 분석된다.

북한의 에너지 부족은 석탄 생산량의 지속적인 감소에 주요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석탄의 풍부한 매장량을 기반으로 하여 석탄 중심의 에너지체계를 발전시켜 왔는데,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석탄 생산량이 빠른 속도로 감소하게 됨으로써 에너지 공급에 커다란 장애가 발생하기에 이르렀다. 북한의 에너지 공급구조는 석탄 70%, 전력 16%, 유류 10%, 기타 4%로 석탄의 의존율이 매우 높은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표 4-5〉 북한의 에너지 생산 추이

	단위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석 탄	만톤	4,330	3,315	3,100	2,920	2,710	2,540	2,370
	%	6.3	-23.4	-6.4	-5.8	-7.2	-6.3	-6.7
원유도입	만톤	—	252	189	152	136	91	110
	%	—	—	-25.0	-19.5	-10.5	-33.0	20.8
발 전 량	억KWh	294	277	263	247	221	231	230
	%	4.2	-5.7	-5.0	-6.1	-10.5	4.5	-0.4

자료 : 통일원, 「북한의 3차 7개년 계획 종합평가」, 한국은행, 「북한의 GNP 추정 결과」.

북한의 연간 석탄 생산 능력은 4,330만톤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실제 생산량은 1990년 이후 감소추세를 보여 1995년 말 현재 2,370만톤에 그치고 있다. 북한은 3차 7개년 계획기간 중 석탄 생산을 1억 2천만 톤으로 늘린다는 목표 아래 안주, 순천, 북부지구의 탄광을 대대적으로 확장·개발해 왔다. 그러나 매년 상당량의 생산감소가 발생하였는데, 그 이유는 탄광의 심부하가 진행되는 상태에서 신규 설비의 도입과 채탄기술의 현대화 없이 노동력의 투입에만 의존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전반적인 산업의 침체에 따른 탄광의 설비와 자재의 공급 애로도 석탄 생산의 감소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리라고 판단된다.

전력 생산도 199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주요 원인은 석탄 생산 감소로 인하여 화력발전소가 정상적인 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있다. 저열탄의 대량사용은 발전소의 효율성도 크게 하락시키고 있다. 북한 발전 능력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수력발전소의 경우 갈 수기나 동절기에는 생산의 차질이 적지 않게 발생되고 있고 발전설비의 상당 부분도 일제시대나 1950~60년대에 건설된 것이어서 발전효율이

낮고 고장도 잣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95년 발전량은 1994년의 231억kwh에 비하여 다소 감소한 230억kwh로 나타났다. 북한은 현재 석탄공급의 부진, 원유도입량의 감소, 설비의 노후 등으로 인한 전력생산 및 공급의 부족으로 1주일에도 1~2일씩 절전일(節電日)을 지정하는 등 심각한 에너지난에 처해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북한의 생산시설의 낙후와 관리체계의 문제점은 에너지 생산에 필요한 기계설비의 공급부족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에너지 생산의 감소로 연결되었다. 나아가 에너지 생산의 감소는 모든 부문의 생산 감소 요인으로 작용하여 경제 전체적으로 악순환이 상승작용을 하면서 발생되는 구조를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원유도입의 급격한 감소도 에너지 부족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으리라고 분석되고 있다. 북한의 원유 도입량은 1990년에 약 250만톤에 달하였으나 구소련으로부터의 도입이 대폭 감소함으로써 1994년 90만톤, 1995년 110만톤 수준까지 하락하였다. 현재는 북한의 주요 원유 도입선이 전적으로 중국에 의존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있다. 그 결과 정유공장의 가동률은 약 26%에 불과한 상태로 떨어졌다. 외화 부족으로 북한의 원유도입량은 해마다 격감하고 있다. 원유의 북한 에너지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0% 수준에 불과하나 다른 에너지원으로 대체하기 힘들다는 측면에서 볼 때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3) 원자재

북한 산업시설의 가동률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는 요인 중의 하나는 심각한 원자재의 부족을 들 수 있다. 원자재의 부족은 무엇보다도 에너지 부족으로 인한 공장의 가동률 저하에 기인한다. 에너지 공급이 크게 감소하면서 철강, 시멘트, 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형 중화학공업의 가동률

이 크게 떨어졌던 것이다. 그리고 사회주의 경제권의 붕괴도 원자재 공급을 크게 감소시키는 요인이다.

〈표 4-6〉 주요 원자재 공급 추이

(단위 : 만톤)

	1991	1992	1993	1994	1995
철 광 석	816.8	574.6	476.3	458.6	422.1
비 철 금 속	22.7	17.8	16.4	16.0	15.4
강 철	316.8	179.3	186.0	172.8	153.4
시 멘 트	516.9	474.7	398.0	433.0	422.0

자료 : 통일원, 「북한의 3차 7개년 계획 종합평가」, 한국은행, 「북한의 GNP 추정 결과」.

중요한 원자재 중의 하나인 철강 생산을 보면 1992년을 기점으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행의 추계치에 따르면, 철강 생산은 1992년에 전년도의 약 60% 수준으로 감소했으며, 그 후에도 감소세가 지속되어 1995년의 생산량은 1991년의 5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계공업의 비중이 높은 편인 북한으로서는 철강 생산의 급감으로 각종 부품 및 기계설비의 생산에 심각한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시멘트의 생산 부진도 주요 시설의 건설에 적지 않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북한의 산업부문별 성장 추이에서 살펴본 대로 건설업의 성장률을 보면, 1994년에는 전년동기 대비マイ너스 26.9%의 대폭적인 감소를 보여주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1993년부터 심각하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건설부문의 성장둔화는 시멘트와 같은 원자재의 생산부진이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 하에서는 에너지와 원자재는 항상 부족한 상태에 있어 왔지만, 1990년대 진행되고 있는 북한 내에서의 심각한 원자재 부족은 에너지의 생산부진, 북한 경제관리체제의 모순과 맞물려서 상호 상승작용을 하면서 발생된 것으로 북한 경제체제의 유지 자체에 부담이 될 정도의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측면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제 4절 북한의 무역구조와 대외개방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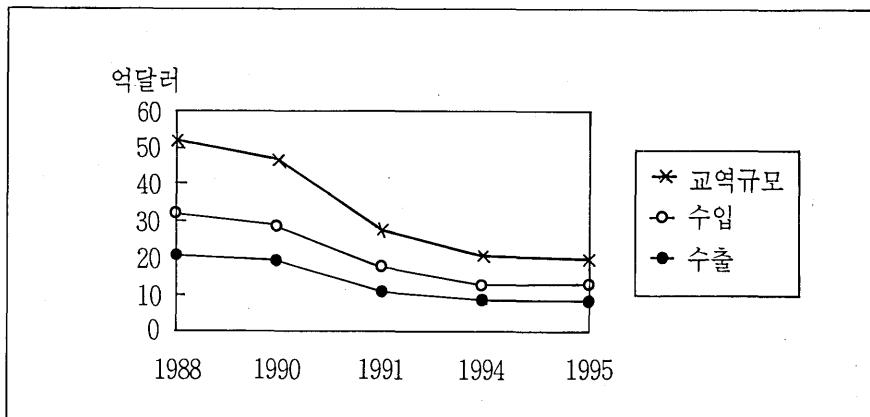
1. 무역구조의 변화와 제도개혁

(1) 권역별 무역구조

북한은 제3차 7개년 계획기간(1987~93)에 무역규모를 기준연도의 3.2배로 증가시킬 것을 목표로 설정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계획과는 달리 동 기간에 사회주의 경제권의 붕괴로 인하여 대외 교역이 급속히 감소하였다.

계획기간 초기에는 북한의 대외무역이 일본, 싱가포르 등의 아시아 국가와의 교역증가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여주었지만, 소련을 비롯한 구사회주의 국가들의 붕괴는 북한의 대외무역을 결정적으로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북한의 대외무역 감소를 주도한 것은 구소련과의 교역감소이다. 1990년 25억 7,000만달러로 전체 북한 교역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던 구소련과의 교역이 1991년에는 경화결제방식의 전환과 무역협정의 폐기에 따라 전년대비 약 1/5 수준에 불과한 4억 6,000만달러 수준에 그쳤다.

〈그림 4-3〉 북한의 대외무역 추이



구소련은 원유, 코크스 등 전략물자의 주된 공급원이었을 뿐만 아니라 북한과의 장단기 경제협정 및 생산협정 등을 통하여 북한경제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기 때문에, 양국간 교역의 감소는 교역감소 이상의 충격을 북한 경제 내부에 미쳤을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의 전력생산과 강철생산, 철금속, 석유제품, 직물부문, 화학비료, 철광석 등의 주요 중화학공업 제품 생산영역에서 구소련이 제공한 설비들을 사용하여 왔다는

〈표 4-7〉 북한의 대 소련·중국 교역 현황

(단위 : 억달러)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러시아	총교역	23.9	25.7	4.6	3.2	3.5	1.5	0.8
	수 출	8.9	10.5	1.8	0.7	0.5	0.4	0.1
	수 입	15.0	15.2	2.8	2.5	2.9	1.1	0.6
중 국	총교역	5.6	4.8	6.1	6.9	9.0	6.2	5.4
	수 출	1.8	1.2	0.8	1.5	2.9	1.9	0.6
	수 입	3.8	3.6	5.2	5.4	6.0	4.2	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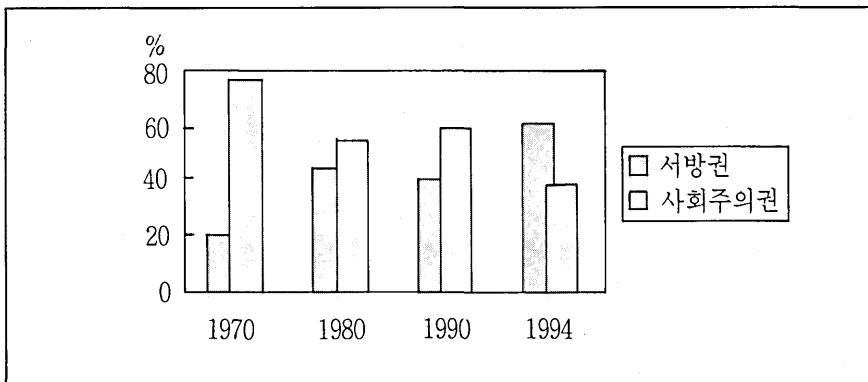
자료 : 중국, 「해관통계」 각년호 및 KOTRA,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각년호.

주 : 1989-91년은 구소련, 1992-95년은 CIS.

사실을 고려해 보면, 구소련과의 갑작스러운 경제관계의 축소는 이들 설비의 가동, 유지, 보수 등에서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했을 것이다. 또한 구소련은 북한산 수출제품의 최대시장이기도 하였다.

반면 북한의 대중국 교역은 1990년대에도 증가하여 왔다. 1993년의 경우 북한의 대중국 교역은 9억달러로 전년대비 28.6% 증가하였다. 또한 중국은 북한 원유도입량의 77.2%, 총곡물 도입량의 68%를 공급하고 있어서 구소련과의 교역감소에 따른 충격을 어느 정도 완화시켜 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1994년과 1995년에는 북한의 대중국 교역액이 각각 전년대비 31%와 13% 감소하여 북한의 대외무역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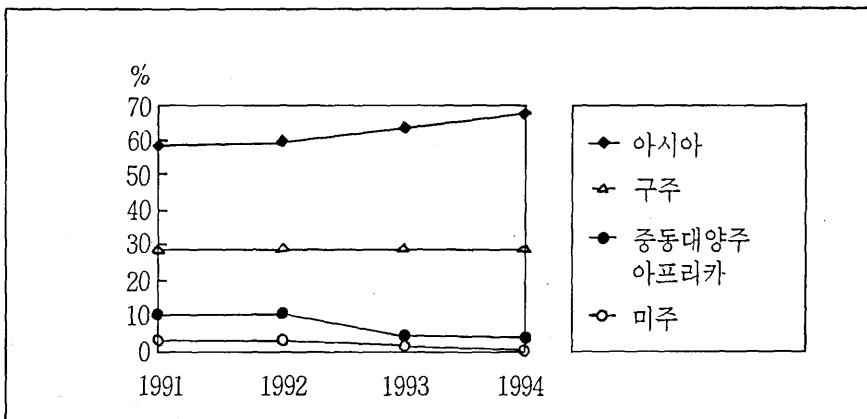
〈그림 4-4〉 북한의 권역별 무역비중 변화 추이



이처럼 북한의 구소련 및 중국 등 사회주의 경제권과의 교역이 급속히 감소한 결과, 북한의 대외무역 가운데 서방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4년에 61%에 달하고 있다. 북한의 대서방권과의 무역비중은 1970년 20% 수준에서 1980년에는 45%까지 증가하였다. 그 이후에도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권과의 무역감소로 서방권과의 교역은 계속해서 증가하여 왔다.

북한의 지역별 무역구조도 1990년대 들어오면서 크게 변화하고 있다. 중국, 일본 등과의 교역증대로 북한의 대아시아 지역과의 교역은 크게

〈그림 4-5〉 북한의 지역별 무역구조 변화



증가하여 1994년에는 전체 교역의 67.5%를 차지하였다. 유럽지역과의 교역은 구소련과의 교역 급감으로 인하여 1994년에 전체 교역의 28.7%인 6억달러 수준에 그치고 있다. 중동·대양주·아프리카 지역과의 북한의 무역규모는 1991년에 2.9억달러로 전체교역의 10.8% 수준이었으나 1994년에는 0.8억달러로 크게 감소하여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7%로 크게 낮아졌다. 미국, 캐나다 등과의 교역은 1994년 전체교역액의 0.2%에 불과하여 북한 무역에 있어서는 별로 중요성이 없는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상품별 무역구조

북한의 수출상품구조는 1995년 섬유제품 31.7%, 비철금속 및 철강제품 13.1%, 농임산물 11.7%, 수산물 11.3%, 기계류·전기기기 및 부품 7.8%, 원유 및 석유제품 7.1%, 화학공업제품 4.3% 순으로 되어 있다. 북한의 수출상품은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하여 생산한 노동집약적인 제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그러나 북한이 여전히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기본 골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우위에 입각한 상

품 생산과 이의 수출확대에 한계가 있고 원자재 부족이 심각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제품가공도가 낮은 석유제품 등의 수출에 주력하고 있다.

최근의 수출상품은 석유류, 수산물, 화학공업체품 등이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에너지 및 원자재 부족과 중국의 철강수요 감소 등으로 인하여 북한 수출의 대종상품으로 인식되어 오던 비철금속과 철강제품의 수출이 대폭 감소하였다.

북한의 수입상품은 1995년의 경우 원유 및 석유제품 21.8%, 석유류 15%, 기계류와 전기전자기기 및 부품 13.5%, 농산물 9.3%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품목은 모두 연간 1억달러 이상의 규모로 수입된 상품들이며, 이외에 수입비중이 비교적 큰 상품들로는 화학공업 관련 제품 6.2%, 철강제품류 6.0%, 수송기기류 4.6% 등을 들 수 있다. 수입상품 중 원유 및 석유제품과 농산물의 경우 전년대비 각각 43.1% 및 104.4% 급증함으로써 북한의 에너지 및 식량 부족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3) 무역관리체제 개혁

폐쇄적인 자립경제를 유지하여 온 북한은 국가의 계획 아래 중앙집중 관리 방식에 의하여 대외무역을 추진해 오고 있다. 북한은 현재 국내적으로 동원가능한 물자를 기초로 수요공급과 관련된 경제계획을 수립하고 계획목표치와 투자계획에 따라 수입을 결정하고 있다. 수출은 수입재 원의 조달을 위한 방편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의 연도별 무역계획은 대외경제위원회와 개별 무역기업에 의하여 작성된다. 작성절차는 국가계획위원회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정무원의 승인을 거친 후 정무원 산하의 대외경제위원회가 이를 근거로 연간 무역 계획안을 작성하게 되어 있다. 동 연간 무역계획안에 의거하여 무역기업 별로 분기별 자체 수출과 수입안을 작성한다. 이 후 대외경제위원회는

수입계획안에 대하여 최종 수요처의 계획안을 검토·조정하고 수출계획안에 대해서는 생산기업의 실제 생산능력을 고려하여 조정한다. 국가계획위원회에서 국가 경제계획과 대비하여 최종적으로 조정한 이후 최고인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연간 무역계획으로 확정한다.

대외무역의 작성과정에서 보는 것처럼 북한의 대외무역은 중앙집권적인 지도와 통제 하에서 대표적인 무역기업들에 의하여 수행된다. 중앙계획기구는 연간 수입물자가 정해질 경우 수입물품의 성격에 따라서 해당 무역기업을 선정, 수입쿼터를 배정하며 이에 필요한 외환은 모두 중앙에서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북한의 대외무역관리상의 커다란 문제점은, 무엇보다도 국가의 대외무역 독점으로 인한 관료주의가 뿌리를 내려 무역기업의 대외거래에 대한 적극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또한 대부분의 기업들은 국가계획에 따라서 공급을 책임지고 있으면서도 무역업무를 수행할 권한이 없어서 대외무역에 대한 의욕이 없다는 것이 커다란 문제로 지적된다.

90년대에 들어오면서 북한은 신무역체계를 도입하여 ‘무역제일주의’를 표방하고 비교적 적극적으로 대외무역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신무역체계는 1992년 2월 “대외경제사업에서 혁명적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구체적 방안”에서 발표된 것인데, 주요 내용은 무역업무 권한을 정부원 각 위원회, 부, 도 행정단위에 부여하여 수출품 생산자가 자체 계획을 세워서 직접 수출입 업무를 하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가공무역, 제3국무역, 바터무역, 변경무역 등으로 무역형태를 다양화하고 무역상대국도 사회주의 국가, 개발도상 국가, 자본주의 국가 등으로 다각화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신무역체계는 무엇보다도 수출확대를 근본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수출상품이 부족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무역관리체제의 개혁의 효과는 수출품의 증가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무

엇보다도 수출할 수 있는 물량의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무역관리제도의 개혁 효과를 측정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의 무역관리체제의 개혁 내용도 과거에 비해서 무역기업 자율성의 확대, 제한적 외환 유보로 인한 자체 사업추진 범위의 증가, 무역기업 설립 권한의 분권화, 무역형태의 다양화 등의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개선되었지만 무역기업간 경쟁이라는 측면에서 크게 개선된 것이 없다. 이는 변화된 무역관리체제 하에서도 행정부문의 개입여지가 많기 때문에 무역기업들은 여전히 제한된 영역에서만 자율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2. 대외개방정책의 모색

(1) 대외개방 배경과 합영법의 제정

1) 추진 배경

북한은 1984년 1월 최고 인민회의 제7기 3차 회의에서 향후 5년 내지 6년 내에 사회주의 국가와의 교역을 10배로 증대시키고 외교관계가 없는 서방국가와의 교역도 확대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하였다. 이러한 대외개방 정책 추진에 대한 선언과 함께 후속조치로 동년 9월에는 외국인기업의 북한투자와 관련된 합영법을 제정·공포하였으며, 1985년에는 합영법 시행세칙, 합영회사 소득세법 및 동 세칙, 외국인 소득세법 및 동세칙 등을 제정·공포함으로써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법규들을 마련하였다. 나아가 제3차 7개년계획기간(1987~93)에는 북한의 대외무역 규모를 3.2배로 증가시켜 연간 100억달러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러한 대외개방의 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합영공업부가 1988년 12월에 신설되어 외국인 투자를 전담하게 되었으

며 무역정책의 기조도 수입대체에서 수출지향정책으로 전환되었다.

북한이 이러한 대외개방 정책을 채택하게 된 데에는 중국의 대외개방 정책에 기인된 바 크다. 중국은 1978년부터 경제개혁과 대외개방 정책을 채택하여 중앙집권적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시작하였다. 북한으로서는 인접한 중국이 주도하는 대외개방 흐름을 무시할 수만은 없었다고 볼 수 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원인으로서는 남한과의 대외무역과 경제규모의 격차가 빠르게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북한이 과거와 같은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를 유지하면서 폐쇄 경제를 지향할 경우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의 모순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남한과의 경제발전 경쟁에서도 더욱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은 북한이 대외개방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북한이 1970년대 중반 이후 야기된 외채문제로 서방국가로부터의 차관 형식의 외자도입이 불가능하게 되자 채무상환 부담이 없는 새로운 외자도입 방법의 하나로 외국인기업의 직접투자를 위주로 하는 대외 개방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대외개방 관련 법규의 개편과 주요 내용

북한은 1984년 대외개방에 필요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합영법」을 제정하여 실행해 왔다. 1985년 3월에는 정무원 결정 제14호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영법시행세칙」이 승인·공포되었으며, 5월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영회사소득세법 시행세칙」이 승인·공포되었다. 동 법령들과 세칙들은 북한 내에서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외국인 투자기업의 한 형태인 합영기업을 설립하여 경영할 수 있도록 투자환경을 조성하였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동 법규가 규정하고 있는 투자형태의 제한이나 제반 내용들은

실질적인 북한 내 투자를 활성화시키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았다. 따라서 북한은 1990년대 들어오면서 나진·선봉 경제특구의 설치와 함께 새로 운 외국인 투자 관련 법규를 제정·공포해 왔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북한에 보다 다양한 형태로 투자활동을 할 수 있도록 외국인 투자법을 1992년 제정·공포해 왔다는 점이다. 또한 1992년 10월에는 전문 21조로 이루어진 합작법 제정을 결정하였으며, 1994년에는 총 4 장 47조로 이루어진 새로운 합영법을 제정·공포하였다. 동 법규들은 현재까지 북한의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기본 골격을 이루고 있다.

외국인 투자법은 북한 현법 제37조의 “국가가 우리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와 다른 나라 법인 또는 개인들과의 기업합영과 합작을 장려한다”는 조문에 기초하여 외국인 투자의 유치와 실현에 대한 원칙적인 문제들을 22개 조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동 법은 나진·선봉지역의 자유경제무역지대 설치와 관련하여 동 지역에서 투자활동을 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우대조치들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제9조).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북한은 북한 내 일반지역에 투자하는 모든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자유경제무역지대 내에서의 투자활동 기업에 대하여 더욱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합작법에는 북한에서의 합작기업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과 관련된 제반 권리와 의무, 합작기업의 경영활동, 합작기업의 해산과 분쟁해결 절차 등을 밝히고 있다. 합작법에는 북한측 투자가와 외국측 투자가가 공동으로 투자하고, 북한측이 생산과 경영을 하며 합작계약 조건에 따라 외국측의 투자몫을 상환하거나 이윤을 분배하는 기업을 합작기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합영법은 합영기업을 창설, 운영하는 것과 관련된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합영기업의 설립, 합영기업의 기구와 경

영활동, 합영기업의 결산과 분배, 합영기업의 해산과 분쟁해결 등의 규제사항이 합영법의 기본 내용을 이루고 있다. 합영법에 따르면 투자 당사자들이 출자한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며 독자적으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다(제5조).

상기 법규들 이외에도 북한은 외국인 투자 유치와 관련된 법규들을 상당히 많이 제정·공포하였는데, 외국인기업법('92. 10)과 그 시행규정 ('94. 3), 외국투자은행법('93. 10)과 그 시행규정('94. 12),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법('93. 1)과 그 시행규정('94. 2), 외환관리법('93. 1)과 그 시행규정('94. 6), 토지임대법('93. 10)과 그 시행규정('94. 9), 외국투자기업노동규정('93. 12), 대외경제계약법('95. 2), 합영법 시행규정('95. 7)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법규들의 제정·공포는 북한의 외국인 투자유치에 대한 의지와 적극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들이다.

(2)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의 설치

1) 설치 배경

북한은 1991년 12월 나진·선봉지역을 중국의 경제특구와 같은 성격의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선포하고 보다 적극적인 대외개방을 추구하였다. 북한은 자유경제무역지대를 특혜적인 무역 및 중계수송, 수출가공, 금융·서비스 지역으로 정의함으로써 동 지역을 수출가공구, 자유무역지대, 중계무역지대 등의 복합적인 성격을 지닌 지역으로 개발하고자 하였다. 나진·선봉 경제자유무역지대에 대한 정무원 결정에 따르면 자유무역지대는 합영, 합작, 외국인 단독투자기업을 허용한다는 내용과 기업소득세의 감면을 비롯한 여러 가지 특혜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는 중국의 경제특구의 내용과 성격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투자형식의 허용 내용에 있어서도 중국의 방식과 유사하다.

이후 북한은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의 지리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보다 적극적인 추진내용을 1993년에 발표하였다. 북한이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설치를 중시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1980년 초부터 추진되어 온 대외개방의 부진을 들 수 있다. 북한은 합영법 발표와 함께 대외개방을 시도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경제개혁의 추진이 배제됨으로써 실질적으로 북한이 필요로 하는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다. 또한 에너지의 부족, 원자재의 공급 감소 등이 서로 맞물리면서 중공업 부문의 침체를 가속화하여 경제가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미 앞에서 살펴본 대로 구소련과의 대외경제관계 변화도 북한이 새로운 내용으로의 대외개방 추진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리라고 분석된다.

중국이 외자도입의 일환으로 경제특구를 설치하여 크게 성과를 거둔 것도 적지 않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는 경제특구 설치 지역을 평양과 같은 중앙 정치무대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에 설정하고 있는 것도 중국의 경제특구 지역 선정 방법을 그대로 모방하고 있다.

2) 법적 지위와 투자 우대 내용

북한은 과거 대외개방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그 동안 제정, 실행해 왔던 합영법을 통한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의 실적 저조가 법적, 제도적인 투자환경의 미비에 크게 기인한다고 보고 나진·선봉지역의 투자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몇 가지 법률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이와 관련된 법률로는 자유경제무역지대법,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인 출입규정, 외국투자기업 노동규정,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법, 자유무역항 규정,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기업 상주대표사무소에 관한 규정 등이 있다. 특별히 북한 내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일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투자법에서 조차 자유경제무역지대 내에서의 세금감면과 같은 우대조치 내용을 별도

로 추가하여 다루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북한의 외국인 투자 관련 법 규 제정의 일차적인 목표는 자유경제무역지대의 활성화임을 알 수 있다.

자유경제무역지대 투자와 관련된 직접적인 법규로서는 1993년에 제정된 자유경제무역지대법을 들 수 있다. 동 법은 모두 7장 43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유경제무역지대 내의 투자활동과 관련된 자유경제무역지대법의 기본, 관리기관의 권한과 임무, 경제활동 조건의 보장, 관세, 통화와 금융, 담보 및 혜택, 분쟁해결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특히 제4장 관세부문에서는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는 가공수출을 목적으로 이 지대 안에 들여오는 상품, 생산과 경영에 필요한 물자와 생산한 수출상품, 통과하는 다른 나라의 무역화물 등에 대하여는 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자유경제무역지대를 가공무역 수출전진기지로 삼겠다는 북한의 전략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 생산활동을 하게 될 경우 합영, 합작투자 뿐만 아니라 100% 외국인 단독투자도 가능하게 되며, 생산활동이 시작될 경우 기업소득세는 14%를 부담하고, 3년간 면세 이후 2년간 감면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북한의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의 투자우대 내용은 경제특구 내 생산제품에 대한 수출의무조항을 두지 않고 있다 는 측면에서 중국보다 제약조건이 엄격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기업이 필요로 하는 외환을 자체적으로 조달해야 한다는 점과 외환수지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의무조항 측면에서 보면, 생산제품을 수출해서 외환을 조달해야 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은 현재 중국이 적용하고 있는 내용보다 엄격한 수출의무조항을 지켜야 하는 입장에 있다.

3) 개발 현황과 외국인 투자 실적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의 설치가 발표된 이후 5년이 지난 현재 까지의 개발 실적은 많지 않은 편이다. 당초에 2010년까지 3단계로 설

정된 자유경제무역지대 개발 계획 가운데 1995년에 만료된 1단계에서 중점 건설대상인 사회간접자본의 건설은 극히 일부만이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에 있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유치도 커다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은 1996년 2월 일본에서 개최된 '96 니가타 동북아시아 경제회의'에서 나진·선봉지역의 투자계약 실적은 33 건, 3억 5천만달러이며, 실제 투자금액은 2,000만달러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1996년 7월의 일본 동경 투자 설명회에서는 계약실적 49건, 계약금액 3억 5천만달러, 실제 이용액은 22개 투자사업에 3,400만달러라고 주장하였다.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가 설정된 아래 계약된 금액과 실제 이용액 모두 큰 성과라고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실제 이용액이 계약액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어서 계약실행률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나진·선봉 지역에 대한 투자계약이 실질적으로 현 실화되는 과정에서 상당한 문제가 내재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1996년 9월의 나진·선봉 국제투자 포럼에서는 6개 투자 프로젝트가 체결되어 2억 8,600만달러 규모가 계약되었는데, 지금까지의 선례로 본다면 이러한 계약실적의 실행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계약 내용을 보면 투자계약의 2/3가 홍콩 엠페리 집단의 오성호텔 건설 및 은행 설립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나진·선봉 투자의 실질적인 성공 여부를 가능해 볼 수 있는 제조업 투자는 극히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고 볼 수 있다.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의 개발과 외국인 투자 유치가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에 기인된다. 첫째, 동 자유경제무역지대의 실질적인 투자환경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항만, 부두건설, 전력, 수송, 주거시설 등 외국인 투자기업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제반 기초시설 개발이 계획대로 갖추어지지 않음으로써 동 지역의 개발 가능성과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 예정기

업들이 의문을 지니고 있다. 둘째, 북한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으로 인한 북한경제 회생에 대한 의구심이다. 북한 경제가 회생하지 못할 경우 북한 내부의 정치사회적인 불안정성이 높아져 투자위험도가 커지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는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셋째, 이미 중국, 베트남, 여타 동남아 국가들이 상당히 안정된 대외개방 단계에 이르러 있기 때문에 북한의 경제특구는 이들 국가들과 외자유치 경쟁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 넷째, 북한의 대외개방 성패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한국 기업의 참여가 현재까지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도 큰 요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북한에 투자 예정인 외국기업들의 경우는 투자의 안정성을 위하여 한국기업의 대북한 투자와 이에 대한 북한의 태도를 주시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남북한의 긴장상태의 지속은 외국인 투자기업들로 하여금 대북한 투자에 소극적으로 임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3) 두만강지역 개발계획에의 참여

두만강지역 개발 구상은 1990년 7월 미국 하와이대학 동서문화연구센터(EWC)와 중국 길림성 과학기술위원회 아시아·태평양연구소(API) 공동주최로 중국의 장춘에서 열린 ‘제1차 동북아 경제기술발전 학술회의’라는 민간국제학술회의에서 처음으로 공식 제기되었다.

이후 두만강지역 개발사업은 유엔개발계획(UNDP)의 관심권에 들어가 1991년 3월 석탄 사용 및 대기 오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사용, 온대 지역 식량증산과 함께 UNDP의 4대 동북아지역 협력사업으로 선정되었다.

두만강지역 개발계획의 참가국은 중국, 북한, 러시아 등 두만강지역 접경 3국과 한국, 몽골 등 비접경국을 포함하여 5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옵서버국으로서 핀란드와 일본이 참가하고 있다.

북한은 두만강 지역 개발과 관련하여 1991년 12월 정무원 결정으로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설치하는 등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나진·선봉 지역을 대외개방 시범지역으로 지정하고 수출산업의 진흥과 항만 수수료 등의 수입을 통한 외화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초기에는 체제 수호를 위한 독자개발방식을 고집하다가, 최근에는 투자재원 확보를 기대하면서 제한적이지만 공동개발 방식을 수용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두만강 개발계획의 참여를 통한 대외개방의 의지는 중국과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와 함께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 북한, 중국의 적극적인 참여 의사와는 달리 동 지역에서의 중요한 이해 당사자국 중의 하나인 러시아는 큰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다. 러시아는 두만강유역 부근인 핫산지역의 철도망 건설과 포시에트, 자루비노항의 확충을 통한 중계무역지대 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자연보호지구인 두만강 연안의 핫산지역 개발보다는 개발여건이 확보된 블라디보스토크와 나홋카 지역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동 지역 개발에 경쟁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두만강 지역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면서도 우회적인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셈이다.

종합적으로 볼 때 두만강 개발에 대한 북한의 참여와 이를 통한 대외 개방의 유도는 중요한 이해 당사자국인 러시아의 입장 변경이 없는 한 제한적인 범위에서의 성과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또한 두만강 지역 개발 계획의 실현에 필요한 자금조달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두만강 접경지역은 도로·철도·항만 등 하부구조와 기반시설이 완비되지 못한 상태이므로 이를 정비하기 위하여는 막대한 자금과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다.

3. 대외개방정책의 문제점과 당면과제

(1) 대외개방 조건의 미비

사회주의 대외개방 정책은 일반적으로 무역과 투자 두 가지 측면에서 추진되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북한의 대외개방 정책은 몇 가지 중요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는 대외무역관리체제의 개혁 측면에 관한 것이다. 북한의 무역기업들은 무역기업 설립 허가권의 이전과 같은 대외무역관리체제 개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료조직의 통제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개별 무역기업의 활동상 자율성이 극히 제한되어 있으며 무역기업간 경쟁환경도 미비되어 있다. 무역기업간에 경쟁이 발생된다 하더라도 그 성과 여부는 경제적인 논리와 현실을 바탕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맥을 활용하는 것과 같은 비경제적인 논리, 즉 중앙에서의 인·허가, 혹은 수출입쿼터를 얼마나 받아내느냐 등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수출품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 하에서 경제적인 논리에 입각한 경쟁보다는 수출물량의 확보가 무역기업의 성과를 더 크게 결정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대외개방의 여러 가지 제반 조건들이 여타 사회주의 국가들에 비하여 떨어진다는 점이다. 이미 중국과 베트남은 일찍이 대외개방 정책을 추진하여 상당한 성과를 이루어냈다. 따라서 이들 국가의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조건이 북한의 것보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북한은 이들 국가들과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서 경쟁해야 한다. 그런데 북한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측면, 즉 정치경제의 안정성 여부, 외국인 투자기업의 활동보장 정도, 국제화 정도, 외환의 사용 가능성, 내수시장의 규모, 노동생산성 등에 있어서 이들 경쟁국가들에 비하여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 이는 북한이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노력

한다 하더라도 북한의 정치경제 부문의 안정성을 높이지 않는 한 한계가 있다.

셋째,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대외개방 정책이 경제개혁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국제경쟁력이 있는 수출상품은 북한의 기업들에 의하여 생산될 수 있어야만 대외개방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부분적으로는 대외개방과 경제개혁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업의 생산활동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제개혁의 추진은 답보 상태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대외개방의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2) 내수시장과의 연계성 부족

현재 외국인 투자기업의 중국, 베트남, 동남아시아 진출은 상당 수준에 도달해 있다. 이들 지역에 대한 초기 투자는 동 지역에 존재하는 풍부한 저임금 노동력을 이용하여 상품을 생산한 이후 해외시장으로 수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따라서 노동집약적인 상품생산을 위주로 하는 중소기업들이 이들 지역에 많이 투자 진출하였다.

그러나 현재는 이들 국가의 내수시장 판매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투자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즉 내수시장 지향형 투자가 보편화되고 있다. 이는 이들 국가들이 경제개혁과 대외개방 추진기간 동안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함으로써 소비자의 구매력이 상당수준까지 높아진 때문이다. 또한 시장경제가 보편적인 경제운동법칙으로 자리잡음으로 인하여 내수시장에서의 판매활동이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내수시장 판매로 획득한 이들 국가들의 화폐를 미국 달러화로 교환할 수 있는 외환시장이 성숙되어 있는 등 내수시장 진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적, 법적인 장치들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동기가 변화되고 있는 것을 고려해 볼 때 북한의 경제특구에 진출하는 외국기업들은 북한 내수시장의 미성숙과 각종 진입장벽의 존재, 소비자의 구매력 부족 등으로 북한의 내수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다. 단지 초기 투자시 외환획득이 용이한 호텔 및 관광자원 개발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높을 뿐이다.

따라서 현재 북한의 경제특구에 진출하는 외국기업은 북한의 저임금 노동력 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북한의 대외개방정책이 국내 내수시장과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진출동기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3) 경제개혁과의 동시 추진 한계

경제개혁과 대외개방의 성공을 위해서는 몇 가지 충족되어야 할 전제 조건이 있다. 그 중에 중요한 요인이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정치세력의 정통성과 안정성이다. 중국의 경우 경제개혁의 초기에 공산당 정권이 매우 안정되어 있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공산당 중앙에서 경제개혁과 대외 개방의 추진 속도와 방법을 점진적이고도 단계적으로 조정하면서 추진 할 수 있다. 경제개혁과 대외개방의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각종 의사결정 권한의 분권화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중국은 경제개혁과 대외개방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좋은 조건들을 지니고 있었다. 구소련에 비하여 공업화의 정도가 낮아서 개발도상국형 경제개혁을 추진할 수 있었고 계획의 세분화 정도 도 낮아서 시장의 도입과 확립에 훨씬 수월한 편이었다.

이에 비하여 북한의 김정일 정권은 대외개방정책의 추진과 관련된 정통성과 안정성 모두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대외개방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의사결정권한의 분권화를 내용으로 하는 시장경

제의 도입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이는 곧바로 김정일 정권의 불안정성을 야기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북한이 대외개방의 추진 속도에 비례하여 경제개혁의 수위를 맞추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따라서 대외개방은 국내 정치나 사회안정 유지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심스럽게 시도되고 있으며 경제개혁과의 동시 추진도 공산당 정권의 권력유지와 사회통제에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고 있다.

제 5 절 북한 경제체제의 한계와 향후진로

1.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모순 내재

현재 북한 경제의 어려움은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났다.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90년대 들어오면서 발생한 구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의 붕괴였다. 북한은 구소련의 붕괴로 말미암아 북한 경제에 필요한 자원, 물자, 그리고 에너지 등을 지원받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또한 경화결제의 요구와 북한의 부족한 외환사정도 구소련과의 경제관계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함으로써 북한 경제를 더욱 악화시켰다. 나아가 사회주의 국가들의 몰락은 북한 상품의 주요 수출시장을 상실하게 만들었으므로써 북한의 외환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여기에 연속된 자연재해는 심각한 식량난을 발생시켜 경제적 어려움을 배가시켰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북한 경제가 위기 국면을 맞이한 주된 원인은 북한 계획경제의 구조적인 모순 때문이다. 이미 제2절에서 분석한 바처럼 북

한의 계획경제는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노동시장의 경직성, 성과와 무관한 임금과 이윤의 획득, 관료조직의 경직성, 경쟁 부재로 인한 비효율적 생산과 소비, 불합리한 생산비용의 반영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 등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지니고 있는 모순을 모두 지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계획경제 내에 누적된 총체적인 모순과 구소련의 붕괴 등이 맞물리면서 현재의 경제 위기가 발생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경제개혁 추진의 제약조건 상존

북한은 이미 오래전부터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지니고 있는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등 자체 모순을 극복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경제관리제도 개혁을 추진해 온 것은 사실이다. 청산리 방법, 대안의 사업체계, 협동 농장의 관리체제 개혁, 독립채산제의 도입 등은 모두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관리제도 개혁은 모두 구소련, 헝가리 등 중앙집권적 사회주의 국가들이 오래전부터 계획경제의 모순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추진했었던 내용들과 유사한 것들로서 중국이 추진해 온 경제개혁과는 그 내용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었다.

이들 국가들의 경제개혁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리를 도입하여 계획경제의 모순을 극복한다는 명분 측면에서는 동일하지만, 경제 전반에 걸친 시장경제의 도입의 범위와 강도 측면에서는 상당히 다르다. 중국의 경우 점진적, 단계적인 경제개혁의 방법을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경제 도입의 범위와 정도는 기업관리, 가격책정, 임금 및 노동력 배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당한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현재 중국 경제는 전반적으로 시장 경제의 원리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으며 계획당국은 과거의 경제 계획 기능에서 거시경제 부문만 관리하는 기능으로 전환되어 있다.

이는 기업, 소비자, 생산자 등 모든 경제주체가 자율적으로 시장을 중심으로 경제행위를 하는 수준까지 이르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경제개혁의 성과는 이를 추진한 중국 공산당 정권의 정통성과 안정성에 크게 의존하였다.

반면 북한의 경우는 김정일을 중심으로 하는 노동당 정권이 경제개혁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이는 김정일 정권의 정통성이 중국 공산당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의사결정의 분권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제개혁이 추진될 경우 정권의 약화와 이에 따른 정치적 불안정성이 크게 증폭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북한의 경제개혁은 김정일 정권의 정치적 안정과 반비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시장경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폭넓은 경제개혁의 추진은 항상 김정일 정권의 안정이라는 제약조건 속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3. 대외개방정책의 한계

북한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외개방 정책도 크게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부진은 실효성이 적은 무역관리 체제의 개혁, 중국 등 여타 사회주의 국가와의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경쟁, 경제개혁에 의해서 뒷받침되지 않는 대외개방, 경제성장의 한계로 인한 내수시장의 협소,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경제적 조건의 미비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에 기인되고 있다.

이러한 대외개방 성과 억제 요인들은 근본적으로 북한의 정치경제적 취약성과 맞물려 나타나고 있다. 대외개방이 경제개혁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경제개혁으로 말미암아 발생될 김정일 정권의 불

안정 때문이며,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에 있어서 성과가 미미한 것은 대외개방 조건이 중국, 베트남 등의 여타 사회주의 국가들이나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비하여 크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여기에 한국과의 정치적 긴장 상태도 외국인 투자유치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대외개방 추진의 성과를 좌우하게 될 내외부 환경이 균원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한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대외개방의 성과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달성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4. 북한 경제체제의 향후 진로

북한 경제는 에너지와 원자재 공급의 부족으로 필요 물자생산에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식량난도 심각한 상태에 이르러 있다. 현재 북한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들은 무엇보다도 북한 계획경제체제의 구조적인 모순과 밀접하게 연관이 된 것들이다. 여기에 북한 경제를 둘러싼 외부적인 환경, 즉 구소련의 붕괴로 인한 대외교역의 급격한 감소, 수해와 같은 자연재해 등이 가세되어 겉잡을 수 없이 경제를 악화시켜 왔다.

북한은 현재 당면하고 있는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북한이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의 설치 등을 통한 대외개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이러한 북한 내부의 고심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정치경제체제가 지니고 있는 수많은 제약조건으로 인하여 대외개방 정책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향후 대외개방 정책의 성과는 이러한 제약조건들이 얼마나 해결될 수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북한 경제가 회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구조적인 모순들이 해결되어야 한다. 이는 북한이 어느 정도로 경제개혁을

추진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다. 그러나 경제개혁 성과 역시 김정일 정권의 정치적 안정성과 같은 수많은 제약조건이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 것이다.

결국 향후 북한 경제는 이미 앞 절에서 지적된 경제개혁과 대외개방 정책의 다양한 제약조건들이 어떤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 회생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그러나 북한경제가 수년간 계속해서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한된 기간 이내에 북한 경제체제가 당면하고 있는 제약조건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북한 경제가 현재 상태보다 더 악화된다고 할 경우 경제개혁과 대외개방의 어떤 처방도 경제회생의 약효로 작용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미 북한 경제가 회생불가능한 상태에 접어들지 않았는가 하는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구심의 근거도 여기에 있다. 따라서 북한 경제는 ‘백약이 무효’가 되지 않는 기간 안에서 어느 정도로 현재의 각종 정치경제적인 제약조건들을 해결해 갈 수 있느냐에 따라 그 향방이 결정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통일원, 『'92북한개요』, 1992.
2. _____, 『'95북한개요』, 1995.
3. _____, 『남북한경제지표』, 1995.
4. _____, 『북한경제동향』, 각년호.
5. _____, 『북한경제실태 및 남북경협문제』, 1995.
6. 산업연구원, 『북한의 무역구조』, 1991.
7. _____, 『북한경제 동향과 남북경협의 진로』, 정책토론회 자료, 1996.
8. 한국개발연구원, 『북한경제동향』, 1996.
9. _____, 『북한의 경제특구』, 1996.
10. _____, 『북한의 경제정책과 운용』, 1994.
11. 민족통일연구원, 『북한의 경제특구 투자환경 연구』, 1995.
12. _____, 『북한의 경제개혁과 남북경협』, 1995.
13. _____, 『북한의 대외경제개방정책 현황과 전망』, 1994.
14. _____, 『북한 국영기업소의 관리운영체제』, 1993.
15. _____, 『나진·선봉지대 개발계획과 남북한 경제관계 전망』, 1996.
16. _____, 『북한 경제제도의 문제점과 개혁전망』, 1996.
17. 사회과학출판사, 『경제사전(1)』, 1985.
18. _____, 『경제사전(2)』, 1985.
19. _____, 『경제사전』, 1970.
20. 과학백과사전출판사, 『백과전서』, 1983.
21. 조선로동당출판사, 『김일성저작선집』, 1982.

2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북한뉴스레터』, 각월호.
23. 한국비교경제학회편, 『남북한의 경제체제와 통합』, 박영사, 1995.
24.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통일준비』, 제2차 정기 학술회의자료, 1996.
25. 한국무역협회, 『북한경제의 이론과 실제』, 1996.
26. _____,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투자환경 안내서』, 1996.
27. 한국산업은행, 『북한의 외국인 투자법제』, 1994.
2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의 대외무역관리제도』, 1994.
29. _____, 『중국 국영기업 개혁의 전개와 전망』, 1993.
30. 한국은행, 『북한 GDP 추정』, 각년호.
31. 이태욱, 『북한의 경제』, 을유문화사, 1990.
32. 이근, 『발전개혁 통일의 제모델』, 21세기 북스, 1994.
33. 이상만, 『통일경제론』, 형설출판사, 1995.
34. 김광수, 『북한경제』, 숭실대학교출판부, 1994.
35. 황의각, 『북한경제론』, 나남, 1992.

V

북한의 대외관계

제 1 절 변화된 대외환경	181
제 2 절 북한의 대외정책	184
제 3 절 북한의 대외정책과 남북관계	212

● 이 장의 요점 ●

- 1990년대 북한의 대외정책은 동서 냉전체제의 해체 및 새로운 국제질서의 형성에 따라 이념외교와 함께 대외개방외교, 생존외교 등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북한 대외정책의 일관된 목표는 약소국으로서 자신의 체제안전을 도모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국제적 고립을 탈피하는 것에 두고 있다.
- 북한은 대외정책의 원칙으로서 ‘자주·평화·친선’을 들고 있는데 과거에는 친선을, 소련 및 동구공산권의 붕괴 이후에는 자주를 강조함으로써 체제에 대한 개방압력을 거부하는 전술적 변화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 또한 북한외교의 특징으로서는 이른바 ‘자주성’과 ‘혁명성’ 그리고 ‘정치-이데올로기적 목표와 경제-실리적 목표간의 갈등’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특성들은 북한의 대외경제협력 정책과 핵카드 정책에서도 혼재하여 나타나고 있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외교는 ‘공세적인 혁명외교’에서 ‘수세적인 체제수호외교’로 그 성격이 변화되고 있다.

제 1 절 변화된 대외환경

1990년대 들어와 북한은 소련의 해체, 동구 사회주의권의 몰락에 따른 외교적 고립과 경제난의 심화, 한국의 성공적인 북방외교(한·러, 한·중 수교)와 국제사회의 핵사찰 압력에 따른 안보 위기 등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3중고를 해결하기 위하여 북한은 ‘평양선언’(1992. 4. 8)을 발표하면서, 사회주의 정당간의 연대성 강화로 대응하였으나, 사회주의진영의 전반적 해체로 이렇다할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그에 따라 북한은 1993년부터 국제적 핵사찰 압력에 대해서는 미국과의 직접협상을 통해, 외교적 고립에 대해서는 대미·대일 관계개선의 모색을 통해, 경제 난 심화에 대해서는 제한적 개방정책의 추진을 통해 대응해오고 있다.

그런 맥락에서 김일성은 1994년 신년사를 통하여 “자주성의 원칙에 의거 사회주의 나라들과 단결하고, 빨력불가담 나라들과의 단결을 적극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자주권을 옹호하는 자본주의 나라들과도 선린 우호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거듭 친명하였다. 이를 토대로한 최근 북한의 지역별 외교관계의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북한의 대사회주의진영과의 관계는 연대성 강화전략의 지속적 추진¹⁾으로 인해 다소 회복되고 있으나,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진영의 해체에 따른 사회주의진영 자체의 축소로 인하여 약화상태를 면치 못하고

1) 김정일은 국방위원회 위원장 및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자격으로 쿠바의 카스트로 수상과 수교축전을 교환하였다. 「로동신문」, 1995. 8. 25; 한편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김일성 사망 1주기 추도전문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 보냄으로써 양국간의 우의를 과시하였다. 「로동신문」, 1995. 7. 8.

있다. 이에 북한은 경제적 위기 극복을 위해 최대 경제협력국가인 중국과의 협조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한·소 수교로 소원했던 러시아와도 경제분야에서의 협력을 다시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둘째, 북한은 과거에 비해 다소 위축되긴 했지만 ‘뿔뿔불가담 나라들’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즉 중국과 베트남의 지속적 개혁·개방에 따라 잔여사회주의 진영이 동요하자, 비동맹관계 강화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은 부총리겸 외교부장 김영남이 리비아 등 중동 5개국가 순방(1996. 4. 27~5. 15) 등을 비롯하여 총 60여개의 대표단으로 하여금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을 순방케 하였다. 그리고 1996년 당보·군보·청년보 공동사설로 대체된 신년사를 통해 ‘평화옹호 운동’을 새롭게 제기하였다. 또한 평화애호인민들과의 단결을 통한 제국주의 침략책동저지와 핵무기철폐 실현 그리고 아시아와 세계평화추구를 주장하고 있다.

셋째, 북한의 대미·일 및 대서방관계 개선은 다소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과거의 국제혁명역량과의 단결 상태를 보완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에 있다. 북한은 핵무기개발의혹 문제에 직면하여 대미 정부간 직접협상을 유도하고, 협상결과를 통하여 대미관계 개선을 진전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북한을 여전히 ‘테러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1995년 1월의 대북 경제제재 완화조치에도 불구하고, 대미교역상의 최혜국 대우나 특혜관세는 물론 수출입은행의 자금지원 및 식량지원의 혜택을 북한은 아직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북·일관계 개선도 순탄치 못한 상태에 놓여 있다. 양국간 수교교섭 회담은 제8차 회담(1992. 11) 이후 약 2년 이상 재개되지 못하고 있다가 1995년 3월 30일에야 노동당 대표단과 일본의 자민당, 사회당, 신당사키가케 등 연립 3여당 대표단이 ‘수교회담 재개 합의서’를 채택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 양국은 회담의 제조차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해 볼 때, 북한은 외교적 고립과 경제난을 해결하고 김정일 후계체제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현실적응적 대외정책을 모색할 것이며, 그 핵심은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김정일 정권은 ‘북·미 기본합의서’에 기초하여 대미관계 개선을 보다 활발히 추진할 것이며, 이를 토대로 주변4국 및 서방과의 관계개선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 2 절 북한의 대외정책

1. 대외정책의 기조

(1) 대외정책의 목표²⁾

한 나라 대외정책의 목표는 국가목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바, 과거 냉전기 북한의 외교목표는 당규약³⁾과 구 사회주의 헌법⁴⁾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즉 첫째, 최소목표로서 현존 북한체제의 유지 및 발전이며 둘째, 최대목표로서 한반도 공산화 통일과 전세계 공산화 달성이다⁵⁾. 이와 같이 냉전시기의 북한은 ‘혁명’과 ‘해방’을 완수하

2) 본 내용은 허문영, “전환기의 북한외교정책,” 『통일연구논총』, 제2권, 민족통일연구원, 1993; 『통일환경과 남북관계: 1995~1996』, 민족통일연구원, 1995를 참조.

3)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루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 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다.”(당규약 전문(前文), 당규약 전문(全文)은 부록 참조.)

4)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루하여 전국적 범위에서 외세를 물리치고 민주주의적 기초 위에서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여 완전한 민족적 독립을 달성하기 위하여 투쟁한다.”(북한 구사회주의헌법 제5조) 구사회주의헌법 전문(全文)은 통일원, 『'91북한개요』, pp. 483~498 참조.

5) “조선로동당은 자주성과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와 지배주의를 반대하며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 독립과 사회주의 공동위업의 승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투쟁한다.”(당규약 전문) “국가는 마르크스-레닌주의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에서 사회주의 나라들과 단결하고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세계 모든 나라 인민들과 단결하며 그들의 민족해방 투쟁과 혁명투쟁을 적극 지지 성원한다”(북한 구사회주의 헌법 제16조).

는 데 대외정책의 목표를 두고 있었다.

그리고 북한은 이와 같은 외교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노선으로서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혁명역량 강화, 남조선 혁명역량 강화, 국제혁명역량과의 단결·강화 등 ‘3대혁명역량 강화노선’을 채택하였다.⁶⁾ 한편 김일성은 최고인민회의 제8기 1차회의 시정연설을 통하여 “조선 혁명은 세계혁명의 한 부분이며, 사회주의의 완전승리와 조국통일의 혁사적 위업을 앞당겨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제혁명력량과의 연대성을 강화하고 우리 혁명에 유리한 국제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대외정책의 주요과업임을 주장하였다.⁷⁾

그러나 탈냉전 시대의 도래 등 대내외적 환경변화와 이로 인한 3대혁명역량의 전반적 약화는 북한의 외교목표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북한은 ‘맑스-레닌주의’(구헌법 제4조)를 개정헌법에서 삭제함으로써 더 이상 맑스-레닌주의가 북한의 활동지침이 아님을 천명하는 동시에 구헌법 제5조에 규정되어 있던 ‘전국적 범위에서 외세를 물리치고’라는 국가의 투쟁목표를 개정헌법 제9조에서는 삭제하였다. 그리고 개정헌법 제17조에 ‘자주·평화·친선’이라는 대외정책의 기본이념을 신설함으로써 맑스-레닌주의에 입각한 혁명과 해방의 투쟁노선을 완화시킨 모습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외교노선에 있어서도 맑스-레닌주의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보다 우리식 사회주의와 ‘자주성에 기초한 국제적 연대성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⁸⁾

6) 이 노선은 1964년 4월 2일 김일성 연설(‘조국통일 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백방으로 강화하자’)에서 체계적으로 드러나고, 1965년 4월 14일 김일성 연설(‘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의 사회주의 건설과 남조선혁명에 대하여’)에서 논리적으로 완성되었다. 『김일성지작선집』, 제4권, 조선로동당출판사, 1968, p. 94, p. 239.

7) 국토통일원, 『북한최고인민회의 자료집』, 제4집, 1989, p. 797.

8) 송원호는 제48차 유엔총회 연설에서 “우리 공화국은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고 유엔성원국들과의 연계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다”라고 하였다. 「로동신문」, 1993. 10. 8.

그렇지만, 아직은 북한이 외교목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것이라고 보기기는 어렵다.

(2) 대외정책의 기본방향

냉전시기 북한은 맑스-레닌주의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에 기초하여 외교정책을 전개해 왔으며, 이 시기 북한 외교정책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은 ‘진영외교’를 추진하였다. 북한은 체제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하여 이른바 ‘반혁명세력’으로부터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외교정책을 추구해 왔다. 그리고 진영론에 근거하여 (i) 자주성과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에 기초한 사회주의 나라들과의 단결 강화, (ii) 비동맹 제3세계 나라들과의 국가관계 발전 및 정치·경제·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단결과 협조의 강화, (iii) 우호적으로 대하는 자본주의 나라들과의 우호관계 형성 및 경제·문화교류의 발전, (iv) 지리적으로 가까이 있는 아시아 나라들과의 선린관계 발전을 위한 내왕과 접촉의 강화 및 경제 문화교류와 협조의 발전 등을 주장하였다.

둘째, 북한은 이른바 ‘자주외교’를 추진하였다.⁹⁾ 냉전기 북한은 중·소 분쟁 상황하에서 ‘지배주의’ 및 ‘패권주의’로부터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자주외교¹⁰⁾를 내세움으로써 김일성 정권의 공고화를 추구해 왔다. 중·

9) 그러나 북한이 지난 40여년간 중국과 소련 사이에서 자주성에 근거한 등거리 외교를 전개해 왔다기보다는, 김일성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시계추 외교를 전개해 온 것으로 분석된다.

10) 북한은 1966년 10월 조선노동당 대표자회의에서 ‘외교에서의 자주’를 선언하였다. “공산당 및 노동당들이 자율성을 견지하는 것은 국제 공산주의 운동에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주성이 보장되어야 매개 당들이 자기 나라 혁명을 잘하고 세계혁명에 이바지할 수 있으며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단결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자주성은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매개 당의 신성한 권리이며 매개 당은 또한 다른 형체 당들의 자주성을 존중할 의무가 있습니다.” 『김일성 저작집』, 제20권, p. 406.

소분쟁과 이에 따른 중·소간 대북 견인경쟁의 심화는 북한의 상대적 자율성을 확대시켰는 바, 북한은 중국과 소련의 대한반도정책이 북한의 입장과 어긋날 경우 국가목표와 이해관계에 따라 적극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이다.

셋째, 북한은 이른바 ‘혁명외교’를 추진하였다.¹¹⁾ 북한은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사회주의혁명을 일국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적 차원에서 완수할 것임을 지속적으로 천명하였다. 이를 위하여 북한은 대내적으로는 자력갱생 경제발전전략을 추진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반제 연대 및 아프리카·아시아 신생국가들과의 반식민지 연대를 통한 국제혁명역량과의 단결 강화를 추구해 왔다.

넷째, 북한은 이른바 ‘해방외교’를 추진하였다. 북한은 ‘하나의 조선’ 정책을 내세워 북한이 ‘미제국주의의 식민지’인 남한을 해방해야 함을 주장하는 한편, ‘조국통일’(한반도의 공산화통일)을 위하여 선 주한미군 철수·국가보안법 철폐·애국정권 수립 등의 전제조건 이행 후, 연방제로 통일해야 한다고 대외 및 대남 선전적 외교를 강화해 왔다.

이상을 정리해 볼 때, 냉전기 북한은 남조선해방과 공산혁명을 위해 진영론에 입각한 ‘자주’(시계추) 외교정책을 추구해 온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현재 ‘혁명’에 근거한 종전의 외교정책을 ‘국가(정권)이익’에 근거한 새로운 외교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과도기적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탈냉전기 북한 외교정책의 전개방향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은 혁명외교를 상대적으로 완화시키고, 실리외교를 보다 강

11) 김일성은 “국제혁명력량을 강화하고 그와의 현대성을 튼튼히 하는 것은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 있는 혁령로선”이라고 주장하였다. 김일성,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국토통일원, 『조선노동당대회 자료집』, 제4집, 국토통일원, 1989, p. 72.

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체제결속을 위해, “남조선 혁명 및 전세계의 공산화를 위한 국제혁명역량과의 단결 강화”라는 수사를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으나, 대외적 환경을 고려할 때 이를 완강하게 지속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그리고 남한과의 유엔 동시가입으로 인해 그 동안 주장해오던 ‘하나의 조선’ 논리가 국제사회에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바, 북한으로서는 혁명적 이데올로기를 고수하기보다는 경제적 실리를 추구해 나갈 전망이다.

이에 북한은 제한적 대외경제개방 외교를 보다 강화함으로써 점차 자력갱생 경제발전전략에서 대외개방 경제발전전략으로의 전환을 모색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동안 남한과의 경쟁 차원에서 이데올로기적 연대성 확보를 위해 전개해 온 아프리카 중시 외교정책을 체제유지 및 김정일 후계체제 공고화 차원에서 실리확보를 위한 동남아시아 중시 외교정책으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북한은 ‘남조선 해방’을 위한 이른바 ‘해방외교’에서 ‘북조선 사회주의’체제유지를 위한 ‘수호외교’로 방향을 전환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냉전기 북한은 남한에 대한 절대적 정통성 우위를 주장하는 한편, ‘하나의 조선’정책 추진과 3대혁명역량의 강화를 통해 ‘남조선 해방’ 논리를 정당화하였다. 그러나 이제 ‘하나의 조선’정책의 붕괴와 3대혁명역량의 약화에 직면하여 북한은 남북한 평화공존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동시에 대내적 정당화를 통한 체제결속을 위해 상대적 정통성 우위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북한은 전면적인 남북한 평화공존은 김정일 체제를 공고화하는 데 불리하나, 제한적인 남북한 평화공존은 유리한 바, 이를 위한 제반 정책들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북한은 진영외교를 단기적으로는 비동맹(뿔리불가담)외교로, 장기적으로는 개방외교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수교로 인해 북방삼각관계가 근본적으로 동요되었고, 러시아에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공고화되고 있으며 중국 또한 시장경제를 지향하고 있는 바, 북한으로서는 더 이상 사회주의 진영외교만을 고집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북한은 평양선언 채택 및 비동맹국가와의 관계강화 의지 천명, ‘남남협력’ 강조 등에서 보듯이, 비동맹외교를 단기적으로 채택하되, 경제난 타결 및 동맹관계의 재조정의 필요성 때문에 대서방외교 또한 추진해야 하는 바 장기적으로는 개방외교를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북한은 냉전기 중국과 소련 사이에서 지정학적·전략적 위치를 토대로 실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른바 ‘자주외교’를 전개해 왔으나, 중·소 화해로 인해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감소되자 유인외교(誘引外交)를 전개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체제유지 보장에 대한 반대급부로 대남 혁명노선과 대미·일 반제국주의 투쟁노선의 포기를 요청받고 있다. 이에 북한은 체제유지, 경제난 해결, 대외적 고립 탈피 등을 위해 대미·일 수교교섭 강화, 대중 동맹관계 지속, 대남교류·협력 모색 등 3궤도정책(Three-Track Policy)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단 북한으로서는 대내결속을 위해 ‘외부의 적’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동시에 대미관계 개선을 통해 체제유지를 도모해야 하기 때문에 ‘미제국주의와의 투쟁’ 슬로건을 약화시키고 상대적으로 대남 적개심 강화와 함께 ‘일본 군국주의 부활과의 투쟁’ 슬로건을 강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한편 중·장기적으로 미국과의 관계가 정상화되고, 동북아에서 다자간 협력이 강화되면 일본이 대북수교에 적극적으로 나올 경우, 북한은 일본과의 관계정상화도 다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요컨대 북한은 대중·러 견인경쟁 유발외교로부터 대5국(미·일·중·러·한국) 유인외교로의 전환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3) 결정과정 및 집행기구

1) 결정과정

북한은 기본적으로 ‘수령’ 중심의 1당독재체제로서 당이 모든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을 지도·감독한다. 물론, 외교에 관한 헌법의 규정을 보면 최고인민회의에서는 대외정책에 관한 기본원칙을 수립하고 조약의 비준, 폐기를 결정하며(헌법 제91조), 중앙인민위원회는 국가의 정책과 그 집행을 위한 대책을 세우고(헌법 제120조), 정무원은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으며 대외사업을 한다(헌법 제126조)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모든 정책을 당에서 결정하며 최고인민회의는 형식적으로 심의·결정할 뿐이다. 즉,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에서 기본방향이 결정되고 해당 비서국과 국제부에서 구체화되며 여기서 결정된 정책을 최고인민회의에서 추인하는 것이 상례이다. 이와 같은 결정과정을 거쳐 채택된 정책은 중앙인민위원회의 지도·감독 아래 정무원을 통하여 집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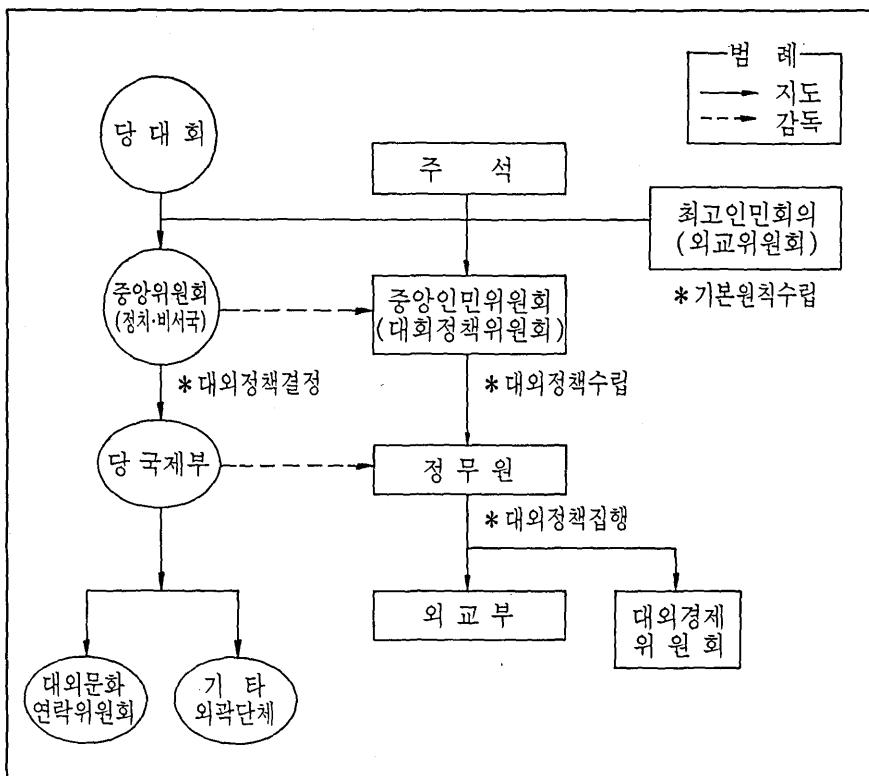
2) 집행기구

북한은 대외정책을 당적 외교, 국가적 외교, 인민적 외교 등으로 구분하여 전개하고 있다. 대외정책을 집행하는 주요기관들로는 당 국제부, 최고인민회의 외교위원회, 정무원의 외교부와 대외경제위원회, 그리고 각급기관의 산하기구 및 단체들이 있다.

① 당 국제부

당 중앙위원회의 국제부는 다른 나라, 특히 미수교국가의 정당들과 당 대당(黨對黨) 차원에서 외교활동을 하고 있다. 당 국제부는 사회주의 이념을 가진 이른바 사회주의 형제국가들의 정치단체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개별적인 민간인이나 단체차원의 교류를 위해 당

(표 5-1) 외교정책의 결정 및 집행기구



자료 : 통일원, 『'95 북한개요』, p. 417.

의 각종 외과조직들을 활용한다.

② 최고인민회의 외교위원회

최고인민회의도 외교위원회¹²⁾를 두고 대외활동을 전개한다. 외교위원회는 당비서와 외교부 부부장, 정당·단체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친선의회구루빠위원회’를 조직하여 IPU(국제의원연맹) 등 국제의원단체들은 물론 각국의 의회의원들과의 개별접촉을 통해 친선·우호관계를 유지·강화하거나 반한(反韓) 및 친북(親北) 선전활동을 전개한다.

12) 북한은 1990년 외교위원회를 설치, 대외 의원외교를 강화하였다.

③ 외교부

외교부는 외국과의 국교수립, 조약 및 협정체결, 재외공관 운영 등과 같은 일상적인 외교업무 외에도 통상 및 친선교류를 확대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이를 위해 관련기관들과 밀접한 협조관계를 유지한다. 현재 북한의 외교부장은 김영남¹³⁾으로서 박현영, 남일, 박성철, 허담에 이어 다섯 번째의 인물이다. 이들의 재임기간은 통상 5년 내지 10년으로 장기간이라는 것이 특징이다.

외교부는 10개의 지역 담당국과 함께 15개의 기능별 담당국이 있는 등 그 조직이 방대하다. 그리고 1990년대에는 대미·대일외교의 비중이 높아지고, 아프리카지역 등의 외교적 비중이 낮아짐에 따라 현재는 미국과 일본을 담당하는 기구를 신설·확대하고, 아프리카 관련조직을 축소하는 등 관련 전문인력을 재배치했다.

④ 대외경제위원회

북한은 1992년 11월 기존의 대외경제위원회에 무역부와 대외경제사업부를 흡수 통합하는 등 대외 경제정책기능을 보강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기구개편은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창설(1991. 12)에 이은 외국인투자유치 관련 법령의 정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외경제협력에서의 효율성의 제고가 그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외경제위원회는 산하에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등을 두고, 이들을 외국기업과의 투자유치 창구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⑤ 당의 외곽단체

북한은 민간개별접촉 및 대외선전활동을 위해 대외문화연락위원회, 국가별친선협회, 각종 연대성위원회 등을 당의 외곽조직으로 두고 있다.

13) 김영남은 1953년 모스크바대를 졸업하고, 1954년 당 국제부 지도원을 거쳐 1983년부터 현재까지 무려 13년째 외교부장을 맡고 있다.

대외문화연락위원회는 외교관계가 수립되지 않은 국가들과의 문화·예술분야에서의 교류·협력 등 이른바 인민외교 차원에서 관련국가의 인사들에 대한 방북 초청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 대외정책의 전개

(1) 대외관계 변천과정

북한은 정권형성 이후 지금까지 국제공산주의 운동, 민족해방운동, 자주화운동 등을 내세우면서 이른바 국제혁명투쟁 및 국제혁명역량과의 연대성 강화를 위하여 외교활동을 전개해 왔다. 이와 같은 북한의 외교활동은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그 형태를 변형해 왔는데 대체로 진영외교기와 다변외교기, 실리추구외교기, 대서방외교 강화기 등으로 나눌 수 있다.

1) 진영외교기(1948년 정권 수립~1950년대 초)

북한의 대외관계는 분단 초기부터 소련의 영향력 속에서 시작되었고 1953년 휴전이 성립될 때까지만 해도 소련의 영향권 안에 있는 공산주의 국가들과의 관계가 거의 전부였다. 수교한 국가 역시 소련, 중국, 동구제국(諸國) 등 12개국에 불과했다. 특히 6·25전쟁의 도발로 UN에서 침략자로 규정된 북한은 전적으로 소련을 추종하면서 중·소로부터 전쟁 수행을 위한 군사적, 경제적 지원과 함께 휴전협상과 관련한 외교적 지원회복에 치중하였다.

2) 다변외교기(1950년대 중반~1960년대 말)

휴전협정이 성립되자 북한은 전후복구 3개년계획(1954~1956년)을 수행하기 위해 우선 중·소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획득하기 위한 협력관계 강화에 주력하였다. 그러나 195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중·소 이념 분쟁을 이용, 등거리외교와 함께 신생독립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변 외교를 전개했다. 1955년 4월 아시아·아프리카지역의 신생독립국 29 개국이 참가한 인도네시아 ‘반동회의’에서 평화 5원칙¹⁴⁾이 발표되고, 당시 소련 수상 흐루시초프가 평화공존정책을 표방하자 북한도 중·소·동 구 등 공산국가에 국한되었던 진영외교를 탈피하여 다변외교로 전환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북한이 제3세계 비동맹국가들에 대한 외교적 접근을 시도한 것은 1956년 4월에 개최된 제3차 당대회에서 다변외교로의 전환방침을 밝힌 때부터이다.¹⁵⁾ 북한은 1956년 4월 당 외곽단체로 대외문화연락위원회를 만들어 제3세계 비동맹국가들에 대한 외교활동을 전개하였다. 기니 (1960. 6), 알제리(1963. 4) 등과 수교하는 등 1960년대에 북한은 제3 세계 비동맹외교를 적극 강화하였다. 이것은 아시아·아프리카지역의 신 생독립국가들이 대거 UN에 가입하고, 1960년 제15차 UN총회에서 남북한 동시 초청문제가 제기된 데서 비롯되었다.

1961년 9월 제4차 당대회에서 김일성은 첫째, 사회주의 국가와의 단결, 둘째, 제국주의 진영에 대한 반대투쟁, 셋째, 신생독립국가에 대한

14) 평화 5원칙이란 영토주권의 상호존중, 상호불가침, 내정불간섭, 평등호혜, 평화적 공존 등이다.

15) 김일성은 총화보고서에서 “상이한 사회제도를 가진 나라들과의 평화공존에 대한 레닌적 원칙을 견지하며 자주권의 상호 존중과 평등권에 입각하여 세계의 모든 평화애호국 들과의 정치적 및 실무적 관계를 맺기 위하여 노력하여야겠습니다”라고 발언하였다. 『조선로동당 제3차대회 주요 문헌집』, 조선로동당출판사, 1956, p. 12.

접근 등을 강조하였으며,¹⁶⁾ 같은 해 6월과 7월 소련과 중국을 방문하고 ‘조·소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조약’과 ‘조·중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조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이는 사실상의 군사동맹조약이다. 그러나 1962년 중·소간의 국경 충돌 등 중·소분쟁이 격화되자 북한은 중국에 밀착하였다가 다시 1965년 2월 소련 코시긴 수상의 방북을 계기로 대소련 편향 외교로 선회하였다. 이러한 중·소 양다리 외교에서 북한은 그들의 외교적 활로를 찾고자 1966년 8월 ‘내정불간섭과 호상평등’을 표방하면서 자주노선을 선언하고 이를 비동맹국 외교의 지침으로 삼았다.

3) 실리외교 추구기(1970년대)

북한은 1970년대에 들어 제3세계 비동맹국가들에 대한 다변외교를 확대하고 서방제국에 대한 접근을 모색하는 등 실리외교로의 방향전환을 모색했다. 북한의 실리외교는 1971년 11월 당중앙위 제5기 3차 전원회의에서 ‘국제정세에서 제기된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¹⁷⁾라는 의제가 토의되면서 본격화되었다.

북한의 실리외교 추진의 배경으로는 1971년 9월 중국의 UN가입과 1972년 닉슨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미국·중국 관계개선과 일본·중국 국교정상화 등 국제적 화해분위기의 성숙, 그리고 UN 및 기타 국제기구에서의 남북한 대결에 대비한 지지국의 확보 필요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으며, 대내적으로는 새로운 6개년계획(1971~1976년)의 추진에 필요한 자본과 기술의 도입을 위해 서방제국과의 경제협력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1973년 6월 한국이 평화통일 외교정책선언을 발표하자 북한은 이를

16) 『김일성 저작선집』, 제3권, 1968, pp. 195~196.

17) 『조선중앙년감 1972』, pp. 269~270.

“두개의 조선을 고착화하고 분단을 영구화하려 한다”¹⁸⁾고 비난하면서도 서방국가들과의 외교관계 수립에 고심하였다. 1970년대 중반에 들어오면서 미국에 대해서도 이른바 ‘인민외교’를 시도하는 한편, 1974년 3월에는 미국에 평화협정 체결을 제의하였다.¹⁹⁾ 그리고 비동맹외교를 적극 전개한 결과 1975년 8월 폐루의 리마 비동맹 정상회의에서 회원국으로 가입하게 되었으며, 같은 해 제30차 UN총회에서는 처음으로 한반도 문제에 관한 서방측 안과 공산측 안이 동시에 통과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에는 북한의 호전적인 대남전략, 그리고 외채 상환문제, 외교관의 밀수사건 등으로 국제적 위신이 크게 손상되어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

4) 대서방외교 강화기(1980년대 이후)

북한은 ‘조선혁명의 전국적 승리’라는 외교목표를 변함없이 견지하는 입장에서 1980년 10월 제6차 당대회에서 대외정책의 기본원칙으로 ‘자주·친선·평화’를 표방하였다. 이러한 명분을 내세워 공산국가와의 단결 강화는 물론 우호적으로 대하는 자본주의 국가와도 친선관계를 맺는다는 대서방 외교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1983년 10월 베마 아웅산폭파사건으로 서방제국으로부터 외면당하게 되자 평화공세의 한 수단으로 1984년 1월 중앙인민위원회와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연합회의를 열고 ‘조선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새로운 조치를 취할 데 대하여’라는 문제를 토의하고 남북한

18) 「로동신문」, 1974. 1. 26.

19) 북한은 1974년 3월 25일 최고인민회의 제5기 3차회의에서 ‘미합중국 국회에 보내는 편지’를 채택하여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을 제기하였다. 국토통일원, 『북한최고인민회의 자료집』, 제3집, 1988, pp. 857~859 참조.

과 미국간의 3자회담을 제의하였다.²⁰⁾ 한편 1984년 9월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는 만성적인 경제침체를 탈피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로 ‘합영법’을 제정하고 서방국가의 기술과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였으나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북한은 1990년대에 들어와 급격한 대외환경의 변화로 초래된 국제적 고립과 내부의 심각한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나진·선봉지역을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설정하고 외국인투자유치 관련법령들을 정비하면서 적극적으로 대미관계 정상화와 대일 관계개선을 도모하며 체제생존을 모색하고 있다.

(2) 수교 확대

1988년 서울 올림픽 개최 이후 국제정세가 급변, 공산권에서 개혁·개방이 확산되고 사회주의권의 붕괴, 소연방의 해체, 동구 각국들의 분할·독립 등으로 국가수가 급증했고, 북한의 수교국도 급격히 늘어났다. 당시 북한의 수교국은 111개국이었지만 국제적인 화해·협력의 분위기를 타고 1996년 12월 현재 수교국은 132개국에 달하고 있다. 북한의 재외공관으로는 1996년 12월 현재 상주대사관 50개, (총)영사관 3개, 대표부 11개 등 64개이다.

남북한의 재외공관 수를 비교해 보면 공관총수는 141:64로서 북한의 공관수는 한국의 절반 정도이다. 그리고 북한의 재외공관 설치에서 나타나는 특징으로는 재외국민²¹⁾ 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영사관(3개)보다 상역업무 또는 정치·외교적 연락업무를 수행하는 대표부(11개)의 수가

20) 「로동신문」, 1984. 1. 13.

21) 북한은 공민이라 한다.

〈표 5-2〉 남북한 수교현황

(1996. 12. 현재)

지역구분	한국	북한	동시수교
아주	33개국	19개국	18개국
미주	34개국	20개국	19개국
구주	50개국	35개국	34개국
중동	19개국	15개국	13개국
아프리카	46개국	43개국	43개국
합계	182개국	132개국	127개국

자료 : 외무부.

〈표 5-3〉 남북한 상주공관 설치현황

()는 북한

(1996. 12. 현재)

지역	상주대사관	(총)영사관	대표부	계
아주	20(13)	15(2)	(1)	35(16)
미주	20(4)	16	1 (2)	37(6)
구주	28(12)	5(1)	3 (7)	36(20)
중동	18(7)	1	(1)	19(8)
아프리카	14(14)	—	—	14(14)
계	100(50)	37(3)	4(11)	141(64)

자료 : 외무부.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이다. 한국의 경우는 대표부(4개)보다 영사관(37개)이 훨씬 더 많다.

그리고 북한의 재외공관이 설치된 지역별로 보면 상주대사관의 경우 아프리카(14개), 아주(13개), 구주(12개) 순으로서 아프리카외교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고, 또 영사관의 경우 아주(2), 구주(1)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은 해외동포 가운데 북한국적의 교포가

아주지역에 많이 거주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대표부는 프랑스, 독일²²⁾ 등 구주지역(7개)에 편중되어 있는데 이는 구주지역에 각종 국제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점과 관련이 있다.

(3) 국제기구 진출

북한은 1980년대 중반까지도 극히 선별적으로 국제기구에 진출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1980년대 후반부터는 그들에게 개방압력이 되지 않는 기구들을 중심으로 적극 진출하고 있다.

한반도문제에 관한 북한의 대UN정책은 1948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i) UN간섭 거부기, (ii) UN상정 거부기, (iii) 선별적 UN상정기, (iv) 상정유보기 등 4단계로 변모해 왔으며, 드디어 1991년에는 UN가입으로 급선회하였다. 즉, 북한은 1990년대에 들어와서도 ‘단일의 석하의 공동가입’을 주장하는 등 본질적인 변화를 보이지 않다가 결국은 심화되는 국제적 고립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남북한 동시가입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91년 9월 17일 제46차 유엔총회에서 남북한이 나란히 유엔회원국이 됨으로써 국제무대에서의 남북관계는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게 되었다.

북한이 가입한 국제기구로는 유엔을 비롯하여 유엔직속기구(2개), 유엔전문기구(11개), 유엔독립기구(1개), 정부간기구(10개) 등 24개이며 한국의 57개에 비해 숫자로 절반도 못된다(표 5-4 참조).

정부간 기구를 제외하고 유엔기구 중 북한이 가입하지 않고 있는 기구들로는 유엔전문기구에서 국제통화기금(IMF),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국제개발협회(IDA), 국제금융공사(IFC)와 국제노동기구

22) 독일 통일 후 동독주재 북한대사관은 이익대표부 형태로 남게 되었다.

〈표 5-4〉 남북한 국제기구 가입현황

(1996. 12. 현재)

구 분	유엔직속기구	유엔전문기구	유엔독립기구	정부간기구	합 계
한 국	2	16	2	37	57
북 한	2	11	1	10	24

자료 : 외무부.

주 : 한국은 북한이 가입한 24개 기구에 전부 가입하고 있음.

(ILO) 등이다. 북한이 노동자, 농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이 북한식 사회주의의 장점이라고 주장하면서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노동계급을 위한다는 그들의 정치선전이 허구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3. 주요국가와의 외교실태

북한은 그 동안 대미·일·중·러 관계를 공산이데올로기에 근거한 진영 외교논리에 의해 전개해 왔다. 그러나 3대혁명역량의 전반적 약화에 처한 북한으로서는 체제유지를 위해 실리에 근거한 새로운 대4국관계의 재정립이 필요한 바, 정치·군사적 보장은 대미 핵협상과 대중 동맹지속을 통해 확보하는 한편, 경제난은 대러 경제교류협력 회복과 대일 배상금 확보를 통해 해결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1) 대중국 관계

북한은 한·소수교 이후 러시아를 맹비난했던 것과 달리, 한·중수교 (1992. 8. 24) 이후에는 적어도 공식적 차원에 있어서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이는 중국이 북한에게 남아 있는 유일한 이데올로기적 동맹국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 공고화를 우선적으로 추구하고 있으며, 또한 중국도 변경국인 북한에서 돌발사태가 발생할 경우 자국의 경제발전과 안보에 위협이 될 것을 우려하여 북한체제가 유지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동북아 신질서 구축이 미국에 의해 일방적으로 주도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도 대북 우호관계를 지속하고자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북·중관계는 이념적 유대보다는 경제적 실리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

북·중관계의 현황과 전망을 요인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치체제 및 대내정책의 측면에서 중국은 혁명1세대의 퇴진에 따른 신권력구조 형성과 개혁정책의 지속적 추진의 특징을 보이는 반면 북한은 혁명1세대의 지속과 폐쇄정책 지속의 특징을 보이고 있으므로, 단기적으로 약간의 정책적 마찰이 예상된다. 또한 중국은 한반도에서의 영향력 확보와 경제발전을 위해 대북한 ‘변방외교’와 대남한 ‘실리외교’의 이중정책을 구사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대중 ‘전통적 친선관계’의 지속을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한·중수교 이후 중국에 대한 신뢰감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양국관계는 과거와 같은 수준의 동맹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평양축전(1995. 4. 28~4. 29) 기간중 평양-타이뻬이간 전세기 운항 및 2002년 아시안게임 개최지 선정시 북한의 대만지지 입장, ‘로동신문’ 북경 특파원에 대한 중국의 추방 결정, 강택민 주석의 방한(1995. 11. 13~11. 17) 등이 북·중관계에 긴장을 야기시켰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양국이 정치적 보수와 경제적 대외개방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나, 대내 경제개혁 및 지방정부 권한 강화를 북한으로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이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의 사회주의 발전전략이 개혁·개방 지향으로 변화되지 않는 한 양국간 경제부문에서의 마찰은 점차 심화될 전망이며, 사회주의 우호 가격에 의한 청산계정 처리방식의 교역도 점차 위축될 것이므로, 양국

경제관계는 이데올로기 위주의 ‘시혜적’ 협력관계에서 실리 위주의 ‘호혜적’ 협력관계로 점차 전환될 전망이다.

최근의 양국 경제관계를 살펴보면 북한의 경제난으로 인하여 양국간 경제관계가 점차 약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96년 상반기 북한의 대 중국 무역실적은 2.5억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8% 감소하였다. 북한의 대중국 수출은 전년 동기와 똑같은 3천만달러에 불과하였으며, 수입은 9% 증가한 2.2억달러를 기록하였다. 1996년 상반기 양국간 무역실적을 감안할 때, 1996년 총 교역규모는 전년도의 5.7억달러 수준을 크게 밀돌 것으로 전망된다.

군사적으로는 북한의 핵무기개발 의혹에 대해 중국은 전통적·이데올로기적 관계를 중시하는 차원에서 ‘협상과 대화를 통한 해결’을 제시하였다. 동시에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지지를 통해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분명한 반대를 표명하였는데, 이는 양국관계의 긴장요소로 작용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전 참가경험이 있는 현중국 군부의 고위 직은 북한에 대한 심정적 지원이 있기 때문에 양국간 군인사교류는 지속 될 전망이다. 또한 현 사회주의체제가 중국에 지속되는 한·북·중 동맹조약의 개정 및 폐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북한과 중국은 ‘조·중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조약’ 체결 34주년 (1995. 7. 11)을 맞아 쌍방간의 친선과 협력증진을 강조하였으며, 강택민은 방한 직전 북경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중간 군사동맹조약을 폐기할 의향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중국이 북한과 군사교류·협력을 통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려는 의도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1996년 ‘조·중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조약’ 체결 35주년에는 역사상 최초로 중국군함이 남포항을 방문하는 등 동맹관계를 과시했다.

요컨대 중국은 단기적으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유지라는 기조 하에

북한에 대해 변방외교 차원에서 정치·군사적 지원정책을 계속함으로써 대한반도 영향력 유지를 추구하는 한편, 남한에 대해 실리외교 차원에서 경제적 교류와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경제발전을 도모할 것이다. 이에 대응하여 북한은 중·러간의 대북 견인경쟁을 다시 유도하는 한편, 대미접근도 강화하여 현 김정일 체제유지를 위해 정치·경제적 실리를 확보해 나갈 것이다. 따라서 북·중관계는 점차 과거의 ‘혈맹관계’ 또는 ‘순치관계’로 표현되는 실질적·협력적 동맹관계(partnership alliance)에서 서로가 필요로 하는 보호적 동맹관계(protectorate alliance)로 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 대미국 관계

북한은 소련의 해체와 러시아의 공산주의 포기에 따라 중국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였으나, 4개 현대화 등 경제적 실리주의를 추구하고 있는 중국은 소련의 대안이 될 수 없었다. 물론 체제유지를 위해 석유, 석탄, 식량 등 최소한의 원조를 중국으로부터 받고 있으나, 북한의 구소련파의 교역량을 중국과의 교역확대로 대체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북한은 대서방 관계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다. 특히 전쟁 배상금을 타낼 수 있는 일본과의 관계정상화를 서두르게 되었다. 그러나 8차에 걸친 수교회담에도 불구하고 진전이 거의 없게 되자, 북한은 일본의 대북 정책 저의와 미국의 외교적 조정력을 고려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북한은 일본과의 회담을 중단하고, 미국과의 직접교섭에 적극 나서게 되었던 것이다.²³⁾ 북한이 대미접근을 시도한 단기적 의도는 현 북한체제에

23) 김일성은 워싱턴 타임스 기자와의 회견에서 “랭전의 종식과 함께 조·미 사이의 비정상적인 관계를 개선할 데 대한 문제가 일정에 오르게 된 것은 응당한 일”이라고 언급하였다. 「로동신문」, 1992. 4. 12.

대한 인정과 보장을 확보하는 데 있고, 장기적 목표는 주한미군 철수 및 한·미 동맹관계 약화 그리고 궁극적으로 공산화 통일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전세계를 상대로 하는 미국에게 있어 북한은 수많은 교섭대상 국가 중 하나로, 미국의 대북한정책은 한반도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동북아 및 세계전략의 일환으로 전개되고 있다. 미국은 1차적으로 동북아에서의 미국의 혜개모니(군사적 우위 및 안정된 경제관계) 유지, 2차적으로 이 지역에서의 냉전상태 해소를 지향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은 1989년 이후 대북한 관계개선에 전향적 입장을 취하였고, 최근 들어와 북한의 핵무기개발 저지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이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될 경우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초래하게 되어, 결국 미국의 핵확산방지정책에 배치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북한의 핵무기개발 의혹이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는 한, 북·미관계는 급속히 진전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 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 북한의 대미 요구조건과 미국의 대북 관계개선 전제조건이 상당히 충족되어 가는 형편이므로, 양국간의 관계개선 가능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북한은 (i) 북미 직접대화, (ii) 대북 핵 불사용 선언, (iii) 북한 사회주의체제 인정과 내정 불간섭, (iv) 주한미군 철수, (v) 팀스피리트 훈련 영구 중지, (vi)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 대체²⁴⁾ 및 3자회담 개최 등을 요구해 왔다. 그런데 북·미 제1단계 고위급회담 (1993. 6. 2~6. 11)에서 (i)(ii)(iii)조건이 충족되었고 (iv) 조건에 대

24) 북한은 외교부대변인 성명(1994. 4. 28)을 통하여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할 것과 현 군사정전기구를 대신하는 ‘새로운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할 것을 제의하였다. 동시에 군사정전위 북한측 대표의 철수(1994. 4. 28), 중국군 대표의 철수(1994. 12. 15), 중립국감독위 체코대표단 철수(1995. 4), 폴란드 대표단 철수(1995. 5. 28)를 통해 휴전 협정에 의해 설치된 군사정전위와 중립국감독위를 사실상 마비시킴으로써 정전협정의 사문화·무실화 전략을 추진하였다.

해 북한은 점진적 철수에 대한 동의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²⁵⁾ 또한 (v) 조건의 경우 북한의 핵의혹이 해결될 경우 중단고려 의사를 미국이 표명한 바 있으므로 (vi) 조건을 제외하고는 양국간에 상당한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미국은 (i) NPT 복귀 및 핵문제 해결, (ii) 남북대화의 진전, (iii) 미군유해 송환, (iv) 반미 적대선전활동 중지, (v) 테러행위 및 폭력불사용, (vi) 인권문제, (vii) 대량살상무기의 해외판매금지 등을 제기해 왔다. 그런데 (i)(ii)(iii)(iv)(v)조건에 대해 북한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미국은 평가하고 있다.

최근 북·미관계는 북·미 기본합의문(1994. 10. 21)²⁶⁾ 이행을 위한 각종 후속회담과 북한수재 지원, 양국 민간인의 상호방문 등을 통해 보다 진일보하고 있다. 특히 양국 정부간 관계는 큰 마찰없이 진전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미국상품 반입제한 조치와 미국선박 북한항 입항금지 조치를 해제하기로 결정(1995. 1. 9)하였고 미국도 통신 및 정보, 금융거래, 무역, 기본합의문 이행을 위한 기타 단계적 조치 등 4개항에 걸친 대북 제재 완화조치를 발표(1995. 1. 20)한 바 있다.

25) 1988년 11월 7일에 제안한 ‘포괄적 평화방안’에서 북한은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를 제안하였다. 이는 북한이 대미접근에 있어 과거보다 현실적인 인식에 기초하여 다소간의 변화를 보여준 것이다.

26) 북·미 기본합의문은 1994년 7월 8일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3단계 북·미 고위급회담에서 채택되었다. 제네바 북·미회담에서 채택된 합의문은 대외적으로 공개된 기본합의문(Agreed Framework)과 기본합의문의 내용을 좀더 구체화하거나 북한이 공개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포함된 비공개 합의문(Confidential Minute) 두 가지로 되어 있다. ‘기본합의문’에서 북한은 NPT에의 완전 복귀와 모든 핵시설에 대한 IAEA의 사찰 허용, 현재와 미래에 대한 핵활동의 전면 동결과 기존 핵시설의 궁극적인 해체를 약속하였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2003년을 시한으로 하여 북한에 2,000MWe 경수로를 지원하고 대체에너지로 중유를 연 50만톤까지 제공하며 쌍방의 수도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데 동의하였다. 또한 미국과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이행과 남북대화의 재개에도 합의하였다.

정치적 관계를 보면 양국은 경수로 협정 체결과 관련하여 경수로 전문가 회담 및 북·미 준고위급 회담(콜라룸 푸르, 1995. 5)을 개최하고, 그 결과 합의된 사항을 공동언론 발표문으로 공표(1995. 6. 13)하였다. 북·미 준고위급 회담에서 북한의 핵동결 유지, 사용후 핵연료봉의 처리, 대북 중유제공 등 북·미 제네바 기본 합의문의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들이 합의되었다.

북·미 연락사무소 개설 문제는 북·미 전문가 회담(1차 1994. 12. 6~12. 10, 워싱턴; 2차 1995. 1. 31~2. 3, 평양)에서 합의가 이루어져 (1995. 9. 29) 미국이 주북한 구 동독대사관을 연락사무소 건물로 사용 키로 하였다. 연락사무소 개설 시점과 관련, 미국은 남북대화 재개 여부를 전제 조건화하지는 않았다. 갈루치 대사는 “남북대화가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의 전제 조건은 아니다”고 말해 남북관계 개선과는 상관없이 연락사무소가 설치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또한 미국 정부는 북한의 수해복구를 위해 2만 5천 달러를 지원키로 했을 뿐만 아니라 유엔의 요청에 따라 20만 달러를 추가 제공하였다.

이처럼 정부 간 대화는 활발했던 반면,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미 의회는 북한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다. 미 의회는 수차례 결친 결의를 통해 북한 핵 의혹 해소를 북·미 관계 개선의 전제 조건화하도록 정부에 요구하였고, 북한에게는 남북 정상 회담 개최, 핵처리 시설 즉각 해체, 남북한 상호 핵사찰, 남북간 연락사무소 설치, 남북 공동 위사무소 설치, 남북한 무역 및 여행자 자유 확대 등을 촉구하였다.

북한은 김정일 정권의 안정을 위하여 연락사무소 개설 등 대미 관계 개선은 촉구할 것이나 자유화 물결이 두렵기에 관계 정상화는 자연시키고자 할 것이다. 북·미 수교 과정은 양국의 내부 정세와 남한의 입장, 미군 유해 송환, 미사일 개발 및 수출금지, 위조 달러 제조 문제 등 현안 문제에 영향을 받으며 서서히 진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3) 대일본 관계

북한은 일본의 자본 및 기술도입을 통해 경제난을 극복하는 한편 서방 외교를 추진함으로써, 한국의 북방외교에 따른 소련 및 중국과의 관계에서의 외교적 손실을 만회할 의도로 대일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반면에 일본은 1980년대 이후 경제대국화에 부합되는 정치적 대국화를 추구해 왔는 바, 대북 관계정상화를 통해 동북아에서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시키는 한편 자본과 기술에 의한 대북 경제협력을 통해 ‘환일본해 경제권’ 형성에서의 혜택모니를 장악하려는 의도로 대북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²⁷⁾

북한과 일본은 8차례의 수교 회담을 통해 주요 현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차이를 노정하고 있다.

첫째, 기본문제인 구한말 조약(을사보호조약 및 정미7조약 등)과 병합조약의 유·무효문제에 대하여 북한은 한반도에서의 정통성 확보 및 보상범위의 확대를 위하여 구조약의 무효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일본은 한·일 기본조약의 해석틀 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침이므로, 앞으로 상당한 논란을 거친 후 보상방식과 연계하여 합의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보상원칙 및 범위와 관련하여 북한은 교전국으로서의 보상, 식민지 지배에 대한 보상, 전후 45년의 피해와 손실에 대한 보상을 주장한 반면, 일본은 교전국으로서의 보상과 전후 보상에 대해 거부하는 한편 식민지 지배 보상도 재산청구권문제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따라서 보상문제는 북·일 양측의 입장 차이로 쉽게 타결되기

27) 허문영, “북한의 대일·미 교섭현황과 수교전망,” 『통일연구논총』, 창간호, 1992, pp. 63~64.

어려울 것이나, 궁극적으로 양측의 ‘정치적 타결’에 기초한 청구권 및 경제협력 방식으로 해결될 전망이다.

셋째, 기타 문제로서 북한이 제기한 재일 한국인의 법적 지위문제와 일본이 제기한 일본인 처의 본국왕래문제 및 이은혜 문제가 있으나, 수교회담의 본질적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북·일관계는 수교회담의 재개를 위한 접촉, 종군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과거청산 문제, 일본의 대북 쌀지원, 군사력 증강을 둘러싼 양국간의 공방 등으로 집약된다.

먼저 양국간의 수교회담 현황을 살펴보면 북한과 일본은 1990년 9월 28일 북한의 조선노동당과 일본의 자민당·사회당간의 ‘3당공동선언’을 통해 국교정상화 추진에 합의한 후, 1991년 1월 3일 제1차 본회담 개최 이래 1992년 11월 5일까지 8차례의 수교회담이 진행되었다. 최근 양국은 북한의 핵개발 의혹으로 중단된 수교회담을 재개하기로 합의(1995. 3. 30)하고 활발한 접촉을 보였다. 그러나 수교회담을 재개하기로 합의한 시점에서의 낙관적인 예상과는 달리 비공식회담(1996. 3. 19)개최 외에는 양국관계의 개선이라는 측면에서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북한은 일본이 북·일관계의 진전을 남북관계 개선과 연계시키고 있다고 비난하고 ‘과거청산’이 국교정상화의 전제조건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과거청산’을 수교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저의는 보상문제에서 일본측의 대폭적인 양보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일본 정계 지도자들의 망언 등 일본내 보수우익화 경향을 감안할 때 북한이 일본의 양보를 받아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과거청산과 관련하여, 북한이 최근 활발히 이용하고 있는 카드는 ‘종군위안부’에 대한 보상문제이다. 북한은 일본정부가 발표(1995. 6. 14)한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우호 기금 창설계획’을 격렬히 비난하면서 일본의 과거죄행에 대한 인정 및 진상 공개와 함께 민간기금이 아닌 국

가에 의한 보상을 강력히 촉구(1995. 7. 1)하였다. 이와 같은 북한의 태도는 이 문제를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반대하는 명분으로 활용함으로써 보상금 문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강화하려는 동기에 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북·일관계에서 주목을 끈 또 하나의 사안은 일본의 대북 쌀지원이다. 북한은 이성록 국제무역촉진위원회 위원장이 방일(訪日)하여 가진 연립여당 방북단 대표들과의 회담(1995. 5. 26)에서 쌀의 대여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일본은 북한에게 모두 50만톤의 쌀을 지원하기로 약속(1995. 6. 30, 10. 3)하였다. 또한 북한은 일본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고 군사력을 지속적으로 증강하고 있다는 비난공세를 계속하였다. 북한의 대일비난은 일본이 '95년판 '방위백서'에서 북한을 동아시아 지역의 안전보장에 대한 최대의 위협요인으로 지적한 것에 대한 반응이라 할 수 있다. 이같은 북한의 공세는 일본의 핵문제를 내세워 자신들의 핵문제를 희석시키는 동시에 수교회담에서 일본이 북한의 핵문제를 제기할 경우에 대비한 사전 포석으로 판단된다.

1996년 상반기 북한의 대일무역 총액은 2.3억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5% 감소하였다. 북한의 대일수출은 1.2억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8.6% 줄었으며 수입은 1.1억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0% 증가했다. 그러나 수출보다는 수입의 증가폭이 커 무역수지 흑자폭은 전년동기의 3,930만달러에서 3,293만달러로 감소했다. 1996년도 북한의 대일 무역규모는 최근의 상승세와 함께 하반기에는 쌍방간 무역이 증가하는 일반적인 무역추세에 비추어 지난해의 4.9억달러 수준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1995년 APEC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한 김영삼 대통령에게 무라야마 총리는 '대북수교 3원칙'을 제시(1995. 11. 19)했다. 무라야마 총리가 밝힌 3원칙이란 북·일관계 정상화는 한·일관계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고, 수교교섭은 남북관계의 진전과 조화를 이룬다는 원칙 아래 남북관

계 개선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며, 북·일수교 이전에 일본은 북한에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본이 3원칙을 충실히 이행하고 북한이 현재처럼 남북관계 개선을 도외시한다면 향후의 북·일관계 개선은 북·미관계 개선에 달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미·일 공조관계를 감안할 때 일본이 미국에 앞서서 대북관계를 개선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일본정부는 당분간 북·미관계의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대북관계를 조율할 것으로 전망된다.

(4) 대러시아 관계

한·소수교 직후 “달러로 사회주의 연대를 팔아먹었다”고 북한이 소련을 맹비난함에 따라, 북·소관계는 긴장관계로 돌아서게 되었고,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러시아의 출현에 따라 양국관계는 정치·경제·군사 등 전반적 측면에서 악화되었다. 그러나 최근 일부 러시아인들 가운데 러시아의 국익을 위해서도 북한에 대한 새로운 평가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며, 북한도 경제난 해결을 위해 러시아와 우호적 관계 회복을 바라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의 북·러관계는 남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등거리외교와 상호간의 실리추구라는 새로운 기조 위에서 재정립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북·러관계 강화요인으로서는 북한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지정학적 이해, 러시아의 대서방 견제 외교정책, 북·미 및 북·일 수교 가능성에 따른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 유지 노력, 한·러 경협수준에 대한 러시아의 불만, 북·러 경제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공동인식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북·러 갈등요인으로는 북한 벌목공의 인권문제,²⁸⁾ 북한의 대

28) 본 내용은 허문영, “전환기의 북한외교정책,”『통일연구논총』, 제2권, 민족통일연구원, 1993, 『통일환경과 남북관계 : 1995~1996』, 민족통일연구원, 1995를 참조.

러 채무상환문제, 러시아에서 자행되는 북한의 불법행위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양국관계의 변화추이를 요인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치적인 면에서 북한과 러시아는 더 이상 정치적 동질성을 추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북한이 냉전논리에 기초한 이데올로기적 동맹관계의 파트너로 생각할 수 없는 방향으로 체제변화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엘친 러시아 대통령의 방한과 ‘한·러 기본관계 조약’의 체결에 따른 한·러 유대강화는 북·러관계를 더욱 약화시킬 전망이다. 러시아는 과거 이데올로기에 근거한 대북관계에서 국가이익에 근거한 대북관계로의 전환을 모색할 것이다.

경제적인 면에서도 북한은 기존 대소 동맹관계에 의한 원조를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높은 인플레와 심각한 재정위기에 빠져 있는 러시아는 경제난 타결을 위해 체제개혁과 시베리아 개발에 열중하는 한편, 1992년부터 대북무역에 있어 우호가격 철폐 및 경화결제를 실시하였다. 반면에 북한의 경제 및 무역구조는 1980년대를 통하여 대소의 존적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소련의 해체에 따라 심각한 경제난에 봉착하게 되었다. 더욱이 소련산 플랜트, 무기 등이 지난 40여년간 북한 내에서 가동·이용되어 왔는 바, 북한으로서는 지속적인 자재공급과 부품조달을 위해 구소련 공화국들과의 관계유지 및 개선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따라서 북한은 실리추구적 입장에서 러시아 및 CIS 공화국들과 개별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북·러 교역량이 꾸준히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해주와 하바로프스크를 중심으로 하는 러시아 지방정부와 북한간의 경제협력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테서도 알 수 있다.

군사적 측면에서 러시아는 1996년 9월 10일에 맺어진 ‘조·러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이 효력상실되었으며, 그 후 새조약안이 준비중이

다. 그러나 러시아가 북한과의 경제협력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조약의 체결을 시사함으로써 북·러관계를 상호 실리추구에 바탕한 협력관계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양국은 일본의 ‘방위력증강 5개년계획’(1991~1995년) 및 1995년 말에 발표된 ‘신방위대강’ 추진에 따른 군국주의 부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한적인 의미에서의 부분적 군사유대관계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북방 4도의 반환을 주장하는 일본의 팽창정책에 대하여, 북한은 PKO 파견정책을 추진하는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따라서 양국은 대일 안보측면에 있어 공통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더욱이 북한군부의 엘리트들은 소련에서의 군사교육 경험으로 인하여 소련군부에 호의를 갖고 있다. 이러한 양국 군부의 인적 밀착은 양국관계 개선에 기여할 것이다.

요컨대 북한과 러시아는 갈등의 해소와 상호간 경제적 실리추구라는 측면에서, 미국과 일본에 대한 견제 및 관계개선이라는 정치적 측면에서 협력관계의 필요성에 공감한 듯하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북·러관계는 김일성의 사망과 러시아의 체제변혁에 따른 이념적 연대감의 상실로 말미암아 과거에 비해 취약성을 면치 못할 것이며, 양국이 모두 겪고 있는 경제난 때문에 당분간 현상유지 차원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 3 절 북한의 대외정책과 남북관계

북한은 현재 남한과 국제사회로부터의 강력한 변화의 압력뿐만 아니라, 북한 사회 내부로부터도 변화의 압력을 받고 있다. 북한이 현재와 같

은 폐쇄노선을 고집하면서 유일적 지배체제를 존속시키는 한, 그들의 최종목표인 ‘한반도 공산화 통일’ 전략의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나 체제유지와 경제발전, 그리고 정통성 확보라는 당면목표를 우선적으로 달성해야 하는 현실적 필요성에서 볼 때에는 전술과 행동유형에 있어서의 변화는 불가피하다. 더욱이 현재 처한 대내외 환경변화에 적응해 나가기 위해서도 북한으로서는 대외정책 추진에 있어서의 전술과 행동유형의 변화가 필요하다.

오늘날 국제조류는 이데올로기보다는 국가이익을 우선시하는 가운데, 교류와 협력의 확대를 통해 새로운 화해의 시대를 열어 나가는 추세이다.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이미 체제경쟁이 판가름 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당면한 경제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며, 낙후된 주민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켜야 하기 때문에 경제개방을 통해 외국의 선진기술과 자본도입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렇지 못할 경우 북한은 수습하기 어려운 총체적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

북한은 지금의 노선을 고집한다 해도 세계화의 물결을 거역하기 어려우며 시간이 흐름에 따라 대세에 떠밀려가는 양상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

지금 북한의 입장에서는 일시에 개혁 개방이 되면 지난날 역사 왜곡 등 폐쇄로부터 얻었던 이익들이 일시에 무너지는 사태로 겉잡을 수 없는 상황이 예견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신감이 축적될 때만이 최소개방으로 딜레마를 극복하고자 한다.

그에 따라 북한은 미국에게 평화협정체결을 주장하여 체제보장과 경제적 지원을 얻으려 하고, 일본에게는 적당히 자존심을 내세우며 전후배상금(50~100억 \$ 예상됨)을 받아 경제호전을 노리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에게는 예전과 같은 관계회복을 위해 노력중이다.

그러나 북한은 남한배제전략을 앞세워 내부체제결속을 다지고 있다.

그것은 북한이 경수로사업이나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의 성공 여부가 남한의 실질적 역할에 의해 판가름 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은 남한과의 대화와 교류 협력 등을 통해 관계개선을 원만하게 할 때만이 북한의 신뢰도나 입지가 확대 개선될 것이다. 그 연장선상에서 남북평화 공존체제의 정착과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안정이 이루어지며 또한 평화통일의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붕괴 논의가 많은 것은 북한 내부의 모순으로 인한 경제난이 심각하며 국제질서의 급속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이 당장 몇년 내에 붕괴될 것으로 단언할 수는 없다. 그것은 김정일 정권이 당·군·정 등의 상충부의 견고성과 대외정책의 선택능력이 있으며, 또한 공포정치의 지속으로 시민의식이 발달되지 못했으며, 북한주민들이 외부세계 비교에 의한 상대적 박탈의식이 미약 하며, 대미·일관계개선을 통해 대외생존의 틀이 양호해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미국, 중국, 남한 등이 북한의 급작스런 붕괴를 원하지 않는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여러 의도와는 다르게 김정일 정권이 붕괴될 경우에는 북한에는 정변과 더불어 주변국의 대북한 접근과 간섭이 심화될 것이 예상되고 있다.

이제 북한은 위와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주어진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스스로의 고립을 자초할 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북한의 선택이 북한의 장래는 물론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서, 북한의 현실적이고도 합리적인 선택을 기대해 본다.

참 고 문 헌

1. 민족통일연구원, 『러시아연방의 대한반도 정책』, 1992.
2. _____, 『미국 클린턴행정부의 동북아정책과 동북아질서 변화』, 1993.
3. _____, 『일본의 대북한정책』, 1993.
4. _____, 『남북관계와 미국』, 1994.
5. _____, 『미국과 일본의 대북한 관계개선과 남북한관계』, 1994.
6. 외무부, 『외교백서』, 1995.
7. 통일원, 『주간북한동향』, 1991~1995.
8. _____, 『'95북한개요』, 1995.
9. 내외통신사, 『내외통신종합판』, 58,59,60호, 1996.
10. 민족통일연구원, 『북한의 대외관계 변화와 남북관계 전망』, 1996.
11. _____, 『북한정세변화와 주변4국의 대한반도 정책』, 1996.

VI

북한의 교육과 문화·예술

제 1 절 북한의 교육	219
제 2 절 북한의 문화·예술	239
제 3 절 교육·문화·예술의 한계와 과제	249

● 이 장의 요점 ●

- 북한은 사람들을 ‘자주성과 창조성을 지닌 공산주의적 혁명인재’로 키우는 것을 교육이념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교육목표는 사람들을 ‘혁명화, 노동계급화, 공산주의화’로 규정하고 있다.
- 교육의 내용에 있어서는 사람들을 지·덕·체를 겸비한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키울 수 있도록 혁명성·과학성·현실성을 중시하고 있으며, 교육방법으로는 ‘깨우쳐 주는 교육’, ‘이론과 실천의 결합’,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의 결합’ 등을 채택하고 있다.
- 한편 북한의 문학예술은 미(美)의 추구라는 본래의 목적보다는 대중을 공산주의적 혁명정신으로 교양하는 ‘당의 무기’로서 기능하고 있으며, ‘인민적이고 혁명적인 사회주의 민족문화’의 건설에 그 목표를 두고 있다.
- 따라서 북한의 문예정책은 (i) 김일성 주체사상에 바탕을 두었다는 ‘주체의 문예이론’의 철저한 준수, (ii) 각종 문예활동에 있어서 ‘당성·계급성·인민성’의 관철, (iii) 당의 노선과 정책의 철두철미한 관철을 위한 무기화 등이다.

제 1 절 북한의 교육

1. 교육 이념과 목표

북한사회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사회의 주민 또는 성장세대가 어떠한 교육을 통하여 어떠한 인간으로 길러지고 있는가를 알아보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어떤 한 사회 구성원들이 정치·경제·사회·문화생활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고방식이나 행동양식은 일반적으로 그 사회의 제도교육을 통해서 대부분 형성되기 때문이다. 북한 교육의 기본방향은 북한의 제도적 교육활동 전체를 이끌어 나가는 근본원리로서의 교육이념을 통해 알아 볼 수 있다.

북한의 교육이념이나 목표는 북한의 정치지도이념과 무관하게 이루어 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북한의 로동당규약 전문은 “조선로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루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데 있으며, 최종 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다”라고 그들의 정치노선을 밝히고 있다. 1992년에 개정된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 제43조에는 “국가는 사회주의 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로, 지·덕·체를 갖춘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키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김일성이 1977년 9월 5일 발표한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에서 는 교육을 “공산주의적 인간을 양성하는 사상·문화교양의 무기”로, 그리고 교원을 “후대들을 혁명의 계승자, 공산주의자로 키우는 직업혁명

가”로 규정하고 있고, “모든 학생들이 개인주의·이기주의를 없애고… 집단주의 원칙에 따라…사회와 인민의 이익, 당과 혁명의 과업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도록 교양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사회주의 교육학이란 “후대들을 혁명화, 노동계급화, 공산주의화하여 김일성 수령에게 무한히 충직한 혁명투사를 양성하는 과학적 원리와 방법”이라고 정의되어 있다.¹⁾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북한의 교육이념은 후대들을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고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로, 지·덕·체를 갖춘 공산주의적 새 인간을 양성하는데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육이념으로서의 공산주의적 새 인간상이란, 궁극적으로 공산주의 이념과 주체사상을 가장 잘 실천할 수 있는 혁명성·계급성이 투철한 인간을 말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교육의 목표로서는 김일성과 김정일에게 무한히 충직한 혁명투사로서의 후대들을 혁명화·노동계급화·인테리화·공산주의화하는 데 두고 있다.

교육목표로서 혁명화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과 사회생활에서 낡은 것을 새 것으로 대체하는 사회적 변혁을 말하며, 이것을 교육에 의해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계급화란 노동계급적 선(善)을 설정하고 공산주의사회 건설을 위한 계급투쟁의 기틀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인테리화란 모든 사회성원들의 문화의식 수준을 대학졸업 정도로 높여 낡은 사회가 남겨 놓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차이를 없애고 근로자들의 완전한 평등을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모든 사회성원들을 혁명화·노동계급화·인테리화하면 결국 사상적으로 무장되어 공산화된 인간상이 된다고 본다.

1) 「교육체계 발표 15주년 교육일군대회」에 보낸 당 중앙위 축하문(1992. 9. 5).

따라서 북한에는 정치와 분리된 교육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결국 북한에서의 교육은 정치이념과 밀접한 연관성을 맺고 있으며, 학교교육은 그들의 정치이데올로기와 정치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일차적 도구로 간주된다. 그러므로 북한의 교육은 진정한 의미의 인간 개개인의 자아발전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청소년을 집단생활화하며, 병영화하기 위한 조직화과정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은 현재 탈냉전과 탈이념이라는 세계사적 추세로 인해 개방과 개혁을 통한 체제의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속에서도 ‘우리식 사회주의’에 걸맞는 ‘공산주의적 새 인간’ 양성이라는 기준의 정치사상교육을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김일성 사망 이후 김정일 체제의 유지와 주민의 사상적 이탈현상을 제어하기 위해 보다 강화하고 있다.

2. 교육정책과 교육제도

(1) 교육정책

오늘날 북한에서의 장기 교육정책을 제시하는 교육종합지침서로서는 1977년 9월 5일에 제정·공포된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가 있다. 이 테제에 의하면, 사회주의 교육학의 기본원리는 “사람들을 혁명과 건설에 주인답게 참가할 수 있는 사상과 지식과 건강한 체력을 가진 믿음직한 혁명인재로 키우는 것”이라고 한다.²⁾ 또한 사회주의 교육테제에서 제시한 교육이념과 목표는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모든 인민을 ‘혁명화, 노동계급화, 공산주의화’ 하여 공산주의적 새 인간을 만드는 것이다. 이와 같

2) 리영복,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의 교육』, 사회과학출판사, 1984, p. 88.

은 이념과 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원칙과 정책으로, 「테제」는 사회주의 교육사업의 4가지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교육에서의 당성과 노동계급성의 구현, 둘째는 교육에서의 주체의 확립, 셋째는 교육과 혁명 실천과의 결합, 넷째는 국가의 교육사업에 대한 조직진행의 책임 등이다.

북한의 모든 교육정책 수립과 집행은 노동당 중앙위원회가 총괄적으로 지도·감독한다. 교육의 세부사항은 그 밖의 각급 지방당 및 교육기관에 조직되어 있는 당기관들이 통제한다. 따라서 북한은 당에서 결정된 모든 정책들을 즉시 교육에 반영할 수 있는 일사불란한 체계를 가지고 있다. 당기관들은 항상 “매 시기마다 제기되는 당정책을 민감하게 반영 할 수 있도록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고쳐야 한다”고 촉구해 왔다.

이러한 당의 통제에 의해 북한에서는 집단주의적 교육원칙이 철저하게 반영되고 있다. 집단주의적 교육과 관련하여 「사회주의 교육테제」는 “조직생활, 사회정치활동을 강화하며 그것을 교수사업과 밀접히 결합하여야 한다. … 조직생활은 사상단련의 용광로이며, 혁명적 교양의 학교이다. 조직생활은 곧 정치생활이며 정치적 생명을 이어 나가는 과정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집단주의 교육원칙은 그 목표와 정책, 내용과 방법 등에 일관되게 나타나는 특징을 갖고 있다. 북한에서는 개인의 개성과 소질과는 관계없이 모두를 집단에 소속시켜 ‘수령과 당’을 무조건 따르는 정형화된 인간을 기르기 때문에, 이러한 집단주의교육에서는 전체를 위한 하나는 있어도 하나를 위한 전체란 존재하지 않는다.

각급 학교에는 각 연령층에 걸쳐 집단적 사상교양을 담당하는 정치조직이 있다. 인민학교에는 「소년단」(7~13세), 고등중학교와 대학단위에는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³⁾ (14~30세)이 노동당의 외곽 청소년

3) 「사회주의노동청년동맹」은 1996년 1월 동맹 결성 50주년 「대표자회의」에서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으로 개칭됐다.

조직으로 설치되어 있다. 또한 고등중학교의 고등반 학생은 「붉은청년 근위대」, 대학생은 「교도대」와 같은 준군사조직에 가입된다.

북한에서는 각급 학교 학생들의 노동력동원과 군사훈련을 제도화하고 있다. 헌법 제44조에는 “일반교육과 기술교육, 교육과 생산로동을 밀접히 결합시킨다”고 명시하고 「사회주의 교육체제」에서도 교육과 생산노동의 결합을 주요 교육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1959년부터 ‘학생 사회 의무로동’이라는 이름으로 노동력동원이 정규교육의 일환으로 되었다. 학생의 노동력동원은 대학생에서 인민학교 학생에까지 적용된다. 각급 학교별로 연간 무보수의 의무노동일수가 정해져 있으며, 1일 작업량도 할당된다. 대학생은 연간 12~14주, 고등전문학생은 연간 10주, 고등중학교 학생은 연간 4~8주, 인민학교 학생은 연간 2~4주의 의무노동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학생들의 의무노동시간이 주어져 있지만, 실제로는 노동참여시간에 제한이 없다. 왜냐하면 긴급을 요하는 과업을 해결한다는 구실로 학생들을 수시 동원하는 사례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북한의 학생들은 강도높은 군사훈련을 받음으로써 집단생활을 철저히 익히는 동시에 군사력 증강에 기여하고 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고등중학교 고등반에는 「붉은청년근위대」가 그리고 대학에는 1959년에 「대학로농적위대」로 발족하였다가 1974년에 「교도대」로 개편된 군사조직이 구성되어 있다. 고등중학교 고등반 학생이 되면 교내 군사조직에서 정규 군 못지 않은 고도의 군사훈련을 정기적으로 받는다. 대학생의 경우는 매주 실시되는 교내군사훈련 이외에 야외훈련 및 임영훈련까지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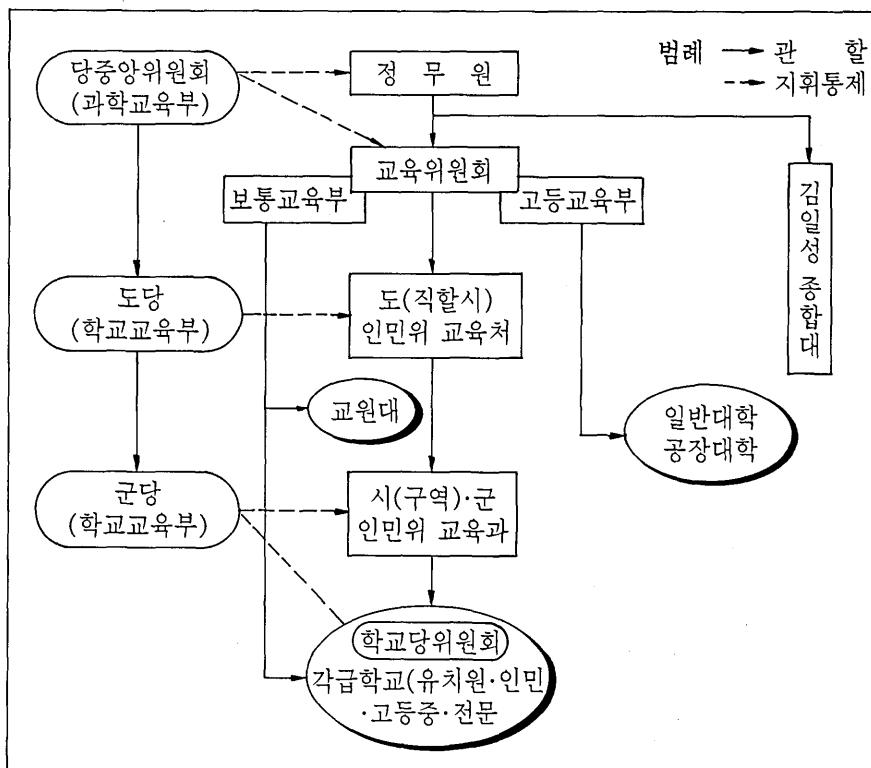
(2) 교육제도

1) 교육행정체계

북한의 전반적 교육체계는 노동당의 엄격한 통제와 감독을 받고 있다.

교육을 관掌하고 있는 당의 전담부서는 중앙위원회 비서국 산하의 과학 교육부이다. 이곳에서 주요 교육정책이 입안되고, 그 집행과정도 지도·감독한다. 각 도(道)당과 군(郡)당도 당해 지역의 교육행정을 통제하며, 각급 학교를 직접 지휘·감독한다. 행정적 집행기관인 정무원의 교육 위원회는 당에서 결정한 교육정책의 집행과 기타 교육행정을 담당한다. 교육위원회 산하에 고등교육부와 보통교육부가 설치되어 있다. 전자가 일반대학과 사범대학을, 후자는 교원대학을 포함한 그밖의 각급 학교의 교육행정업무를 수행한다. 예외로 김일성종합대학은 교육위원회의 관할 하에 있지 않고 정무원 직속으로 되어 있다.

〈표.6-1〉 학교행정 및 통제체계



2) 학 제

북한 정규교육의 기본학제는 4-6-4(6)제로서 인민학교 4년, 고등중학교 6년(중등반 4년, 고등반 2년), 대학 4~6년으로 되어 있다. 1974년부터 의무교육기간을 취학전 1년(유치원 높은반 : 5세), 인민학교 4년, 고등중학교 6년을 합쳐 모두 11년제로 하여 이를 점진적으로 실시하여 왔다.

11년제 의무교육 실시와 함께 북한은 무상교육, 일일·주·월 탁아소와 유치원교육을 대내외에 선전하는 데 주력해 왔다. 그러나 북한과 같이 모든 생산수단이 국·공유화되어 개인이 소비재 이외의 사유재산을 보유할 수 없는 공산체제에서는 유상교육이란 기본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사회주의국가에서는 국가만이 모든 생산시설과 교육시설을 소유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무상교육과 의무교육을 실시할 수밖에 없다.

북한에는 일반 정규학교 이외에 혁명학원과 예능·체육학교와 같은 특수학교가 별도로 설치·운영되고 있다. 이에는 만경대혁명학원, 강반석 혁명학원과 같이 특권층 자녀가 다니는 학교와 음악·무용·체육 등의 특기가 다니는 예체능계 학교 등이 있다. 예체능계 학생의 선발에서는 장차 해외선전활동에 종사하게 될 것을 감안하여 특기 이외에도 출신성분과 사상성을 중요시한다. 또한 전문과학기술자의 조기양성을 위해 1985년부터 평양을 위시하여 각 도에 1개교씩 과학영재학교인 「제1고등중학교」를 신설하였다. 이와 함께 고등교육기관을 증설하는 추세인데, 이러한 현상은 이제까지 사상교육에만 치중함으로써 과학·기술 발전에 필요한 기술인력의 확보가 부진한 데 따른 정책변화로도 볼 수 있다.

고등교육과정은 대학(4~6년)과 그 위의 연구원(3~4년), 박사원(2년)의 체계로 연결되어 있다. 그밖에 교원대(3년)와 고등전문학교(2~3년)가 있다. 북한은 이와 같은 정규학교 이외에 노동현장에 설립된 공장대학과 농·어장대학 등 성인교육기관도 운영하고 있다. 북한의 대학

은 종합대학, 단과대학, 교원대학 등 3종류가 있으며 교원대를 제외하면 대부분 4년제이다. 교원대학은 명칭 그대로 인민학교 교원과 탁아소, 유치원의 교원을 양성하는 곳이고, 사범대학은 고등중학교의 고등반 교원을 양성하는 제1사범대학과 중등반 교원을 양성하는 제2사범대학으로 나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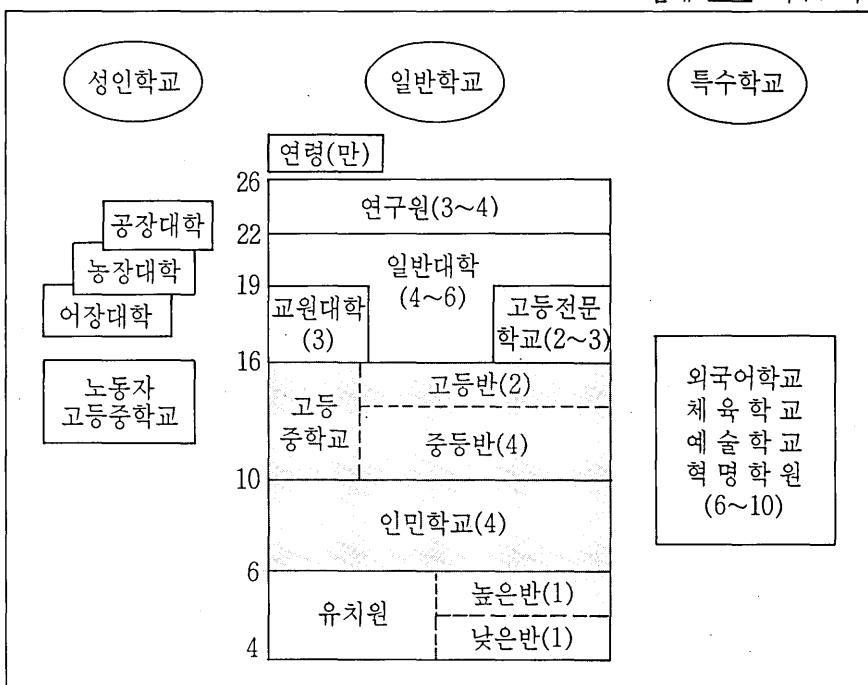
각 도와 주요 도시에 설립되어 있는 고등전문학교는 2~3년제의 직업 학교로서 각 산업분야에 필요한 숙련공과 기능공을 양성한다. 북한의 고등중학교 졸업생들은 고등전문학교에 진학하기를 종합대학 등 일반대학 못지 않게 희망한다고 한다.⁴⁾ 그 이유는 당원이나 행정간부가 되기보다는 시간적 여유가 많고 잡수입이 많은 직업을 선택하여 생활에 도움을 얻고자 하기 때문이다.

대학에 진학하려면 각 도 및 시·군에 조직되어 있는 「대학추천위원회」의 까다로운 추천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리고 대학입학자격고사를 치뤄야 하는데 치열한 경쟁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학진학은 고등중학교를 졸업하고 2~5년간 직장생활을 하거나 7년 이상의 군복무를 마치고 난 후에 이루어진다. 그러나 일부는 고등중학교 졸업과 동시에 대학진학의 특권이 부여된다.

1980년대 이후 매년 수십개의 단과대학, 고등전문학교 등이 설립되었다. 1977년 「사회주의 교육체제」의 발표 이후, 15년 동안 대학은 130 개가 더 늘어 모두 280여개가 되었다. 그 중 공장대학은 2.2배가 증가하였으며, 고등전문학교를 대학으로 승격시킨 것도 많다. 현재 북한에는 약 560여개로 추정되는 고등전문학교에 16만여명의 학생이 재학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내외통신」, 주간판 817호(1992. 10. 15).

(표 6-2) 학교교육 제도

범례 의무교육

북한은 각급 학교와 학생수에 대한 통계수치를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각종 보고문이나 선전물 등에 가끔 단편적인 교육관련 수치를 발표하는 경우가 있다.

한편 북한의 학기제도는 현재 4월 1일부터 시작되고 있다. 이것은 1996학년도부터 변경된 것이다. 북한의 학기변동은 지난 1969년 “당면 한 경제과업 완수를 위해 필요한 인력수급을 원활히 한다”는 이유로 4월 1일이었던 새학년도 시작일을 9월 1일로 변경한 후 27년 만의 일이다.

북한이 학기를 변경한 가장 큰 이유는 최근 청소년 학생들의 사상이 완을 감안, 4월의 김일성 우상화를 위한 생일행사 축제분위기에 편승하여 각급 학교의 졸업식 및 입학식을 진행함으로써 청소년 학생들에게 김일

성의 존재를 확고히 심어주고, 김정일로 이어지는 ‘대 이은 충성’을 유도 하려는 조치로 분석된다. 이번 학기 개편에 대해 평양방송(1996. 2. 10) 은 “김일성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 속에 김일성을 우리 민족의 영원한 수령으로, 김일성을 민족의 시조로 높이 모시고 김정일의 영도에 따라 조국통일 위업을 기어이 이룩하려는 주민들의 한결같은 의사와 간절한 소망을 담은 것”이라고 한 바 있다⁵⁾.

3. 교육과정과 주요내용 및 교육방법

(1) 교육과정

북한 각급 학교의 교육내용은 김일성부자 우상화와 대남혁명의식 고취 등의 정치사상적 내용과 생산과 건설에 유용한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기능적 내용으로 대별할 수 있다. 이 점은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과 교내 생활의 전반적 내용속에 잘 나타나 있다. 교육과정에 의하면 만 6세에 입학하는 인민학교 재학 4년 동안 국어 등 총 9개 과목에 대해 3,451시간의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표 6-3 참조).

인민학교의 교육과정은 통합적 경험을 학생들에게 전수(傳授)하기에는 부족하며 교과영역별 경험의 전수가 가능하도록 짜여져 있다. 인민학교 교과목 구조상의 특징은 국어가 전체 수업시간의 1/3을, 수학이 1/4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여 이 두 과목의 시간배당이 전체의 57%나 되나 자연과목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아 경시되고 있다.

5) 「내외통신」, 주간판 1000호(1996. 4. 11).

〈표 6-3〉 인민학교 교육과정

과목명	총시간	주당 수업시간수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김일성어린시절	152	1	1	1	1	1	1	1	1
김정일어린시절	152	1	1	1	1	1	1	1	1
국어	1,142	8	8	8	8	7	7	7	7
외국어	37							1	1
수학	834	5	5	5	5	6	6	6	6
자연	222					3	3	3	3
체육	304	2	2	2	2	2	2	2	2
음악	304	2	2	2	2	2	2	2	2
도화공작	304	2	2	2	2	2	2	2	2
계	3,451	21	21	21	21	24	24	25	25

자료 : 통일원, 『'95북한개요』, p. 344.

고등중학교에서는 6년간 수학 등 총 21개 과목에 걸쳐 6,742시간을 가르치도록 되어 있다(표 6-4 참조). 고등중학교의 학과영역별 비중은 수학을 위시한 과학계통이 단연 높고, 다음이 어문과목과 정치사상영역의 순이다. 고등중학교의 교과과정도 역시 통합적 경험을 가르치기 보다는 교과영역별 지식·경험을 가르치기에 맞도록 꾸며져 있다. 인민학교와 고등중학교 모두 교과과정에 정해진 수업일과는 관계없이 정치조직의 사상사업, 군사훈련이나 노동에 참여하는 등 집단적 조직생활에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교과목 수업 이외의 전체적인 학교교육 시간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

〈표 6-4〉 고등중학교 교육과정

구분 과목명	총시간	주당 수업시간수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김일성혁명활동	150	2	1	1			
김일성혁명역사	195				2	2	3
김정일혁명활동	112	1	1	1			
김정일혁명역사	110				1	1	1
현행당정책	102				(34)	(34)	(34)
국어문학	769	5	4/5	4	4	3	2
한문	251	2	2/1	1	1	1	1
외국어	591	3	3	3	3	3	3
역사	280		1	2	2	2	2
地理	344	2	2	2	2	2	
수학	1,283	7	7	6	6	6	7
물리	549		2	3	4	4	5
화학	381			2	3	4	4
생물	410		3	2	2	3	3
체육	309	2	2	2	1	1	1
음악	143	1	1	1	1		
미술	76	1	1				
여학생실습(여)	210	1	1	1	1	1	1
기계조작실습(남)	197						
지도	60				1	1	1
실습: 전자기계	120				(36)	(50)	(34)
선택과정	100					(26)	(74)
계	6,742	27	31	31	34		34

자료 : 통일원, 『'95북한개요』, p. 345.

주 : ()는 학년별 연간 수업일수.

1985년부터 인민학교에 ‘김정일 어린시절 따라배우기’ 교과목이, 고등중학교에는 김정일의 혁명역사와 혁명활동 등 2개의 교과목이 새로 추가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소련·동구의 변화에 대응하여 “우리식 사회주의에 잡사상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모기장을 쳐야 한다”는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 고등중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소련·동구 국가들의 역사교육을 중단하는 등 학습교재를 수정하고 보완하려는 노력이 있었다.⁶⁾

(2) 주요 내용

「사회주의 교육테제」에는 “모든 교육조건과 수단은 사람의 사상을 개조하는 데 복종하여야 한다” 혹은 “정치사상교육을 잘하는 기초 위에서만 과학기술교육과 체육교육도 성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교육내용이 정치사상성을 떨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사상성은 교과서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⁷⁾ 초·중등 국어교과서에서는 어문 교육의 목표가 무조건 김일성부자를 본받고 그의 뜻을 따르도록 하는 데 있다는 것을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다. 음악 등 예능계, 수학 등 자연계 교과서에서도 교과목 본래의 교육취지와 목표보다는 정치사상의 주입이라는 목표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북한의 각급 학교 교과서들이 정치사상적 내용, 특히 김일성부자 우상화 내용 위주로 구성되었다는 사실은 국어교과서에 수록된 단원의 주제영역별 분포와 음악교과서 노래 가사의 주제별 분포에 잘 나타나 있다. 국어의 경우, 인민학교 1~4학년 교과서의 총 161개 단원 가운데 64개 단원(40%)이, 그리고 고등중학

6) 「내외통신」, 주간판 771호(1991. 11. 22).

7) 통일원은 1992년 7월 북한의 인민학교 및 고등중학교의 각종 교과서 48권(1990년 및 1991년판)을 입수, 교과내용의 정치사상성을 분석하였다.

교 1~3학년 교과서의 총 75개 단원 가운데 32개 단원(43%)이 김일성 부자를 주인공으로 한 것이다. 음악교과서의 경우, 노래가사 가운데 김일성부자 우상화 내용이 인민학교는 57%, 고등중학교는 48%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표 6-5, 6-6 참조).

아래의 도표 가운데 국어교과서에서 단원의 주제가 읽기·쓰기·문법 등의 ‘언어생활’로 분류된 영역의 문장에서도 김일성 우상화 구절이 빠짐없이 포함되어 있다. 각 학년 국어교과서의 제1과에는 김일성을 찬양하는 시가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그 뒤는 대부분 ‘김일성과 어린이’에 얹힌 이야기를 소재로 한 단원이 잇고 있다. 음악교과서의 각 학년 제1과에는 김일성 찬양노래, 제2과에는 김정일 찬양노래를 수록하고 있다.

〈표 6-5〉 국어교과서 내용의 주제별 분포

구분 \ 주제	김일성	김정일	김일성 가 계	대남·미·일 적개심고취	공산주의 도덕교양	언 어	계
인민학교 (1~4학년)	32 (20)	25 (16)	7 (4)	13 (8)	31 (19)	53 (33)	161 (100)
고등중학교 (1~3학년)	16 (21)	9 (12)	7 (10)	10 (13)	12 (16)	21 (28)	75 (100)

주 : ()는 %.

〈표 6-6〉 음악교과서 노래가사의 주제별 분포

구분 \ 주제	김일성	김정일	김일성 가 계	적개심 고 취	사회주의 우 월 성	기 타	계
인민학교 (1~4학년)	40 (36)	20 (17)	5 (4)	17 (15)	13 (11)	19 (17)	115 (100)
고등중학교 (1~3학년)	18 (33)	6 (11)	2 (4)	9 (17)	10 (18)	9 (17)	54 (100)

주 : ()는 %.

김정숙 찬양노래도 교과서마다 들어 있다. 노래가사의 50% 이상이 이들 3명을 우상화하는 내용이며, ‘국가’(國歌)는 고등중학교 3학년 교과서에만 수록되어 있다.

수학 등의 자연계열 교과서에도 본문뿐 아니라 많은 연습문제가 김일성부자를 찬양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학 교과서에는 ‘김일성·김정일의 어린시절 이야기 책자를 몇번이나 읽었느냐’는 유형의 연습문제를 다수 수록하고 있다. 자연계 교과서의 각 단원 첫머리는 김일성부자의 교시로 시작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이빨이 튼튼하려면 잘 닦아야 합니다”와 같이 지극히 상식적이거나 평범한 것들이다.

정치사상교육 내용에서 주목되는 또 다른 측면은 착취사회와 착취계급, 제국주의 등에 대한 증오심을 고취하면서 이를 모두 대남 증오심과 적개심으로 비약시키는 것이다. 혁명투쟁심의 고취내용 유형은 대남 비방·모략, 지주·자본가의 탐욕과 무자비, 미·일의 만행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교과서의 문장은 미사여구가 아니면 반대로 호전적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일부 문구들은 극단적으로 자극적이며 비속(卑俗)하다. 예컨대 ‘배떼기를 찌르다’, ‘까부시다’, ‘피바다’, ‘원쑤’들과 같은 호전적 용어나 ‘혁명의 전취물’, ‘타승’(승리), ‘고지점령’(목표달성) 등과 같은 군사용어가 학교의 교육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이는 언어를 혁명과 건설의 무기⁸⁾로 간주하는 데서 오는 현상이다.

음악교과서에도 대남 증오심을 고취하는 노랫말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예컨대 “남녘땅을 짓밟는 원쑤 미제 일제 쳐부수려 나간다. 피에 주린 침략자 모조리 쳐부시자. 부모형제 피자국은 우릴보고 외친다. 아, 나 어린 어깨에 복수의 총을 메고 나섰다”⁹⁾와 같은 것이다. 이와 비슷한 가

8) 『문학예술사전』, 사회과학출판사, 1972, p. 1072.

9) 고등중학교 3학년, 「음악」, 제10과, ‘소년빨치산의 노래’.

사의 노래는 ‘소년근위대원의 노래’, ‘나는야 꼬마 명사수’, ‘꼬마 땅크 나간다’ 등 상당히 많이 있다.

수학교과서에는 남한 어린이의 비참상을 부각시키고 미·일에 대한 투쟁심을 고취하는 연습문제가 적지 않게 포함되어 있다. “남조선에서 학교에 못가는 아동의 숫자, 이중에서 구두닦기는 몇명이고 빌어먹는 아이는 몇명인가?”와 같은 문제를 반복해서 수록하고 있다. 자연계와 수학교과서의 연습문제 가운데는 군사지식을 전수(傳授)하거나 전쟁시에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예컨대 “군사놀이를 하면서 <암호>를 정했습니다. 보초가 부르는 수와 합하여 600이 되는 수를 불러야 우리편입니다. 보초가 239를 불렀습니다. 몇을 불러야 우리편입니까?”¹⁰⁾ 등과 같은 문제가 수록되어 있는 것이다.

정치사상교육의 소재들이 다른 학년이나 다른 과목에 반복되어 수록되고 있는 것도 북한 교과서의 특징이다. “수령님의 만수무강을 축원합니다” 등의 노랫말은 국어와 음악 등 여러 교과서에 똑같이 수록하여 반복함으로써 강화효과를 꾀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들의 지적·심리적 변화를 유도하여 김일성 부자체제에 순응시키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동일하거나 비슷한 주제와 소재의 문장을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차 구체화하여 반복·수록한 것은 기초교육과정에서 처음 짹이 튼 편향된 감성과 가치관을 학년이 올라갈수록 굳게 뿌리내리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북한의 초·중등학교 교과서 내용은 건전한 인격을 배양하고 폭넓은 지식을 전수하기보다는 정치사상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어 교육을 정치교화의 수단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0) 인민학교 2학년, 「수학」, ‘덜기’.

(3) 교육방법

「교육태제」는 교육방법으로서 ‘깨우쳐 주는 교육’, ‘이론과 실천의 결합’, ‘교육과 생산노동의 결합’, ‘조직생활·사회정치활동 강화’ 그리고 ‘학교전교육·학교교육·성인교육의 추진’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공산주의적 새인간’ 양성을 위해 집단교육, 반복교육, 조기교육, 그리고 평생교육을 통하여 다양한 교육방법이 동원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북한의 교육방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조직생활을 통한 정치사상 활동의 강화이다. 학교내의 정치조직들은 거의 정기적으로 상호비판과 자아비판시간, 이념학습, 조직규범에 대한 교양시간을 갖는다. 조직을 통한 정치사상교육에서는 ‘긍정적인 학습법’을 장려한다는 취지하에 인내력, 지구력 그리고 자발심을 고취·함양할 것을 강조한다. 그리고 집단주의의 교육방법뿐 아니라 이의 실천이나 생산활동과의 결합도 중요시한다. 학생에게 공부만 시키면 ‘머저리 인테리’, ‘양반 인테리’가 되기 때문에 노동을 시킴으로써 사상을 개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혹은 ‘산지식을 가르친다’는 명분으로 학생들을 수시로 생산노동에 동원하거나 혹은 집체적 군사훈련에 참여시키고 있다.

물론 이같은 교육방법의 실시는 학생 스스로 창의적인 사고를 하거나 외부환경에 자율적·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적합치 않다. 어떤 인간이든 집단과 조직에 대한 집착이 강할수록 개인의 독창성과 자율성은 위축되게 마련이다. 또한 교육과 훈련에서의 획일성 요구는 비인간화 현상을 동반한다. 집단주의원칙에 입각한 교육은 조건반사(條件反射)적인 인간집단, 위에서 시키는 대로 따라 하는 수동적·기계적 인간집단을 양성할 뿐이다.¹¹⁾

11) 북한의 교육방법에 관해서는 김경웅, 『북한정치사회화론』, 박영사, 1995 참조.

4. 유아교육과 사회교육

(1) 취학전 유아교육

국가에 의한 자녀 양육제도는 북한이 국가로서의 기틀을 다져가던 1947년 6월 13일 보건국 명령 제5호로 「탁아소 규칙」을 제정 공포함으로써 시작됐다. 설립목적이 “근로부를 위하여 유아를 맡아 보육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여성의 유휴 노동력을 동원키 위해 설립됐음을 알 수 있다. 그후 1970년에 개최된 제5차 당대회에서는 어린 이들을 사회적으로 양육할 것을 결정하고 1976년에 「어린이 보육교양법」으로 제도화됐다.

이 법에서는 어린이를 “공산주의 건설의 후비대이며 대를 이어 혁명 할 세력”으로 규정하고, 유아원과 탁아소의 운영을 통해 “모든 어린이를 주체형의 혁명적 인간으로 키우고 모든 여성은 어린이를 키우는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며 온 사회를 혁명화·노동계급화하는 데 이바지할 것”을 밝히고 있다.

유아는 태어나서 빠르면 30일부터 3세까지 탁아소에서, 4세에서 5세 까지는 유치원에서 양육·교양된다. 탁아소에서 양육된 유아는 4세가 되면 유치원으로 보내진다. 유치원은 낮은 반 1년과 높은 반 1년으로 나누어진다. 이 중 높은 반 1년은 의무교육에 포함되어 있다. 1995년 현재 탁아소 2만7천여개를 포함해서 약 3만7천여개의 시설에 수용되는 어린 이의 숫자는 3백5십만여명에 달하고 있다.

유치원에서는 특히 사상교양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는 “국가는 어린이들이 우리의 과거를 잊지 않고 남조선 인민들을 잊지 않으며 우리의 사회주의 제도와 휘황한 공산주의 미래를 사랑하도록 교양한다. 또한 어린이들을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정

신으로 교양한다”라는 「어린이 보육교양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특히 김일성 사후 북한은 1995년 중반경부터 「어려서부터 충실성 교양을 잘 해야 한다」 제하의 자녀교육지침서를 발표하고 유아를 대상으로 한 사상교양을 강화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북한의 취학전 유아교육은 위에서 보았듯이 국가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북한은 사회보장의 완전한 실현이며 여성해방을 위한 걸림돌의 제거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북한의 그와같은 주장에도 불구하고 유아교육은 김일성과 김정일에 충실한 전형적인 북한식 인간생산 창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성해방과 교육이라는 명분으로 진행되고 있는 북한식 유아교육은 어린이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능력의 신장가능성을 전적으로 무시하고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해 충성하고 획일적으로 주조화된 인간을 배양한다는 의미에서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의 침해라고 볼 수 있다.

(2) 성인사회교육

북한에서는 학교 학생들만 정치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전주민에 대한 정치학습과 재교육이 광범위하게 실시되고 있다. 당의 간부와 일반당원, 주요 기관과 단체의 간부요원을 재교육시키는 정치교육기관이 설치·운영되고 있다. 이런 기관으로는 김일성고급당학교, 도(道)공산대학, 군(郡)당학교, 인민경제대학 등을 들 수 있다. 이곳에서는 당과 행정기관의 간부 가운데 비판을 받고 현직에서 축출된 사람들에 대한 재교육도 실시한다.

북한에서는 지위고하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정치학습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되어 있다. 「사회주의로동법」은 “8시간 일하고, 8시간 쉬고, 8시간 학습하는 원칙을 철저히 관철한다”(제33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간부나 일반주민에게 하루 2시간 이상 학습하는 습관을 가지라고 강조한다. 정무원의 부장을 비롯한 중앙의 간부들은 매주 토요일 오후학습을 받으며, 1년에 1개월씩 강습을 받도록 되어 있다.¹²⁾ 일반주민들은 직장과 지역단위로 실시하는 각종 정치학습에 의무적으로 참가해야 한다.

학습의 종류는 강습회, 강연회, 자습회, 작업전에 진행하는 독보회와 조회 등이다. 학습자료는 주로 김일성노작과 로동신문 등이며, 그밖에 주요 학습수단은 공장이나 마을, 거주지별로 집단 청취하도록 되어 있는 라디오방송이다.

주민학습을 담당하는 기관은 노동당의 외곽단체인 직업총동맹, 농업근로자동맹,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여성동맹 등이다. 이러한 사회단체의 성격과 임무는 ‘당의 적극적 방조자이며 공산주의 학교’로 정의되고 있다. 북한에서는 학습이 조직생활에서 빼어놓을 수 없는 중요한 구성부분이기에 전사회적 규모에서 학습을 생활화·습관화하라고 촉구한다.

북한의 선전매체에 의하면 “매일 2시간 이상의 학습, 1주일에 1번씩 강연회 및 정기강연, 화요학습, 반나절 학습, 해마다 현직 간부들을 재교육하는 한달 학습을 실시한다”고 한다. 그밖에 농사를 지으면서 하는 밭머리 학습, 행군 중의 문답식 학습, 전투를 수행하면서 실시하는 군정학습 등 다양한 종류의 학습을 소개하고 있다. 이들 학습목표는 두말할 것도 없이 김일성부자의 효자와 충신이 되기 위해 그들에 대한 충실성을 신념화, 양심화, 도덕화, 생활화하는 데 있다.

12) 『조선중앙년감』, 조선중앙통신사, 1976, p. 189.

제 2절 북한의 문화·예술

1. 북한문화의 특성

북한은 수령이라는 특정 개인에 대한 충성을 절대가치로 설정함으로써 문화정책과 목표 및 향유방법이 정치적 목표에 종속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북한의 문화는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하여 온 사회를 혁명화, 노동계급화하는 데 복무하는 수단”이며, 모든 문화활동은 공산주의적 인간개조, 노동의욕 제고 등 당정책을 구현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또한 북한의 문화는 혁명성에 바탕을 두고 있다. 즉, 문화도 혁명수행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화혁명은 사상·기술혁명과 함께 3대혁명의 구성부분이다. 김정일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수행하는 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총로선”이라 강조했다. 3대혁명은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할 때까지의 과도기단계에서 수행할 당면한 전략적 과업으로 강조되고 있다. 과도기단계에서의 혁명목표로는 이른바 ‘물질적 요새와 사상적 요새’라는 두 개의 고지점령이 제시되고 있다. 여기서 사상적 요새의 점령이란 온 사회를 혁명화, 노동계급화하여 사람들의 사상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상적 요새를 점령하자면 사상 혁명과 함께 문화혁명의 수행도 강조된다. 문화혁명은 “사회주의 국가가 수행해야 할 기본적인 혁명과업”의 하나로, 사상혁명과 함께 인간을 개조하여 공산주의 사회의 주체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고 있다.¹³⁾

13) 김정일의 담화, “사회주의 건설의 역사적 경험과 우리 당의 총로선,” 1992. 1. 3.

결국 북한에서의 문화란 독자적인 목적과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주체사상과 3대혁명에 입각한 공산주의적 정치사회화의 수단적 의미를 갖고 있다. 정치선전에서 학교교육은 물론, 문화예술도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문화와 예술에서 당성, 계급성, 인민성의 원칙을 구현한다는 전제하에 민족문화의 계승·발전과 예술의 대중화를 추구하고 있다. 북한의 문화는 김일성부자체제와 당정책을 정당화·합리화하는 도구로 전락함으로써 ‘이념문화’, ‘목적문화’, ‘우상화 문화’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북한이 문화를 혁명투쟁의 무기로 보는 한, 문화는 정치에서 미분화된 상태에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문화정책 역시 단순히 학술, 예술, 민속, 체육, 언론, 교육 등 어떤 특정 문화적 영역에만 국한된 정책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의 이념문화에 예속되고 이밖에 가족에 관한 정책, 언어 및 국어교육 정책, 나아가 법의식에 관한 문제에서부터 정치활동에 이르기까지를 포괄하는 정책으로 되는 것이다.

문화혁명의 대상에는 근로자들의 문화기술 수준을 높이고, 생산문화와 생활문화를 확립하는 것까지 포함된다. 문화기술 혹은 생산문화란 근로자들이 노동시 필요한 기술적 지식, 예컨대 화학비료의 시비(施肥), 트랙터 이용과 관리방법 등을 말한다. 생활문화는 일상생활에 있어 환경위생정화와 질서확립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사회주의 생활양식과 같은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문화혁명의 가치 아래 소위 ‘군중문화사업’이 보다 강조되고 있다. 집단적 생활양식을 ‘군중문화’라 하는 것과 같이 군중문화사업은 집단화된 경제생활에 대응한 집단적 문화사업이다.

군중문화는 서구사회의 개인주의 및 대중문화와는 달리 인간, 사회, 자연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기 위한 역할을 해야 한다. 북한문화의 구조적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항상 정치적 목적과 결부된 전체주의적 집단주의 성격을 들 수

있다.

둘째, 폐쇄적 문화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따라서 자유세계에서 오는 이질적인 가치가 그들 사회 내부에 침투하여 정착할 수 없도록 경계하고, 서구문물의 유입을 막으려고 애쓰고 있다.

셋째, 북한의 문화구조는 단선적이고 획일적이다. 따라서 북한의 문화는 공통적인 영역이 매우 넓다. 이것은 전체주의적 체제의 속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문화구조가 그만큼 단순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문화구조가 타율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문화구조가 당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조성된 것이며, 모든 문화활동은 당의 통제하에 조직동원 되는 것이다.

또한 북한문화의 기능적 특징을 총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주의적 사상체계를 현실생활에 확립시켜 주는 ‘보장수단’이다.

둘째, 사회주의적 사상체계를 개인적 차원에서 집단적 차원으로 이동 시켜 주는 ‘전환수단’이다.

셋째, 사회주의적 사상체계를 생산수단에 적용시켜 생산능력을 고양 시켜 주는 ‘촉매수단’이다.

넷째, 주민들을 사회주의 사상을 중심으로 단결시켜 주는 ‘단결수단’이다.

다섯째, 지배세력의 영속성을 보장해 주는 ‘자위와 보전수단’이다.

북한의 문화가 이러한 특징과 기능을 갖고 있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표방되어 정책화되어 있다. 그러나 다른 사회영역과는 달리 문화영역은 쉽게 변하지 않는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반드시 모든 주민의 의식구조와 행동양식를 통일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보기是很 어렵다. “가족주의, 지방주의, 종파주의를 비롯한 당의 통일단결을 좀먹고 저해하는 사소한 요소도 허용하지 말고 제때에 극복하여야 하며, 당안에 언제나

단결의 정신, 단결의 기풍이 차 넘치도록 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역설적 으로 북한문화정책의 한계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이다.¹⁴⁾

2. 전통문화와 공산주의적 도덕

북한은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미풍양속에 대해 이념적 해석을 가하여, 소위 ‘공산주의적 도덕 품성’이라는 새로운 도덕관을 내세워 왔다. 그들은 공산주의 도덕교양을 통해 전통적 도덕관을 철저히 배격하고, 이를 반동적이며 반사회적인 낡은 도덕이라 매도하였다. 공산주의 도덕이란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을 위하여 투쟁하며 그 사회에서 살게 될 사람들이 지켜야 할 원칙과 규범이다. 나아가 “공산주의 도덕에서 핵을 이루는 것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며 공산주의 도덕의 특징은 풍부한 인간성과 집단주의 정신에 기초하고 있는 철두철미한 당적이며 인민적인 도덕”¹⁵⁾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이처럼 도덕 품성이 수령에 대한 충실성, 집단주의 원칙, 당성, 인민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어서 우리의 전통적 도덕개념과는 크게 다르다.

북한에서 비록 공산주의 도덕교양을 강조하지만 50대 이상의 세대에 아직도 예의범절을 중시하고 조상을 숭배하는 풍조와 상부상조의식이 남아 있다.¹⁶⁾ 또한 전통문화는 완전히 단절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에서도 일반주민 사이에서 은밀히 점을 치거나, 사주팔자를 따지거나 관상이나 손금을 보는 행위 등 아직도 과거의 습속이 남아 있다. 그러나 신세대의 경우는 전통적인 조상을 숭배하는 마음보다는 김일성부자를

14) 김정일,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당이다,”『조선중앙방송』, 1995. 10. 5.

15) 『조선말 대사전』, 1권, 사회과학출판사, 1992, p. 272.

16) 통일원, 『'95 북한개요』, p. 319.

따르는 충성심이 더 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청소년 사회에도 폭력조직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원산, 함흥, 남포 등 비교적 외국인 출입이 잦은 항구와 대도시 등을 활동무대로 삼고 있다고 한다. 북한 당국은 이러한 현상이 외부사조의 유입을 통하여 확대되는 것으로 보고 청소년 교양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3. 문학예술

(1) 문예관과 문예정책

북한은 문학예술을 “당의 정책을 구현하여 근로대중을 공산주의적 혁명정신으로 교양하는 당의 힘 있는 무기”¹⁷⁾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문예의 기능이 예술의 본질인 미의 추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혁명의 전파, 사상의 전달이란 역할에 더욱 큰 비중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같은 정치선전의 기능적 논리는 북한의 문학예술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북한 문예의 가장 본질적 특성은 공산주의적 당성, 노동계급성, 인민성으로서 이는 ‘원칙’인 동시에 구현해야 할 ‘목표’이기도 하다.

북한의 문예는 인민대중에 대한 정치사상적 세뇌(洗腦)의 수단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문예정책은 수령과 당의 통치정책에 예속된 하위정책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문예정책은 따라서 ‘인민적이고 혁명적인 사회주의 민족문화의 건설’에 그 목표를 두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제국주

17) 『주체사상에 기초한 문예리론』, 사회과학출판사, 1975, p. 13.

의적 사상·문화침투를 막고 수령의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혁명위업에 기여하는 혁명적 문학예술의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근본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문예와 관련된 북한의 현법조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문화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모든 사람들을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과 높은 문화기술 수준을 가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만들며 온 사회를 인테리화한다.”(제40조)

“…참다운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문화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적 민족문화건설에서 제국주의의 문화적 침투와 복고주의적 경향을 반대하며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사회주의 현실에 맞게 계승 발전시킨다.”(제41조)

“국가는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은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문학예술을 발전시킨다. 국가는 창작가, 예술인들이 사상예술성이 높은 작품을 많이 창작하며 광범한 대중이 문예활동에 널리 참가하도록 한다.”(제52조)

북한이 주장하는 ‘문예활동에서의 자유’란 “착취계급과 착취제도를 반대하여 정의의 필봉을 높이 들 수 있는 자유,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혁명적 문학예술을 창작할 수 있는 자유”이다.

북한은 문학예술이 당의 유일사상체계의 전파매체로서 가지는 기능, 즉 작품의 형상화 과정을 통해 근로대중을 교양하는 기능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 문학은 수령의 혁명사상 및 당의 노선과 정책을 정확히 반영시키는 강력한 수단이다. 특히 김일성의 혁명사상을 구현하는 것만이 참다운 공산주의 문학예술의 근본조건이며, 김일성의 교시는 곧 창작의 기초이고, 창작 전과정의 지침이며, 창작총화의 기준으로 된다.

1980년대에 들어서 김정일의 후계자 지위가 공식화되면서 문학예술 각 부문에 걸쳐 김정일의 현지지도와 직접 참여가 이뤄지는 등 문학예술 부문 역시 ‘김정일 시대’로 접어들었다. 북한은 김정일이 ‘문화예술론’을

저작하여 영화부문의 성과를 올리고 ‘무용표기법’을 창안하고 이 표기법을 기록할 수 있는 타이프라이터를 개발하고, 3대혁명노작을 가극화하고, 민족악기의 개량사업을 통해 대평소, 해금, 피리 등 기존의 5음 체계를 혁신하고, 가야금의 현을 조정하여 음역을 확장하면서 기존의 줄을 쇠줄로 대체하였다고 선전하고 있다.

김정일이 작품 창작과정에 직접 개입하여 발표된 대표적인 작품이 ‘불멸의 역사’이다. 1970년대 초반부터 1980년대 후반까지 15권의 큰 분량을 이루고 있는 이 총서는 소설 부문, 곧 묘사문학으로 주체사상을 의식화하는 방안으로 이용하고 있다. 북한의 문학예술에서 간파할 수 없는 점은 주민들의 대남 투쟁의식과 혁명성을 고무·선동하는 일이다. 김일성 자신도 “우리의 문학 예술은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건설에 복무해야 할 뿐 아니라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을 위한 전체 인민의 투쟁에 복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2) 문예이론과 창작방법

공산주의 국가에 있어 문예이론과 문예정책은 표리관계에 있다. 북한의 문예이론 가운데 문예정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중요이론으로는 주체문예이론, 종자론(種子論), 집단예술론 등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으며,¹⁸⁾ 이외에도 ‘속도전 이론’, ‘전형화 이론’, ‘군중예술론’, ‘통속화 이론’ 등이 있다.

‘주체문예이론’은 김일성 주체사상에 바탕을 둔 문예이론으로서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기 인민의 리익과 자기나라의 실정에 맞게 자체의 힘으로 풀어 나갈데 대한 주체사상의 요구를 구현하

18) 김용범, “북한의 문학·예술,”『민주통일론(북한실태)』, 통일연수원, 1993, p. 197 참조.

여 자기나라 인민과 자기나라 혁명을 위하여 복무하는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문학예술을 발전시켜 나갈 방향과 방도”로 설명된다.¹⁹⁾ 즉, 주체의 문예이론이 문학예술에서 ‘주체’ 확립의 본질적인 내용을 과학적으로 밝혀, 문학예술을 시대의 현실적 조건과 그 자체의 발전 요구에 맞게 창조, 발전시키는 가장 올바른 길이라는 것이다. 나아가 문학예술을 민족적인 정서와 감정, 역사와 현실에 부합시켜 혁명과 인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기능하게 하는 무기로 만든다는 것이다. 이는 논리적 성격으로 볼 때, 이념적 보편성과 형식적 특수성을 포괄하는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에서의 사회주의적 내용과 민족적 형식의 결합으로 귀결된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그것은 창조적 주체의 확립이 아니라 공산주의 문예이론인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의 모방 혹은 표절에 불과한 것이다.

주체문예이론에 의한 문예창작에서는 다음의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 모든 문예작품과 이론에 김일성부자의 주장이나 모습을 어떤 형태로든지 다루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창작의 많은 부분이 김일성부자에 대한 칭송과 예찬을 위해 바쳐진다. 둘째, 김일성부자의 절대화·우상화에 따라 그들의 가계(家系)도 신성한 차원에서 묘사되지 않으면 안된다. 셋째, 김일성부자에 철저히 귀의, 순응, 복종, 실천하는 인간상의 구현이다. 곧, 모든 인간과 사회현상은 김일성부자의 의지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종자론’은 북한이 주체문예이론과 함께 독창적 문예이론이라고 자랑하는 것으로서, 주체문예이론이 미학원리(美學原里)라면 종자론은 예술창작에 임하는 실천강령이다. 여기서의 종자란 작품의 사상·예술적 핵으로서 작가가 말하려고 하는 기본문제이자 북한사회가 공동의

19) 『주체사상에 기초한 문예리론』, 사회과학출판사, 1975, p. 7.

이념과 가치로 규정하는 일체의 가치체계를 하나의 이데아로 집약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종자’란 작품속에 담겨져 있는 가장 핵심적인 미적 요소이자 사상적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요소 가운데 사상성의 문제가 보다 중요한 것이다. 즉, “종자의 선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 정책의 요구에 맞는 것”이라고 못박고 있어, 종자론이 ‘김일성주의’의 실천이론의 하나임을 밝히고 있다.

북한 문학예술의 이론적 토대는 한마디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이다. 사회주의적 사실주의가 모든 문예의 근본이 되는 창작방법인 것이다. 북한에서는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를 ‘현대의 유일하게 옳은 창작방법’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는 “혁명적인 내용, 계급적인 내용을 자기나라 인민이 좋아하고 그들의 구미와 정서에 맞는 민족적 형식으로 표현함으로써 사람들을 공산주의적 혁명정신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자기나라 혁명을 위하여 적극 투쟁하는 렬렬한 혁명가로 참된 공산주의자로 교양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고 한다.²⁰⁾ 공산주의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에 입각한 문예창작 방법상의 요건으로 당성·계급성·인민성을 거론하는 것처럼 북한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3) 문예단체와 그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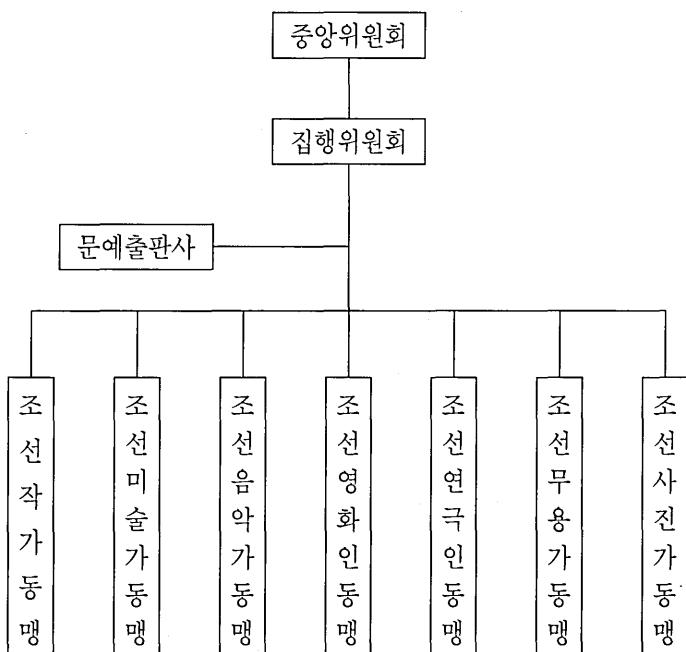
북한의 문학예술 업무를 실질적으로 조직·운영하며, 노동당 정책과 유일사상에 충실하도록 하는 직업 예술인 단체는 조선문학예술총동맹(문예총)이며, 이 조직산하에 영화, 문학, 음악, 미술, 무용 등 분야별 예

20) 『문학예술사전』, 사회과학출판사, 1972, p. 364.

술가 동맹이 있다.

문예총은 정무원 문화예술부의 행정적 관리체계하에 있으면서 실제로는 당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와 사회문화부의 지도·통제를 받는다. 모든 예술인들은 의무적으로 문예총과 그 산하동맹에 가입해야만 문학예술인의 자격을 인정받게 된다. 북한의 작가, 예술인들은 문예총 등에 소속된 철저한 조직인으로서 예술작품 구상단계에서부터 소재의 선정, 작업기간이나 분량 및 작품평가에 이르기까지 동맹을 통해 하달되는 당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표 6-7〉 조선문학예술총동맹 기구



자료 :『문학예술사전』, 사회과학출판사, 1972, p. 698.

주 : 각 동맹산하에 분과위원회가 있으며, 각 도에는 총동맹 지부와 부문별 동맹지부가 있다.

문예총에 소속된 각 장르별 예술가들은 문학예술 창조의 주인공들로서, 그들이 지니고 있는 공훈과 역량에 따라 여러 등급으로 구분된다. 인민예술가, 공훈예술가를 비롯하여 1급에서 8급까지, 그리고 급외 등급을 합쳐 모두 11등급으로 나뉘어 있다. 이 중에서 인민예술가와 공훈예술가는 국가영웅으로 추대되고 있으며, 최고 명예인 국기훈장의 급수(級數)가 인정되어 인민예술가는 국기훈장 1급, 공훈예술가는 국기훈장 2급에 해당된다.

또한 공장, 기업소, 협동단체 등에는 ‘예술소조’가 조직되어 있어 근로인민대중들의 예술활동은 이러한 각종 소조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 예술소조는 문예총과 별개의 군중문화단체로 활동하지만, 소조원들의 창작품은 각 동맹의 기관지에 발표되기도 한다. 이런 방법으로 이들 중 더러는 후보 맹원으로 발탁되어 수습기간을 거쳐 정맹원이 되며, 이에 따라 직업적 작가나 예술가가 되기도 한다. 그 외에 작품의 현상모집에 참여하여 발굴되는 경우도 있다.

제 3 절 교육·문화·예술의 한계와 과제

지금까지 북한은 교육과 사상교양학습을 통해 ‘공산주의적 새인간’을 양성한다는 목표를 추구해 왔으며, 그들의 문화구조와 문예활동이 사상혁명과 문화혁명을 수행하는 데 선차적인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다. 북한의 교육체제는 폐쇄적·맹종적 인간을 육성하는 규범으로서, 비민주적 측면을 갖고 있다. 또한 문화예술은 당성·계급성·인민성으로 집약되는 공산주의 문화예술의 본질적 특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의 정치교화적 기능, 문화의 선전적 기능은 지속적으로 특히

김정일체제 이후 더욱 강화되고 있다.

1980년 김정일이 김일성의 후계자로 공식화되면서 북한은 교육과 문화예술에서 ‘주체형의 인간’을 강조하면서도 현실 상황에 적응하기 위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구조적인 면에서 맑스·레닌주의를 내세우지 않고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교육과 문화예술을 개편해 왔다. ‘전인민의 공산주의화’라는 목표하에 추진해 온 획일적인 정치교화와 사상혁명으로 인해 북한동포의 사상과 가치관, 의식구조 및 행동양태는 우리와 크게 이질화되어 있다.

이러한 이질화의 배경에는 북한의 폐쇄성·교조성에만 그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니다. 남한의 경우 역시 정치·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전통적 가치관과 행동양식이 원래 모습 그대로 유지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질화과정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주민의 가치관과 습성에는 5천년 동안 내려온 한민족만의 특유한 기충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 밑바탕에서 공통점과 동질성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는 서로 유기적이고 발전적인 병존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희망적인 단초라 하겠다.

북한의 정치사상교양과 인간개조를 위한 사상혁명을 보는 기본시각은 비관스럽다거나 염려스럽다는 일방적이고 표피적인 입장으로부터 탈피 할 필요가 있다. 민족성원으로서 공통분모를 찾고 인간다움을 되살리기 위한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우리의 교육이념과 정책, 우리 문화예술의 기준과 구조가 아닌 그들의 기준과 핵심구조를 성찰한 연후에 민족 동질성의 회복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류의 보편타당한 가치와 인간본성에 배치되는 정치교화를 통한 사상혁명은 일정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북한이 반동사상으로 매도하고 있는 이기주의, 개인주의 그리고 부르주아 사상이란 따지고 보면 인간 본성의 자연스러운 발로이다. 그들이 오랫동안 인간개조에 주력했음

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들 내부에 혁명의 배신자, 변절자가 있다고 경고하는 것은 결코 부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다. 철저히 경계하고 있더라도 개인주의의 추구는 사상혁명으로는 막을 수 없는 인간의 기본 욕망이다.

정치교화의 결과로 나타난 획일적인 인간형과 그 한계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은 북한체제의 변화양상과 그 진전 속도를 보다 정확히 내다보는 지표를 제공해 줄 것이다. 이것은 또한 상이한 정치사회화과정으로 인한 남북간의 물리적 장벽만이 아니라 심리적 장벽을 극복하는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지금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우리식대로 살자’, ‘우리식 사회주의 필승 불패’, ‘오직 한길 따라 충성과 효성’ 등의 구호를 내걸고 사상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로써 세계사적 추세인 변화의 물결을 완전 차단 시킬 수는 없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는 북한의 교육과 문화예술에 분명히 심대한 영향을 줄 것이다.

앞으로 남북한간 교육·문화예술 이질화의 극복은 그들의 정책적 변화를 감안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교육·문화예술적 대응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에 따라 우리의 통일교육과 통일문화예술 형성의 중요성은 마땅히 강조되어야 한다. 통일교육과 통일문화는 통일과정뿐 아니라 통일 이후까지를 내다보는 장기적인 계획 아래 추진되어야 한다. 통일문화와 교육은 통일을 이룬 다음 민족성원 사이의 심리적 갈등과 정신적 장벽을 해소하는 데 결정적인 기능을 수행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권영민, 『북한의 문학』, 을유문화사, 1990.
2. 김동규, 『북한의 교육학』, 문맥사, 1990.
3. 김문현, 『북한의 예술』, 을유문화사, 1990.
4. 김형찬, 『북한의 주체교육사상』, 한맥사, 1990.
5. _____ 외, 『북한의 교육』, 을유문화사, 1990.
6. 문용린, 『북한의 학교교육과정 분석』, 통일원, 1987.
7. 민족통일원, 『남북한 문화정책 비교연구』, 1994.
8. 통일원, 『북한의 문학예술』, 1991.
9. _____, 『북한의 교과서분석』, 1992.
10. _____, 『'95 북한개요』, 1995.
11. 황정규, 『북한교육의 조명』, 법문사, 1990.

VII

북한의 사회구조와 사회정책

제 1 절 사회정책과 계급구조	255
제 2 절 사회통제정책	263
제 3 절 사회보장정책	271

● 이 장의 요점 ●

- 북한은 공산정권 수립 아래 기존의 전통사회질서를 전면개편했다. 이른바 착취계급을 청산한다는 명분하에 지주·자본가의 땅과 재산을 몰수했고, 계급이 다시 생성될 수 있는 물질적 토대를 없앤다는 이유로 모든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금지했다.
- 북한은 1950년대 말부터 주민들의 출신성분과 사회성분을 철저히 조사하여 3계층 51부류로 분류해 놓고, 그 계층과 부류에 따라 철저히 차별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이로 인하여 북한사회에는 새로운 계급이 생성되었다.
- 북한은 사회주의원칙에 따라 국가가 주민들의 모든 생활문제를 일일이 책임져야 하며 이같은 국가정책들을 헌법과 각종 법률에 제도화시켜 놓았다고 하지만, 그것은 ‘기본권리’가 아닌 ‘혜택’ 또는 ‘시혜’로 규정되어 있다.

제 1 절 사회정책과 계급구조

북한의 사회정책은 전체사회를 하나의 집단으로 결속하고 계급노선에 따라 모든 사람들의 의식구조를 혁명화하는 계급정책이며 사회주의적 사회정책이다.

북한은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원칙(사회주의헌법 제63조)에 따라 “온 사회를 동지적으로 결합”한 ‘사회주의적 대가정’이라고 주장한다.

북한은 전체사회를 이렇게 ‘사회주의적 대가정’으로 결속시키는 이유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사회주의혁명을 위해 몸바쳐 투쟁하는 정신과 자세를 견지하도록 하며 반혁명적 반사회주의적 토대를 없애기 위함이라고 강조한다. 다시 말해서 북한의 선전매체들은, 사회주의건설을 위해서는 개인주의·자유주의 사상적 요소들을 없애고 개개인의 물질적 욕구를 없앰으로써 자본주의적 요소가 발생되지 못하도록 하며, 사람들이 당의 혁명노선과 방침에 따라 충실히 일하는 혁명적 생활기풍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같은 북한식 사회정책을 이른바, “온 사회의 혁명화, 노동계급화, 인텔리화”하는 계급정책이라 한다.¹⁾ 그리고 이 정책은 전체주민들을 사상성분에 따라 계층구분하고 의·식·주 생활을 통제관리하는 정책이며, 나아가 계급정책을 거부하는 이른바 반혁명분자로 지목되는 대상을 특

1) 여기에서 계급정책이란 노동계급의 이익을 확고히 고수하며 모든 사업을 처리함에 있어서 노동계급의 정치·경제·사상적 입장을 공고히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북한의 계급정책은 다른 어떤 나라와도 특이한 독자적 특수성을 띠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별히 통제하는 특별독재정책이기도 하다.

1. 계급정책

(1) 계급사회의 형성

북한은 1946년 2월 8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를 발족하고 모든 생산관계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기 시작했다. 토지개혁(1946. 3. 5)을 시작으로 주요산업을 국·공유화하는 등 사회질서를 바꾸었다. 이는 정치·사회적 혁명과 함께 새로운 계급의 형성을 예고하는 신호가 되었다. 그 후 북한은 3년간에 걸친 6·25전쟁 중, “모든 힘을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라는 구호 아래 전쟁수행에 총력을 기울이다가 휴전 이후부터는 “모든 것을 전후 인민경제 복구 발전을 위하여”라는 슬로건으로 바꾸고, 사회주의적 제도개혁을 본격화했다.

농촌사회는 농업의 집단화정책에 의하여 사적 소유제가 폐지되고 사회주의적 생산관계로 전환되었다. 농업의 집단화 과정은 6·25의 피해로 개인농이 어렵게 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협동적 생산방식으로 변혁하는 조치였다. 따라서 개인소유의 농지를 협동적 소유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농민들의 반발 또한 적지 않았다. 그리고 도시에 잔존하고 있던 상공업 분야의 자본주의적 경영형태와 소상품경영형태 역시 사회주의적 관리방식으로 전환되었는데, 개인 상공업의 사회주의적 집단화는 주로 생산협동조합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사회주의적 제도개혁을 통하여 도시에서는 개인상인자본가 및 산업자본가들이, 농촌에서는 부농과 일부 중농들이 경제적 기반을 박탈 당했기 때문에 전후 북한에서는 사적 소유에 근거한 계급은 청산되었다

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인텔리에 관한 문제는 그때까지도 미해결로 남아 있었다. 1958년 8월 9일 김일성은 시·군 인민위원회 위원장강습회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세상의 모든 것을 누가 창조합니까? 세상을 개변하는 것도, 혁명을 하는 것도 로동하는 사람들이요, 최신기술을 만들어 내는 것도 근로자들입니다. 로동자와 농민의 손을 거치지 않고 창조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박사들이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 로동 계급과 우리 인민의 창조적 역량은 실로 무궁무진합니다”²⁾라고 말하면서 노동계급을 혁명가, 발명가, 과학자 등으로 추켜세웠다.

이는 인텔리계층 고유의 사회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가운데 공산당에 추종하는 노동계급의 역할을 고무시킨 것으로서, 적어도 형식상으로는 노동계급의 영도성이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2) 주민성분의 조사

북한에서는 이른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라는 3대혁명 노선에 따라 사람의 의식구조를 개조하는 사상정책을 강화하면서 전체주민들을 사상적 토대와 혁명의식화의 정도에 따라 구분하고 이에 기준하여 주민들을 조직·관리한다.

물론, 이같은 북한의 주민성분조사³⁾는 사회주의적 이데올로기에 기초한다고 하지만, 그 이면에는 김일성의 권력투쟁과 밀접히 연관되었다고

2) 김일성, “시·군 인민위원회의 당면한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김일성 저작선집 2』, 조선로동당출판사, 1968, p. 176.

3) 북한에서 말하는 성분은 크게 출신성분과 사회적 성분으로 구분된다. 출신성분이란 본인의 출신 당시 부모의 직업과 재산관계 등을 가리키며, 사회적 성분이란 본인의 성장과정과 경력 등을 말한다.

보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어쨌든 주민성분조사는 이미 1958년 이후 여러 차례 추진되었다(표 7-1 참조).

〈표 7-1〉 주민성분 조사사업

구 분	시 기	내 용
중앙당 집중지도사업	1958.12.~1960.12.	○ 불순분자 색출 처단 및 산간벽지 강제이주
주민재등록사업	1966. 4.~1967. 3.	○ 100만 노농적위대의 무장을 위한 주민성분 분류(직계3대·처가·외가 6촌 까지 내사)
3계층 51개 부류 구분사업	1967. 4.~1970. 6.	○ 주민 재등록사업 결과를 토대로 전주민을 핵심계층, 동묘계층, 적대계층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세분하여 51개 부류로 구분
주민요해사업	1972. 2.~1974.	○ 남북대화 관련, 주민동태 조사·파악, 전주민을 믿을 수 있는 자, 반신반의자, 변절자로 구분
주민증 검열사업	1980. 1.~1980.12.	○ 김정일 지시로 공민증 대조·갱신으로 불순분자 색출과 통제기능 강화
외국귀화인 및 월북자 등에 대한 요해사업	1980. 4.~1980.10.	○ 월북자 등 외부에서 입북한 자들을 13계층으로 구분, 감시자료를 체계화
북송재일교포 요해사업	1981. 1.~1981. 4.	○ 북송교포들에 대한 동향감시자료를 세분화
주민증 갱신사업	1983.11.~1984. 3.	○ 공민증 갱신 및 주민문건 정비

자료 : 통일원, 『'95 북한개요』, p. 275.

1958년 12월부터 중앙당 집중지도사업을 실시하여 이른바 불순분자 색출, 처단이란 명분하에 남한출신(남로당계 등)은 물론, 소련파나 연안파를 대거 숙청했다. 이어, 1966년 4월 주민재등록사업, 1967년 3계 층 51개 분류, 1972년 2월 주민요해사업, 1980년 1월 주민증 검열사업, 1980년 4월 북송교포 등 이른바 귀화인·월북자들을 대상으로 한 요해사업, 그리고 북송교포 요해사업, 1983년 11월 공민증 갱신사업 등을 실시하여 전체 주민들을 사상성분이란 기준에 따라 계층구별하고 관리하였다.

2. 계급구조

북한은 앞에서 보는 바와 같이 50년대 중반부터 전체사회를 사회주의 질서로 개편하면서 주민들의 사상성분을 조사, 관리하기 시작했다. 이른바 토대로서의 계급성과 당성(정치성)을 기초로 그에 상응하는 직종과 직위를 배분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계급구조가 생성된 것이다.

그 결과 북한의 계층은 전주민들을 핵심계층(핵심군중), 동요계층(기본군중), 적대계층(복잡한 군중) 등 3계층을 기본축으로 하여 이를 다시 51개로 세분한 구조로 나타났다(표 7-2 참조).

이와 같은 계급노선에 의거한 주민성분의 철저한 조사, 분류 그리고 계층구분의 제도화는 결국 당원 스스로 새로운 지배계급으로 등장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북한의 이러한 사회계층구조는 앞으로도 정치목표와 정책노선이 바뀌지 않는 한, 또 공업화와 기술발달, 교육증대, 경제성장 등의 사회변동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쉽게 변화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표 7-2〉 주민성분분류 및 대우

3계층	51개 부류	대우
핵심계층 (핵심군중)	노동자, 고농(머슴), 빈농, 사무원, 노동당원, 혁명유가족, 애국열사 유가족, 8·15이후 양성된 인텔리, 피살자 가족, 전사자 가족, 후방가족, 영예군인 등 12개 부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정·군 간부로 등용 ○ 타 계층과 분리, 특혜조치(진학, 승진, 배급, 거주, 진료)
동요계층 (기본군중)	중·소상인, 수공업자, 소공장주, 하층 접객업자, 중산층 접객업자, 무소속, 월남자 가족(1), 중농, 민족자본가, 월남자 가족(2), 월남자 가족(3), 중국귀환인, 일본귀환인, 8·15이전 양성된 인텔리, 접대부 및 미신 승배자, 유학자 및 지방유지, 경제사범 등 18개 부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하급간부 및 기술자로 진출 ○ 충성심에 따라 핵심계층으로 승격 가능
적대계층 (복잡한 군중)	8·15이후 전락노동자, 부농, 지주, 친일·친미주의자, 반동관료배, 천도교인, 입북자, 기독교신자, 불교신자, 천주교신자, 출당자, 철직자, 적 기관 복무자, 체포·투옥자 가족, 간첩 관계자, 반당·반혁명 종파분자, 처단자 가족, 출소자, 정치범, 자본가 등 21개 부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해 중노동에 종사 ○ 입학·진학·입당 봉쇄 및 탄압 ○ 제재·감시·포섭대상으로 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재 : 강제이주, 경리 수용 - 감시 : 항시 동태감시 - 포섭 : 집중적 교양 ○ 극소수 동요계층으로 재분류(자녀)

자료 : 통일원, 『'95 북한개요』, p. 276.

주 : 북한이 1970년 당시 주민등록사업결과를 토대로 분류한 것임.

(1) 핵심계층(핵심군중)

핵심계층은 북한체제를 이끌어 나가는 통치계급으로서 북한사회의 핵

심적 부류에 속하는 특수층이다. 여기에는 당원, 정무원관리, 장성급 군장교, 조총련간부, 혁명전사 및 그 유가족, 피살·전사자 가족, 당·행정간부 가족, 군간부 가족 등이 해당된다. 이들은 당·행정·군간부 등용에 있어서 우선적인 혜택을 받고 있으며, 진학, 승진, 배급, 주거, 의료 등 각종 분야에서도 우대를 받는 등 특권계층으로서의 정치적 지위와 사회적 위상을 독점적으로 향유한다.

북한은 특수층 자녀들을 위하여 ‘만경대혁명학원’ 등 각종 특수학교를 설립·운영하고 있다. 이들 학교 졸업생들이 미래의 중견간부로 충원된다. 이들이야말로 봉건체제에서나 볼 수 있는 신분세습집단이며, 이 집단이 바로 북한정권을 유지하는 핵심계층이다.

(2) 동요계층(기본군중)

동요계층은 북한사회의 기본구성원들로서 핵심계층에 속하지 않는 일반노동자, 농민, 일반사무원 및 그 가족 등이다. 이 계층의 자녀들은 재능에 따라 고등전문학교나 대학에 진학할 수 있으나, 당원, 군장교가 되는 데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 따라서 이들은 대부분 하급간부, 기술자로 진출하고, 극소수는 핵심계층으로 상승하는 경우도 있다.

(3) 적대계층(복잡한 군중)

적대계층은 소위 불순분자, 반동분자로 낙인찍힌 사람들로서 사회로부터 철저히 소외된다. 적대계층으로 분류된 계층은 이를 다시 세분화하여 독재대상, 제재대상, 감시대상, 교양·포섭대상 등으로 재분류되며, 그 대상범위는 해방전 지주·자본가 가족, 일제시의 공직자, 종교인가족, 6·25전쟁 시 월남자·부역자 가족, 반혁명적 사상자, 포로

가족, 그리고 숙청자·범죄자 가족, 북송교포 중 문제자 및 그 가족 등이다.

이들은 주로 유해노동이나 중노동 등에 종사하고, 대학진학, 입당, 군장교 등의 자격이 원천적으로 박탈된다. 다만 그들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극소수가 동요계층으로 재분류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특기할 만한 것은 적대계층 가운데서 독재대상에 속하는 자들은 일반군중과 격리되어 산간오지(소위 안전지대)나 ‘특별독재대상구역’에서 강제노동을 해야 하고, 심지어 결혼 및 출산금지 등의 인권유린을 당한다.

그러나 북한은 90년대 공산권의 붕괴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고 주민들의 탈북현상이 증대되는 등 사면초가에 놓이게 되자 대내 주민동요를 방지하고 체제불안을 극복하며 경제생산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 주민들의 마음을 회유하기 시작했다. 이같은 사실은 김일성방송대학 강좌프로인 「김정일 혁명력사」시간('94. 11. 5 평양방송)에서도 밝혀지고 있다. 여기서 북한은 3계층을 ‘핵심군중’, ‘기본군중’, ‘복잡한 군중’ 등으로 새롭게 명명하고 3계층에 어떠한 주민들이 속하는지를 열거하면서 특히 ‘복잡한 군중’을 포섭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북한은 ‘복잡한 군중’을 포섭해야 하는 이유로 (1) 순결한 사람만을 가지고 혁명을 할 수 없고, (2) 조국통일투쟁의 승패는 누가 더 많은 군중을 쟁취하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⁴⁾

4) 권오덕, “김정일 정권의 변화전망,” 『'95 안보과정 우수논문집』, 제1집 1호, 국방대학원, 1996. 5.

제 2 절 사회통제정책

1. 사회통제원칙

민주주의 사회는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그것이 사회적 이익과 조화를 이룬다는 개인주의에 기초하고 있는 데 반해, 북한에서는 개인주의가 집단주의와 근본적으로 대립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김정일은 “개인주의적 인생관이 개인의 안일과 향락을 최고의 목적으로 여기는 인생관이라면, 집단주의적 인생관은 자기의 운명을 집단의 운명과 결부시키고 집단을 위한 투쟁에서 참다운 삶의 보람과 행복을 찾는 인생관”이라고 정의하고 있다.⁵⁾ 따라서 북한의 모든 생활에서 집단주의 정신의 제고가 요청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민의 기본권리와 의무가 규제되고 있다.

북한사회의 집단주의원칙은 현법적 규범이며, 북한이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를 규정함에 있어 집단주의 원칙을 천명한 것은 북한헌법의 중요한 특색이라고 할 수 있다.⁶⁾ 1992년 개정헌법 제63조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원칙에 기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2조는 “집단주의는 사회주의 사회생활의 기초이다. 공민은 조직과 집단을 귀중히 여기며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5) 김정일, “주체의 혁명관을 튼튼히 세울데 대하여,” 『조선중앙년감』, 1988, p. 97.

6) 강구진, 『북한법의 연구』, 박영사, 1975, pp. 91~94.

이러한 집단주의 원칙은 주체사상을 철저히 반영하고 있다. 주체사상은 세계의 주인, 자기운명의 주인이 되는 것은 개인이 아니라 인민대중, 사회적 집단이라고 규정하여, 사회적 기본단위는 개인이 아니라 인민대중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사람은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사회와 집단의 한 성원으로서만 존재의의를 지니며, 한 개인이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얼마나 이바지하는가 하는 것이 삶의 가치척도로 되어 있다.⁷⁾

이러한 북한의 집단주의는 최근 주체사상에서 말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에 의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에 의하면, 집단의 생명 곧 사회정치적 생명은 개인의 생명, 육체적 생명보다 더 귀중할 뿐만 아니라 집단과 더불어 영생한다는 것이다. 개인의 생명은 태어날 때 생겨나고 죽을 때 없어지는 것이지만, 집단의 생명은 사회정치적 생명으로서 개인적 생사를 초월한다고 설명한다. 그리하여 북한은 주민들에게 인간은 육체적 생명과 함께 사회정치적 생명을 가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나아가 사회정치적 집단은 개별적 인간의 힘을 기계적으로 합친 것과는 질적으로 구별되는 창조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그런데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모체는 수령, 당, 인민대중의 통일체이며, 바로 여기서 집단주의 원칙이 다시 한번 제기되는 것이다. 인간은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성원이 됨으로써 수령과 혈연적으로 연결되며, 따라서 육체적 생명과는 무관한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명력이 부여된다는 것이다.⁸⁾

북한의 집단주의적 규범의 기본적 특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7) 강민구, “집단주의 인생관은 공산주의자들이 지녀야 할 참다운 인생관,” 『근로자』, 1989, p. 55.

8) 위의 책, p. 56.

첫째, 집단이익을 절대 우선시하여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는 철저히 배격한다.

둘째, 당의 주체사상에 따라 김일성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한다. 즉 수령을 중심으로 한 정치사상적 통일을 이룬다.

셋째, 집단주의 정신을 키우는 것은 사회를 혁명화, 노동계급화 하기 위한 것이다.

넷째, 주민생활의 조직화는 집단주의적 통치방법의 핵심이 된다.

북한사회의 집단주의 원칙은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의 병폐를 일소하고 사회주의 건설의 목표달성을 촉진한다는 공식적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집단주의적 사회생활 풍토에서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로운 개성의 신장을 존중하는 참된 의미의 인권신장과 민주주의를 기대할 수 없고, 오히려 획일적 형식주의와 기만적 통제수단에 의한 인간의 소외 및 기계화 현상이 야기될 수밖에 없으며, 또한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이 북한의 현실이다.

2. 사회통제방식

북한은 체제의 당면목표와 사회주의 발전의 각 단계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사회통제의 메커니즘과 방법을 구사해 왔다. 여기서는 그동안 변화를 거듭해 온 북한의 사회통제 메커니즘들 중에서 북한체제의 성격을 가장 특징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몇가지 방법들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사회통제가 북한의 사회변동에 미친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1) 당적 통제

북한사회는 당 ‘조직’에 의해 지배되는 사회로서 집단주의 원칙에 의

거, 전체사회가 획일적으로 통제되고 있다. 모든 사회조직은 노동당을 정점으로 체계적으로 계통화되어 있다. 즉 북한사회에서 노동당은 행정·입법·사법부의 상위에 위치하는 최고권력기관이며 모든 기관의 간부자리는 열성당원들에 의해 독점되어 있다. 모든 기관과 해당기관내의 ‘당 조직’이 편성되어 있어서 당의 명령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나간다. 일반 주민들을 직접 통제하고 있는 당의 하부조직으로는 일선 지도기관으로서 시·군(市·郡)당위원회가 있고 최밀단조직으로 당세포(黨細胞) 조직이 있다.

이러한 당적 통제 이외에도 당과 주민을 연결하는 인전대(transmission belt)로서 「직업총동맹」, 「김일성사회주의 청년동맹」,⁹⁾ 「농업근로자동맹」, 「녀성동맹」 등이 있으며(표 7-3 참조), 모든 주민들은 자신의 직업, 성별, 나이에 기초하여 이들 단체에 가입되어 있다.

북한의 사회단체들은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이익단체 내지 시민단체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주민들에 대한 통제는 이러한 당적 통제뿐만 아니라 행정조직에 의해 서도 통제되고 있다. 지역주민들의 사생활을 감시·통제하는 각종 조직들은 계통적으로 중첩되어 있다. 즉 인민반과 각종 학습반 등이 그것이다. 이같은 조직들은 일반주민들이 당의 결정과 방침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지를 점검·지도한다. 인민반은 통상 20~30세대로 조직되고 반장과 선동원 등이 감시·감독자의 역할을 한다. 특히 인민반은 월 2회 ‘생활총화’를 하며 어린이 양육문제, 노력동원, 청소동원, 공원질서 유지, 안전사고외에도 목욕 및 이발 등 시시콜콜한 것까지 주제를 삼고 토론과 자아비판하게 한다.

9) 북한은 1996년 1월 19일에 「사회주의 로동청년동맹」을 「김일성사회주의 청년동맹」으로 개칭하였다.

이처럼 북한에서 각종 조직망으로 사람들을 중첩하여 구속하는 까닭은 당의 행정지도와 사상적 관리의 효율성 및 사회동원 능력을 최대한 높이고자 하는 데 있다.

〈표 7-3〉 주요 사회단체 현황

단체명	가입대상	구성인원	구성방법·활동	창립일
직업총동맹 (직총)	노동자, 사무원 31~65세 (여 60세)	약 160만명	○ 노동자, 사무원, 직장 단위조직 ○ 9개의 산별직업동맹 ○ 사상교양, 기술습득, 노력 경쟁 지도	1945.11.30
농업근로자동맹 (농근맹)	협동농장원 31~65세 (여 60세)	약 130만명	○ 농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사상교양, 농촌사업 지도	1946. 1.31
검찰성주의 청년동맹 (구사로청)	청소년 14~30세	약 500만명	○ 학교·직장단위 ○ 당 후비대, 사상교양·노력 동원	1946. 1.17
여성동맹 (여맹)	여성 31~60세	약 50만명	○ 타 단체에 속하지 않은 여성 ○ 당후비대 사상·교양·노력동원	1945.11.18
소년단	어린이 7~13세	약 300만명	○ 학교단위 ○ 청년동맹의 지도, 집단생활	

자료 : 통일원, 『'95 북한개요』, p. 84.

(2) 사찰기관에 의한 통제

북한 주민들의 동향을 감시, 감독하는 정치사찰기관으로는 국가안전보위부, 사회안전부, 법무생활지도위원회 등이 있다. 이러한 각종 사찰기관들은 주민들의 사상동태를 감시하고 소위 반당·반혁명적 불순세력을 색출한다.

국가안전보위부는 국방위원회 직속기관으로서 정치범에 대한 감시, 구금, 체포, 처형 등을 법적 절차없이 처형하고 있다. 이 기관은 1973년 5월 정치사찰 전담을 위해 사회안전부내의 정치보위국을 독립·승격시켜 국가정치보위부로 확대·개편했고 1982년 4월 국가보위부로 개칭했으나 최근 들어 다시 국가안전보위부로 그 이름을 바꾸었다. 국가안전보위부는 중앙으로부터 도·시·군의 지역단위 및 최말단 행정조직인 리(里) 단위까지 요원을 상주시키고, 또 기관·기업소는 물론 군대 내부에도 중대단위까지 요원을 파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회안전부(경찰에 해당)는 공공질서의 유지·강화와 국가·재산 보호의 기능을 갖고 있으며, 주민의 동향을 감시·적발하고 처벌하며 개인의 신원조사 그리고 사생활을 감독하고 있다.

그밖에도 주민통제를 위한 사찰기관으로서는 최고인민회의 제6기 1차회의(1977. 12. 15)에서 신설된 사회주의 법무생활지도위원회가 있는데, 그 기능은 개인이나 기관, 단체에게 혁명적 준법분위기를 확립하여 당의 방침을 철저히 따르도록 유도하고 감시·감독하는 것이다.

(3) 반체제 세력에 대한 통제

북한은 체제에 반대하거나 불순한 사상자를 색출, 사회로부터 격리·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정치범집단수용소 또는 특별독재대상구역을 설치·운용하고 있다. 이같은 정치범들을 수용하고 있는 지역을 ‘○○호 관리소’라 부르기도 하며, 주민들 간에는 ‘특별독재대상구역’, ‘종파굴’, ‘정치범집단수용소’ 등으로 불려지고 있다. 북한은 이같은 조치를 일종의 자기교화과정(self-correcting process)으로 설명하지만 문제는 이같은 집단수용이 어느 공산주의 국가보다 철저하며, 그 대상범위가 넓을 뿐 아니라 수용자들에 대한 처우가 극도로 열악하다는 데에 있다.

북한의 정치범수용소는 1956~1958년의 남로당 및 연안파를 숙청(8월 종파사건)하고 그 연루자와 가족 등을 특정지역에 집단수용한데서 비롯되었다. 그 후 1958년 중앙당 집중지도사업, 1966년 주민재등록사업 과정에서 ‘위해(危害)하다고 지목되는 자’들을 반혁명 적대분자(反革命 敵對分子)로 몰아서 수용하는 과정에서 본격화되었다. 그러다가 1973년 김정일 세습체제를 구축하는 3대혁명소조 활동을 전개하면서 그 수용인원은 크게 늘어났고 시설규모 또한 확대되었다.

특별독재대상구역에 수용된 사람들은 반국가음모자, 유일사상체제 위반자, 북한탈출기도자, 불순북송교포, 일부 납북인사들과 소위 자유행동자, 종파분자, 당정책위반자들과 그 가족들이다. 특히 1970년대에 들어 와서는 김정일 세습체제 구축과정에서 정치범들이 급증했다. 3대혁명소조의 활동에 소극적이거나 비협조적인 간부들을 이른바 관료주의, 기회주의로 몰아서 이들의 가족들과 함께 집단으로 숙청, 이곳 정치범수용소에 격리했다. 여기에 구금된 인원들은 형(刑)의 기한도 없이 그리고 합법적 절차도 없이 이른바 혁명차원에서 강제 수감된다.

이같은 정치범수용소는 함경도, 평안도, 자강도 등 5개지역에 10여개 소에 설치되어 있다. 여기에 수용된 인원은 대략 20여만명으로 추정된다¹⁰⁾(표 7-4 참조).

정치범으로 지목되어 이곳 수용소에 격리되면 공민권(기본권)이 박탈되어 생존문제가 어렵게 될 뿐 아니라, 매일 12시간 이상 강제노동하고 1시간 이상의 자아비판, 사상개조학습을 받아야 한다. 수용자들의 일과는 구역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새벽 4시에 일어나 6시부터 작업장에 들어가며, 오전작업은 오후 1시까지 오후작업은 밤9시에 끝난다. 이들이 하는 작업은 주로 석탄과 광물을 캐는 쟁도작업과 별

10) 통일원, 『북한의 인권』, 1994, p. 65.

목·개간 등의 중노동이다. 특별독재대상구역은 국가안전보위부에서 모든 업무를 총괄적으로 관장하고 색출된 정치사상범의 이송 및 경비업무는 사회안전부 산하의 인민경비대에서 담당하고 있다.

〈표 7-4〉 정치범 수용소 실태

지 역	위 치
합 북	청진시, 회령군, 화성군
합 남	요덕군, 단천군, 덕성군
평 남	개천군, 북창군
평 북	천마군
자 강	동신군

자료 : 통일원, 『'95 북한개요』, p. 284.

이밖에도 북한에는 과거의 종교인·지식인 가운데 북한체제에 동조하지 않은 사람들을 정신병자로 규정, 집단수용하는 ‘49호 보양소’, 재판에 의해 형이 확정된 자를 수감하는 ‘교화소’가 있다. 그리고 일을 태만히 하거나 불성실한 자들과 기술지도를 잘못한 ‘하부일군’들을 단기간 수용하는 ‘69호 로동교화소’가 있으며, 18세미만의 학교생활 불량자 및 사회에서 물의를 일으킨 학생들을 6개월간 수용하는 ‘소년교양소’, 여행구역 이탈자, 여행기일 경과자, 부랑아, 사건계류자들을 단기간 수용하는 ‘10호위반자 집결소’ 등이 설치되어 주민들의 일탈행위를 예방·통제하고 있다.

제 3 절 사회보장정책

1. 북한 사회보장제도의 성격

북한은 국가가 모든 생산수단들을 독점하고 생산·소비활동을 경제계획에 따라 조정·통제관리하는 사회주의 사회체제이다. 즉 중앙계획에 의해 생산이 이루어지고 분배가 이루어지는 사회체제이다. 따라서 주민들 개개인의 의·식·주 생활 전분야는 국가경제활동의 한 부분으로 취급되고, 주민들은 국가경제활동의 결과 산출된 생산물들을 공급받고 의·식·주생활을 영위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주민들이 공급받는 소비물자들은 처음부터 기본소비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물품만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의 질을 보다 더 높이는 데 필요한 사회적 서비스, 즉 의료·교육·보험 등을 처음부터 국가가 집단적으로 마련해 주는 ‘혜택’에 의존할 수밖에 없도록 구조화되어 있다. 말하자면 북한은 사회주의원칙에 따라 국가가 주민들의 모든 생활문제를 일일이 책임져야 하며 이같은 국가정책들을 헌법이나 노동법, 인민보건법, 보육교양법 등에 제도적으로 구체화시켜 놓았다고 하지만, 사회적 삶의 질을 구성하는 기본요소들을 근본적으로 국가에 의존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보장을 ‘기본권리’가 아닌 ‘혜택’ 또는 ‘시혜’로 규정해 놓고 있는 것이다. 이 점은 북한이 『경제사전』에서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 등을 “사회에 대한 로력적 기여에 크게 의존함이 없이 무상으로 혹은 특혜적인 조건으로 인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분배”¹¹⁾라고 정의하

11) 『경제사전』, 1권, 사회과학출판사, p. 208.

고 있는 점에서도 잘 알 수 있다.

북한은 헌법 제25조에 “공화국은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 것을 자기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는다. … 국가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먹고, 입고, 쓰고 살 수 있는 온갖 조건들을 마련해준다”라고 규정해 놓았으며, 주민들의 생계문제해결이 국가적 사업임을 명시해 놓고 있다. 그리고 개개인은 자신의 능력이나 기여도에 따라 살아갈 생활환경을 마련할 수 있고, 또 국가차원에서는 물질적인 가용능력이 되면 그만큼 후생문제들을 개선해 주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북한헌법 제70조에 “…공민은 능력에 따라 일하며 로동의 양과 질에 따라 분배 받는다”라고 명시하면서, 헌법 제64조에서는 “…공민의 권리와 자유는 사회주의제도의 공고발전과 함께 더욱 확대된다”고 하는 등, 후생을 실시할 국가적 형편이 되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전제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사회주의사회건설을 우선적으로 하고 사회적 후생(social welfare)의 해결문제를 이에 부수하는 문제로 놓고 있는 것이다. 이는 주민의 생활 모두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그들의 주장에 모순되는 것으로, 결국 사회보장제도의 성격도 체제의 공고화에 기여하는 측면으로 취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의 사회보장제도는 시장경제가 발생시킨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경제·사회적 위험을 최소화하는 차원으로, 즉 제도의 모순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시행된다. 그러나 북한의 사회보장제도는 사회주의제도를 보완하고 공고히 하는 차원에서 유지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북한이 사회보장제도를 법적으로 제도화하고 자신들의 체제우월성을 대내외에 선전하는 것과 달리, 실제의 사회복지수준은 그것과 차이가 나는 점에서 분명해진다.

북한에서는 사회보장을 노동자, 사무원들이 노동능력을 잃거나 사망할 경우 본인 또는 그 가족의 생활을 국가적 부담으로 보장하는 제도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현금 및 현물에 의한 ‘방조’(幫助), 의료상 방조, 국가사회보험기관(영예군인보양소, 양로원, 양생원 등)에 의한 방조 형태로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해 놓고 있다.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재원의 조달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자본주의사회의 경우 수혜대상자의 부담금과 국가예산부담금 양자로 구성되지만, 일반적으로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거의 국가예산으로 충당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 점은 북한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사회보장지출은 기업 등의 생산부문이 국가에 납부한 기금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비생산적 소비지출로 간주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생산적 부문에서 창출된 소득부문이 개인에게 이전되는 소득으로 간주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에서의 사회보장지출비용은 구조적으로 국민소득의 증감율과 연계될 수밖에 없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은 다음 (표 7-5)에서 분명하게 볼 수 있다.

〈표 7-5〉 북한의 사회문화시책비 증가율 추이

(단위 : 원, %)

연 도	사회문화시책비	전년대비증가율(%)
1958	24,500	73.7
1960	48,410	26.6
1966	68,422	-2.8
1970	119,394	20.0
1973	210,344	7.2
1979	410,005	10.2
1985	535,387	2.6
1993	766,660	2.1

자료 : 박진·이유수, 『남북한 사회보장제도의 비교 및 통합방향』, 한국개발연구원, 1994, p. 26.

위에서 보면 사회보장비에 해당되는 사회문화시책비의 증가율 추세가

경제성장률과 분명하게 관련이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90년대 이후에도 약간의 증가율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マイ너스성장을 하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이러한 증가율 추세가 과연 현실적인지는 의문이다. 최근 북한이 겪고 있는 경제난으로 볼 때 실제로는 사회보장제도의 실행 자체도 의문시된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북한의 사회보장제도는 분명하게 법규화되어 있지만, 그 실행 자체가 경제성장을과 연관되어 있는 구조적 특징을 보임에 따라,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현재에는 거의 실행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아래에서는 북한의 사회보장문제를 국가사회보험 및 보건의료 두 차원에서만 살펴보고자 한다.

2. 국가사회보험

북한은 사회보험을 국가가 노동자들의 건강을 보호, 증진시키며 노동재해, 질병, 부상 등으로 노동능력을 잃은 근로자들의 생활을 물질적으로 보장해 주는 제도라고 규정하며¹²⁾, 그 명칭을 국가사회보험이라고도 한다.

사회보험은 연금보험,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으로 구분된다. 그런데 의료보험은 국가가 전체주민들을 대상으로 의료행정을 전담하고 있다는 점에서 굳이 보험으로 분류하기 어렵다.

(1) 연금제도

북한은 연금보험과 관련, 1951년 8월 30일 국가사회보장법을 마련했으

12) 위의 책, p. 34.

나 실제 적용된 것은 1978년 4월 18일 사회주의노동법을 제정하면서부터이다. 그 후 연금과 보조금 등 사회보장 관련제도들을 보완했다. 그러나 1985년 이전까지는 같은 국가사회보험제도를 농민에까지 적용시키지 않았고 농민에게는 해당 협동농장에서 자체적으로 보조금형식으로 해결했다. 협동농장 농민들은 1985년 ‘협동농장농민들에게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할 데 대하여’라는 법을 제정함에 따라 국가연금제도로 편입되었다.¹³⁾

북한의 연금제도는 연로연금·폐질연금·유가족연금·명예자연금 등으로 대별된다.

연로연금은 노동자가 노령으로 일할 수 없을 경우, 국가가 생활을 보장해주는 일종의 보조금적 성격의 연금이다. 그런데 실제 북한주민들의 수입이 열악하고 연금액수가 최소액이기 때문에 보다 많은 생활비를 조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65세까지는 일을 해야 하며 일하지 않으면 그 만큼 생계에 타격을 받는다.

폐질연금은 노동자가 산업재해, 질병 등으로 노동력을 상실했을 경우, 노동력 회복시까지 지급되는 일정한 연금이다. 물론 같은 연금은 재해나 질병의 원인과 정도에 따라 차등지급 받는다.

유가족연금은 산업재해보상적 성격의 연금이며 노동자가 직무수행상 사망하였을 경우, 그의 유가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이며 유가족의 수에 따라 평균임금의 40~90% 수준으로 지급된다. 물론 그 액수는 노동의 정도에 따라 다르나 대체로 전 노동경력기간 평균임금액의 60~70%를 일시불로 지급하거나 노동의 강도에 따라서는 80~135%를 일시불로 지급한다고 한다.

명예자연금은 공로자연금이라고도 하며 그 대상은 김일성부자 등 정권과 정책수행과정에서 공훈을 세운 자나 그 유가족들이다. 이들에게는

13) 위의 책, p. 35.

모든 생활에서 특별히 대우한다. 사상성분상 특권층으로 분류되며 생필 품공급으로부터 교육, 취업, 보수, 요양, 치료 등 면에서 우대받는다.

이러한 연금의 재원은 연금의 종류에 따라 다르나, 대체로 국가나 공장기업소, 개인 등의 부담금 형태로 마련된다. 노령연금 및 유가족연금은 국가사회보장제에 따라 국가예산에서 기본적인 생활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폐질연금은 노동력회복 가능기간을 6개월로 설정하고 그 이전의 경우는 국가나 공장기업소, 협동단체에서 5~8%, 근로자의 임금 1%를 적립하는 보험료로 하며, 6개월 이상 장기노동능력 상실의 경우는 국가가 현금 및 현물급여 등 방식으로 연금을 지급한다. 그리고 노령연금 및 유가족연금의 경우는 국가와 공장기업소에서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으나, 이 역시 피보험자에게도 약간의 부담을 하게 한다.

(2) 산재보험

북한은 산업재해보험과 관련, 1946년도에 ‘20개조 정강’, ‘노동법’, ‘사회보험법’ 등을 제정했고,¹⁴⁾ 1951년 8월 국가사회보장법, 1978년 4월 노동법을 마련하고 이 법에 의거하여 산업재해보상을 하고 있다.

북한의 산업재해보험은 노동능력 상실자를 그 폐질의 정도에 따라 1~3류로 구분, 지급률을 달리하며 유가족에 대한 보상의 경우도 유가족의 수에 따라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되고 있다. 폐질에 의한 연금은 1급류의 경우, 최근 1년평균임금액의 75%, 2급류의 경우, 최근 1년간 평균임금액의 60%, 3급류의 경우, 최근 1년간 평균임금액의 35%로 된다.¹⁵⁾

14) 국가사회보험법, 1946. 12. 19 제정.

15) 위의 책, p. 41~42.

(3) 실업보험

북한은 직장을 1개월 이상 배정받지 못해 생계가 어려운 노동자에게 6개월간 표준임금액의 20%를 지급한다고 한다.¹⁶⁾ 그러나 자발적인 실업, 노동규율의 위반 등 범법자는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

3. 보건의료

북한은 국가의 행정행위의 일종으로서 대주민 보건·의료정책을 실행한다. 다시 말해서 국가의 공권력과 조직을 통해 의료정책을 수립·집행하며 개인이 의료보수를 받고 의료시설과 행위를 할 수 없다.

따라서 북한의 의료정책은 헌법·보건법 등 법률로 구체화되어 있고 주민들은 국가의 의료시설과 관리체계에 의해 혜택을 받는다.

헌법 제56조에 “국가는 전반적 무상치료제를 공고 발전시키며, 의사 담당구역제를 강화하고 예방의학적 방침을 관철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라고 규정해 놓고, 제72조에는 “공민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며 나이 많거나 병 또는 불구로 운동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와 어린이는 물질적 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무상치료제, 계속 늘어나는 병원, 료양소를 비롯한 의료시설, 국가 사회보험과 사회보장제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은 헌법상의 규정으로 보아서 북한의 보건의료정책은 무상치료제를 기초로 예방의학적 방침, 의사담당구역제 실시 등으로 요약된다. 그리고

16) 국가사회보험법, 1946. 12. 19 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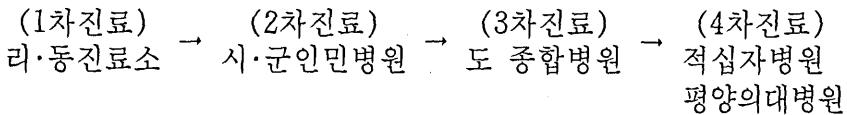
모든 보건의료시설은 국가소유로 국가가 관리하며, 주민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형적인 사회주의 의료체계를 갖추고 있다 하겠다.

북한의 의료정책에는 한방에 관한 비중이 높다. 이같은 한의학의 비중이 높은 이유는 무엇보다 정치·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서양의학을 발전시킬 수 없다는 데 있겠다. 북한은 최근 한의학을 독자적인 분야로 개발하고 있다.

(1) 의료 전달체계

북한은 전형적인 사회주의 국가의 의료전달체계를 갖추고 있는 바, 행정단위와 진료권을 일치시켜 리(동)→시·군(구역)→시·도→중앙 등 4단계로 구분한다. 그리고 타지역의 진료는 수혜자에게 비용을 추가하고 통행증을 발급받게 하는 등 불편하게 하여 자유로운 혜택을 억제한다.¹⁷⁾

〈그림 1〉 북한의 의료체계



(2) 의료시설 및 인력

북한의 의료시설은 크게 일반병원과 특수병원, 그리고 위생·방역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위생방역소가 있다.

중앙에는 특수층을 대상으로 하는 봉화진료소와 남산병원, 그리고 일

17) 한국개발연구원, 위의 책, p. 52.

반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적십자병원, 평양의대부속병원, 명예전상자병원이 있고 정무원 산하에 운영되는 사회안전부중앙병원, 운수부중앙병원, 육·해·공군중앙병원 등이 있다. 이외에도 큰 병원으로는 헝가리의 지원으로 건설된 헝가리병원, 제일조총련계 교포가 건설한 김만유병원 등이 있다. 지방에는 각 도(직할시)에 도민병원과 의과대학부속병원이 있고, 시(구역)·군에는 시·군민병원, 리에는 리민병원 또는 진료소가 있다.

특수병원으로는 중앙 및 각 도에 결핵병원, 간암병원, 만성병원, 구강병원 등이 있으며 이밖의 몇몇 군에는 결핵요양소와 간염병원이 있다. 그 외에 주요 산업지역에 산업병원, 산업진료소 및 구급소가 있고, 주요 선단(主要船團)에는 선의(船醫)가 배치되어 치료 및 방역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북한의 의료분야 종사자로는 의사, 간호원, 약제사, 조제사 등이 있다. 의사는 정규의사, 부의사, 준의사, 고려의사, 위생의사로 구분되는데 정규의사는 1급에서 6급까지, 준의사는 1급에서 5급까지 구분하여 차등을 두고 있다. 이들은 각각 진료나 대우면에서 차이가 난다. 정규의사는 7년제 의대, 부의사는 4년제 고등전문학교, 준의사는 3년제 고등의학교에서 양성된다. 정규의사를 양성하는 의과대학은 평양을 비롯한 11개도에 설립되어 있다. 부의사나 준의사는 수술이나 마약처방 등을 하지 못하며, 직장·리·군 병원에 배치된다.

그리고 간호원, 약제사, 조제사 등은 ‘중등보건일군’으로 불리운다. 약제사는 북한 전지역에 하나밖에 없는 고려약학대학(전 함흥약학대학, 7년제)과 각 의과대학 약학부(5년제)에서 양성되며, 이들은 대체로 큰 병원에서 조제감독과 연구업무를 맡고 있다. 조제사는 2년제 보건간부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자이며, 작은 병원에서 조제업무나 약국에서 가정상 비약을 판매하는 일을 맡는다. 이밖에 조산원과 보육원도 의료인력에 포

함되는데 조산원은 보건간부학교(2년제)와 의학전문학교(3년제)에서, 보육원은 보육원양성소(3개월제)에서 양성되며, 대부분이 여성들이다.

(3) 예방의학과 의사담당구역제

예방의학이란 질병의 치료보다는 예방을 위주로 하는 것으로서, 북한은 1953년부터 이 정책이 실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1960년 5개년 계획이 끝나고 보건시설과 보건요원이 어느 정도 확보된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이러한 보건정책은 질병으로 인한 노동력 상실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데 일차적 목적을 두고 있으며, 의사와 간호원이 부족한 현실에서 불가피한 것이었다. 현재 북한은 질병예방사업이 보건의료기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가적, 전사회적인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 기본내용은 첫째, 위생 선전·계몽 교양사업, 위생일꾼의 체계적 양성, 둘째, 전염병 예방 및 방역대책의 수립, 셋째, 예방의학의 방침에 따른 의학교육 등이다.

이 제도는 1946년부터 우선 평양을 비롯한 도소재지 등의 몇개 구역 병원과 일부 큰 규모의 산업병원에서 실시되었다고 선전한다. 그리고 1969년부터 각 시·도에서는 소아과, 내과, 산부인과 등에서 의사담당구역제를 실시했고, 탄광지역에서는 직장·갱 담당구역제가 실시되었다.

북한은 의사담당구역제가 전주민이 일생동안 담당구역 의사들로부터 체계적이고 전면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선전하면서 시·군(市·郡)병원, 공장병원, 리(里)인민병원 또는 리(里)진료소 등이 이 사업을 직접 맡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구역담당사업을 맡고 있는 시·군병원과 공장병원의 외래 임상과(臨床科) 의사들 및 리(里)인민병원·리(里)진료소 의사들은 주간 근무시간의 절반 이상을 담당지역에 나가

“위생선전, 위생개조, 소독, 예방접종 등의 사업을 하고 검진, 상담 등을 계획적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1명의 의사가 200~300명의 환자를 한나절에 진료하는 셈이니 정상적인 진료가 어려울 뿐 아니라, 주민 4,000여명을 대상으로 하는 의사담당구역제에 과연 얼마나 충실히 할 수 있는지는 의문시된다.

(4) 무상치료제

북한은 1950년대까지만 해도 노동자, 사무원 및 그 가족에 대한 무상치료제가 선별적으로 실시되다가 1960년초부터 전지역, 전주민으로 확대·실시되었다고 한다. 즉 최고인민회의 제2기 7차회의(1960. 2. 27)에서 전반적인 무상치료제를 전지역에서 실시한다는 요지의 ‘보건사업 강화에 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선전과는 달리 실제로는 매달 월급에서 미리 사회보장비라는 명목으로 1%씩 공제하고 있고, 또한 노동자·사무원의 부양가족으로서 직장에 다니지 않는 노약자는 약값 명목으로 치료비를 내야 하며, 농민 등이 도시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치료비를 따로 내야 하는 등 여러 구실로 기본임금의 10% 이상이 공제되는데, 이렇게 보면 엄밀한 의미로는 무상치료제라고 할 수 없다.

(5) 고려의학(高麗醫學)

북한은 한방치료에 커다란 비중을 두고 있다. 북한이 이같은 한방(동의)치료를 정책적으로 장려한 것은 휴전 이후부터인데, 1954년부터 국가진료기관에 한의사를 두었고, 규모가 큰 병원에는 한의과를 설치했다. 북한이 한의학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은 현대 의약품의 절대부족과

의학수준의 낙후성을 보완하려는 데 있다. 즉 북한은 현대의학과 동의학을 병행 발전시킨다는 방침에서 한방을 토대로 한 동의학연구와 제약산업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1993년부터 동의학을 ‘고려의학’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동의사를 ‘고려의사’로, 동의요법을 ‘고려치료요법’으로, 동약을 ‘고려약’으로, 동의학부를 ‘고려의학부’로, 동의과를 고려치료과로 개명하는 등 부족한 의료시설과 재료를 동의에 의존하고 있다.

북한은 1958년부터 의학과학원 산하에 동의학연구소를 설치하였고, 1970년대에 들어와서는 시·군단위까지 동의학관리국을 설치하였으며, 1974년에는 동의학 약초시험장을 설치하는 등 동의학개발에 주력하였다. 1978년부터는 각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등에 일정량의 약초를 생산하도록 하였으며, 각급 병원마다 대단위 약초밭 조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리고 농민들의 텃밭에 2~5평 이상씩의 약초재배를 장려하는 등 약초재배, 채취, 보호, 증식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그리고 의학과학원 산하 고려의학연구소에서는 5만여건의 민간요법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한 ‘민간요법’, ‘동의학의 민간요법연구자료’ 등의 서적을 출판한 바 있다.

참 고 문 헌

1.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북한사회의 구조와 변화』, 1990.
2. 민족통일연구원, 『북한 관료부패 연구』, 1994.
3. _____, 『탈북자 발생 배경 분석』, 1994.
4. 북한연구소, 『북한총람』, 1994.
5. 『조선중앙년감(1949~1994)』,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6. 통일원, 『'95 북한개요』, 1995.

VIII

북한주민의 생활

제 1 절 주민생활 규제원리	287
제 2 절 경제생활실태	288
제 3 절 직장생활과 노동실태	306
제 4 절 가정생활의 실상과 여성의 위치	318
제 5 절 종교생활실태	332

● 이 장의 요점 ●

- 북한주민들의 생활은 개별 인간의 가치를 추구하는 면보다는 북한식 사회주의체제의 유지와 공고화를 위한 토대로 구축되어 있다. 즉 개개인의 생활 자체가 개인의 가치판단에 의거하지 않고 철저하게 사회주의경제원리와 김일성주의에 규제되어 있는 것이다.
- 각 사회영역에서의 주민들의 생활실태, 즉 경제생활, 직장생활, 가정생활, 종교생활 등은 김일성사회주의원리에 따라 집단주의적이며 획일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90년대 들어와 가속화되고 있는 극심한 경제난으로 이러한 집단적·획일적 생활방식에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으며, 주민들의 의식도 점차 이로부터 이탈되어 나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현재 북한주민들의 생활양상은 경제위기로 인해 더 이상 과거처럼 철저하게 통제·감시되지 못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먹고 사는 문제가 급박해짐으로써 자본주의적 생활방식이 서서히 침투되고 결국에는 개개인의 삶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 갈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제 1 절 주민생활 규제원리

북한주민들의 생활은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경제원리 등에 의해 결정된다. 전인민적 소유와 중앙집권적인 계획에 입각하여 물자의 생산과 분배가 이루어지므로 처음부터 계획된 분배물자를 배급받고 개인의 삶을 영위한다. 따라서 주민들 개개인의 일상적 삶과 관련된 물질적 욕구는 말할 것도 없고 문화적 욕구, 사회적 욕구, 종교적 욕구 등 모두가 계획경제 원리에 의해 규정된다. 즉 주민들은 인간의 기본적 삶의 유지와 하나의 사회적 존재로서 필요한 성취감·소속감·지위·사회적 인정·자유 등에 관련된 욕구들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거의 갖지 못한 채 당의 계획적·조직적 경제통제원칙에 근본적으로 따르도록 되어 있다.

북한주민들의 생활을 지배하는 원리에는 이러한 사회주의적 기본경제 원리외에 여타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볼 수 없는 또 다른 원리도 있다. 그것은 당과 국가, 인민대중 그리고 수령을 유기체적인 하나의 생명체로 생각하고 인민정권을 마치 한 가계내의 호주로 정의함으로써 주민 개개인의 생활 및 욕구 자체는 수령과 인민정권의 영도에 따라야 하고, 또 인민정권과 수령은 주민들의 그것들을 돌볼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하는 원리이다. 즉 “사람들의 물질생활은 정치생활, 사상문화생활과 함께 사회주의생활의 중요한 분야를 이룬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사람들의 물질생활은 인민 생활을 책임진 호주인 인민정권에 의해 보장된다”¹⁾고 주장하고 있다.

1) 박일용, “인민의 복리증진과 호주의 역할,” 「조선사회민주당」, 1996년 제2호(루계 577 호), p. 40.

이는 “우리 당이 지향하는 것은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인간존중의 사회주의사회다”라고 하며 개인의 자주성을 주장하면서도, 결국 개개인의 생활과 욕구 자체는 최상급 호주인 인민정권, 즉 수령의 계획과 지도에 따라야 한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오늘날 북한주민들의 생활실태를 보면, 인민정권은 국가활동의 최고원칙인 인민들의 물질생활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민들의 제욕구 역시 당의 지도노선을 벗어나 개인주의적으로 분출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제 2절 경제생활실태

현재 북한의 경제난은 크게 4난으로 요약되고 있다. 즉 식량난, 에너지난, 생필품난, 외화난으로, 90년대 들어와 연평균 -4.5% 의 성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1인당 GNP도 계속 하락하여 한국은행에 의하면, 95년 현재 957달러로 추정되고 있는데,²⁾ 이와 같은 추정치는 70년대 중반 우리나라의 그것과 비슷한 수준으로서 북한주민들의 경제생활 실태가 실제 어느 수준인지 짐작하게 한다.

1. 소득수준

북한주민들의 실제 개별소득수준은 공식적인 분배체계를 통해 살펴볼

2) 영국의 경제기관인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는 726달러로 추정하고 있다.

수 있다. 우선 북한의 분배형태는 1차 분배형태와 2차 분배형태로 나타난다. 1차 분배형태란 노동의 질과 양에 따른 분배(사회주의분배에 관한 항목 제37조)로 임금형태로 지불되는 분배형태이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표 8-1)의 계층별 임금수준으로 나타난다.

〈표 8-1〉 북한의 계층별 임금수준

구 분	직 책	임 금
당·정기관	당·정무원부장	300~350원
	정무원부부장, 도 인민위원회	250~300원
	도 인민위원회부위원장, 군인민위원회위원장	170~200원
공장/기업소	특급기업소 지배인	250~300원
	1~2급 기업소 지배인	150~200원
노동자/사무원	광부, 제철·제련공 등 중노동자	90~100원
	일반기계공, 운전기사 등 경노동자	75~ 80원
	일반 경노동자	70~ 80원
	사무원	60~ 70원
교 원	대학교원	200~250원
	일반교원	80원
군 장교	장성급	250~400원
	영관급	120~215원
	위관급	84~110원
서비스종사자	여관, 이발소, 식당 등 편의시설종사자	50~ 60원
	의사	120~250원
	인민배우, 공훈배우 등	200~300원

자료 : 통일원, 『'92 북한개요』, 1992, p. 286.

위의 표를 보면, 일반사무직과 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은 70원에서 100원 정도이고, 당·국가중앙기구·군간부·인민배우들의 임금수준은 최저 200

원에서 350원으로 계층적 임금격차가 최고 7배까지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일반주민들의 임금수준을 대체적으로 보면 경노동보다 중노동이, 중노동 중에서도 위험한 직종의 노동이, 또 사무직보다 일반노동직의 보수를 높게 책정하여 나름대로 노동강도를 고려하여 임금을 차별화하고 있다.

한편, 2차 분배형태란 국가세출을 통하여 보조금지불 형태로 각 개인에게 최종적으로 부여되는 사회적 소비수단의 제공으로서 교육, 주택, 의료, 식량 등에 대한 지불을 말한다. 북한은 “노동자들은 먹고, 입고, 집을 쓰고 사는데서만 한해 동안에 매 세대에서 1,300~1,500원의 추가적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것은 월평균 100~125원에 해당되는 엄청난 돈을 국가로부터 받고 있는 것이다”³⁾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것은 과장된 것이다. 영국의 경제조사기관인 EIU에 따르면, 자신들이 북한의 1인당 GNP 726달러로 추계한 소득 중 이 부분은 1/3정도만 차지한다. 2차적 분배가 갖는 적극적 의미는 소위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한다”는 사회주의적 분배원칙에 입각하여 위 (표 8-1)에서 나타난 소득격차를 축소하고자 하는 데 있다. 실제로 북한은 제도적으로 300원의 임금을 받는 부부장급 배우자는 가사노동에만 종사하게 하고, 70원의 소득을 받는 일반노동자의 배우자에게는 70원의 임금을 그리고 190원의 임금을 받는 대학교원의 배우자에게는 65원의 임금을 지불함으로써 소득의 평준화를 유도하고 있으며, 그 결과 일부에서는 가계총소득(가장소득+배우자소득+미분가자녀소득)면에서 소득격차가 그리 크게 나타나지 않는것 같다는 지적도 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주민들의 소득수준이 이러한 양상을 보인다고 해서 경제생활수준 자체도 평등성을 보이고 있다고 보아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주민의 모든 의식주와 관련된 물품들은 국가의 배분에 따라 그리고 심지어

3) 『조선중앙연감』, 1972, 조선중앙통신사

는 권력자의 자의적 기준에 따라 계층별로 차별적으로 배급됨으로써 극심한 소비생활수준의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북한에서는 당의 유일 영도에 따라 모든 것이 서열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부유함 정도가 정확히 일치한다. 실제로 김일성대학 경제학부 조교수로 재직했던 조명철씨는 “평등을 지향하고 있는 사회에서 특권을 누리며 잘 살다가 탈출했다”고 말할 정도이다.

2. 소비수준

북한주민들의 소비생활은 기본적으로 배급체계에 의존해 있다. 우선적으로 기본 의식주를 배급 및 할당제에 의해 공급받고 그 밖의 필요한 생필품은 국영상점이나 직매점, 장마당에서 구매하여 소비생활을 영위 한다. 따라서 북한사회에서 주민 개개인의 소비수준은 개인소득 및 임금이 별로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의 소비수준은 전적으로 개인소득 수준에 달려 있지만, 북한처럼 물자가 항상 부족한 ‘부족의 경제’(economy of shortage)에서는 어떤 물자를 어느 만큼 공급받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1) 식생활실태

북한은 “국가는 인민의 생활에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으며, 인민생활을 골고루 급속히 향상시키면서 생활수준의 격차를 없애는 데 힘을 쏟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의식주 및 생필품의 배급체계를 처음부터 차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즉 주민들을 계층에 따라 크게 중앙공급대상과 일반공급대상으로 나누고, 계속해서 물자공급등급을 매일공급대상자, 1

주(週) 공급대상자, 2주 공급대상자, 인민반공급대상자로 세분하여 차별적으로 배급한다. 그리고 평양을 비롯한 대도시와 지방도시, 농촌 등 지역에 따라서도 차별적으로 배급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평양 등 대도시에 거주하는 특권층에는 필요한 양만큼 매일 또는 수시로 배급하지만, 일반주민들에게는 일한 양에 따라 월 2회 또는 매주 단위로 배급한다. 구체적으로 우선 계층별 식료품배급체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 8-2〉 계층별 식료품 배급체계

공급계층	해 당 성 분	공 급 양	공급처	비고
매일공급 대상자	당 및 정부기관 핵심 간부, 김정일비서, 개 인서비스 요원 등	쌀 700g(백미10:잡곡0) 잡곡 4가지, 육류 15~ 20kg, 과일 60~80kg, 맥주 60병, 담배 60갑	호위총국 공급과	특별 계층
1주공급 대상자	중앙당부부장, 정무 원부총리, 제1호부고 급장교, 장성급 장교 등	식량 700 g (백미7 : 잡곡 3), 잡곡 3가지, 육류, 야 채, 맥주, 담배 등 필요량 (매일공급대상자와 비슷)	당재정 경리부	특별 계층
2주공급 대상자	정무원부장, 부부장, 최고인민회의부의장, 정무원각부장 국장, 과장, 항일투사유가 족, 영웅칭호자 등	식량 700 g (직급에 따라 7 : 3 또는 5 : 5) 육류 1kg~6kg, 생선 1 kg~10kg, 계란 15개~ 30개, 담배 30갑, 야채 등 직급별 차이	공급소에 배 급카드제시 (1호 ~ 4호 공급소)	관직 소유 자
인민반공급 대상자 (15일마다 배급)	노동자, 사무원, 농민 등	식량 700 g (2 : 8, 농촌 은 1 : 9), 생선=가구당 1개월에 1kg(실제 3~4 개월), 육류-명절에 특 별배급(1~2kg), 기타는 부식카드 제시하고 배급	동배급소	관직 없는 일반 인민

자료 : 북한연구소, 『북한총람』, 1994, p. 151를 수정 정리.

앞에서 보면 식량은 동일하게 1인당 700g으로 배급받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백미와 잡곡의 비율면에서 차이를 보여 특권층은 10:0 내지 7:3의 비율로 일반주민들은 2:8 내지 1:9의 비율로 배급받는다. 일반주민들이 받는 식량은 이것도 전부 받는 것이 아니다. 700g에서 월 4일분의 전쟁비축미와 절약미를 공제하고 받는 것으로 실제로는 547g정도밖에 안된다. 그리고 유치원 이하 아동 및 무직자는 300g, 인민학생, 고등중학생, 대학생은 각각 400g, 500g, 600g을 배급받지만 체제유지에 절대적인 특수군인들은 800g을 받는다. 부식품의 경우 김치, 야채, 콩나물, 두부 등이 주류이고, 간장·된장·고추장·식용유와 같은 필수부식품은 당·정간부들에는 일정하게 배급되지만, 일반주민들의 경우 1년에 한번 12장으로 되어 있는 배급카드를 받아 매달 지정된 분량만큼 국영상점에서 구매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부식품은 국영상점에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정된 양만큼 사지 못하고 결국 장마당에서 10배 이상의 가격을 주고 구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육류의 경우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생일 때와 같은 특별한 때에만 배급받는데, 생선(명태)은 1년에 1인당 1kg, 돼지고기·닭고기는 연 5회 가구당 1kg을 배급받고, 그나마 쇠고기는 배급받지도 못한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북한의 공식적인 식료품배급체계와는 달리, 최근 몇 년간의 심각한 식량난으로 평양을 제외한 일부 지방(주로 자강도, 함경북도, 강원도지역)에서는 몇 달씩 식량이 배급되지 않기도 했으며,⁴⁾ 평양 또한 최근에는 일반주민의 경우 1인당 하루 배급량이 250g~300g, 엘리트노동자의 경우 400g~500g정도로 줄어들고 군인들에 대한 배급도 줄어들거나 일부 잠시 중단된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

4) 잠시 일부 배급되더라도 강원도와 함경도 같은 지방에는 아예 쌀은 배급되지 않고, 옥수수와 감자만이 배급되었다 한다.

져 있다.⁵⁾ 그리고 최근에는 식량난이 더 심각해지자 공식적인 식량배급 방식을 직장 또는 조직별로 노동자에게만 배급되는 방식으로 바꾸어가고 있으며, 부양가족인 주부·어린아이·노인들에게는 배급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⁶⁾ 극심한 식량난은 국제구호기관 관계자들도 동일하게 증언하고 있는데, 그들에 의하면 북한주민 13만명 정도가 하루 평균 4백50g의 식량을 배급받고, 그외의 주민들은 250g(6백 칼로리) 내지는 그 이하 수준의 식량을 배급받고 있다고 한다.⁷⁾

북한당국은 ‘쌀은 사회주의’임을 표방하고 ‘농업제일주의정책’하에 ‘하루 두끼먹기운동’, 허리띠 졸라매기 운동, 1일 1식 국수먹기운동, ‘여름에 남새밥(야채밥) 겨울에 김치밥 먹기운동’ 등을 전개하거나 각종 채소류와 나물, 밀가루를 이용한 대용식품들을⁸⁾ 보급하고, 1996년 5월부터 구황식품인 감자까지도 처음으로 공식적인 식량배급제에 포함시키는 등 식량문제를 해결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북한경제체제의 구

5) 평안북도 해안국경 경비대에서 전사로 근무하다가 1995년에 귀순한 우광빈의 증언. 또한 '96년 9월에 귀순한 어느 하전사에 의하면 하전사 평균 1일 배급량이 잡곡 800g인데, 쌀:강냉이 = 3:7로 650g으로 줄었다 한다.

6) 동아일보, '96. 12. 15.

7) 베너드 크리셔 전 뉴스위크지 동경지국장은 만일 북한이 이 상황을 계속해서 지속하면 소말리아 사태나 2차대전 패전직후 일본과 비슷한 경우를 볼 수 있을는지도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다(한국일보, '96. 9. 13). 세계식량계획(WFP)은 '96년 12월 6일 내부용으로 작성된 '특별보고서'에서 북한의 '96년 곡물수확량은 430만톤으로서 '97년 식량수확시까지 236만4천톤이 부족한 것으로 전하고 있다(시사저널, 12월26일, p. 22). 통일원은 '96년 북한의 곡물수확량을 370~380만톤으로 약 300만톤 정도 부족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8) 대용식품으로는 혼합국수, 냉동강냉이국수, 남새밥, 현채, 속도전가루, 콩깻묵식품 등이 권장되고 있다. 이 중에서 몇가지만 보면, 혼합국수란 무독성 나무껍질과 옥수수가루, 감자가루를 섞어 만든 국수이고 냉동강냉이국수는 강냉이로 국수를 만든 다음 냉동시켜 저장하는 가공국수를 말한다. 그런데 최근 식량난이 심각해지면서 각 도 및 기관에서 주민들에게 배급하고 있는 대체식량은 벗짚, 벼뿌리, 옥수수뿌리를 분말로 만든 후 여기에 밀가루를 섞어 만든 국수와 빵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 대체식품을 먹은 주민들이 심한 설사와 배탈을 앓거나 심지어는 생명까지 잃은 사례도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었다고 한다(내외통신, '96. 5. 2, 1003호).

조적 모순으로 인해 해결될 전망이 아직 불투명한 실정이다. 세계식량기구는 사람의 하루 신진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초 곡물소비량은 400g(1천 4백 칼로리)이어야 한다고 하는데, 현재 북한주민들의 영양상태는 짐작하고도 남을 일일 것이다. 실제로 1996년 8월 한달동안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국제구호기관 관계자에 따르면 “농사일에 동원된 인민·중학생들의 머리카락이 단백질 섭취 부족 때문인 듯 금발처럼 갈색으로 변색한 것을 볼 수 있었으며,” 최근 산모들의 영양실조로 영아사망률(’95년 현재 인구 1,000명당 26.8명으로서 남한의 3배)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 한다. 유엔아동기금이 1996년에 발행한 백서에 의하면, 북한의 5세 이하 어린이의 사망률이 인구 1천명당 31명꼴로 남한보다 3배나 높고 모성사망률도 인구 10만명당 70명꼴로 남한보다 2배나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최근 북한당국도 영양결핍으로 청소년들의 발육이 부진해지자 징집을 위한 신체검사 기준에서 신장 3~4cm를 낮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⁹⁾

(2) 의류소비실태

북한주민들의 의류소비실태 또한 식량사정보다 덜하지만 아주 낮은 수준이다. 본래 북한주민들의 의복은 1970년대까지만 해도 ‘천리마시대 와 사회주의생활양식’이라는 구호 아래 획일적으로 통일되어 남자는 인민복에 레닌모를 쓴 모택동복, 여자는 흰저고리에 검정통치마 한복이 일반적이었다. 그런데 1979년 4월 김일성이 “평양시 등 대도시 주변 인민들은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유색복장을 해야 한다”는 교시를 내린 후부터 평양, 원산, 청진 등 대도시 주민들이 양장을 하기 시작했고, 82년 4월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일성이 “여성들이 소매 없는 옷과 앞가슴

9) 96년 8월에 귀순한 장칠봉하사(23살)의 경우 160cm키에 체중 42kg이었다.

이 많이 팬 옷을 입고 다닌다고 해서 사회주의양식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한 후부터 색상과 디자인이 다양해지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에 당기판지와 매체들에 패션기사들이 많이 게재되고 90년대에 들어서는 그 영역이 헤어 스타일과 화장법에까지 넓혀졌으며, 평양시 피복연구소 주관하에 춘추의류전시회·평양시 옷전시회 등이 열리고 95년 4월에는 ‘평양체육문화축전’을 앞두고 처음으로 패션쇼까지 열렸다. 말하자면 북한당국은 이제까지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이라는 전제 아래 의복의 1차적 기능(몸의 보호기능)만 강조하다가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의복의 제2차적 기능(멋의 창조)도 인정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북한 여성들의 옷차림이 눈에 띄게 화려해지고 화장도 진하게 하는 등 야해지기까지 한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¹⁰⁾

미용사 출신의 한 탈북자(96년 6월 귀순)는 최근 북한여성들이 ‘삼각머리’, ‘채양머리’, ‘오사리머리’ 등과 같은 다양한 헤어스타일도 구사하고 있지만 물론 생계가 어려운 일반여성들은 머리에 신경을 못써 6개월에 한 번 정도 미용실에 들러 커트나 퍼머를 하는 정도라고 한다. 이러한 모든 변화의 결정적 계기는 89년 ‘세계청년학생축전’에 몰려든 1만 5천 여명이나 된 외국인들의 세련되고 활달한 옷차림에 영향을 받아서였다. 특히 이 당시 북한의 청소년들은 외국인들의 간편한 캐주얼 스타일의 옷 차림에 자극을 받고, 심지어 밀입북한 임수경의 연설보다는 입고 있던 티셔츠와 진바지에 매료되어 청바지 붐이 일어났었다고 한다. 당시 청바지 한벌은 암시장에서 노동자 한달 월급의 5배인 4백원을 호가하였으며, 93년부터 북한당국이 단속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청바지를 단속

10) 「천리마」나 「조선여성」 같은 잡지에 피부미용 정보, 화장법 등이 실리거나 심지어 헤어 스타일링 무스에 대한 안내가 게재되기까지 하였다. 또 북한은 87년 북일 합작의 ‘너와 나 미용연구회’와 화장품 공장을 설립해 다양한 화장품도 생산하고 있는데, 아직은 기초 화장품이나 메이크업 제품 중심이고 색조화장품의 생산·유통은 제한되어 있다.

할 당시 또 하나 단속한 옷이 있었는데, 그것은 치마바지이다. 청바지와 치마바지는 그 당시 북한의 멋쟁이들이 선호하는 최신유행복으로서 주로 고위층 자녀들과 유학생, 해외출장자, 북송교포들이 입었다고 한다. 김정일은 청바지와 치마바지의 착용금지 명분으로 “청바지는 미제국주의, 치마바지는 일제가 만든 전형적인 자본주의 상징”임을 내세웠지만, 대부분의 일반주민들은 청바지, 치마바지를 몰랐다가 ‘사상교양 깜빠니아(캠페인)’를 통해서 비로소 그 존재를 알았다고 한다. 이는 북한주민들의 옷차림이 화려하고 다양한 양복·양장차림으로 변화되어가고 유행 바람도 타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 같지만 주로 평양과 같은 대도시 특권주민들에 해당되는 것이며, 일반 주민들은 대체로 잠바나 스웨터, 인민복, 작업복차림으로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식량과 마찬가지로 의류 역시 배급제로 차별적으로 공급되는데, 그 실태는 다음 (표 8-3)과 같다.

(표 8-3) 계층별 의류배급체계

대상	회수	품목 및 수량	비고
4호이상 당· 정무원간부	년 1회 2년 1회	양복지(하·동복) 1벌씩 기성 복 1벌, 내의류 무제한 또는 가족필요량공급 양복지 1벌	반액공급
기사, 교원	3~4년 1회	양복지 1벌	염가공급 의류특배
학생 노동자	년 2회 년 1~2회	교복 1벌 작업복 1벌, 내의류	염가공급 무상, 염가

자료 : 통일원, 『'92 북한개요』에서 정리.

중앙공급대상인 당·정무원간부들에게는 기성복이나 양복지가 공급되고 최상위 간부급에게는 고급모직물이 그리고 하위로 내려갈수록 반모

직, 대마직 등 질의 차이가 나게 공급되고 있다. 이들에게는 지정된 상점에서 양복, 모직물, 심지어 모피까지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다. 일반공급대상인 노동자들에게는 ‘로동용 물자’로서 ‘주체직물’이라 부르는 포플린, 광목, 스프 등의 직물과 작업복이 염가 또는 무상으로 공급된다. 그러나 사무원, 부양가족, 농민들에게는 인민반을 통하여 공급카드를 발급받아 각자 돈을 주고 구매하도록 되어 있으며, 대개는 국영상점 및 직매점에서보다 암시장에서 구입한다. 일반주민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류는 속내의류이다. 속옷은 1년에 한두번 정도 시·군행정경제위원회에서 배급표를 주면 지역 국영상점에서 구입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김일성 부자의 생일에는 특별배급을 받는다. 그러나 90년대 이후에도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거의 암시장에서 구매하여 소비하는 실정인데, 수출품파복공장에서 짜투리로 남은 천조각으로 만든 ‘조각천팬티’ 한 장이 노동자 한달 월급의 1/4인 20원이라 한다. 이밖에 암시장에서 거래되는 의류는 거의 중국산으로 국정가격의 수십배에 이르는 가격으로 거래된다. 그래서 북한은 의류난을 해소하기 위해 ‘의류생산에서 짜투리 없애기’, 옷감재단에서 ‘1cm 절약운동’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에너지난으로 피복공장이 거의 가동되지 않아 더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3) 주생활 실태

북한주민들은 주택 역시 사적 소유를 인정받지 못하고 국가로부터 공급받아 매분기별로 사용료를 내는 임대형식으로 살고 있다. 주거지역은 직위와 직장을 고려해 결정되고, 주택형태는 “민족적 양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으라”는 당의 시책하에 주민동원의 용이성, 노동력의 조직화, 통제 등을 위해 주로 집단거주형 형태를 띠고 있다. 중소도시나 농촌

에서는 일자형으로 연결된 단층주택, 연립주택(2~3층), 문화주택, 한옥식 구옥, 하모니카 아파트¹¹⁾ 등이 그리고 대도시에서는 초고층아파트가 대부분이다. 즉 획일적 주택정책에 따라 주민의 생활환경을 규격화, 집단화하여 주민들의 개성적인 주거욕구를 처음부터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주민들이 계층에 따라 공급받는 주택사정을 보면 다음 (표 8-4) 와 같다.

(표 8-4) 계층별 주택배급체계

구분	주택형	가구구조	직급
특호	독립고급주택	독립식 다층 또는 2층 주택정원, 수세식변소, 냉온방	중앙당부부장 이상 정무원부부장 이상 인민군 소장급 이상
4호	신형고층아파트	방2개이상, 목욕탕, 수세식변소, 냉온방, 베란다	중앙당 과장급, 정무원국장이상, 대학교수, 기업소책임
3호	중급단독주택	방2개, 부엌, 창고	기업소부장, 중앙기관지도원, 도단위 부부장
2호	일반아파트	방1~2개, 마루방1, 부엌	인민학교, 고등중학교 교장, 일반노동자, 사무원
1호	집단공영주택 농촌문화주택	방1~2개, 부엌 단층, 2~3층 연립주택 방2, 부엌, 창고	말단노동자 및 사무원 협동농장원

자료 : 통일원 편, 『'92 북한개요』, 1992, p. 226.

11) 하모니카 아파트란 1950년대에 설립된 조립식 아파트로서 각 층마다 후면으로 단일 복도가 설치되어 있고, 이 단일 복도를 따라 방 한칸, 부엌 한칸이 달려 있어 나온 이름이다. 원래는 외랑식 아파트라 불리운다.

전체 주택에서 상층계급이 거주하는 특호, 4호는 15%를, 중급계층이 거주하는 3호, 2호 주택은 25% 그리고 일반주민들이 거주하는 1호 주택은 60%를 차지한다. 당·정 고위간부급의 가구당 거주공간은 66m², 1인당 거주공간은 13.2m²이지만, 일반주민들의 그것은 각각 22.3m², 4.5m²이다. 그러나 이것 역시 공식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일반주민들의 가구당 평균 거주공간은 7~8평에 지나지 않는다. 북한의 주택보급률은 현재 약 65%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당·정간부들은 쉽게 주택을 배정받는 반면, 일반주민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의 주택보급률은 평균치에 못미치는 57% 정도로 알려져 있다.¹²⁾

주민들은 행정경제위원회 도시경영과에 주택을 신청하고 입사증을 받기까지 보통 1~3년이 걸리며,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거의 4~5년이 걸려서 결혼후에도 부모집에 같이 살거나 1세대용 아파트에 2세대가 ‘동거살이’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이에 북한은 심각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각 기업소가 스스로 노동자에게 필요한 주택을 지어주라는 ‘과제주택’정책을 시행하기도 하고, 제3차 7개년계획기간 동안에 23~30만호의 주택건설방침을 세우기도 하였지만, 5만세대를 건설하는 것으로 그침으로써 주택의 질적 문제 뜯지 않게 양적 문제도 안고 있다.

한편, 최근들어 경제난이 심화되고 주택난이 악화되면서 주택의 사적 소유와 거래를 금지하고 있지만 음성적으로 거래가 이루지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고 한다. 즉 세칸짜리 집을 소유한 사람이 돈(탈북자의 증언에 의하면 신의주에서는 7만원에 거래되었다고 한다)을 받고 한칸짜리 사람과 바꾸거나, 땅은 국가 것이지만 처음부터 개인이 거주하여 ‘개인집’으로 인정된 ‘개인집’을 국가에 일정한 수수료를 내고 마음대로 팔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물론 ‘국가집’을 거래할 경우 공식적으로는 돈을 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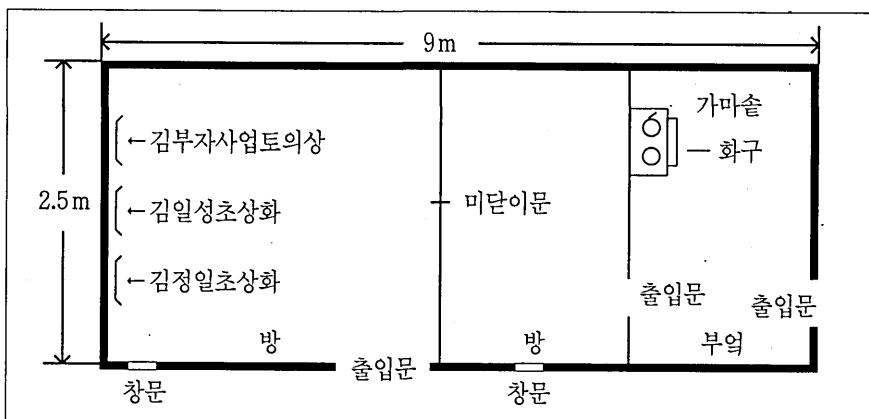
12) 선한승, 『북한주민의 직장생활과 노동』, 공보처, 1994, p. 100.

받지 않고 개인끼리 합의본 것으로만 보고한다고 한다.

그러면 실제 북한주민들의 주생활실태를 구체적으로 보기로 하자. 다음 그림은 김만철씨가 진술한 방 2칸, 부엌 1칸짜리 일반노동자 주택의 내부구조이다.

〈그림 1〉 일반 노동자주택의 내부 구조

(김만철 씨의 구술에 의함)



자료 : 서동익, 『인민이 사는 모습』 제2권, 자료원, 1995, p. 260.

주 : 1) 화장실은 25세대당 재래식 변소 1개소씩 설치.

2) 거주 공간은 약 7평 정도됨($(9 \times 2.5) \div 3.3 = 6.8$ 평).

방 2칸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특이한데, 난방 및 취사연료는 대부분 구명탄, 갈탄, 목재, 농작폐기물, 열진(가루로 된 석탄) 등을 사용한다. 석유나 가스연료 그리고 인근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폐열로 난방은 대도시의 고층아파트나 중소도시의 일부 아파트에서만 사용된다. 그리고 그림에서 보면 화장실이 없는데, 화장실은 보통 대도시의 아파트나 연립주택이 아니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어서, 탈북자에 따르면 100여 가구가 세칸짜리 공동화장실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아침이면 사람들이 화장실 앞에 길게 늘어선 풍경을 볼 수 있다고 한다. 전기와 수도물 역시 귀하기 때문에 단전·단수가 보통이고 시간제로 사용하는데,

지방아파트나 연립주택의 경우 아예 온수관 자체가 안되어 있는 것이 많으며, 농가의 경우는 공동수도 형태로 사용하는 것도 일반적이다. 세간 살이에 대해서 북한주민들은 “사람이 살려면 오장육부가 있어야 하듯이 가정에도 ‘5장 6기’가 있어야 한다”고 하며, ‘5장 6기’를 갖추는 것을 가장 큰 소망으로 여긴다. 5장이란 이불장, 양복장, 책장, 신발장, 찬장이고, 6기란 TV수상기·냉동기·세탁기·재봉기·사진기(혹은 녹음기)·선풍기(혹은 직기)이다. 그러나 실제로 대부분의 일반주민들은 ‘2장 3기’ 정도의 세간만을 갖추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나마도 생필품구입을 위해 내다팔고 있는 실정이다. TV수상기, 전화 등 가전제품의 보급도는 한 사회의 생활문화를 반영하는 척도이다. 북한의 경우 TV수상기는 보통 대여섯집 건너 한 대 정도이고, 전화는 한 동네 전체에서 거의 없거나 한 집 정도 그것도 당간부의 집에 있으며, 냉동기는 대도시의 경우 인민반 20 ~30가구 중의 한두 집 정도이고 그것도 지방에서는 보기 어렵고, 세탁기는 대도시나 지방, 농촌에서 거의 구경하기 힘들다고 한다.

3. 경제난과 경제생활의 변화

인간의 삶을 영위함에 있어서 기초 생필품(subsistence material)의 확보는 두말할 것도 없이 필수적이다. 기초 생필품의 배급은 북한당국에서 볼 때 주민들을 효율적으로 통제하는 절대적 수단이었다. 그리고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기초 생필품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특권적인 것이어서 공적인 영역에서 일단 자율적으로 국가체제에 순응하도록 만드는 주요 근거이기도 했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차별적인 물자의 배급체계는 동구 사회주의권에서 볼 수 있었던 ‘노멘클라투라’라고 불리는 특권층의 전횡을 가져오고 일반주민들과의

사회적 갈등요소를 발생시켰다. 더욱이 90년대 들어와 가중되고 있는 극심한 경제난은 위로부터의 주민통제와 아래로부터의 순응에 주요 기제였던 배급체계의 기능을 약화시키거나 일부 마비시키기까지 함으로써 일반 주민들의 사회주의적 경제생활 패턴에 변화를 가져왔다. 즉 집단주의적 소유원칙과 집단주의적 생산·소비원칙에 변화가 일어나고, 사적 경제행위가 증가하고 비공식적인 사적 경제영역이 확장되고 있는 것이다.

본래 사회주의적 경제체제하에서도 사적인 ‘2차경제’(the second economy)는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부차적으로 존재한다. 텃밭, 부업밭의 경작이나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들끼리 소규모 서비스 및 수리행위를 하고 필요한 약간의 물품들을 서로 물물교환하는 것이 그 예이다. 실제로 북한은 공식적으로도 1개군 및 대도시마다 10일에 한 번씩 ‘농민장’¹³⁾이라 하여 일부 협동농장에서 남은 잉여생산물들의 거래를 허용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것이 상설화하여 매일 열리다시피 하거나 다수로 늘어나고 있으며, 평양과 같은 대도시에 좌판 상행위가 ‘가내방’(가내작업 반 가판대)이라 하여 10%의 수수료를 받고 허용될 뿐만 아니라 개인이 개간한 소토지경작, 협동농장 분조농산물의 자유판매 확대¹⁴⁾ 등이 허용 되기에 이르렀다. 본래 장마당에서는 채소나 가내수공업품으로 만든 생필품만이 거래되도록 하고 쌀이나 곡물거래를 불법으로 하였던 것을 93년부터 공식적으로 허용하기까지 하고 있다. 또 중국과의 교역은 국가기

-
- 13) 농민시장은 1950년 북한당국이 ‘농민시장에 관한 규정’에 따라 협동농장이 쉬는 날인 1~11~21일에만 허용한 것으로 협동농장원 농민들이 생산한 채소, 돼지고기, 참깨, 맙고기 등 농·축산물을 자유판매가격에 의해 매매한다. 북한은 그동안 경제사정에 따라 농민시장의 규제와 허용을 되풀이해 왔는데, 지금까지는 계획경제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존재해 왔다고 볼 수 있다.
- 14) 분조란 협동농장의 최소 생산단위로서 평균 10명~25명선으로 구성되었다. 북한은 ‘분조책임제’라 하여 그 동안 일정한 곡물수확량을 분조책임하에 생산하도록 하였지만, 그 생산성이 개인 텃밭보다 극히 저조하여 95년 봄부터 기준실적량과 분조구성원을 7~8명으로 낮추고 초과분의 판매와 분배를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하였던 것이다.

관만이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통제하였는데, 접경지역 농민들이 물물교환형태의 구상무역을 하는 것도 묵인하고 있다. 말하자면 공식적인 배급기능의 마비로 인해 북한당국도 개인거래 및 2차경제영역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식적인 시책은 이미 주민들간에 만연되고 있는 사적 거래의 활성화를 할 수 없이 양성화함에 지나지 않는다. 현재 북한은 그야말로 ‘전주민의 상인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주민들이 생존하기 위해 장사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극심한 식량난과 생필품 배급의 마비로 기초 생존자료들을 물물교환이나 개별거래를 통해 구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탈북자에 따르면, “과거에는 생필품을 장마당에 내다 팔고 구입하면 처벌을 받았지만 최근에는 생필품은 물론 개인이 만든 떡, 술, 옛, 사탕 등 돈이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거래되고 있으며 단속도 되지 않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주민들은 장사를 하지 않으면 도저히 먹고 살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적으로 보따리장사를 나서는 사람들¹⁵⁾ 외에 직장 다니는 틈틈이 장사를 나서는 사람이 태반인데, 이는 여자, 어린 아이, 노인, 심지어는 당간부까지도 망라하고 있는 실정이라 한다.

주민들의 이러한 경제생활행태 변화는 결국 암시장의 규모를 폭발적으로 증가시켜 전 주민들이 소비하는 생필품은 80%가, 옥수수·쌀 등 식량은 60%가 이 곳에서 거래될 정도라 한다. 암시장에서 거래되는 물자들의 가격은 대부분 국정가격의 몇십배에 이르고 있는데, 그 실정은 다음과 같다.

15) 이 전문적인 보따리장사꾼들은 주로 노동불능자, 퇴직자, 가정주부들이 주축을 이루지만, 이 중에는 농물을 주고 노동불능자로 판정받은 자와 휴가·출장 등으로 다른 지역을 오갈 수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이들은 약 70~80만명선으로 인구의 3~4%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홍성국, 『북한의 상업·유통』, 공보처, 1996.)

(표 8-5) 주요 생필품들의 국정가격과 암시장가격 비교

구분	품 목	단위	국정소매가격	암거래가격
식료품	쌀	1kg	8전	100원
	돼지고기	1kg	7원 60전	180원
	두부	1모	9전	18원
	달걀	1개	22전	13원
일용품	치약	약	1개	7원
	양말	말	1족	5원
	운동화	화	1족	35원
	양복	복	1벌	350원
기호품	소주	주	2원 40전	20원
	담배(평양)	갑	1원 60전	20원
공산품	컬러TV	1대	1,350원	20,000원
	라디오	오	100원	750원
	전자거	1대	1,000원	4,000원

자료 : 통계청, 『남북사회경제상비교』, 1996년 11월에서 정리.

- 주 : 1) 식료품가격은 96년 5월 당시 기준이고, 일용품·기호품·공산품의 가격은 92년도 가격임.
 2) 암거래가격은 지역이나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음.

위 표를 보면 생존에 필요한 쌀, 의류들은 거의 평균 70원 수준인 노동자 한달 임금보다 아주 높은 수준이다. 그러므로 왜 북한주민들이 모두 장사에 나서지 않으면 안되었는지 짐작이 가는데, 이렇게 물자가 부족한 사회에서는 비화폐경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화폐는 휴지조각이고, 재화가 화폐 역할을 하기 마련이다. 실제로 북한에서는 “강냉이는 국제화폐다”라고 할 정도로 강냉이 1kg이 50~70원으로 평가되어 무엇이든 다 교환할 수 있는 물품화폐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한다. 암시장규모의 이와 같은 확장은 결국 주민들의 경제행위가 집단주의보다는 사적 동

기애 의해 영위되도록 하고 경제주체로서의 개인의 역할을 증대시킨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현상은 계획경제를 대체하기보다는 배급기구의 마비에 따른 주민들의 자구책 수준으로서 아직은 주민들에 의한 체제저항으로 보기 는 이른 것 같다. 물론 배급체계를 위협하는 암시장의 성장은 북한당국으로 하여금 어떤 형태로든지 경제체제의 변화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래서 최근 북한당국은 선전매체물을 통하여 자주, ‘자본주의사상 침투반대투쟁’이라든가, ‘부르주아문화에 대한 환상 저버리기운동’이라든가, ‘권력내부 수정주의자 철저경계’를 촉구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데, 분명 한 것은 공식적이며 규범적인 주민들의 경제행위와 경제의식이 변화되고 있으므로 이것이 사상교육으로 어느 만큼 규제될지는지가 관건이라 하겠다.

제 3 절 직장생활과 노동실태

북한주민들에 있어서 직장은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재산 및 사적 소유가 인정되지 않아 노동력을 제공하지 않으면 기본 생존자료들을 배급받거나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북한에서 노동가능한 인력은 거의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1995년 현재 북한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9.8%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¹⁶⁾ 이는 구소련, 중국 등 사회주의국가와 미국 등 5개 선진국가 및 남한(1995년 62%) 과 비교해 보아도 높은 수준으로서 사회적 노동력의 동원체제가 최대화 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16) 통계청, 『남북한, 경제사회상비교』, 1996. 11, p. 27. 북한에서는 노동가능인구를 15세 이상으로 보는 우리와 달리 16세 이상으로 보고 있다. 만일 노동가능인구를 15세 이상으로 변경하고 계산하면, 경제활동참가율은 72.5% 정도로 나타난다.

1. 직업의 선택

자본주의사회에서 직업의 선택은 무엇보다도 소득의 극대화와 사회적 성취를 목표로 하면서 개인의 자율적인 판단기준에 따라 노동시장에 참여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그러나 사회주의사회에서 일반주민들의 직업의 선택은 일차적으로 사회주의적 계획에 의한 사회부문별 노동력배치에 의해 규정된다. 즉 경제전체적으로 이미 계획차원에서 작성된 ‘로동자원 균형표’ 및 ‘공장·기업소별 로력대장’, ‘공정별 표준 로력조직표’에 따라 노동력이 배치되고, 개인의 직업선택이 이에 의거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나 북한에서 개인의 직업선택에 가장 핵심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이러한 사회주의적 계획방침보다 당성과 출신성분이다. 어떤 부문에 얼마만큼의 인력이 필요한가를 조사하여 사회적 노동력의 낭비를 없애고 적절한 인력배치를 한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위세있고 사회적 신분상승과 관련된 직업은 정치적 기준에 따라 선택가능한 것으로 되고 있다. 개인의 능력, 학력, 소질, 희망 등은 이차적인 것일 뿐이다. 북한 사회주의로동법 제5조에는 명시적으로, “모든 근로자들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한다”고 하고 있지만 개인의 희망사항이나 능력 등은 거의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평양외국어대학 출신으로 전외교관이었던 고영환씨에 따르면 대학 당위원회에서 대학교원이 되라는 것을 거부하였더니, 당 비서가 “당에서 키워줬는데 당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대학생의 본분이다. 당에서 학생더러 탄광에 가서 일하라 하면 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 학생은 대학공부를 헛하였다”¹⁷⁾라고 말하더니, 결국 졸업후 모란봉시계공장 외사과 번역원으로 배치되었으며 모든 동료들이 보복을 당하였다고 울분을 터트렸다고 한다. 그리고 한 탈북자

17) 고영환, 『평양 25시』, 고려원, 1993, p. 301.

를 면담하고 작성한 연구에 의하면, 직업의 선택에서 약 46% 정도가 상부지시에 의해 이루어지고, 10% 정도만이 개인의 자유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조사되었다.¹⁸⁾ 이렇게 개인은 배치된 직업이 마음에 맞지 않거나 적성에 맞지 않더라도 중앙당국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는데, 이 점은 배치 후 직장이동이나 변경에서도 계속 관철된다.

북한에서의 직업선택은 11년간의 의무교육이 끝나고 고등중학교를 졸업한 후인 만 16세부터 이루어진다. 어느 나라 사회에서나 사회적 진출을 앞둔 청소년들은 직업의 선택에서 많은 고민을 한다. 이 경우 아마 대개는 적성에 맞는 일과 사회적 존재로서의 성취를 놓고 고민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위에서 본 것처럼 개인의 진로는 당의 계획과 출신성분, 당성에 따라 이미 정해져 있다. 그래서 북한의 많은 청소년들은 이미 자신의 운명이 정해 있음에 고뇌를 하고 있다. 고등중학교를 졸업하고 기술학교, 전문학교, 대학교, 군관학교 등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하는 학생은 전체 졸업학생 중 5%밖에 안된다. 대학은 능력외에 반드시 추천서가 있어야 진학하는데 여기서 결정적으로 당성과 출신성분이 개입된다. 따라서 ‘직통생’(고등중학교 졸업후 직접 고등교육기관으로 진급한 학생) 이외의 대부분의 졸업생들은 군대에 가거나 취직을 하는데, 직장은 시·군행정경제위원회 노동과에서 시·군내 기업소나 공장, 서해안 간척지, 탄광, 협동농장원 등으로 배치한다. 물론 2년간의 직장경력과 3년간의 군대경력 이후 대학입학 추천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이러한 경우는 무엇이든 ‘뒷받침’(친척중에 당간부가 있거나 아버지가 돈이 있거나)이 있어야 가능하므로 소수에 불과하다. 일단 직장이 배치되면 시·군 노동과에서 파견장이 나와 데려간다.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주민등록이동, 군·시이동, 퇴거, 노동수첩 발급 등의 절차를 밟는다. 거의

18) 선한승, 『북한노동자의 적응력 실태와 인력활용방안』, 한국노동연구원, 1995. 12.

대부분은 강제로 데려가지만, 만일 마음에 맞지 않아 못가겠다고 떼를 쓰면 파견장이 다시 시·군 노동과로 넘기고, 여기서 놔물을 쓰면 좋은 데로 배치되거나 좋은 자리가 날 때까지 집에서 한 3년정도까지 놀기도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교양소에 가는 것이 대부분이다.¹⁹⁾

고등교육기관 졸업생들의 경우는 이와 차별적으로 취급된다. 우선 전문학교나 특수학교를 나온 학생들은 시·군보다 높은 도행정경제위원회에서 직장을 배치하는데, 이들은 주로 기사장이나 작업반장 일을 담당한다. 대학졸업생들의 경우는 중앙부서에서 관리한다. 졸업식이 끝나고 대학 당위원회에 정무원 5사무국의 지도원들이 와서 개별 학생들을 면담하고 희망사항을 묻지만, 대부분은 이미 졸업생들의 출신성분, 학업성적, 사상, 재학중의 정치활동 등을 참작하여 각 도별 직장배치를 한다. 만일 당의 배치에 순종을 하지 않으면 앞서 본 고영환씨처럼 불이익을 주거나, 당간부 친척이 있을 경우 좋은 자리로 배치된다. 졸업생들은 자신들이 구체적으로 어느 직장에 배치되는지를 지적된 도에 가기까지는 알지 못하고, 해당 도에 가서야 알게 된다. 그리고 주민 등록이동증, 당이동증, 식량정지증명서, 직장배치증 등도 개인에게 주지 않고 책임지도원이 일괄적으로 해당 도에 들고 가게 되어 있다. 이는 제반 증명서들이 없으면, 배급받을 수 없고 당조직 및 직장생활을 할 수 없게 함으로써 할 수 없이 배치된 직장에 가도록 하는 것이다. 북한의 사회주의로동법 제10조는 “국가는 전인민경제적 범위에서 사회적 로동을 계획적, 합리적으로 조직한다”로 되어 있다. 그러나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한 엘리트노동에 있어서도 이러한 원칙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19) 1992년 정주 일신고등중학교를 졸업하고 철산자동차학교를 다니고 장사하다가 중국에서 밀항하여 귀순한 김영국의 증언.

2. 노동실태 및 휴가

북한은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들이 일반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하루 ‘8시간 노동제’를 원칙으로 함을 사회주의로동법에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노동의 힘든 정도와 특수한 조건에 따라 7시간 내지는 6시간 제도 허용하고 있다. 예컨대 중노동의 경우는 7시간, 3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여성노동자의 경우 6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노동실태는 이와 다르다는 것이 모든 귀순자들의 증언이다. 다음 (표 8-6)은 북한노동자들 및 주부인 여성노동자 그리고 학생들의 하루 기본일과 표이다.

다음 표를 보면 남성노동자는 아침 7시에 출근하여 저녁 8시에 퇴근 함으로써 총 13시간을 직장에서 생활한다. 이 13시간 중 2시간은 로동 신문이나 당의 지시문을 읽는 독보회라든가, ‘작업총화’라 하여 그 날의 작업을 평가하여 점수를 매기고 다음날 작업량을 할당하거나 정치학습을 하는 시간이다. 그런데 작업총화 후 학습시간이 보통 2시간을 넘기기 일쑤여서 집에 돌아오는 시간은 저녁 10시가 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결국 실제 노동시간은 ‘곽밥’(도시락)을 먹는 점심시간 1시간을 빼고 평균 10시간인데, 이나마도 작업량의 초과달성을 위해 연장되는 경우가 많다. 작업량은 일별, 월별, 분기별로 어김없이 넘쳐 수행되어야 할 것이 늘 강조되기(사회주의로동법 제20조) 때문에 형식적으로 시간외노동을 금지하고 있지만, 실제상으로는 시간외노동이 불가피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만일 지시된 계획량을 다하지 못하면 기본임금을 다 받지 못하거나 추궁을 당하고 김정일 생일 때 특별선물을 배정받지 못하며, 초과달성을 경우 기본임금에 가산된 추가임금을 받는다. 한편 여성노동자의 경우 남성노동자보다 출퇴근시간이 한시간 느리거나 빠르고, 작업시간 중간에 유아에 대한 수유시간을 배려하고 있음이 특징적이다. 즉 1년 미만의

〈표 8-6〉 북한주민의 하루 일과표

구분 일과	노동자 사무원	학 生	비 고
기 상	06:00-06:10	05:50-06:00	주부 05:30에 기상하여 아침 식사 준비
출근(등교)완료	06:50-07:00	08:00-	주부 출근시 유아를 탁아소에 맡김
독 보 회	07:00-07:30		정기 강연회(07:00-09:00) 있는 날(수·목) 생략
작업 준비	07:30-08:00		
오전작업(수업)	08:00-12:00	08:00-12:00	주부 유아 수유 30분
점 심	12:00-13:00	12:00-13:00	주부 유아 수유 30분
오 침	13:00-14:00		
오후작업(수업)	14:00-16:00	14:00-16:00	주부 13:00-08:00 유아 수유 30분, 인민학교 학생 오후 수업 1시간
작업 총화	18:00-19:00	16:00-18:00	인민학교 학생 14:00-16:00 노력동원, 군사훈련 및 조직활용
학습회 및 강평	19:00-20:00		주부 18:00-19:00
퇴근 및 귀가	20:00-21:00	18:00-19:00	주부 19:30-20:00 주부 퇴근 시 탁아소에 가서 유아 찾음

유아를 가진 여성노동자에게는 오전 2번, 오후에 2번 각각 30분씩 그리고 1년 이상의 유아를 가진 여성노동자들에게는 오전·오후 각각 1번 30분씩을 배정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출근사항은 매일 사회안전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예컨대 종업원 100명이면 결근 0명, 노력동원 0명, 환자 0명, 무단결근 0명식으로 보고되고 장기 무단결근자는 안전부요원들이 잡으러 다닌다.

북한주민들의 직장생활은 총체적으로 보면, ‘8시간 노동, 8시간 학습, 8시간 휴식’으로 요약된다. 여기서 학습 자체는 공산주의적 노동태도²⁰⁾의 구현과 군중노선에 입각한 집단주의적 노동생활의 실현을 체화(體化)시키기 위한 변형된 노동강화 형태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사회주의적 계획경제하에서 물질적 유인없이 희생성과 헌신성에 기초한 집단주의적 노동만의 강조는, 노동의 효율성 및 생산성 증대를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 이에 군중노선에 입각한 노동생활의 실천을 내면화하고 체현하는 ‘천리마운동’이라든가 ‘속도전운동’, ‘숨은 영웅 모범따라 배우기운동’ 같은 갖가지 사회주의적 노력경쟁운동이 요구되는 것이며, 학습시간에 바로 이 점이 실시된다. 따라서 자본주의적 기업경제 내부에서 볼 때 이러한 학습시간은 노동생산성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시간으로서 실제 노동시간의 연장이라 하겠다.

한편 휴가에 대해서 보면, 북한은 제도적으로 사회주의로동법 제65조에 “로동자, 사무원, 협동농장원들은 해마다 14일간의 정기휴가와 직종에 따라서 7일 내지 21일간의 보충휴가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여성에게는 매달 생리휴가와 60일간의 산전휴가, 90일간의 산후휴가가 주어지고 이 기간동안 보조금이나 평균노동력일수를 준다. 때에 따라서는 7일, 12일의 보충휴가와 ‘사결’이라 하여 상사의 허락받고 법정휴가외의 무급 개인휴가도 쓸 수 있다. 만일 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일수로 나누어 14일간의 임금을 가산해 준다. 이러한 휴가외에 각 직장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휴일도 주어져 있

20) 노동에 대한 공산주의적 태도란 “개인의 명예나 보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당과 혁명을 위하여,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 진행하는 노동”이다. 이는 인간의 본성상 고통일 수밖에 없는 노동을, 처음부터 전체를 위한 희생성과 헌신성에 의거해서만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표 8-7〉 북한의 휴가제도

종 류	대 상	기 간	비 고
정 기 휴 가	일반노동자, 사무원, 협동농장원	연간 14일	유급휴가
보 층 휴 가	지하 및 유해직 근로자	정기휴가 14일 외 7~12일	"
산전·산후휴가	임산부	150일	"
임 시 휴 가	부득이한 특수사정이 있는 자	단 기 간	무급휴가

자료 : 통일원, 『'95 북한개요』, 1996, p. 298.

는데, 휴일이 일률적으로 일요일로 정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마다 다르다. 이는 유사시를 대비하기 위한 것인데, 예컨대 평양은 일요일, 함경북도는 수요일, 함경남도는 목요일, 강원도는 금요일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인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가와 휴일이 거의 지켜지지 않는다고 한다. 대부분은 계획의 완수와 사회주의적 노력경쟁으로 인해 휴가를 가지 못하고 관혼상제나 짐장 때만 사용하거나, 1년에 한두번씩 연례행사로 치러지는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께 기쁨을 드리기 위한 속도전전투” 같은 때는 휴일도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족 단위의 휴가라는 것은 아예 어렵게 되어 있다. 직장마다 계획과제가 다르고 휴일이 다르기 때문에 부부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휴가를 얻어도 국가가 경영하는 휴양소에 갈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제한되어 있다. 각 직장마다 ‘휴양권’이 2~3% 정도만 할당되어 모범노동자, 천리마영 예수상자, 열성당원들에게만 배당된다.

90년대 들어와서 이러한 노동실태도 많이 달라졌다. 경제난으로 공장 가동률이 한달 평균 30%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각 공장 및 기업소내부의 가용노동력 및 기계설비도 모두 다 사용할 수 없는 처지가 되어버렸

기 때문이다. 각 공장과 기업소는 원료와 연료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기계와 노동자들을 놀릴 수밖에 없게 되자, 오히려 통일거리 건설이라든가 사리원카리비료 연합기업소 건설, 원산-금강산간 철길공사 같은 대형 건설현장에 할당받은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을 보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거나, 강제휴가를 권장하기까지 하고, 휴일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날로 정하고 있는 것이다. 우선 만일 공장가동률이 30%밖에 안된다면 70%의 노동력은 유휴노동력이므로, 이 30%의 노동자만이라도 제대로 임금을 주기 위해 무언가 구실을 붙여 또 다른 노동현장으로 보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여성들에게 억지로 휴가를 주거나 휴직하라고 강요하고, 몇가지 평계를 대어 작업장에 나가지 않아도 추궁하지 않고, 심지어는 처녀가 결혼하면 공장에 나오지 말라고까지 하고 있다. 이 옥금 씨에 따르면, 자신이 살던 함흥시 햅빛동 23가구 인민반에는 직장에 나가는 주부가 딱 한명밖에 없었다고 한다. 또한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최근 북한에서는 전기기기나 자동화설비수리, 자동차정비, 배전공 등 전문기술자격증 취득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한다. 전문기술자격증이 있으면 강제휴직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강제휴직은 남한의 명예퇴직과는 달리 일손이 부족한 탄광, 농촌 등 중노동현장으로의 전직이나 식량 배급량의 감소를 의미한다. 북한의 현재 경제난으로 인한 유휴노동력의 존재는 자본주의사회 입장에서 볼 때 잠재실업 형태이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실업률 제로라는 북한 당국의 주장과는 달리, 북한의 실업률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날 것이다.

3. 직업의식 및 노동의식의 변화

북한은 노동은 가장 “신성하고 영예로운 것”이며, 모든 주민의 지위

는 노동에 대한 성실성에 의해 규정되고, “노동에서 가장 모범적이며 영웅적인 사람은 인민의 사랑과 높은 존경을 받는다”라고 할 정도로 주민들의 삶의 가치를 노동에 둘 것을 강조한다. 그리고 ‘혁명적 열의’와 ‘애국심·충성심’으로 “주인답게” 그리고 “자원적으로” 일하고자 하는 노동성향을 내면화하여 노동에 있어서의 자발성·창발성을 촉구한다. 이러한 정치도덕적 동기유발에 의한 노동의식의 제고는 북한이 60년대까지 양적인 외연적 경제성장을 하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하였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생활을 영위하고 살기 위해서 일하기보다는 일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형태로 집단의식을 갖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이러한 집단주의적 노동의식도 이완될 수밖에 없다. 초창기 혁명적 열기가 사라지고 사회주의체제의 경직성이 굳어지면서 정치도덕적 유인에 의한 노동의식도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인간은 본성상 개인의 미래와 사회적 성취와 관련되지 않은 노동은 의욕을 갖지 못한다. 과거 구소련사회에서는 노동자들이 무사안일주의에 빠져 ‘날림 노동’을 하거나 지나치게 높게 주어진 노르마(개인노동할당량)에 대항하는 작업장내 사보타지가 문제된 적이 있는데, 북한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발견된다. 북한 원산농업대학 강사를 지낸 이우홍씨에 따르면, “노동자들은 무단결근을 하지 않는 대신에 작업장에 나와도 느릿느릿하고 얼빠진 사람들 같은 작업밖에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²¹⁾ 이러한 점은 협동농장원 농민에서도 발견되는데, 협동농장 일보다는 개인의 텃밭이나 소토지에서 일하는 데 더 적극적이고 실제 이 곳에서 나는 소출생산성이 3배나 되어 최근 북한당국이 할 수 없이 분조계약제를 도입하도록 한 데서 찾을 수 있다. 물론 북한당국은 상금이나 장려금 등 물질적 인센티브제

21) 조동호, “북한의 노동정책과 실태,” 『북한경제의 오늘과 내일』, 현대경제사회연구원, 1996, p. 158.

도도 도입하고 있지만, 그 보상이 제한적이어서 별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탈북자들에 따르면, “남한에서처럼 일하면 북한에서는 노력 영웅이 되고도 남는다”²²⁾라고 할 정도이다.

집단주의적 노동의식의 이완은 최근 경제난이 가중되면서 급속하게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선 총량적으로 볼 때 북한노동자의 평균생산지수는 1986년을 100으로 놓을 경우 1994년도에 68.7로, 즉 약 31.3%가 감소된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²³⁾ 경제난은 공장가동률을 낮추어 공장에 나가도 할 일이 없게 할 뿐만 아니라, 임금만으로는 살 수 없는 경제적 궁핍을 가져왔다. 따라서 대부분의 북한의 노동자들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기보다는 개인장사에 몰두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그러기 위해서 과거에는 ‘혁명적 열정’으로 인해 자진반납했던 휴가를 적극 이용하려 하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신의주일용품협동조합 자재인수원으로 일했던 한 탈북자에 따르면, “작업공정 위치에 따라 개인차가 있지만 자신에게 할당된 월별 작업분량을 개인장사해서 갖다 바치면 매일 출근하는 것으로 하고 묵인해주었다”고 한다. 그리고 기업소·공장들이 자체 생산계획보다는 각기 할당된 ‘외화벌이사업’에 더 몰두하여 한달 노임보다 더 많은 수입획득에 치중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또한 최근 가족부양에서 여성들의 역할이 커지면서 여성노동자들이 퇴직하여 개인장사에만 나서려는 경향도 커지자, 정무원이 95년부터 “여성들은 퇴직시켜 주지 않으니 일이나 열심히 하라”고 지시를 내린 일도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청년동맹」 96년 8월호에서는, 고등중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새로 배치받은 청년들이 작업반에 나오지 않고 노동을 태만히 하자 직장·작업반에 간부들을 파견하여 이를 근절키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하는 기사도 볼 수 있다.

22) 통일연수원, 「북한주민 의식구조 및 가치관 조사」, 1996년 5월, p. 61.

23) 통일원, 『'95 북한개요』, p. 305.

집단주의적 노동의식의 이완은 직업에 대한 관념도 바꾸어 놓았다.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북한주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은 당·정요원이고, 그 다음이 기술자, 교육직, 군인, 체육연예인, 상업일꾼, 농수산업이었다. 즉 노동자계급을 영도적인 계급으로 찬양하는 사회기조와는 달리, 육체노동직이 경멸되고 정신노동직에 대한 선호가 우선적이었으며 그것도 권력조직과 관련된 직종이 최고 인기였다. 그러나 경제난으로 요즈음은 엘리트계층들의 경우 당·정요원보다는 외교관 및 대외사업요원을, 일반주민들의 경우 식량자급이 용이한 농업, 개인수입이 높은 상업일꾼, 부수입이 좋은 상점점원·운전기사·사진기사 등 서비스직을 선호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탄광노동과 같은 중노동을 기피하려는 3D업종에 대한 기피현상도 일어나고 있어, 김정일이 기피직종에 종사하기를 자원한 사람들을 “좋은 동무들”이라고 평가하면서 감사장을 보내는 등 직접 해결에 나서고 있을 정도이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에는 현재 ‘사회주의적 노력영웅’이 되기 위해서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노동하려는 풍조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아직 국가노동정책 및 노동조직체계를 위협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윽금씨의 “외화벌이사업으로 가구당 5달러어치의 명태(20~25마리)를 바치라는 지시가 내려왔지요. 우리 동네 12개 인민반 300여가구 중 이를 달성한 집은 20여가구에 불과했어요. 사람들은 어떻게 든 안내려고 버티려고 하지요. 여러 가지 비판이 가해지지만 이 과업을 못 했다고 특별한 처벌이 내려지지는 않아요. 그러나 사람이 체면이 있고 하니 어쩌다 한 번씩은 과업을 수행하지요”라는 진술에서 볼 수 있듯이, 아직은 국가의 노력동원에 도덕적 책임감을 느끼는 집단주의적 노동의식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북한에는 사실상 개인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제2의 노동시장이 없기 때문에 과거 소련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심한 노동이동현상이 나타날 여지가 아직은 없다. 주민들은

이제 다만 ‘숨은 영웅 따라 배우기’보다는 먹고 사는 것이 급선무이고 따라서 이를 위해 장사하고 일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에 눈뜬 것이다.

제 4 절 가정생활의 실상과 여성의 위치

1. 북한의 가족정책과 여성정책

사회주의사상은 기존사회를 사적 소유제에 입각한 신분사회 내지 계급사회이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봉건적인 가부장적 가족제도로 구축되어 있다고 본다. 따라서 사회주의사회의 건설에서 사적 소유제의 철폐 → 계급관계의 철폐와 더불어 봉건적인 가부장적 가족제도의 철폐 → 성차별의 해소 → 여성해방이 동시적으로 요구된다. 레닌은 일찍이 “여성을 공적 서비스와 정치생활에 끌어내지 못하면 민주주의는 물론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과거 소련과 중국은 초창기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할 당시 이러한 구도에 따라 여성의 사회적 경제활동에의 참여를 적극 유도함과 동시에 혼인법과 남녀평등법의 제정, 육아 및 가사노동의 사회화를 시도하고 ‘가부장적 가족개혁론’까지 제기하였다. 그리고 이들 나라들은 60년대 이후부터 다시 가족강화책을 시행하여 가족의 사회적 단위로서의 의의를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북한에서도 이러한 전개현상은 비슷하게 발견된다. 1946년 2월 8일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구성된 후 본격적으로 토지개혁, 중요산업국 유화조치 등을 시행함과 동시에 7월 30일에 ‘남녀평등권에 관한 법령’을 공포하고, 혼인과 이혼의 자유, 동일노동 동일임금, 재산과 토지의 동등분배권, 일부다처제와 매매결혼의 금지, 공창 및 기생제도의 금지 등

봉건적인 가족제도를 철폐하였다. 이 당시 가족정책의 목적은 무엇보다도 봉건적 가족제도의 물적 기반을 와해시키는 가운데 봉건적 가족제도를 해체하는 데 있었다. 그 이유는 봉건적 가족제도가 친족·문중·혈연 중심의 가족제도로서 개인의 공동체적 연대감을 사회나 국가보다는 가족공동체에 놓게 하기 때문이다.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함에 있어서 개인의 사회적 연대감은 국가와 당을 중심으로 형성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이후 북한은 6·25전쟁이 끝나고부터 60년초에 이르기까지 가족안정화정책을 시행했는데, 이 때까지만 해도 가족정책의 기본 구도는 맑스-엥겔스주의에 입각한 것이었다.

그러나 60년대에 들어오면서 북한은 주체사상을 북한사회주의이념으로 구축하는 가운데, ‘가정의 혁명화’, ‘여성의 혁명화’, ‘여성의 노동계급화’라는 구호 아래 가족을 사회주의혁명의 기본단위로 하는 가족정책을 전개하였다. 즉 주체사상 이념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가족강화책을 전개한 것이다. ‘여성의 혁명화’와 ‘여성의 노동계급화’는 북한이 적극적으로 사회주의적 공업화를 전개하는 데 필요한 여성노동력의 사회적 동원을 위해 나온 것이다. 이에 북한은 탁아소·보육원의 설립, 가사노동의 사회화, 즉 공동세탁소, 밥공장, 반찬공장, 공동식당 등을 적극 추진하였다. 이 시설들은 최근 경제난으로 별로 효과를 보고 있지 않지만, 탁아소·보육원 설립만은 구소련보다도 월등하게 구축되어 95년 12월 현재 2만7천여개에 이르고 있으며, 최근의 식량난 중에도 탁아소·보육원에 대한 식량배급만은 그대로 유지하려 애쓰고 있지만, 유아들에 대한 영양보급상태는 부실한 상황이라 한다.

‘가정의 혁명화’는 사회전체의 혁명화에 공산주의적 인간개조가 요구되고, 이를 위해 어머니에 의한 자녀의 교양기능이 요구되었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 이것은 특히 70년대에 공식적으로 김일성주의가 표명되고 부자세습체제가 공식화되면서부터 핵심적인 가족정책의 이념이 되었다.

왜냐하면 주체사상 자체가 ‘가족주의적 국가주의’ 색채를 띠고 있는 논리로서 국가를 사회주의 대가정으로, 당을 호주로, 수령을 아버이로, 인민을 수령의 자녀로 함으로써 ‘국가주의적 가부장질서’가 요구되었으며, 이에 가족단위를 오히려 전통적 가부장적 이념에 따라 강화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정에서부터 개인의 안일과 향락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과 혁명의 이익을 위해 몸바쳐 일하는 혁명정신을 키우기 위한 교양사업을 강화해야 한다”는 선언에서 볼 수 있듯이, 온 사회의 혁명화를 위한 출발점을 가정에서부터의 혁명화로 보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가족은 세대를 재생산하며 사회를 유지하는 기본단위가 아니라 당과 국가조직의 세포단위로 분명하게 규정된다.

그런데 온 사회의 혁명화란 대를 이어 나가며 진행되어야 할 ‘계속혁명’의 과정으로 주장되는 논리이다. 따라서 북한은 80년대 들어와서는 더 나아가서 “가정의 대는 혁명의 대”라고 하며, 자녀가 부모의 일을 계승하고 부모에 효를 다하는 것을 강조하고 이에 의거하여 김정일에 의한 부자세습제를 합리화한다. 요컨대 70년대 이후 김일성주의와 부자세습체제의 확립을 위해 전개된 북한의 가족정책은 소련이나 중국에서 볼 수 있었던 것보다는 더욱 더 혈연적인 유대관계와 효를 강조하고 오히려 전통적이며 가부장적인 가족제도를 구축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전통적인 가족주의와 가부장적 질서의 강조는 초기 여성해방을 지향하였던 여성정책을 오히려 후퇴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초창기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할 당시에는, 기존 낡은 제도들을 타파하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데 전인민의 참여가 필수적이었다. 무엇보다도 사회적 노동력을 동원함에 있어서 여성노동력의 사회화는 절대적이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주로 김정숙의 항일경험담과 같은 ‘혁명적 여성상’이 강조되었으며, 실제 여성들의 권리 역시 남녀평등법에 의거하는 법령에 ‘법적 권리’

로서 강조되었지 누구의 ‘은혜’나 ‘시혜’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강조되지 않았다.²⁵⁾ 여성들로 하여금 가족의 구속을 벗어나 사회주의건설에 적극 능동적으로 참여할 것이 권장되었다. 요컨대 어머니·‘안해’(아내)로서의 여성보다는 ‘혁명전사’로서의 여성이 주창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김 일성주의가 체제의 이념으로서 확립되면서 ‘공산주의적 어머니’가 요구되기 시작하였다. ‘공산주의적 어머니’란 노동현장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면서도 자녀와 남편을 공산주의 혁명가로 만드는 ‘안해’·어머니가 되는 것을 말한다. 이 때 위대한 수령을 길러내고, 사회주의 혁명가정을 육성한 “강반석여사 따라 배우기 운동”이 여성들에게 독려되었다.

그리고 여성들은 극악한 봉건적 가족제도의 질곡으로부터 해방시켜준 김일성의 음덕에 감사하고, 이에 충성하는 혁명가 남편과 자녀를 길러낼 의무가 있음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점은 전통적 여성관을 다시 부활시켰으며, 여성들에게 이중의 짐이 주어졌다. 즉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초소에서 힘차게 투쟁하는” 노동전사이면서, “알뜰한 주부이며 자애로운 어머니”이어야 함이 부과된 것이다. 말하자면 사회주의적 여성해방이념은 퇴색하고 전통적 가치관과 혈연관계에 기초한 가부장이념이 새로운 논리로 부활하여 여성들에게 일과 가정 모두에서 빛나는 승리를 거둘 것을 요구한 것이다. 실제로 귀순여성들에 따르면 차별적인 성역할분담, 성적 차별 관념이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으며, 80년대 이후부터 여맹의 활동이 위축될 뿐만 아니라 ‘가두녀성’(부양가족)으로 가정에 잔류하는 여성의 늘어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또한 최근 「로동신문」(96년 11월 13일)에서 중앙인민위원회가 생산현장에서 뛰어난 생산업적을 보인 여성의 아닌 “자식을 많이 낳아 키워 모성으로서 훌륭한 모범을 보인” 여성들에게 노력영웅 칭호를 수여하였다는 보도에서도 볼 수 있다.

25) 윤미량, 『북한의 여성정책』, 한울, 1992, p. 131.

북한은 여성의 사회경제활동에의 참여, 육아의 사회화라는 면에서 외면상으로는 성차별이 없고 평등한 여성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사회주의국가에서 볼 수 없는 개인숭배와 장자에 의한 세습이라는 북한식 사회주의의 특성으로 인해 오히려 가부장적 가족제도가 강화되고, 여성은 국가조직내에서의 상위의 가부장이념과 가정내에서의 하위의 가부장이념이라는 이중적인 가부장적 억압을 겪게 되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 경제난으로 강인한 여성의 생존력이 요구되면서 더욱 강화되는 면모를 보이고 있다.

2. 가정생활의 실상

(1) 가족의 형성과 해체

가족의 형성은 혼인에 의해 이루어진다. 북한은 1990년 10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에서 채택한 가족법 제9조에 의해 법정결혼연령을 남자는 18세, 여자는 17세 이상으로 정해 놓고 있다. 그러나 김일성이 1971년 6월 21일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제6차 대회 연설에서 “한창 일할 수 있는 나이에 결혼을 하면 혁명과업 수행에 지장을 주게 된다. 남자는 30세, 여자는 28세가 된 다음 결혼하는 것이 좋다”라고 밝힌 바대로, 북한에서는 사회관습적으로 만혼이 지배적이다. 무엇보다도 남자는 군복무 중에는 결혼이 금지되어 있고, 여성 또한 사회적 노동력의 동원을 위해 경제활동에의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김일성이 말한 대로 과거에는 여자의 경우 28~29세, 남자는 30~31세로 결혼하는 것이 지배적이었지만, 80년대 이후로는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고 거의 여자는 23세, 남자는 25~26세가 결혼적령기로 치부되어 관

행화되고 있다고 한다. 당국에서도 시대사조를 어찌할 수 없어 승인해 주고 있다고 한다.

배우자선택에 있어서 북한사회도 사람 사는 사회라 연애결혼을 선호하고 있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이다. 그러나 귀순자들에 의하면 중매결혼과 연애결혼의 비율이 아직 평균 7:3정도라 한다. 중매결혼은 보통 직장상사나 직장동료, 형부, 부모 등의 중매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요즈음은 결혼당사자의 의사를 거의 존중하고 있는 편이다. 배우자 선택의 기준으로는 남녀간의 사랑을 우선시하면서 실질적인 조건들을 고려하는 자본주의사회와는 달리 전통적 관념, 사회주의이념 그리고 현실적인 요소들이 혼합적으로 작용한다. 즉 전통적 관념에 따라서는, 남성의 경우 이상적인 배우자여성을 “마음씨가 좋고, 소박하고, 남편에게 잘하고, 시부모공대 잘하고, 아들딸을 잘 기르고 갈라진 민족의 슬픔을 누구보다도 가슴아파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여성의 경우 “양심껏 일하고 사람이 좋은 사람”을 이상적인 남성배우자로 여긴다.²⁶⁾ 사회주의적 이념에 따라서는 일생을 동지로서 당과 수령에게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정신적 풍모를 갖춘 사람을 이상적 배우자로 여긴다. 현실적 요소로서는 학벌, 직업, 가정성분, 도시거주 등이 주요 선택기준으로 작용하는데, 대체로 여성들은 당·정관료이며 학벌과 성분이 좋아야 하고 도시에 거주하는 것이 주요 기준이지만, 남성들에 있어서는 대학을 나오지 않고 당원이 아니어도 출신성분이 좋고 생김새가 그만이면 된다. 북한남성들은 여성이 자신보다 직급과 교육수준이 높으면 “여자가 쪼고 까운다”고 하며 싫어 한다고 한다.²⁷⁾ 그러나 최근에 물질주의 및 개인주의 풍조가 확산되면서 배우자선택의 기준으로 이념적 기준, 즉 ‘붉은 가정의 탄생’을 위한 동지

26) 남인숙, 『남북한여성 그들은 누구인가』, 서울신문사, 1993, p. 242.

27) 서동익, 『인민이 사는 모습』②, 자료원, 1995, p. 176.

들의 만남이라는 기준은 서서히 퇴조하고 현실적 기준이 우세해 가는 추세라 한다. 즉 ‘뒷돈’이 잘생기는 서비스직 및 상업요원, 대외사업종사원 등이 남녀 모두에게 인기라는 것이다.

결혼하려는 남녀는 각자 소속직장의 당책임자, 청년동맹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한 쪽의 성분이 나쁠 경우 다만 권고를 받을 뿐이고 일단 남녀간에 이루어진 합의에 대해서는 거의 간섭하지 않는다. 결혼날 짜는 길일을 잡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로 서로의 직장에 일이 적을 때나 휴일에 하며, 식은 주로 부모집이나, 공공회관, 국가음식점에서 치루고 극히 간소하게 한다. 식장에는 신랑신부가 동시에 입장하며, 이어 주례가 하객을 일으키고 성혼선언을 한 후 신랑신부가 “수령님과 지도자동지에 대한 충성의 한길에서 영원히 부부로서 혁명의 가정을 꾸려 나갈 것을 다짐한다”는 내용의 결혼서약을 하는 것으로 끝난다. 결혼식의 하객은 30명 이내 일 것이 권장되어 왔지만, 1989년 김정일이 “국가적으로 식량 사정이 긴장되고 있으니 결혼식을 간소하게 하라”는 지시를 한 후부터 20명 이내로 축소되고 있다. 그리고 각 시·군행정경제위원회에서는 결혼식에 쌀 5kg 이상을 사용하면 엄벌에 처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식량난으로 아예 무로 만든 과일과 밀가루로 만든 생선 등 모형음식물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라 한다. 결혼비용과 혼수는 양가에서 같이 부담하고 때로는 직장에서도 도와주며 신부는 주방용품, 이불 같은 혼수를 더 준비한다. 결혼식에 온 하객들은 1인당 5원~15원을 축의금으로 내는데, 때에 따라서 아주 가까운 사이에는 30원이나 50원을 내기도 한다. 이것은 노동자월급이 70~80원인 것을 감안하면 아주 큰 돈인데, 그 만큼 이웃간에 상호부조하는 전통적 정신이 미덕으로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에는 살림살이가 어려워져서 돈보다는 주로 음식물이나 필요 한 물품으로 축의금을 부조하고 있다고 한다.

가족의 해체는 배우자의 사망이나 이혼에 의해 이루어진다. 북한에서

이혼은 제도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1956년 내각결정 제24호에 의하여 합의이혼을 폐지하고 재판에 의한 이혼만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혼을 원하면 시·군재판소에 50원짜리 수입인지를 첨부한 이혼청구서를 내면 되는데, 재판부가 이혼을 인정하는 것은 “부부관계를 계속할 만한 정치·도덕적 기초를 상실한 경우로서 사회와 혁명에 이로울 때는 용인하고 해로울 때는 부인한다.” 여기서 가장 확실한 이혼사유란 배우자 중 한 사람이 반당분자, 반혁명분파, 종파분자, 정치적인 반항자일 경우이다. 그 다음 사유는 배우자의 부정과 폭행, 건강상의 이유이다. 이혼판결 시 사유재산이 없기 때문에 재산분할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자녀의 양육은 남자가 또는 여자가 하기도 하는데, 여자가 할 경우 자녀수에 따라 월수입의 10~30%의 범위내에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북한에서 이혼여성의 직장생활에는 거의 제약을 안주기 때문에 이혼여성의 생활은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다. 그러나 이혼여성과의 재혼을 꺼리고 이혼여성을 “우습게” 여기는 사회적 관습 때문에 여성들은 이혼하기를 꺼려한다. 이는 북한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가부장제이념 지배의 한 단면이라 할 수 있다.

(2) 가족 및 친족관계

북한은 1946년 7월에 ‘북조선의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을 공포하면서 봉건적 가족제도 철폐의 일환으로 호주제도를 철폐했다. 따라서 이후 가족형태는 모든 산업사회에서 볼 수 있듯이 가부장적인 확대가족형태는 소멸되고 핵가족 및 2세대중심 가족형태로 발전해 왔다. 가족구성원은 평균 4.4명으로 3세대 가족은 약 20% 내외 수준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세대 중심의 가족에서 가족관계는 부부관계와 부모·자식간의 관계 두 축으로 이루어진다. 부부관계는 남성인 남편과 여성인 아내간의

관계를 수직적 관계로 보느냐 수평적 관계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북한에서는 형식상으로 여성들의 사회경제활동에의 적극적 참여와 육아 및 일부 가사노동의 사회화로 남녀평등질서가 일상화된 것처럼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앞서 본 것처럼 80년대 이후 확대된 가부장적 가족정책으로 가정내에서는 가부장적 수직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북한의 TV드라마나 소설 그리고 귀순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아내가 남편에 대해 이야기 할 때 ‘우리 세대주’라든가 ‘우리 주인’이라고 하면서 남편들은 아내에 대해 ‘내 안해’, ‘우리집 사람’이라고 호칭하는 데서 볼 수 있다. 또한 김정일이 신상옥·최은희씨에게 자기 부인을 소개하면서 “여편네란 집에서 아이 키우고 살림 잘하면 되는 것이지요”라고²⁸⁾ 말한 것도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는데, 한마디로 남편은 주인이며 부인은 아랫 사람인 것이다. 북한의 선전자료는, “녀성들이…혁명화, 로동계급화되면…남편도 더 존경하게 되고 생활도 더 알뜰히 꾸미게 되며 결국 가정이 화목하게 될 것입니다”²⁹⁾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모범적인 혁명전사요 노력일꾼으로서의 여성은 동시에 가정에서도 아내·어머니·며느리 역할을 잘한다고 하며, 여성들에게 슈퍼 우먼이 될 것을 주장하고 역할 기대와 실제 역할수행간의 긴장을 느끼게 하고 있다. 이는 북한에서는 남녀평등이 이룩되었으며, 여성들은 해방되었다는 북한의 선전과는 달리, 북한여성들이 사회주의이념과 가부장이념 양자에 구속되어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하겠다. 만일 북한의 선전대로 진정한 남녀평등이 이루어지려면, 여성노동의 사회화, 육아 및 가사노동의 사회화만 수행할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남녀역할인식 및 성관념의 혁신도 동시에 시도해야 했을 것이다. 그런데 북한여성들은 가사노동으로부터도 결코 자유롭

28) 조선일보사, 『북한 그 충격의 실상』, 1991, p. 290.

29) 『조선녀성』, 1989년 4월, p. 5

지 못함을 많은 귀순여성들은 전하고 있다. 남편들의 “권위가 세서” 가사노동을 도와주는 것은 드물며, 특히 물자난으로 가전제품의 사용이 거의 없어 여성들의 가사노동 노고는 남한여성들에 비해 몇 배나 된다는 것이다.

북한의 부모-자식관계 또한 전통적인 가부장적 요소가 강하게 잔존하고 있다. 이는 부자세습제로 김정일이 효를 강조함에 따라 더욱 강화되었다. 북한의 가족법 제28조는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며, 로동 능력을 잃은 부모의 생활을 책임지고 돌봐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통치차원의 교육 때문인지 몰라도 북한에는 부모의 자식사랑과 자식의 부모공양, 효라는 덕목이 아직도 강하게 남아 있는 편이다. 통계에 따르면, 1988년 현재 북한노인들의 아들부부와의 거주비율이 45%, 딸부부와의 거주비율은 24%, 노인부부 또는 독거노인의 비율이 17%, 양로원입주 비율은 14%로 부모공양비율이 69% 정도로 높게 나타난다.³⁰⁾ 그러나 부모-자식관계는 권위적 관계로 되어 있고, 특히 부권의 권위가 강하게 존중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북한에서도 남아 선호사상이 지배적이어서 92년부터 남초(男超)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가족법 제30조에는 아예 아들을 낳지 못하거나 자식을 낳지 못할 경우 타인의 자식을 입양할 수 있다는 규정도 정해 놓고 있다. 입양에는 남한처럼 재산정도, 입양할 양친 모두의 존재 여부에 상관없이 친부모의 동의나 후견인의 동의만 있으면 된다. 북한은 특히 고아의 입양을 권장하고, 고아를 입양하는 사람은 “공산주의적 미덕”을 가진 자로 찬양하며 김정일의 선물을 전달한다고 한다. 최근 생활고가 심해지면서 북한의 여성들은 자식을 적게 낳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2명 이상을 가질 때는 스스로 피임도 한다고 한다. 북한당국은 71년 김일성이 자녀수는 3명

30) 내외통신, 1993년 9월 16일.

정도가 좋다는 교시를 한 이후부터 명시적인 산아제한정책은 아니지만 2명 이하로의 출산을 권장해 왔다. 그러나 최근 식량난으로 출산율이 저조해지자 '96년부터 '자녀많이 낳기 운동'을 벌이고 10명 이상을 출산한 여성에게는 '모성영웅' 칭호를 주고 있다고 한다.

가족을 넘는 친족관계는 북한에서도 유교전통이 사라지면서 제한되어 있다. 북한의 경우 친족관계의 범위가 좁혀진 것은 여타 자본주의 국가들처럼 산업화와 핵가족화의 영향보다는, 문벌·문종·가문 중심의 봉건적 가족제도를 의도적으로 해체하는 과정에서 정착되었다. 그리하여 서로 인지되는 친족은 대개 6촌 이내로 되어 있으며, 그나마도 4촌만 넘으면 '먼친척'으로 치부된다. 이에 따라 북한에서는 이미 60년대부터 항렬이나 촌수를 따지는 풍습이 아예 사라지고 없으며,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자신의 본(本)이 어디고 선대에 어떠한 인물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거의 들어보지 못한다. 항렬을 따지지 않게 되면서 이름을 지을 때에도 자연히 항렬을 고려하지 않는데, 돌림자 이름을 쓰는 풍습은 아직 남아 있다고 한다. 그리고 부모의 이름에 들어있는 글자를 자식에게는 잘 쓰지 않는 풍습을 지키지 않는 것도 볼 수 있다.

친족관계의 제한을 가져온 것은 무엇보다도 가정의례의 간소화와 여행의 제한 때문이었다. 특히 친족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상호간의 혈연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는 대부분 장례·혼인·제사·회갑잔치·돌찬치 등 전통적인 풍습을 통해서이다. 북한에서는 가정의례 자체를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이라 하여 간소화하고 제한할 것을 행정명령으로 시행해 왔기 때문에 이것이 자연스럽게 친족관계의 범위를 좁혔던 것이다. 최근에 와서 다만 강화되고 있는 것이 있다면, 3대가족의 거주형태를 '조선의 미덕'이라 하여 권장함으로써 직계가족이 2대 중심에서 확대되는 경향이라 하겠다.

(3) 가정의례와 명절행사

가정의례는 사람이 태어나서 죽음에 이를 때까지 어느 한 가족에 정서적·혈연적 귀속의식을 갖게 하는 가정생활의 핵심이다. 북한에서 전통적인 가정의례는 사회주의적 생활양식 정착에 장애가 되는 봉건적 잔재라 하여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규제되었다. 이 중에서 특히 북한은 친족들이 모여 장례나 제사의식을 치루는 것을 물자의 낭비, 봉건잔재, 종파주의나 분파주의 조성 등의 이유를 들어 규제했었다. 그러다가 1974년 1월 13일 전국농업대회에서 김일성이 “음식을 많이 차려놓고 제사 지내는 것은 낡은 습성 중의 하나이다. 죽은 사람의 무덤이나 사진 앞에 많은 음식을 차려놓고 절을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제사 지내는 것은 죽은 사람을 잊지 않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제삿날에 무덤에다 꽃을 갖다 놓던가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경건한 마음으로 죽은 사람의 지난 날의 투쟁을 회상하면서, 그가 다하지 못한 일을 살아 있는 사람들이 마저 하기 위한 노력을 하자는 결의를 가지는 것이 좋을 것이다”³¹⁾라는 교시를 내린 이후부터 추석성묘와 직계가족의 탈상제까지 허용되고, 보다 활성화된 것은 80년대 말 음력명절, 한식, 추석 등 전통명절을 부활하면서였다. 그리고 최근 김일성이 죽고 나서 김정일의 효성에 대한 부각의도로 3년 탈상제가 강조되면서 기존의 제례행위에 대한 갖가지 규제가 무의미해 버린 것도 한 역할을 하였다. 제례음식은 대개 물자의 부족으로 격식을 따지지 않고, 성의껏 힘닿는 범위내에서 차린다고 한다. 제례시에는 축문을 읽거나 큰절을 하지 않고 다만 서서 묵념을 한다고 한다. 그러나 장례식 때 문상객들이 부의금을 내고 두 번 절하고 맏상주가 곡을 하는 식의 전통적 의례방식

31) 「로동신문」, 1974년 11월 3일자.

은 아직 남아 있다고 한다. 장례는 당·정간부층 외에는 3일장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보통 1~2일장을 하는데 그것도 요즈음은 당일날로 치루는 것으로 관행화되어 있으며, 농촌의 경우 협동농장에서, 도시의 경우 ‘녹화사업소’나 ‘편의협동조합’에서 장례 일체를 치러준다. 시신은 일반주민들의 경우 나무판자에 시신을 뉏고 형겼으로 둘둘말은 형태로 관을 대신하고, 50년대까지만 해도 상여를 썼지만 요즈음은 거의 상여를 쓰지 않고 소달구지나 트럭으로 운구하고 장지는 지정된 공원묘지를 쓰며, 화장은 거의 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 다음 회갑잔치의 경우 공식적으로 금지해왔지만 주민들은 몰래 치러왔는데, 1961년 김일성이 “60 청춘 90 환갑”이라는 교시를 내린 후부터 사라졌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부터 다시 부활하여 당국의 묵인 아래 치러지고, 음식은 친척이나 이웃이 십시일반으로 모아주는 쌀 및 부식물로 간소하게 기념하는 정도로 차려진다고 한다. 돌잔치의 경우 역시 아직 잔존하는데, 다만 탁아소에서 공동으로 치려진다고 한다.

북한에서 명절은 남한처럼 전통민속명절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것외에 국가경축일, 국제기념일까지 모두 통틀어서 하는 개념이다. 설, 한식, 추석 등은 따로 ‘민속명절’이라고 부른다. 북한의 명절은 다음 (표 8-8)과 같다.

여기서 군창건일과 전승기념일은 96년도에 추가된 것인데, 이것은 김정일이 군부에 의지해서 통치하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 아무래도 가장 최대의 명절은 김일성부자의 생일날이다. 북한은 이날들이 최대의 명절임을 부각하기 위해 연휴로 하고 김정일 생일인 2월 16일부터 김일성 생일인 4월 15일까지 두달 동안을 축제기간으로 하며, 이 기간 동안에는 혼인식도 자제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우리 민족 4대 명절인 음력설, 단오, 한식, 추석은 1967년 7월 “봉건잔재를 뿐리뽑아야 한다”는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공식적으로 사라졌다가 1988년 이후부터 부활되었다.

(표 8-8) 북한의 명절

구 분	국가명절	민속명절	비 고
설 날	1월 1일		2일 연휴
음력 설 날		음력 1월 1일	
김정일생일	2월 16일		2일 연휴
국제부녀절	3월 8일		
한식		4월 6일	
김일성생일	4월 15일		2일 연휴
군창건일	4월 25일		96년 지정
국제노동절	5월 1일		2일 연휴
단오		음력 5월 5일	
전승기념일	7월 27일		96년 지정
해방기념일	8월 15일		
추석		음력 8월 15일	
정권창건일	9월 9일		
노동당창건일	10월 10일		
현법절	12월 27일		

민속명절을 부활한 것은 이산가족찾기사업, 해외동포들의 방문 그리고 80년대말부터 부쩍 늘어난 ‘우리식 사회주의’, ‘조선민족의 우월성’ 등의 선전 때문이다. 그러나 이 날은 ‘대휴’라 하여 대신 정무원이 고시한 그 전후의 일요일에 보충노동을 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완전한 법정공휴일이 아니고 반쪽 휴일이다.³²⁾ 이 4대 명절에 북한주민들은 성묘하고 벌초

32) 그런데 음력설만은 93년 이후부터 따로 고시한 노동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음력설이 완전 공휴일로 격상된 것 아닌가 하는 추측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하는 풍습은 여전히 지키고 있다고 한다. 다만 전통의례에서 벗어나는 점이 있다면, 설날에 세배를 하지 않고 조상에게 큰절을 올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리고 제례를 집에서 지낼 경우 김일성부자의 초상화앞에 먼저 절을 올리고 조상을 추모한다는 점이다. 또한 북한주민들의 입장에서 가장 명절 분위기를 느끼게 하는 날은 김일성·김정일 생일, 9·9정권 창립일, 10·10당창건일 등 국가명절이지 민속명절이 아님을 유의해 둘 필요도 있다. 그 이유는 이 날들에는 사탕·과자·돼지고기 등 특별배급이 나오지만, 정작 조상의 음덕을 기리며 후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민속명절날에는 아무것도 안나와 그냥 지내는 ‘겁데기 명절’이기 때문이다.

제 5 절 종교생활실태

1. 종교에 대한 규정 및 종교정책

김일성은 “종교는 반동적이며, 비과학적인 세계관입니다. 사람들이 종교를 믿으면 계급의식이 마비되고 혁명하려는 의욕이 없어지게 됩니다. 결국 종교는 아편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³³⁾라고 종교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북한의 『철학사전』은, “종교는 력사적으로 지배계급의 수중에 장악되어 인민을 기만하며 착취억압당하는 사상적 도구로 리용되었다. …특히 근대에 들어와서 제국주의자들은 종교를 후진국가 인민들을 참략하는 사상적 도구로 리용하였다. …낡은 사

33) 『김일성 저작집』, 5권, p. 154.

상잔재인 종교적 편견은 강제로 없앨 수 없다. 오직 사상교양을 강화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의 실천투쟁을 힘있게 벌리도록 하는 것을 통해서만 극복할 수 있다”³⁴⁾라고 종교의 사회적 기능 및 역할을 보고 있다.

이러한 종교에 대한 성격규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평가해 볼 수 있다. 우선 종교의 본질을 미신이나 비과학적인 신념과 동일시한다는 것이다. 종교는 과학적이며 철학적인 세계관과 인간관에 기초하여 인간의 영적 세계와 정신세계의 문제를 다루는 관념적인 형이상학적 신념이다. 반면 미신은 이러한 체계적인 논리체계없이 막연한 신비주의와 동매주의, 심할 경우 환각주의에 기초해 있는 비현실적인 정서이다. 따라서 종교와 미신의 차이는 분명한 것인데, 북한은 처음부터 이를 동일시하고 있다.

둘째, 종교의 기능을 지배계급의 착취도구 내지 이용물로 보는 점이다. 오랜 인류역사에 이런 현상이 간혹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으로 종교는 왜소한 인간적 존재를 벗어나 초월적인 ‘그 무엇’과 관계를 맺고 인간에 내재해 있는 또 하나의 욕구, 즉 본능만에 규정되지 않고 정신세계를 확장하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켰으며, 그 결과 많은 위대한 문명들을 창출하는 역할을 하였다. 북한의 이러한 규정은 관념론은 ‘해로운 것’, 유물론은 ‘유익한 것’이라는 이분법적 구도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북한은 종교를 의식을 마비시키는 아편이기 때문에 사상교육을 통해 적극적으로 없애야 할 것으로 본다는 점이다. 이러한 규정은 결국 북한이 80년대 이전까지 종교제거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근거가 되었으며, “지구상에서 종교가 없는 유일한 나라”로서 인민들을 억압하는 사상적 도구가 북한에는 전혀 없음을 자랑하게 하였다. 그러나 80년대에 들어와서 북한은 형식적으로 전향적인 종교정책을 추진하게 되는데, 최근에 이르기까지 북한당국이 종교에 대해 취한 정책을 개관해

34) 『철학사전』, 사회과학원, 1985, p. 490.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해방직후부터 6·25전쟁시기까지의 종교정책이다. 이 당시 북한은 반제·반봉건이라는 구호하에 인민민주주의정권을 새롭게 창출하려고 역점을 둔 시기였다. 북한사회주이념에서 볼 때 종교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도구요, 봉건세력들의 인민억압도구였으므로 반제·반봉건은 곧 반종교적 태도로 연결되었다. 그러나 이 당시 우선 김일성세력은 인민정권을 수립하는 것이 급선무였기 때문에 인민정권 창출에 협조적이냐 대립적이냐에 따른 선별적인 종교정책을 취하였다. 어떤 종파, 종교인이든지 인민정권 창출에 협조적이면 애국적인 종교·종교인으로 여겼고, 대립적이면 반제·반봉건의 이름으로 가혹하게 탄압하였다.³⁵⁾ 즉 종교를 부정하되 아직 제거정책을 시행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이다. 그리하여 많은 어용종교단체들이 새롭게 결성되었는데, 그것은 대표적으로 ‘북조선불교도총연맹’, ‘북조선기독교도연맹’, ‘북조선천도교청우당’ 등이었다. 어용종교단체 중에서 가장 적극 이용된 단체는 ‘조선천도교청우당’이었다. 그것은 그 당시 북한 인구의 약 16%가 천도교도이며, 대부분 농민층에 기반을 두고 있어 토지개혁과정에서 천도교도인들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1946년 11월 3일 처음으로 실시된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위원선거에서 천도교 청우당원이 전체 인민위원의 7.3%나 되는 253명이 당선되었다.

두번째, 6·25전쟁 이후 70년대 말까지의 종교정책이다. 전쟁후 북한은 피폐화된 산업경제를 복구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는데, 이 때 주민들의 복구역량을 최대화하기 위해 유포된 이념이 “철천지 원쑤” 미국놈이었다. 그것은 전쟁전 북한 생산력수준의 64%가 파괴된 모든 원인이 미국의 철저한 폭격에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35) 류성민, 『북한주민의 종교생활』, 공보처, 1994, p. 112.

기독교말살정책이 시행되었다. 이미 해방직후 반제·반봉건정책의 시행 과정에서 과거 봉건세력의 지배도구인 유교와 불교에 대한 탄압이 있었고 이 때에도 지속되고 있었지만, 유달리 기독교에 대해 적대정책을 시행한 것은 기독교가 미제의 ‘주구’요 ‘앞잡이’로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의 방해꾼이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많은 교회, 성당이 파괴되고 사찰은 겨우 일부만이 문화유산이라는 명목으로 유지되었으며 목사, 신부, 수녀, 승려 등 성직자들이 순교하였다. 그리고 대다수의 종교인들은 종교를 포기하거나 지하로 숨어들 수밖에 없었다. 60년대 본격적으로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시기에도 북한은 주민재등록시 종교인들에게 별도의 번호를 부여하고 감시·관리하는 식으로 종교제거정책을 지속해 나갔고, 해방직후 창립된 어용종교단체들도 거의 활동이 중단되었다.

결국 북한은 사회주의건설이 완성되었다고 판단되고, 종교제거정책도 어느 정도 성공하였다고 판단되는 70년대 초에 북한에 종교가 없다고 공공연히 단언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72년 12월에 개정된 ‘사회주의 신헌법’ 제4조에 “반종교 선전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는 조항을 조문화하여 국가헌법상 종교를 인정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그러면서도 북한은 “신앙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하는 모순된 또 하나의 조항을 조문화하고, ‘조선기독교도연맹’, ‘조선불교도연맹’, ‘천도교중앙지도위원회’ 등의 어용종교단체들의 활동도 재개하여 세계종교회의에 적극 참여하거나 남한 종교인들과의 접촉도 시도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한편으로 종교의 자유가 없는 나라라는 국제비난의 모면과 북한의 대외개방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당시 군사정권에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남한 종교인들과의 통일전선전술에서 나온 것이었다. 한 마디로 어용종교단체들이 종교 본연의 활동보다는 대외활동도구 내지는 대남선전도구로 다시 이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80년대 이후의 종교정책이다. 이 시기에는 종교가 본격적

으로 역이용되기 시작하는 시기로서 형식적으로 전향적인 종교정책이 시행된다. 1985년 고향방문단이 평양에서 처음으로 예배나 미사를 보고, 1988년과 89년 평양에 봉수교회, 칠골교회, 장충성당이 건축되고 광법사, 보현사가 재건되어 아주 제한적이며 관제적이지만 공식적으로 종교의식이 허용되었다. 그리고 구약·신약성서와 한글 팔만대장경, 반야심경 등이 출판되기도 하였다. 결국 북한은 1992년에 개정된 ‘사회주의헌법’에 “반종교 선전의 자유”를 삭제하고, 제68조로서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장된다”라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그 후 북한은 종교인들의 해외활동 및 남한종교인들과의 접촉, 해외동포종교인 및 남한종교인들의 방북 등을 적극 허용하고 로동신문이나 언론 등에서 종교인들의 활동을 보도하기도 하고, 나아가서 새로이 개정된 『조선말대사전』이나 출판문헌들에서 과거의 극히 적대적이며 노골적인 종교비판을 수정하여 석가탄신일이라든가 크리스마스 같은 날에 대해 보다 객관적으로 설명하기까지 하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전향적인 종교정책의 변화는 첫째, 남한종교인 및 해외동포종교인들과의 통일전선구축의 의도, 둘째, 종교를 믿는 북한주민들이 고령화되어 극소수이고 이미 대다수의 청소년 및 장년층들은 종교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자신만만한 상황, 셋째, 대외개방 및 해외이미지 개선에 종교의 적극적 활용, 넷째, 주체사상의 종교와의 친화성 등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현재의 종교실태

북한이 1950년에 폐낸 조선중앙연감에 의하면, 해방 당시 북한에는

천도교도 약 150만명, 불교도 약 37만 5천명, 개신교도 약 20만명, 천주교도 약 5만 7천명, 총계 약 200만여명의 종교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었다. 이는 그 당시 북한 인구의 22.2% 수준이었다. 그리고 성직자는 승려 732명, 목사 908명, 신부·수녀·수도사 등 262명이고, 교당이나 사찰수는 천도교 교당 99개, 사찰 518개, 교회 약 2,000여개, 천주교 교구 3개 교구 등으로 결코 적지 않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그 후의 종교제거정책으로 약 10만여명의 기독교인들이 월남하고, 전쟁 당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고 배교함으로써 현재에는 거의 그 존재가 희귀한 것으로 되어 있다.

현재 북한의 종교인수는 3만5천여명으로 인구의 약 0.2% 수준이다. 이 중 가장 많은 신도수와 교당을 지니고 있는 종교는 천도교로서, 천도교위원장인 류미영은 김일성 장의위원회 273명 중 39위로 올라가 있을 정도이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출된 청우당원은 22명이고 지방의회 대의원으로도 300여명이 올라가 있을 정도로 그 영향력이 높다. 불교의 경우는 최근 문화유산의 보존과 관광객유치라는 차원에서 사찰이 활발하게 복원되고 있는 중인데, 사찰에 승려가 상주하지 않고 머리를 기르며 일제시대 때의 승복을 입고 있는 점 등이 아직 어설픈 느낌을 주고 있다. 그러나 불가의 3대 기념일인 석탄절, 열반절, 성도절 등에 예불을 집전하고 불교학원을 설립해 승려를 양성하고 있다고 한다. 천주교의 경우 아직 신부와 수녀·수사가 없지만, 곧 신부 1명을 탄생시킬 계획이며, 독일의 성오틸리엔 베네딕트 선교회가 성당을 1개 지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의 경우 평양의 봉수교회와 칠골교회에서 주일마다 예배를 보고 앞으로 4개소의 교회를 더 건립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1972년에 평양신학원이 설립된 이후 성직자를 양성하고, 이외에 해외활동을 가장 활발히 하고 있다. 그러나 공식적인 이러한 활동은 역시 관제적인 것이어서 별로 큰 의미를 주고 있다고 할 수 없다. 최근 기

(표 8-9) 북한의 종교실태

종파	신도수		교직자수		교당(사찰)수		비고
	해방후	1994년	해방후	1994년	해방후	1994년	단체명
천도교	150만	1만5천명	—	—	99개	약8백개	천도교 청우당
불교	37만	1만명	732명	3백명	518개	약60개	조선불교도연맹
기독교	20만	1만명	908명	150명	2,000여	2개	조선기독교연맹
천주교	5만7천	1천2백	262명	0명	교구3개	성당1개	조선천주교인연합회
총계	2백12만	3만5천여	1,902명	430명	2,617여개, 3교구	863개	

자료 : 류성민,『북한주민의 종교생활』, 공보처, 1994년과 통계청,『남북한경제사회상비교』, 1996년에서 정리.

주 : 기독교의 경우 30명의 목사외에 100여명의 전도사, 장로를 합한 것이다.

독교활동이 두드러진 것은 이런 관제활동외에 개인적 차원의 신앙활동이 지하에서 활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선교사들에 의해 추산된 것이지만, 약 100~500여개의 가정교회가 지하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실제 중국-북한 국경지역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선교사들에 따르면 ‘성경밀수출작전’을 통해 수백권의 성경책이 북한으로 반입되고 있다고 한다. 어쨌든 현재 북한에는 그간의 종교제거정책과 어용적인 종교정책으로 종교의 부재상황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난으로 점차 통제력이 이완되고 있는 사회변화와 누수로 인해 종교가 소생기에 접어들고 있음이 엿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3. 북한주민의 종교의식

북한주민들은 “예수를 믿든지 불교를 믿든지, 그것은 본질에 있어 미신을 믿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그간의 북한당국의 선전에 힘입어 기본적으로 종교가 무엇인지도 잘 모른다. 이는 귀순자들이 ‘목사’나 ‘신부’가 사람 이름인 줄 알았다든가, 예수나 부처라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했으며, 종교는 “정신나가고” “얼빠진” 사람이나 믿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에서도 알 수 있다. 그리고 많은 방북 종교인들에 따르면, 거의 대부분의 주민들은 심지어 바로 옆에 사는 평양시민들이나 안내원조차 평양에 교회와 성당이 있다는 것도 알지 못했으며, 천주교와 천도교를 구분못한 다든가 신부와 스님, 목사가 무엇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있었고, 심지어 안내받고 있는 스님을 ‘중선생’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북한주민들은 이렇게 아예 종교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무지한 상태이면서 종교 자체에 대해 무조건 강한 적대감을 보이는 모습도 갖고 있다. 그들은 종교하면 무조건 사람을 홀리고 마비시키는 두렵고 무서운 공포의 대상으로 생각한다. 한 연구에 의하면 이러한 점은 귀순한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언급조차 안하려는 데서 잘 드러났다고 한다.

북한주민들이 이렇게 종교에 대해 갖는 적대심은, 무엇보다도 11년간의 의무교육기간 동안 종교는 제국주의의 문화침투와 식민지적 침략의 첨병역할을 한다고 하는 교육에서 비롯되었다. 예컨대 인민학교 교과서를 보면, 어느 선교사집 울타리밖으로 뻗어 나온 사과를 병든 어머니께 갖다드리려고 따던 한 어린아이가 선교사에게 들켜 꽁꽁 묶인 다음 염산으로 ‘도적’이라고 이마에 지침을 당한다는 내용과 그림이 나온다. 상당히 섬뜩한 내용의 이 글을 읽고 자란 아이들이 성인이 되기까지 종교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할지는 짐작이 가는 일일 것이다. 특히 강한 적개심

을 갖도록 교육받는 것은 기독교에 대해서이다. 북한은 기독교를 “철천지 원쑤”인 미제의 스파이라고 가르친다. 늘 제국주의적 침략의도를 놓치지 않는 미국이 다른 나라를 무너뜨리려 할 때 가장 먼저 첨병으로 보내어 그 곳 주민들의 계급의식과 혁명의식을 마비시키는 것이 기독교라는 것이다.

북한주민들이 종교에 대해 거부감을 갖는 두번째 이유는 과거 종교인들이 불순분자로 분류되어 사회적 불이익을 당하거나 핍박받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런 경험을 직접 한 사람은 대체로 50~60대로서 부모세대들이다. 이들은 해방직후나 전쟁 후 많은 종교인들이 순교하거나 핍박받는 것을 보거나 들은 세대이다. 따라서 자연히 현재 북한인구의 79.1%를 차지하고 있는 6·25전쟁 이후의 세대들은 철저하게 출신성분에 의해 자신의 사회적 운명이 달라지는 북한의 사회여건상 종교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북한주민들은 종교를 사람들에게 환각을 갖게 하는 미신으로서 ‘주체적 인간’이 믿을 바 못되는 못 쓸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도 정작 실제 미신행위인 점을 본다는가 푸닥거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갖지 않는 이중성을 보인다. 이는 아마 토속신앙으로서 일종의 풍습으로 여겼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갈수록 어려워지는 생활고와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일 것이다. 탈북자들에 의하면 북한주민들은 자녀가 아프거나 집안에 불상사가 있고 직장생활에서 곤경을 겪을 때 그 해결책을 미신에서 찾으려 하는 것이 만연되어 있고, 이러한 점은 당 간부들의 경우가 더 극심하다고 한다. 주민들의 미신행위는 개별적인 행태로만 끝나지 않고 집단적인 행태로도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90년대 초반에 평양 제1백화점 직원 20여명이 대동강가에서 비밀리에 고사판을 벌인 일이 있는데, 이는 국가상품을 빼돌리고 직원들에게 정치적 압력을 가하는 백화점 당비서를 하루빨리 ‘철칙’(파면)시켜 주기를 바라서였다고 한다.

이들은 유명 점쟁이가 가르쳐준 대로 음식을 차려놓고 매일 밤 빌었다고 하는데, 결국 보위부에 발각되어 거의 대부분 감옥에 갔다고 한다. 그 뿐만 아니라 1993년 4월 20일에는 전례없는 결혼식 사태가 벌어졌는데, 이 날이 사주팔자에 나오는 “춘향과 이도령의 백년해로가약 날”이라는 길일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북한주민들은 손금을 보거나 물을 떠놓고 비는 행위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복채만 마련되면 점쟁이를 찾아 그에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대다수의 북한주민들이 종교 없이 살고 있더라도 기본적인 종교욕구는 갖고 있는 한 단면이기도 하다고 할 수 있다.

본래 인간은 한편으로 경제동물(*homo economicus*)이면서, 다른 한편으로 종교동물(*homo religious*)이기도 하다. 인간은 본능에 의해 삶을 영위하면서도 영적이며 정신적인 추동력에 의해서도 삶의 에너지를 얻는다. 따라서 현재 북한에 아주 제한적으로만 관계적 종교활동이 있고, 극히 일부 주민들만이 음성적으로 개인의 종교생활을 지키고 있지만, 결코 종교욕구 자체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그 이유는 탈북자들에 의하면, 북한주민들도 급하면 자연스럽게 ‘하느님’을 찾으며, 사회적 불안의 급증으로 점을 친다든가 하여 초월적인 것에 의지하려는 강한 성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주민들은 다만 아직 종교적 욕구를 김일성주의로 대체하고 있을 뿐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강정구 외, 『북한의 사회』, 을유문화사, 1995.
2. 고영환, 『평양 25시』, 고려원, 1993.
3. 남인숙, 『남북한 여성 그들은 누구인가』, 서울신문사, 1993.
4. 류성민, 『북한 주민의 종교생활』, 공보처, 1994.
5. 박일용, “인민의 복리증진과 호주의 역할,” 「조선사회민주당」, 1996년 제2호.
6. 민족통일연구원, 『북한체제의 실상과 변화전망』, 1991.
7. 서동익, 『인민이 사는 모습』, 자료원, 1995.
8. 서재진, 『또 하나의 북한사회』, 나남출판, 1995.
9. 선한승, 『북한노동자의 적응력 실태와 인력활용 방안』, 한국노동연구원, 1995.
10. _____, 『북한 주민의 직장생활과 노동』, 공보처, 1994.
11. 손봉숙, 『북한의 여성-그 삶의 현장』, 공보처, 1993.
12. 윤미량, 『북한의 여성정책』, 한울, 1991.
13. 이영선 외, 『북한경제의 오늘과 내일』, 현대경제사회연구원, 1996.
14. 이종석·김연철, 「북한주민 의식구조 및 가치관 조사」, 통일연수원, 1996.
15. 이태욱, 『북한경제와 주민생활』, 공보처, 1993.
16. 조동호, 『통일 후 북한지역의 예상실업규모』, 한국개발연구원, 1994.
17. 조선일보사, 『북한 그 충격의 실상』, 1991.
18. 주강현, 『풍습으로 본 북한의 주민생활』, 공보처, 1993.
19. 통계청, 『남북한 경제사회상비교』, 1996.
20. 통일원, 『'92 북한개요』, 1992.
21. _____, 『'95 북한개요』, 1995.
22. 한국민족문화연구소, 『북한사회의 이해』, 부산대학교 출판부, 1995.

IX

북한체제의 변화가능성

제 1절 북한체제의 변화방향	345
제 2절 김정일정권의 정책전망	348

● 이 장의 요점 ●

- 사회주의 국가의 체제변화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하나는 사회주의체제의 본질적 특성을 포기하는 유형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주의 체제의 본질적 특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제한적인 변화를 시도하는 형태이다. 북한은 후자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 북한은 '우리식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있다. 즉 주체사상, 사회주의 집단주의, 수령·당·대중의 일심단결로 '우리식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며, 현재의 변화는 이념이나 제도와 같은 중심요소에서보다는 제한적 대외개방과 경제영역에서 개인적 경제활동이 싹트고 있는 데서 찾아볼 수 있다.
- 앞으로의 정책은 체제유지를 위해 제한된 범위내에서 실용주의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지만, 대남정책은 기존노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제 1 절 북한체제의 변화방향

이제까지 북한체제를 각 분야별로 정리하여 보았다. 이제 북한은 김정일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다만 ‘빈곤한 사회주의 체제’인 북한의 운명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지 자못 궁금할 뿐이다.

김일성 사후 2년반이 경과한 현재에도 김일성의 ‘신화’(유훈)는 여전히 강조되고 있으며, 김정일이 공식 승계한 이후에도 북한체제는 주체사상을 전국가적 지도이념으로 하면서 수령중심의 유일체제를 그대로 유지해 나갈 것으로 판단된다. 즉 김정일은 기존의 사회주의체제의 본질적 변화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원치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북한체제의 변화가능성과 전망은 어떠할 것인가?

이제까지 사회주의국가들의 체제변화는 대체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사회주의체제의 본질적 특성을 포기하거나 소멸시키는 차원의 혁명적인 체제변동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주의체제의 본질적 특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제한적인 변화를 시도하는 경우였다. 전자의 경우는 구소련 및 동구권국가들 사이에서 진행되어 왔던 현상에 해당하고, 후자의 경우는 중국이나 베트남 등 일부 사회주의국가들이 발전적 차원에서 자본주의국가들과의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고 자본주의적 요소의 부분적 도입을 통하여 국가발전을 추진하려는 현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경우는 후자의 경우를 선택할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은 여전히 ‘우리식 사회주의’를 표방함으로써 자신들의 체제독자성을 유지해 나가고자 한다. ‘우리식 사회주의’의 특징적 요소는 주체사상, 사회주의적 집단주의, 수령·당·인민대중의 일심단결로 표현되고 있

다. 요컨대, 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체제’는 주체사상을 바탕으로 한 수령중심의 유일체제로 요약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이러한 수령중심의 유일체제하의 경제체제 또는 사회체제를 가지고는 자본주의체제로 단일화된 세계체제에 적응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된 것 같다. 그것은 1996년 4월 22일 미국을 방문한 대외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정우가 학술회의에서 주장한 내용을 가지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에 의하면 앞으로 북한은 수출제일주의정책을 펼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자본주의시장 진출을 위한 국가단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역설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이를 실천하기 위한 몇 가지 대안으로 과거 국가차원의 구상무역방식에서 탈피하여 시장의 다변화와 교역품목의 다양화를 실현하고 자본주의국가와의 교역에 걸림돌이 되는 법적 제도들을 수정할 의지를 밝혔다. 그는 이러한 북한의 대외경제정책 변화 이유를 설명하면서, 사회주의시장의 몰락으로 외부경제환경이 급속히 바뀌어 북한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세계시장이 자본주의 시장으로 단일 통합된 조건에서 부득이 자본주의시장 진출이라는 대외경제정책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고 말했다.

물론 상기 김정우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수용하여 북한체제의 가시적인 변화를 예측하기는 성급하다고 하겠다. 다만, 북한과 같은 자급형 경제체제로는 자본주의시장으로 통합되는 국제상황에서 생존하기 어렵다는 북한지도부의 절박한 상황인식의 일단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체제변화의 의향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북한의 내부사정으로 볼 때 언제, 어떤 방향으로 그리고 어느 만큼의 정도로 북한체제가 변화될 것인가에 있다고 할 것이다.

현재 북한에서는 시장경제요소의 싹이 나타나고는 있다. 예컨대 배급제도의 일부 붕괴로 농민시장이 확대되고, 이로 인해 물물교환, 현금거래 방식에 의한 생필품 등의 활발한 사적 거래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이다. 또 국영상점에 의존하여 상품을 구입하던 방식에서 개인상점 및 직매점에 의존하여 구매하는 모습과 평양, 개성 등 대도시에 일일시장인 장마당이 증가(30여개로 확대)하고 있으며, 식량이 배급가격보다 10~30배의 고가로 거래되고 있는 등 변화의 증후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북한체제의 변화를 방해하는 요인도 만만치 않다. 우선 현재의 정권이 군사정권이라는 점이다. 그들은 ‘사상 더하기 총대’가 혁명전쟁 승리의 철학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경제건설도 어디까지나 인민대중을 사회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키는 사상사업을 앞세우는 기초위에서 진행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현재 북한집권층의 사상에 대한 관점은 사상사업을 소홀히 하면 인민대중이 자본주의에 대한 환상을 갖게 되어 사회주의를 배반한다는 것이며, 그것은 여러 나라의 사회주의 붕괴가 사상의 문제를 잘못 다루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는 판단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북한집권층은 특히 사상사업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체제의 변화가능성은 경제사회영역에서의 일부 제한된 지역개방과 부분적인 자본주의적 교환활동 그리고 이로 인한 주민들의 물질에 대한 관심도의 증가와 집단주의적 경제행동의 이완 등 면에서 엿볼 수 있으나, ‘위로부터의’ 혁명과 ‘사상의 공고화’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한 그 가능성을 예상해 보기엔 그리 쉽지 않은 것 같다.

지금 우리 사회내에는 북한사회 변화여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이는 북한의 이중성에 대한 우리의 정확한 인식부족에서 비롯된 결과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북한은 현재 체제유지 및 생존의 차원에서 제한된 변화시도를 보이고 있지만, 남북관계 전선에 대해서는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단지 북한지도부가 ‘제도개혁 없는 제한개방’으로 새로운 국제환경 변화와 대내적인 경제사회 변화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고 판단할 때 체제변화가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도래할 것으로 생각된다.

제 2절 김정일정권의 정책전망

1. 대내정책 전망

앞으로 김정일은 김일성사망 만 3년되는 1997년 7월 8일 이후 공식 절차를 밟아 당총비서, 국가주석,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제는 김정일이 당면한 현난국을 타개할 수 있느냐 하는 점에 있다. 경제난과 외교적 고립, 남북관계 및 남북정상회담 문제들을 잘 풀어나간다면 김정일의 정권은 의외로 오래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못할 경우 김정일정권은 단기집권으로 끝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정일은 권력을 공식 승계한 후에는 당분간 권력기반을 다지는 데 전력(全力)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그는 당과 군내에 지지세력 확보작업, 즉 잠재적 저항세력의 제거→권력의 장악→정당성의 확보라는 단계적 작업을 순차적으로 또는 동시에 실시할 것이다. 김정일이 이러한 과정에서 최악의 경제난을 비롯한 내정 및 경제·외교문제를 잘 풀지 못하면 반(反)김정일 세력이 규합되어 권력투쟁이 표출될 수도 있다.

김정일은 실권을 행사한 이후에 내세울 만한 뚜렷한 공적이 없는 형편이다. 따라서 김정일은 기본적으로 김일성 주체사상과 혁명전통을 계승하면서 한편으로는 사상통제를 할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재건을 위해 합리적·실용적 측면을 중시하는 정책을 병행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즉, 체제유지와 경제회생의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방과 체제단속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2. 대외정책 전망

김정일은 기존의 ‘통제된 개방정책’을 확대하고 대미·대일 관계개선에 주력하는 이른바 ‘실용주의적 개방정책’을 제한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북한은 미국과 핵협상을 타결하고 연락사무소 설치까지 합의해 놓고 있다. 또한 북한은 1995년 1월 1일자 ‘공동사설’에서 북·미 기본합의문은 한반도의 핵문제 해결과 북미관계 발전을 위한 하나의 이정표이며 두 나라 국가 수반들이 보증한 무게있는 문건이라고 주장한 바도 있다. 그간 소원해진 중국과도 관계를 회복하여 정치·군사·경제적 협력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나진·선봉자유무역지대 투자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설명회(1996. 9. 13~15)를 개최, 일본 및 서방기업인들의 투자를 열망하고 있다. 또한 “이념보다는 실리추구노선으로 나아가고 있는 제3세계 비동맹국가들과의 관계 지속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점들로 미루어 보아 향후 북한이 실용주의 개방정책을 적극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된다.

그러나 북한이 ‘실용주의적 개방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부딪칠 문제 또한 심각하다. 예를 들어 ‘자유경제무역지대’를 ‘로빈슨 쿠루소 섬’이라고 하면서 북한사회와 별개로 운영하겠다는 생각이지만, 개방의 결과 ‘자본주의사상’이 북한 내부로 스며들어 올 경우 자유화바람의 유입, 정치비판의식의 고조 등 사회적 부작용도 결코 만만치 않을 것이다.

3. 대남정책 전망

북한은 제한적 개방정책과 함께 미국과 핵합의를 했고, 자유무역지대를 위한 투자설명회(1996. 9. 13~15)를 갖는 등 부분적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그렇지만 남북대화는 아직 적극적으로 나설 조짐을 보여주

지 않고 있다.

오히려 한쪽에서 '투자설명회'를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물밑으로 잠수함을 침투시켜 우리 체제를 흔들어 놓을 기회만을 호시탐탐 노리는 등 대남적대정책을 포기하지 않음으로써 자신들의 이중성을 명백히 드러내고 있다.

또한 북한은 잠수함 침투로 긴장된 국면을 촉발시켜 놓고 우리가 강경 대응하니까 오히려 남쪽의 '남북폐쇄정책'으로 인해 긴장이 생겼다고 책임을 전가하는 등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북한은 미국과 관계를 개선하면서 잃었던 '주적'을 우리로 삼아 대내통제와 결속의 수단으로 우리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대남적대정책은 계속될 것으로 예측되며, 다만 경제적 차원에서의 문제해결을 위해 대남유화정책을 은밀히 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북한은 당국간 대화와는 달리 민간경제 교류 협력에 대해서는 통일전선전술과 혼합하여 적극적 태도로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북한은 김정일정권의 안정화를 유도하는 일환으로 일면 긴장, 일면 경제교류의 제스추어를 쓰는 등 기존의 이중적 대남정책을 계속 구사 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 고 문 헌

1. 김갑철, 『북한학개론』, 문우사, 1990.
2. 김영수, 『북한의 정치와 사회』, 서울프레스, 1994.
3. 민족통일연구원, 『대북투자보호 및 분쟁해결방안 연구』, 1993.
4. 이종석, 『현대 북한의 이해』, 역사와 비평사, 1995.
5. 전현준, 『북한의 인권실태연구』, 민족통일연구원, 1993.
6. 최명 외, 『북한개론』, 을유문화사, 1990.
7. 이동훈 외, 『북한학』, 박영사, 1996.
8. 이홍구·스칼라피노, 『북한과 오늘의 세계』, 법문사, 1986.
9. 이용필·양성철, 『북한체제변화와 협상전략』, 박영사, 1996.
10. 최종철 외, 『북한의 생존정책』, 보성문화사, 1995.
11.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편, 『분단 반세기 남북한의 정치와 경제』, 서울컴퓨터사, 1996.
12. 노승우, 『민족통일의 이론과 실천』, 전예원, 1996.

부 록

- ◇ 북한의 사회주의헌법 355
- ◇ 북한의 조선로동당 규약 379

북한의 사회주의헌법

(1992. 4. 9 개정)

제 1 장 정 치

제 1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제 2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국주의침략자들을 반대하며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에서 이룩한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은 혁명적인 정권이다.

제 3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을 자기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

제 4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와 모든 근로인민에게 있다.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 각급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제 5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모든 국가기관들은 민주주의중앙집권

제 원칙에 의하여 조직되며 운영된다.

제 6 조 군인민회의로부터 최고인민회의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주권기관은 일반적·평등적·직접적 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한다.

제 7 조 각급 주권기관의 대의원은 선거자들과 밀접한 련계를 가지며 자기 사업에 대하여 선거자들 앞에 책임진다.

선거자들은 자기가 선거한 대의원이 신임을 잃은 경우에 언제든지 소환 할 수 있다.

제 8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이 모든 것의 주인으로 되고 있으며 사회의 모든 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중심의 사회제도이다.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노동자, 농민, 근로인테리의 리익을 옹호하며 보호한다.

제 9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반부에서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 한다.

제 10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노동계급이領導하는 농동농맹에 기초 한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 통일에 의거한다.

국가는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노동계급화 하며 온 사회를 동지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집단으로 만든다.

제 11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領導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

제 12 조 국가는 계급로선을 견지하며 인민민주주의독재를 강화하여 내외적 대부분자들의 파괴책동으로부터 인민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보위한다.

제 13 조 국가는 군종로선을 구현하며 모든 사업에서 우가 아래를 도와주고 대중속에 들어가 문제해결의 방도를 찾으며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 세워 대중의 자각적 열성을 불러 일으키는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관철 한다.

제 14 조 국가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친다.

제 15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해외에 있는 조선동포들의 민주주의적 민족권리와 국제법에서 공인된 합법적 권리를옹호한다.

제 16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기 령역안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의 합법적 권리와 리익을 보장한다.

제 17 조 자주, 평화, 친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이며 대외활동원칙이다.

국가는 우리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에서 국가적 또는 정치·경제·문화적 관계를 맺는다.

국가는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과 단결하며 온갖 형태의 침략과 내정간섭을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적·계급적 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 성원한다.

제 18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은 근로인민의 의사와 리익의 반영이며 국가관리의 기본무기이다.

법에 대한 존중과 엄격한 준수집행은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있어서 의무적이다.

국가는 사회주의법률제도를 완비하고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한다.

제 2 장 경 제

제 19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와 자립적 민족경제의 토대에 의거한다.

제 20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생산수단은 국가와 협동단체만이 소유한다.

제 21 조 국가소유는 전체 인민의 소유이다.

국가소유권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중요 공장의 기업소, 항만, 은행, 교통 운수와 체신 기관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국가는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국가소유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며 장성시킨다.

제 22 조 협동단체소유는 협동경리에 들어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소유이다.

토지, 부림짐승, 농기구, 고기배, 건물 같은 것과 중소공장, 기업소는 협동단체가 소유할 수 있다.

국가는 협동단체 소유를 보호한다.

제 23 조 국가는 농민들의 사상의식과 기술문화수준을 높이고 협동적 소유에 대한 전인민적 소유의 지도적 역할을 높이는 방향에서 두 소유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며 협동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하여 사회주의적 협동경리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협동단체에 들어있는 전체 성원들의 자원적 의사에 따라 협동단체소유를 점차 전인민적 소유로 전환시킨다.

제 24 조 개인소유는 근로자들의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이다.

근로자들의 개인소유는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 분배와 국가와 사회의 추가적 혜택으로 이루어진다.

협동농장원들의 터밭경리를 비롯한 주민의 개인부업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도 개인소유에 속한다.

국가는 근로자들의 개인소유를 보호하며 그에 대한 상속권을 법적으로 보장한다.

제 25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 것을 자기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는다.

세금이 없어진 우리나라에서 끊임없이 늘어나는 사회의 물질적 부는 전적으로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에 돌려진다.

국가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먹고, 입고, 쓰고 살 수 있는 온갖 조건을 마련하여 준다.

제 26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마련된 자립적 민족경제는 인민의 행복한 사회주의 생활과 조국의 자주적 발전을 위한 튼튼한 밑천이다.

국가는 사회주의 자립적 민족경제건설로선을 틀어쥐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쳐 인민경제를 고도로 발전된 주체적인 경제로 만들며 완전한 사회주의사회에 맞는 물질기술적 토대를 쌓기 위하여 투쟁한다.

제 27 조 기술혁명은 사회주의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고리이다.

국가는 언제나 기술발전문제를 첫자리에 놓고 모든 경제활동을 진행하며 과학기술발전과 인민경제의 기술개조를 다그치고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며 육체로동과 정신로동의 차이를 줄여나간다.

제 28 조 국가는 도시와 농촌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 차이를 없애기 위하여 농촌기술혁명을 다그쳐 농업을 공업화하며 군의 역할을 높이고 농촌에 대한 지도와 방조를 강화한다.

국가는 협동농장의 생산시설과 농촌문화주택을 국가부담으로 건설하여 준다.

제 29 조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근로대중의 창조적 로동에 의하여 건설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로동은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이다.

국가는 실업을 모르는 우리 근로자들의 로동이 보다 즐거운 것으로, 사회와 집단과 자신을 위하여 자각적 열성과 창발성을 내어 일하는 보람찬 것으로 되게 한다.

제 30 조 근로자들의 하루 로동시간은 8시간이다.

국가는 로동의 힘든 정도와 특수한 조건에 따라 하루 로동시간을 이보다 짧게 정한다.

국가는 로동조직을 잘하고 로동규률을 강화하여 로동시간을 완전히 리용하도록 한다.

제 31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이 로동하는 나이는 16살부터이다.

국가는 로동하는 나이에 이르지 못한 소년들의 로동을 금지한다.

제 32 조 국가는 사회주의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에서 정치적 지도와 경제기술적 지도, 국가의 통일적 지도와 매개단위의 창발성, 유일적 지휘와 민

주주의, 정치 도덕적 자극과 물질적 자극을 옳게 결합시키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한다.

제 33 조 국가는 생산자대중의 집체적 힘에 의거하여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사회주의경제관리형태인 대안의 사업체계와 농촌 경리를 기업적 방법으로 지도하는 농업 지도체계에 의하여 경제를 지도 관리한다.

제 34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민경제는 계획경제이다.

국가는 사회주의 경제발전법칙에 따라 축적과 소비의 균형을 옳게 잡으며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며 국방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민경제 발전계획을 세우고 실행한다.

국가는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방침을 관철하여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와 인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보장한다.

제 35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경제발전계획에 따르는 국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다.

국가는 모든 부문에서 증산과 절약투쟁을 강화하고 재정통제를 엄격히 실시하여 국가축적을 체계적으로 늘이며 사회주의적 소유를 확대 발전시킨다.

제 36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대외무역은 국가가 하거나 국가의 감독밑에서 한다.

국가는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대외무역을 발전시킨다.

제 37 조 국가는 우리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와 다른 나라 법인 또는 개인들과의 기업합영과 합작을 장려한다.

제 38 조 국가는 자립적 민족경제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세정책을 실시한다.

제 3장 문화

제 39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개화발전하고 있는 사회주의적 문화

는 근로자들의 창조적 능력을 높이며 건전한 문화정서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이바지한다.

제 40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문화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모든 사람들을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과 높은 문화기술 수준을 가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만들며 온 사회를 인테리화 한다.

제 41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 근로자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문화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적 민족문화건설에서 제국주의의 문화적 침투와 복고주의적 경향을 반대하며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사회주의 현실에 맞게 계승발전시킨다.

제 42 조 국가는 모든 분야에서 낡은 사회의 생활양식을 없애고 새로운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을 전면적으로 확립한다.

제 43 조 국가는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로, 지덕체를 갖춘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키운다.

제 44 조 국가는 인민교육사업과 민족간부양성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앞세우며 일반교육과 기술교육, 교육과 생산로동을 밀접히 결합시킨다.

제 45 조 국가는 1년동안의 학교전의무교육을 포함한 전반적 11년제 의무교육을 현대과학기술발전추세와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 요구에 맞게 높은 수준에서 발전시킨다.

제 46 조 국가는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와 일하면서 공부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교육체계를 발전시키며 기술교육과 사회과학, 기초과학 교육의 과학리론수준을 높여 유능한 기술자, 전문가들을 키워낸다.

제 47 조 국가는 모든 학생들을 무료로 공부시키며 대학과 전문학교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준다.

제 48 조 국가는 사회교육을 강화하며 모든 근로자들이 학습할 수 있는 온갖 조건을 보장한다.

제 49 조 국가는 학령전 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워준다.

제 50 조 국가는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세우며 선진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고 새로운 과학기술분야를 개척하여 나라의 과학기술을 세계적 수준에 올려 세운다.

제 51 조 국가는 과학기술발전계획을 바로 세우고 철저히 수행하는 규률을 세우며 과학자, 기술자, 생산자들의 창조적 협조를 강화하여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을 촉진시킨다.

제 52 조 국가는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은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문학예술을 발전시킨다.

국가는 창작가, 예술인들이 사상예술성이 높은 작품을 많이 창작하며 광범한 대중이 문예활동에 널리 참가하도록 한다.

제 53 조 국가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사람들의 요구에 맞게 현대적인 문화시설들을 충분히 갖추어 주어 모든 근로자들이 사회주의적 문화정서생활을 마음껏 누리도록 한다.

제 54 조 국가는 우리 말을 온갖 형태의 민족어 말살책동으로부터 지켜내며 그것을 현대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킨다.

제 55 조 국가는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는데 대한 방침을 관철하여 전체인민을 노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키며 우리나라 실정과 현대체육기술발전추세에 맞게 체육기술을 발전시킨다.

제 56 조 국가는 전반적 무상치료제를 공고발전시키며 의사담당구역제를 강화하고 예방의학적 방침을 관철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제 57 조 국가는 생산에 앞서 환경보호대책을 세우며 자연환경을 보존, 조성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인민들에게 문화위생적인 생활환경과 노동조건을 마련하여 준다.

제 4 장 국 방

제 58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인민적·전국가적 방위체계에 의거한다.

제 59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장력의 사명은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외래침략으로부터 사회주의 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을 보위하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과 평화를 지키는 데 있다.

제 60 조 국가는 군대와 인민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기초우에서 전 민무장화, 전국요새화,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자위적 군사로선을 관철한다.

제 61 조 국가는 군대안에서 군사규률과 군중규률을 강화하며 관병일치, 군민일치의 고상한 전통적 미풍을 높이 발양하도록 한다.

제 5 장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제 62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이 되는 조건은 국적에 관한 법으로 규정한다.

공민은 거주지에 관계없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보호를 받는다.

제 63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원칙에 기초한다.

제 64 조 국가는 모든 공민에게 참다운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자유는 사회주의제도의 공고발전과 함께 더욱 확대된다.

제 65 조 공민은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다같은 권리를 가진다.

제 66 조 17살 이상의 모든 공민은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과 지식 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가진다.

군대에 복무하는 공민도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가진다.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할 권리를 빼앗긴 자, 정신병자는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제 67 조 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한다.

제 68 조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에는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 의식 같은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장된다.

누구든지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 데 이용할 수 없다.

제 69 조 공민은 신소와 청원을 할 수 있다.

신소와 청원은 법이 정한 절차와 기간안에 심의처리하여야 한다.

제 70 조 공민은 로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로동능력있는 모든 공민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안정된 일자리와 로동조건을 보장받는다.

공민은 능력에 따라 일하며 로동의 양과 질에 따라 분배를 받는다.

제 71 조 공민은 휴식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에는 로동시간제, 공휴일 제, 유급휴가제, 국가비용에 의한 정휴양제, 계속 늘어나는 여러 가지 문화 시설들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 72 조 공민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며 나이 많거나 병 또는 불구로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와 어린이는 물질적 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에는 무상치료제, 계속 늘어나는 병원, 료양소를 비롯한 의료시설, 국가 사회보험과 사회보장제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 73 조 공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에는 선진적인 교육제도 와 국가의 인민적인 교육시책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 74 조 공민은 과학과 문화예술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발명가와 창의고안자에게 배려를 돌린다.

저작권과 발명권은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 75 조 혁명투사, 혁명렬사가족, 애국렬사가족, 인민군후방가족, 영예군인은 국가와 사회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제 76 조 녀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산전산후휴가의 보장, 여러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를 위한 토동시간의 단축, 산원, 탁아소와 유치원망의 확장, 그밖의 시책을 통하여 어머니와 어린이를 특별히 보호한다.

국가는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할 온갖 조건을 지어준다.

제 77 조 결혼과 가정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사회의, 기층생활단위인 가정을 공고히 하는 데 깊은 배려를 돌린다.

제 78 조 공민은 인신과 주택의 불가침, 서신의 비밀을 보장받는다.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공민을 구속하거나 체포할 수 없으며 살림집을 수색할 수 없다.

제 79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 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과학, 문화의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다가 망명하여 온 다른 나라 사람을 보호한다.

제 80 조 공민은 인민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단결을 견결히 수호하여야 한다.

제 81 조 공민은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 생활규범을 지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민된 영예와 존엄을 고수하여야 한다.

제 82 조 집단주의는 사회주의사회생활의 기초이다.

공민은 조직과 집단을 귀중히 여기며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제 83 조 로동은 공민의 신성한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로동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하며 로동규률과 로동시간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제 84 조 공민은 국가재산과 공동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온갖 탐오랑비현상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나라살림살이를 주인답게 알뜰히 하여야 한다.

국가와 사회협동단체 재산은 신성불가침이다.

제 85 조 공민은 언제나 혁명적 경각성을 높이며 국가의 안전을 위하여 봄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제 86 조 조국보위는 공민의 최대의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조국을 보위하여야 하며 법이 정한 데 따라 군대에 복무하여야 한다.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는 것은 가장 큰 죄악이며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는 자는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한다.

제 6 장 국가기구

제 1 절 최고인민회의

제 87 조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주권기관이다.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의 상무기관은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이다.

제 88 조 립법권은 최고인민회의와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가 행사한다.

제 89 조 최고인민회의는 일반적·평등적·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출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제 90 조 최고인민회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최고인민회의 새 선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때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 91 조 최고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1. 헌법을 수정한다.

2. 법령을 제정 또는 수정한다.

3.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가 채택한 법을 승인한다.

-
4. 국가의 대내외정책의 기본원칙을 세운다.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의 제의에 의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부주석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제의에 의하여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9. 중앙인민위원회 서기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0.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서기장, 의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1. 최고인민회의 부문별 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2. 중앙재판소 소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3. 중앙검찰소 소장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1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의 제의에 의하여 정무원총리를 선거 또는 소환한다.
 15. 정무원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정무원 부총리, 위원장, 부장, 그 밖의 정무원성원들을 임명한다.
 16.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17. 국가예산과 그 집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18. 필요에 따라 최고인민회의가 조직한 중앙국가기관들의 사업정형을 보고 받고 대책을 세운다.
 19. 최고인민회의에 제기되는 조약의 비준, 폐기를 결정한다.
 20. 전쟁과 평화에 관한 문제를 결정한다.

제 92 조 최고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립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가 소집한다.

립시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제 93 조 최고인민회의는 대의원 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

된다.

제 94 조 최고인민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한다.

의장은 회의를 집행하며 대외관계에서 최고인민회의를 대표한다.

부의장은 의장의 사업을 돋는다.

제 95 조 최고인민회의에서 토의할 의안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중앙인민위원회, 정무원과 최고인민회의 위원회들이 제출한다.

대의원들도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 96 조 최고인민회의 제1차 회의는 대의원자격심사위원회를 선거하고 그 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에 근거하여 대의원자격을 확인하는 결정을 채택한다.

제 97 조 최고인민회의는 법령과 결정을 낸다.

최고인민회의가 내는 법령, 결정은 거수가결의 방법으로 그 회의에 참석한 대의원의 반수 이상이 찬성하여야 채택된다.

헌법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여야 수정된다.

제 98 조 최고인민회의는 법제위원회, 예산위원회, 외교위원회, 통일정책위원회 같은 필요한 위원회를 둔다.

최고인민회의 위원회들은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최고인민회의 위원회들은 최고인민회의 사업을 도와 국가의 정책과 법안을 작성하거나 심의하며 그 집행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최고인민회의 위원회들은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지도밑에 사업한다.

제 99 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대의원으로서의 불가침권을 보장받는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최고인민회의, 그 휴회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의 승인없이 체포하거나 처벌할 수 없다.

제 100 조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는 의장, 부의장, 서기장, 의원들로 구성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장, 부의장은 각각 최고인민회의 의장, 부의장이 겸임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 101 조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제기된 법안과 현행법령의 수정안을 심의채택하고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2. 새로운 법안과 법 수정안을 채택한 경우 그와 어긋나는 법규들을 폐지 한다.
3. 현행법령을 해석한다.
4.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한다.
5.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한다.
6.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7. 최고인민회의 위원회들과의 사업을 한다.
8.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선거사업을 조직한다.
9. 중앙재판소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0. 다른 나라 국회, 국제의회기구들과의 사업을 비롯한 대외사업을 한다.

제 102 조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는 결정과 지시를 낸다.

제 103 조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난 후에도 새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가 선거될 때까지 자기 임무를 계속 수행한다.

제 104 조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앞에 책임진다.

제 2 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제 105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국가의 수반이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대표한다.

제 106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 107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의 임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중앙인민위원회사업을 지도한다.
2. 필요에 따라 정무원회의를 소집하고 지도한다.

-
3. 최고인민회의 법령,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중앙인민위원회 중요 정령과 결정을 공포한다.
 4. 특사권을 행사한다.
 5.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의 비준 또는 폐기를 공포한다.
 6.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의 임명 또는 소환을 발표한다.
 7. 다른 나라 사신의 신임장, 소환장을 접수한다.

제 108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명령을 낸다.

제 109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 인민회의 앞에 책임진다.

제 110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부주석은 주석의 사업을 돋는다.

제 3 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 111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이다.

제 112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는 위원장,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국방위원회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 113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일체 무력을 지휘 통솔한다.

제 114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국가의 전반적 무력과 국방건설사업을 지도한다.
2. 중요 군사간부를 임명 또는 해임한다.
3. 군사칭호를 제정하며 장령 이상의 군사칭호를 수여한다.
4. 유사시 전시상태와 동원령을 선포한다.

제 115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는 결정과 명령을 낸다.

제 116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 인민회의 앞에 책임진다.

제 4 절 중앙인민위원회

제 117 조 중앙인민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권의 최고지도 기관이다.

제 118 조 중앙인민위원회 수위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이다.

제 119 조 중앙인민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 중앙인민위원회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중앙인민위원회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 120 조 중앙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국가의 정책과 그 집행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2. 정무원과 지방인민회의와 인민위원회 사업을 지도한다.
3. 사법·검찰 기관사업을 지도한다.
4. 국가기관들의 법준수집행을 지도하며 법집행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처리한다.
5.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지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명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결정, 명령, 중앙인민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집행정령을 감독하며 그와 어긋나는 지방인민회의의 결정집행을 정지시키고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6. 부문별 행정적 집행기관인 정무원 위원회, 부를 나오거나 없앤다.
7.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정무원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부총리, 위원장, 부장, 그밖의 정무원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8. 중앙인민위원회 부문별 위원회 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9.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한다.
10.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의 임명 또는 소환을 결정한다.
11.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 외교직급을 제정하며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를 수여한다.
12. 대사권을 행사한다.
13. 행정구역을 새로 나오거나 고친다.

-
- 제 121 조 중앙인민위원회는 정령과 결정, 지시를 낸다.
- 제 122 조 중앙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을 돋는 필요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 123 조 중앙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앞에 책임 진다.

제 5 절 정무원

- 제 124 조 정무원은 최고주권기관의 행정적 집행기관이다.
- 정무원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과 중앙인민위원회의 지도 밑에 사업한다.
- 제 125 조 정무원은 총리, 부총리, 위원장, 부장들과 그밖에 필요한 성원들로 구성한다.
- 정무원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 제 126 조 정무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각 위원회, 부, 정무원직속기관, 지방행정경제위원회 사업을 지도한다.
 2. 정무원직속기관을 내오거나 없앤다.
 3.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4. 국가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5. 공업, 농업, 건설, 운수, 체신, 상업, 무역, 국토관리, 도시경영, 교육, 과학, 문화, 보건, 환경보호, 관광 그밖의 여러 부문의 사업을 조직집행한다.
 6. 화폐와 은행제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7.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으며 대외사업을 한다.
 8. 사회질서의 유지, 국가 및 협동단체의 소유와 리익의 보호, 공민의 권리 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9. 정무원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행정경제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제 127 조 정무원은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정무원전원회의는 정무원성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정무원상무회의는 총리, 부총리와 그밖에 총리가 임명하는 정무원성원으로 구성한다.

제 128 조 정무원전원회의는 국가관리사업에서 나서는 새롭고 중요한 문제

들을 토의 결정한다.

정무원상무회의는 정무원전원회의에서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제 129 조 정무원은 결정과 지시를 낸다.

제 130 조 정무원은 자기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주석, 중앙인민위원회 앞에 책임진다.

제 131 조 새로 선거된 정무원총리는 정무원성원들을 대표하여 최고 인민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앞에 선서를 한다.

제 132 조 정무원 위원회와 부는 정무원의 부문별 집행기관이다. 정무원 위원회, 부는 지시를 낸다.

제 6 절 지방인민회의와 인민위원회

제 133 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 인민회의는 지방주권기관이다.

제 134 조 지방인민회의는 일반적·평등적·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 투표로 선출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제 135 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 인민회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 136 조 지방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 한다.
2. 지방예산과 그 집행정형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3. 해당지역에서 국가의 법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4. 해당 인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5. 해당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6. 해당 행정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7. 해당 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8. 해당 인민위원회와 하급 인민회의, 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제 137 조 지방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림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 해당 인민위원회가 소집한다.

림시회의는 해당 인민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 138 조 지방인민회의는 대의원 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제 139 조 지방인민회의는 의장을 선거한다.

의장은 회의를 집행한다.

제 140 조 지방인민회의는 결정을 낸다.

지방인민회의 결정은 해당 인민위원회가 공포한다.

제 141 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 인민위원회는 해당 인민회의 휴회중의 지방주권기관이다.

제 142 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지방인민위원회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 143 조 지방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인민회의를 소집한다.
2.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한다.
3. 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4. 해당 인민회의와 상급 인민회의, 인민위원회 결정집행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5. 해당 행정경제위원회 사업을 지도한다.
6. 하급 인민위원회 사업을 지도한다.
7. 해당 지역안의 기관, 기업소, 단체들의 사업을 지도한다.
8. 해당 행정경제위원회와 하급 인민위원회, 행정경제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폐지하며 하급 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킨다.
9. 인민회의 휴회중에 해당 행정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제 144 조 지방인민위원회는 결정과 지시를 낸다.

제 145 조 지방인민위원회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가 끝난 후에도 새 인민위원회가 선거될 때까지 자기 임무를 계속 수행한다.

제 146 조 지방인민위원회는 해당 인민회의와 상급 인민회의, 인민위원회의 지도를 받으며 자기 사업에 대하여 그 앞에 책임진다.

제 7 절 지방행정경제위원회

제 147 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 행정경제위원회는 지방주권기관의 행정적 집행기관이다.

제 148 조 지방행정경제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지방행정경제위원회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 149 조 지방행정경제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해당 지방의 모든 행정경제사업을 조직집행한다.
2. 해당 인민회의, 인민위원회와 상급 인민회의, 인민위원회, 행정경제위원회와 정무원의 결정, 지시를 집행한다.
3.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여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4. 지방예산을 편성하여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5. 해당지방의 사회질서와 유지, 국가 및 협동단체의 소유와 리익의 보호, 공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6. 하급 행정경제위원회 사업을 지도한다.
7. 하급 행정경제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제 150 조 지방행정경제위원회는 결정과 지시를 낸다.

제 151 조 지방행정경제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해당 인민회의와 인민위원회 앞에 책임진다.

지방행정경제위원회는 상급 행정경제위원회와 정무원에 복종한다.

제 8 절 재판소와 검찰소

제 152 조 재판은 중앙재판소, 도(직할시) 재판소, 인민재판소와 특별재판소가 한다.

판결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름으로 선고한다.

제 153 조 중앙재판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중앙재판소, 도(직할시) 재판소, 인민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의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 154 조 특별재판소의 소장과 판사는 중앙재판소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특별재판소의 인민참심원은 해당 군무자회의 또는 종업원회의에서 선거 한다.

제 155 조 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재판활동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 재산, 인민의 헌법적 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2.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고 계급적 원쑤들과 온갖 법위반자들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도록 한다.
3. 재산에 대한 판결, 판정을 집행하며 공증사업을 한다.

제 156 조 재판은 판사 1명과 인민참심원 2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판사 3명으로 구성하여 할 수 있다.

제 157 조 재판은 공개하며 피소자의 변호권을 보장한다.

법이 정한 데 따라 재판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 158 조 재판은 조선말로 한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재판에서 자기나라 말을 할 수 있다.

제 159 조 재판소는 재판에서 독자적이며 재판활동을 법에 의거하여 수행 한다.

제 160 조 중앙재판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재판기관이다.

중앙재판소는 모든 재판소의 재판사업을 감독한다.

중앙재판소는 중앙인민위원회의 지도를 받는다.

제 161 조 중앙재판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주석, 중앙인민위원회 앞에 책임진다.
도(직할시) 재판소, 인민재판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해당 인민회의 앞에 책임진다.

제 162 조 검찰사업은 중앙검찰소, 도(직할시), 시(구역), 군검찰소와 특별

검찰소가 한다.

제 163 조 중앙검찰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 164 조 검사는 중앙검찰소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제 165 조 검찰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는가를 감시한다.
2.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가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지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명령,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결정, 명령, 중앙인민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정무원 결정, 지시에 어긋나지 않는가를 감시한다.
3. 범죄자를 비롯한 범위반자를 적발하고 법적책임을 추궁하는 것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 재산, 인민의 헌법적 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제 166 조 검찰사업은 중앙검찰소가 통일적으로 지도하며 모든 검찰소는 상급 검찰소와 중앙검찰소에 복종한다.

중앙검찰소는 중앙인민위원회의 지도를 받는다.

제 167 조 중앙검찰소는 자기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주석, 중앙인민위원회 앞에 책임진다.

제 7 장 국장, 국기, 국가, 수도

제 168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쓴 붉은 띠로 땋아올려 감은 벼이삭의 타원형 테두리안에 웅장한 수력 발전소가 있고 그 우에 혁명의 성산 백두산과 찬연히 빛나는 붉은 오각별이 있다.

제 169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기는 기발의 가운데에 넓은 붉은 폭이 있고 그 아래우에 가는 흰 폭이 있으며 그 다음에 푸른 폭이 있고 붉은

폭의 기대달린쪽 흰 동그라미 안에 붉은 오각별이 있다.

기발의 세로와 가로의 비는 1대 2이다.

제 170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는 〈애국가〉이다.

제 171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는 평양이다.

북한의 조선로동당 규약

(1980.10.13 제6차당대회 개정)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해 창건된 주체형의 혁명적 맑스-레닌주의당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1926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공산주의 혁명조직으로서 타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했으며 오랜 항일혁명투쟁을 통해 당 창건을 위한 조직적·사상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이에 기초하여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을 창건하였다.

조선로동당은 우리나라에서 노동계급과 전체 근로대중의 선봉적·조직적 부대이며 전체 근로대중 조직체 중에서 최고형태의 혁명조직이다.

조선로동당은 조선민족과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한다.

조선로동당은 노동자, 농민, 근로 『인테리』를 망라하는 근로인민들 가운데서 근로대중의 리익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운동의 승리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는 선봉적 투사들로서 조직한다.

조선로동당은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 혁명사상에 의해 지도된다.

조선로동당은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해 이룩된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계승 발전시킨다.

조선로동당은 자본주의사상과 마찬가지로 국제공산주의 운동과 로동계급 운동에서 나타난 수정주의, 교조주의를 비롯한 온갖 기회주의를 반대하고 맑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고수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한다.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여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 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다.

조선로동당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것을 당건설과 당활동의 기본원칙으로 삼는다.

조선로동당은 주체사상에 기초한 전당의 사상의지적 통일단결을 단속 강화 한다.

조선로동당은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실시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종로선으로서 천리마운동과 사상, 기술, 문화혁명을 추진한다.

조선로동당은 로동계급의 영도적 역할을 높임으로써 로동동맹을 기초로 한 전조선의 각계각층 애국적 민주력량들과의 통일전선을 강화하기 위하여 투쟁 한다.

조선로동당은 인민들의 물질적 및 문화적 수준을 끊임없이 높이는 것을 최고의 활동원칙으로 삼는다.

조선로동당은 사람과의 사업을 당사업의 기본으로 삼는다.

조선로동당은 모든 당사업의 기본원칙으로서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관철 한다.

조선로동당은 항일유격대식 사업방법, 청산리정신 및 청산리방법을 철저히 관철한다.

조선로동당은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인테리화를 촉진하고 사회주의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공고히 하며 나아가서 사회주의제도를 강화하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촉진시키기 위한 투쟁에서 사상, 기술, 문화혁명을 활발히 수행한다.

조선로동당은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 침략군대를 몰아내고 식민지통치를 청산하며 그리고 일본 군국주의의 재침기도를 좌절시키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고 남조선 인민들의 사회주의화와 생존권투쟁을 적극 지원하고 조국을 자

주적 평화적으로 민족대단결의 원칙에 기초하여 통일을 이루하고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이루하기 위해 투쟁한다.

조선로동당은 자주성과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원칙에 기초하여 사회주의 나라들과의 단결과 국제공산주의운동과의 련대성을 강화하고 세계의 모든 신홍세력나라 인민들과의 친선, 협조관계를 발전시키며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반제민족해방 운동과 자본주의 나라들의 노동계급과 그밖의 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지지하고 광범한 련합전선을 실현하여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와 지배주의를 반대하며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 독립과 사회주의 공동위업의 승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제 1 장 당 원

1. 조선로동당 당원은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위하여 헌신하는 주체형의 공산주의 혁명투사이다.
2. 조선로동당 당원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로 확고히 무장된 조선공민으로서 당의 로선과 정책을 옹호, 관철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며 당규약을 준수하는 근로자들이 될 수 있다.
3. 조선로동당 당원은 규정된 후보기간을 마친 후보당원 가운데서 받아들인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는 입당청원자를 후보기간을 거치지 않고 직접 당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만 18세부터 입당할 수 있다.
입당절차는 다음과 같다.

- 1) 후보당원으로 입당하려는 사람은 입당청원서와 당원 2명의 입당보증서를 당세포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회주의 로동청년동맹원이 입당할 때에 시(구역)·군 사회주의 로동청년동맹·위원회의 입당보증서는 당원 1명의 보증서를 대신할 수 있다.

후보당원이 입당할 때에는 입당청원서와 입당보증서를 당세포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당세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입당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입당보증인은 최소한 2년 이상의 당년한을 가져야 한다.

입당보증인은 피보증인의 사회·정치생활을 잘 알아야 한다.

입당보증인은 보증의 진실성에 대하여 당앞에 책임을 진다.

3) 입당문제는 개별적으로 심사하며, 당세포총회에서 입당청원자의 참가 밑에 토의 결정하며 그 결정은 시(구역)·군당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입당보증인은 입당문제를 토의하는 회의에 참가하지 않아도 된다.

시(구역)·군당위원회는 입당문제에 대한 당세포의 결정을 1개월내에 심의 해결하여야 한다.

4) 특수한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의 입당문제는 당중앙위원회에서 특별히 제정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 심의한다.

5) 타당에서 출당한 사람이 입당하려면 최소한 3년 이상의 당년한을 가진 당원 3명의 보증이 있어야 한다.

타당에서 평당원으로 있었던 사람의 입당은 시(구역)·군당위원회가, 시(구역)·군급의 위원 및 간부로 있었던 사람의 입당은 관할 도(직할시) 당위원회가, 도(직할시), 중앙위원회 및 간부로 있었던 사람의 입당은 당중앙위원회가 각각 최종적으로 비준한다.

6) 후보당원의 후보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당세포는 후보당원에게 당원의 자격을 갖추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당세포는 후보당원의 후보기간이 끝남에 따라 당원심사총회에서 그의 입당자격 여부를 심의 결정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후보당원의 후보기간이 끝나지 않아도 그를 당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만일 후보당원의 입당 준비정도가 불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후보기간을 1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다.

후보당원이 후보기간을 마친 후에도 자격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후보명부에서 삭제된다.

후보기간을 연기하거나 후보당원을 명부에서 삭제시키는 당세포의 결정은 시(구역)·군당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 7) 후보당원이나 후보기간을 거치지 않고 직접 당원이 된자의 입당일시는 당세포총회에서 입당을 결정한 날로 한다.

4. 당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당원은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확고히 서 있어야 한다.

당원은 당과 수령에 무한히 충성하고 우리 당의 유일사상체계로 확고히 무장하며 당의 요구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접수하고 옹호하며 이를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당원은 당의 혁명전통을 깊이 연구 체득하고 그것을 옹호하며 노동과 생활에 적용해 나가야 한다.

당원은 당의 유일사상에 어긋하는 자본주의사상, 봉건적 유교사상, 수정주의, 교조주의, 사대주의, 종파주의, 지방주의 및 가족주의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며 주체사상에 기초한 당의 통일과 단결을 눈동자와 같이 고수하여야 한다.

- 2) 당원은 당성을 부단히 단련하기 위한 높은 조직의식을 가지고 당생활에 자발적으로 참가하여 자신을 혁명화로 동계급화하여야 한다.

당원은 당회의와 당학습을 비롯한 당의 조직 및 사상생활에 충분히 참가하고 당조직의 결정과 자기에게 부여된 임무를 정확히 수행하며 자신의 당생활을 정기적으로 총화하며 비판과 사상투쟁을 통하여 자기를 혁명가로 단련시켜야 한다. 당원은 직위와 공로에 관계없이 전체당원들에게 다같이 적용되는 당규율을 자발적으로 준수하고 규율 위반에 대하여는 견결히 투쟁하여야 한다.

- 3) 당원은 혁명적인 학습기풍을 확립하고 자기의 정치, 사상, 문화 및 기술 수준을 부단히 향상시켜야 한다.

당원은 주체사상, 당의 로선과 정책 및 혁명전통을 깊이 학습하며 경제 및 선진과학기술 지식을 습득하고 현실상황을 료해하며 자신의 문화수

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4) 당원은 혁명적 군중로선을 관찰하며 일상적으로 대중과 함께 일하여야 한다. 당원은 대중에게 당의 로선과 정책을 일상적으로 해설하여 주며 그들을 교양 개조하여 당주위에 굳게 결속시키고 혁명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그들을 동원하며, 대중의 의견을 정확히 접수하여 그들의 요구를 제때에 해결하여 주어야 한다.
- 5) 당원은 로동과 생활에서 대중의 규범이 되며 모든 사업에서 선봉적 역할을 하여야 한다.

당원은 집단의 혁명과 투쟁을 지도하며 자신과 가족의 혁명화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 당원은 로동을 사랑하고 로동법률을 자발적으로 지키며 어렵고 힘든 일에 앞장서며 자기가 맡은 사업에 정통하며 맡은바 임무를 모범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당원은 보수주의와 소극성을 반대하며 기술혁신운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로동생산 능률을 부단히 제고하고 기업관리운영에 솔선 참가하며 국가와 사회재산을 애호하여 나라의 경제를 절약해야 한다.

- 6) 당원은 고상한 공산주의적 도덕성을 소유하고 조직과 집단을 사랑하며 조직과 집단의 리익을 위하여 개인의 리익을 희생할 각오가 있어야 한다. 당원은 높은 혁명적 자립정신을 발휘하고 모든 애로에 대하여 과감히 투쟁해야 한다.

당원은 항상 소박, 솔직, 겸손하여야 하며 사리와 공명을 탐내지 말고 당과 함께 솔직하며, 인간성이 풍부하고 문화적이어야 하며 국법과 사회질서 및 공중도덕 준수에 모범이 되어야 한다.

- 7) 당원은 사회주의조국을 튼튼히 보위하여야 한다.

당원은 일상적으로 긴장된 동원 태세를 갖추고 군사지식을 배워 적의 침략으로부터 전취물을 튼튼히 보위하며 조국통일의 대사변에 대비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

- 8) 당원은 혁명규율과 질서를 준수하고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안일과 태함이 없이 혁명적인 경각성을 높이고 당, 국가 및 군사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
- 9) 당원은 사업과 생활에서 나타나는 문제에 대하여 당조직에 보고하여야 한다.

당원은 당의 유일사상에 어긋나는 현상뿐만 아니라 사업과 생활에서 나타나는 모든 결함과 부정적인 경향을 반대하여 투쟁할 뿐만 아니라 그 것에 대하여 당중앙위원회에 이르기까지 관계 당위원회에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 10) 당원은 규정된 당비를 매달 납부하여야 한다.

5. 당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 1) 당원은 당회의와 당출판물을 통하여 당의 로선과 정책 수행 및 당사업 발전을 위하여 도움이 되는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 2) 당원은 당회의에서의 투표권과 각급 당조직의 지도기관 선거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 3) 당원은 당회의에서 정당한 이유와 근거가 있는 한 어떤 당원을 막론하고 비판할 수 있으며, 당의 유일사상에 어긋나는 한 어떠한 지시의 준수도 거절할 수 있다.
- 4) 당원은 자기의 사업과 생활에 대한 문제를 토의·결정하는 당회의에 참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5) 당원은 당중앙위원회에 이르기까지 각급 당위원회에 어떤 신소나 청원을 제기하고 그에 대한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6) 후보당원의 임무는 당원의 임무와 같다. 후보당원의 권리는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결의권이 없는 이외에는 당원의 권리와 같다.
- 7) 당의 규율을 위반하는 당원은 당의 책벌을 받는다.
 - ① 당의 유일사상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거나 당의 로선과 정책을 반대하여 파벌조성행위를 하거나 적과 타협하는 등 당에 엄중한 손실을 끼친 당원은 출당시킨다.
 - ② 당원의 칭호를 박탈하지 않을 정도의 과오를 범한 당원에 대하여는 과오의 경증에 따라 문책, 엄중경고, 또는 권리정지나 후보당원으로 강등하는 책벌을 적용한다.
 - ③ 당책벌의 목적은 과오를 범한 당원을 교양하는 데 있다.

당의 책벌은 과오를 범한 동기와 원인 및 그 과오의 결과를 상세히 규명한 후에 신중하게 과해야 한다.

- ④ 당책벌은 본인의 참가하에 그가 속한 당세포총회에서 토의 결정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본인이 참가하지 않아도 책벌을 토의·결정할 수 있다. 중앙위원회, 도(직할시)·시(구역)·군당위원회는 당규율을 위반한 당원에게 직접 책벌을 내릴 수 있다.

당원에게 책벌을 적용할데 대한 당세포의 결정은 시(구역)·군당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하고 당원자격 박탈에 대한 당세포의 결정은 도(직할시) 당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출당에 대한 당세포의 결정이 비준되기 전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원의 당증을 회수하지 못하며 당생활 참가를 허용해야 한다.

- ⑤ 당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위원 및 준후보위원에 대한 책벌은 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에서, 도(직할시)·시(구역)·군당위원회의 위원, 후보위원 및 준후보위원에 대한 책벌은 해당 당위원회의 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당세포는 중앙위원회, 도(직할시)·시(구역)·군당위원회의 위원, 후보위원 및 준후보위원이 당규율을 위반한 경우에 위반당원에 대한 책벌을 해당 당위원회에 제의할 수 있다.

그러나 당세포는 도(직할시)·시(구역)·군당위원회의 위원, 후보위원 및 준후보위원이 범한 과오가 해당위원회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때에는 엄중경고까지의 책벌을 결정할 수 있으며 그 결정은 해당당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6. 종파 및 기타 다른 분파에 참가한 당원에 대한 당규율문제의 심의는 다음과 같은 규정에 의하여 진행된다.

평당원 또는 시(구역)·군기관의 간부로 있던 당원의 문제는 도(직할시) 당위원회에서, 도(직할시) 또는 중앙당기관의 간부로 있던 당원의 문제는 당중앙위원회에서 심의한다.

7. 당중앙위원회, 도(직할시)·시(구역)·군당위원회는 당규율문제와 관련된 당원의 청원을 지체없이 심의 해결하여야 한다.

-
8. 당세포는 항상 책벌을 받은 당원을 방조하여야 하며, 만일 책벌을 받은 당원이 자기의 과오를 깊이 뉘우치고 그것을 시정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실제로 행동이 개선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책벌을 해제하는 데 대한 문제를 총회에서 토의 결정하여야 한다.
당원이 받은 책벌을 해제하는 데 대한 당세포의 결정은 해당 시(구역)·군당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당중앙위원회, 도(직할시)·시(구역)·군당위원회의 위원, 후보위원 및 준후보위원이 받은 책벌의 해제는 그 책벌의 적용률 최종적으로 결정한 해당 당위원회에 의해서 결정된다.
 9. 정당한 이유없이 6개월 이상 당생활에 참가하지 않는 당원에 대하여 당세포는 총회에서 제명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결정은 시(구역)·군당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10. 당원의 등록과 이동은 당중앙위원회가 제정한 규정과 절차에 의하여 처리된다.

제 2장 당의 조직원리와 조직구조

11. 당은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원칙에 의하여 조직한다.
 - 1) 각급 당조직의 지도기관은 민주주의적으로 선거하고, 선출된 당지도기관은 선거한 당조직에 대해 자기의 사업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총회·보고한다.
 - 2) 당원은 당조직에 복종하며 소수는 다수에 복종하며 하급당조직은 상급당조직에 복종하며 모든 당조직은 당중앙위원회에 절대복종한다.
 - 3) 모든 당조직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옹호 관철하며 하급당조직은 상급당조직의 결정을 의무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상급당조직은 하급당조직의 사업을 계통적으로 지도 검열하며 하급당조

직은 상급당조직에게 자기의 사업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12. 각급 당조직은 지역 또는 생산 및 로동단위에 따라 조직한다. 어느 한 지역을 담당한 당조직은 그 지역의 일부를 담당한 모든 당조직들에 대하여 상급당조직으로 되며, 어느 한 분야의 전체사업을 담당한 당조직은 그 분야의 일부사업을 담당한 모든 당조직들에 대하여 상급당조직으로 된다.

13. 각급 당위원회는 각 해당 단위의 최고지도기관이며 정치적 총참모부이다.

집단적 지도는 모든 당위원회의 기본활동지침이다.

각급 당위원회는 새로운 중요한 문제들을 집단적으로 토의 결정하여 그 것을 집행하여야 하며 이에 개인적 책임성과 창발성을 염밀히 결합시켜야 한다.

각급 당조직은 해당 지역 또는 분야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자립적으로 토의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결정들은 당의 로선과 정책에 어긋나서는 안된다.

14. 각급 당조직의 최고지도기관은 다음과 같다.

1) 전당의 최고지도기관은 당대회이며 당대회가 없을 때는 당대회가 선출한 당중앙위원회가 최고지도기관이 된다.

도(직할시)·시(구역)·군당의 최고지도기관은 해당 당대표회이며, 당대표회가 없을 때는 당대표회가 선출한 해당 당위원회가 최고지도기관이 된다.

초급당조직의 최고지도기관은 당총회(당대표회)이며, 당총회(당대표회)가 없을 때는 당총회(당대표회)가 선거한 해당 당위원회가 최고지도기관이 된다.

2) 당대회 또는 당대표회의 대표자는 차하급 당조직의 당대표회 또는 당총회에서 선거한다.

당대회 대표자의 선출비율은 당중앙위원회가 결정하며, 도(직할시)·시(구역)·군당조직의 당대표회 대표자의 선출비율은 당중앙위원회가 작성한 규정에 따라 해당 당위원회가 결정한다.

당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위원 및 준후보위원의 수는 당대회가 결정한다.

도(직할시)·시(구역)·군당위원회 위원, 후보위원 및 준후보위원수와 초급당위원회의 위원수는 당중앙위원회가 규정한 기준에 근거하여 해당 당대표회 또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당중앙위원회, 도(직할시)·시(구역)·군당위원회의 준후보위원은 생산로동에 직접 참가하는 핵심당원중에서 선출된다. 각급 당조직의 지도기관선거는 당중앙위원회가 규정한 선거세칙에 따른다.

15. 당중앙위원회와 도(직할시)·시(구역)·군당위원회 위원, 후보위원, 준후보위원의 제명 또는 보선은 해당 당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실시된다.

당중앙위원회와 도(직할시)·시(구역)·군당위원회위원 가운데서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 결원된 수만큼 당위원회 보조위원 가운데서 보선한다. 만약 필요시는 당위원회 결원은 위원회의 후보위원이 아닌 다른 당원으로 보선될 수 있다.

초급당조직 집행기관위원의 제명 및 보선은 해당 당총회(당대표회)에서 실행된다.

초급당이 하급당의 규모가 방대하거나 널리 분산되어 있고 또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당총회(당대표회) 소집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초급당위원회가 결원보충을 위한 보선을 실시할 수 있다.

상급 당위원회는 결원된 하급당위원회의 책임비서(비서) 또는 비서(부비서)를 임명할 수 있다.

각급 당기관의 후보위원 및 준후보위원은 해당 당위원회 전원회의에 참가하되 발언권만 가진다.

16. 당회의는 해당 당조직에 소속된 당원(당위원 또는 대표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이 참가하여야만 성립될 수 있고 제기된 문제의 결정은 해당 당회의 참가자의 과반수 찬성을 요한다.

17. 각급 당위원회내에는 필요한 부서를 설치한다.

부서의 설치 및 폐지의 권한은 당중앙위원회가 가진다.

18. 도(직할시)·시(구역)·군당위원회 및 그들과 동등한 기능을 수행하는 당위원회의 조직과 해산은 당중앙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하며, 초급당위원회 및 분초급당위원회의 조직과 해산은 도(직할시)당위원회가 비준하

-
- 고 소수당원을 가진 초급당위원회 또는 부문당위원회 및 당세포의 조직과 해산은 시(구역)·군당위원회가 비준한다.
- 도(직할시)·시(구역)·군당위원회는 당조직의 조직과 해산에 대하여 당중앙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9. 당중앙위원회는 어떤 당조직을 막론하고 당의 로선과 정책 및 당규약을 엄중하게 위반하거나 실천을 태만히 한 경우에 그 당조직을 해산하고 소속당원을 개별적으로 심의하며 그들을 재등록하여 새로운 당조직을 조직 할 수 있다.
20. 당중앙위원회는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역과 부문 및 특수한 환경에 적합한 당조직의 구성, 당조직의 활동방법과 기타 당건설의 제반 문제에 관해 다르게 결정할 수 있다.

제 3 장 당의 중앙조직

21. 당의 최고지도기관은 당대회이다.
- 당대회는 5년에 1회 당중앙위원회가 소집한다.
- 당중앙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당대회를 규정된 기간보다 빨리 또는 늦게 소집할 수 있다.
- 당중앙위원회는 당대회의 소집기일과 의정을 3개월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22. 당대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1) 당중앙위원회 및 당중앙검사위원회의 사업 총화
 - 2) 당강령과 규약의 채택 또는 수정보완
 - 3) 당로선과 정책 및 전략전술에 관한 기본문제 결정
 - 4) 당중앙위원회 및 당중앙검사위원회 선거
23. 당중앙위원회는 당대회 사이에 모든 당사업을 조직 지도한다.
- 당중앙위원회는 전당에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확립하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수립하고 그 수행을 조직 지도하며 당과 혁명대열을 공고히 하고 행정 및 경제사업을 지도 조정하며 혁명적 무력을 조직, 그들의 전투능력을 높이고 기타 정당 및 국내외 기관의 활동에서 당을 대표하며 당의 재정을 관리한다.

24. 당중앙위원회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6개월에 1회 이상 소집한다.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해당시기에 당이 직면한 중요문제 등을 토의 결정하며 당중앙위원회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선거하며 당중앙 위원회 총비서와 비서를 선거하고 당중앙위원회의 비서국과 군사위원회를 조직한다.
당중앙위원회는 당중앙위원회 검열위원회를 선출한다.
25. 당중앙위원회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전원회의 사이에 당중앙위원회 명의로 당의 모든 사업을 조직 지도한다.
26. 당중앙위원회 비서국은 필요시, 당인사 및 당면문제 등 당내문제를 토의, 결정하며 그 결정의 집행을 조직, 지도한다.
27. 당중앙위원회 군사위원회는 당군사정책 대행방법을 토의 결정하며 인민군을 포함한 전무장력강화와 군수산업발전에 관한 사업을 조직, 지도하며 우리나라의 군대를 지휘한다.
28. 당중앙위원회 검열위원회는 반당·반혁명적 종파행위 및 기타 당의 유일 사상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거나 당의 로선과 정책 및 규약을 준수하지 않아 당규율을 위반한 당원에게 책임을 추궁하며 당규율문제와 관련된 도(직할시)당위원회의 제의 및 당원의 신소를 심의 해결한다.
29. 당중앙검사위원회는 당의 재정경리사업을 검사한다.
30. 당중앙위원회는 당대회와 당대회 사이에 당대표자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당중앙위원회의 대표자 선거절차와 대표자 선출비율은 당중앙위원회가 결정한다.
당중앙위원회는 당의 로선과 정책 및 전략전술에 관한 긴급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하며 자기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 당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위원 또는 준후보위원을 제명하고 그 결원을 보선한다.

제 4 장 도(직할시)의 당조직

31. 도(직할시)당조직의 최고지도기관은 도(직할시) 당대표회이다.

도(직할시)대표회는 3년에 1회 도(직할시)당위원회가 소집한다.

도(직할시)대표회는 필요에 따라 규정된 기간보다 빨리 또는 늦게 소집 할 수 있다.

도(직할시)당위원회는 도(직할시)당대표회의 소집일과 의정을 2개월전에 하급당조직들에 통지하여야 한다.

32. 도(직할시)당대표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도(직할시)당위원회와 도(직할시)당검사위원회의 사업 총화

2) 도(직할시)당위원회 및 도(직할시)당검사위원회 선출

3) 당대회에 파견할 대표자 선출

33. 도(직할시)당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당원들과 근로대중 속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하는 사업을 조직 지도한다.

당원과 근로대중을 당의 유일사상으로 굳게 무장시키고 그들이 당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옹호 수행하며 당의 유일사상에 어긋나는 자본주의사상, 봉건적 유교사상, 수정주의, 교조주의, 맹종주의, 종파주의, 지방주의 및 가족주의에 대해 견결히 투쟁하도록 감독하고 주체사상에 기초한 당의 통일과 단결을 계속 강화해야 한다.

간부대열을 튼튼히 꾸리고 그들의 후비대를 육성하며 당 력량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당생활을 조직, 지도하며 하급당조직을 강화하고 그들의 활동을 감독한다.

당원 및 근로대중에 대한 주체사상, 당정책, 혁명전통교양 및 계급교양이 주내용인 공산주의 교양과 사회주의적 애국교양을 강화해야 하며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통해 그들을 당두리에 결속시켜야 한다.

근로대중의 조직을 강화하고 그들이 자기 기본과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지도, 조정하며 행정 및 경제사업을 적절히 지도하여 혁명과업 수행을 보장한다.

로동적위대를 강화하고 그 전투력 향상을 조직적으로 지도하며 군사동원 사업을 보장한다.

도(직할시)당위원회의 재정을 관리하며 소관 사업에 관해 당중앙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34. 도(직할시)당위원회는 도(직할시)당전원회의를 4개월에 1회 이상 소집 한다.

도(직할시)당위원회 전원회의는 당의 로선과 정책의 대행방법을 토의 결정하며 도(직할시)당위원회의 책임비서 및 비서를 선거하며, 비서처를 조직하고, 도(직할시)당위원회의 군사위원회와 검열위원회를 선거한다.

도(직할시)당위원회 집행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전원회의 사이에 도(직할시)당위원회 명의로 당내사업을 조직, 집행하며 행정 및 경제사업을 지도한다.

도(직할시)당위원회 회의는 1개월에 2회 이상 소집한다.

도(직할시)당위원회 비서는 인사행정 및 당내문제에 대해 필요시마다 토의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집행한다.

도(직할시)당위원회 군사위원회는 당의 군사정책 대행방법을 토의 결정하며 그 집행을 조직, 지도한다.

35. 도(직할시)당위원회 검열위원회는 반당 또는 반혁명적 종파행위 등 당의 유일사상체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거나, 당로선 및 정책과 규약을 준수하지 않아 당규율을 위반한 당원에게 책임을 추궁하며, 당규율문제와 관련된 시(구역)·군당위원회의 제의 및 출당에 대한 결정을 최종적으로 비준하며 당규율문제와 관련된 당원의 신소를 해결한다.

제 5 장 시(구역)·군의 당조직

36. 시(구역)·군당조직의 최고지도기관은 시(구역)·군당대표회이다.

시(구역)·군당대표회는 시(구역)·군당위원회가 3년에 1회 소집하고 필요에 따라 시(구역)·군당대표회는 규정된 기간보다 빨리 또는 늦게 소집 할 수 있다.

시(구역)·군당위원회는 시(구역)·군당대표회의 소집일자와 의정을 1개월전에 산하 당조직들에 통지하여야 한다.

37. 시(구역)·군당대표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1) 시(구역)·군당대표회의와 시(구역)·군당검사위원회의 사업 총화
- 2) 시(구역)·군당대표회의와 시(구역)·군당검사위원회 선거
- 3) 도(직할시)당대표회에 파견할 대표자 선거

38. 시(구역)·군당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당원들과 근로대중 속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확립하는 사업을 조직 수행한다.

당원과 근로대중을 당의 유일사상으로 무장시키고 그들의 당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옹호 수행하며, 당의 유일사상체계에 어긋나는 자본주의사상, 봉건적 유교사상, 수정주의, 교조주의, 맹종주의, 종파주의, 지방주의 및 가족주의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할 것을 보장하며 주체사상에 기초한 당의 통일과 단결을 계속 강화한다.

간부대열을 강화하고, 그들을 교양하며 간부후비대를 육성하고, 그들을 조직적으로 훈련한다.

당원의 당생활을 조직, 지도하며 당의 핵심을 연구 주지시키고 그 대열을 확대시키며 당원 확대사업을 정기적으로 조직·수행하며 당의 력량을 적절히 배치하고 당원과 후보당원을 등록한다.

당원과 근로대중에 대해 주체사상, 당정책과 혁명전통교양 및 계급교양 이 주내용인 공산주의교양과 사회주의적 애국교양을 강화하며 혁명화·

로 동계급화를 통해 그들을 당두리에 결속시킨다.

당기총조직을 합리적으로 조직하며 초급당조직의 집행기관을 강화하며 그들의 기능과 역할의 부단한 향상을 위하여 매일같이 지도·방조한다.

근로대중의 조직들을 강화하고 임무를 정확히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사업방향과 방법을 제시하며 그 리행을 감독한다.

행정 및 경제사업을 정확히 지도하여 혁명과업의 성과적 수행을 보장한다.

로농적위대를 강화하고 그들의 정치사상교양과 군사훈련을 강화하여 전투태세를 완비하여 군사동원사업을 보장한다.

시(구역)·군당위원회의 재정을 관리하며 자기의 사업에 관해 상급당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39. 시(구역)·군당위원회는 전원회의를 3개월에 1회 이상 소집한다.

시(구역)·군당위원회 전원회의는 당의 로선과 정책의 집행방법을 토의, 결정하며 시(구역)·군당위원회의 집행위원회·책임비서 및 비서를 선거하고 비서처를 조직하며, 시(구역)·군당위원회의 군사위원회와 검열위원회를 선거한다.

시(구역)·군당위원회의 집행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전원회의 사이에 시(구역)·군당위원회의 명의로 당내사업을 조직하고 행정 및 경제사업을 지도한다.

시(구역)·군당위원회 집행위원회는 1개월에 2회 이상 회의를 소집한다.

시(구역)·군당위원회 비서처는 문제제거시마다 인사행정 등 당내사업에 관한 문제를 결정하며 그 결정을 집행한다.

시(구역)·군당위원회 군사위원회는 당의 군사정책 집행방법을 토의 결정하며 그 집행을 조직 지도한다.

40. 시(구역)·군당위원회 검열위원회는 반당·반혁명적 종파행위 등 당의 유일사상체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거나 당의 로선과 정책 및 규약을 준수하지 않아 당규율을 위반한 당원에게 책임을 추궁하며, 당규율문제와 관련된 당원의 신소를 심의 처리한다.

제 6 장 당의 기층조직

41. 당의 최하기층조직은 당세포이다.

당세포는 당원생활의 거점이며 당주위에 대중을 접결시키고 대중속에서 당의 로선과 정책을 직접 수행하는 당의 전투단위이다.

42. 당의 기층조직의 조직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당세포는 당원 5명에서 30명까지의 단위에 조직한다.

당원 5명 미만의 단위에는 당세포를 두지 않고, 그 단위의 당원 또는 후보당원은 린접당세포에 소속시키거나 작업성격과 린접관계를 고려하여 2개 이상 단위의 당원을 합병하여 1개의 당세포를 조직할 수 있다.

특수한 경우에는 당원 3~4명이 있는 단위 또는 30명 이상의 단위에도 당세포를 조직할 수 있다.

당원 3명 미만의 단위에는 시(구역)·군당위원회가 추천하는 당원을 책임자로 하는 당소조를 조직할 수 있다.

2) 당원 31명 이상이 있는 단위에는 초급당조직을 둔다.

3) 초급당조직과 당세포 사이에 당원 31명 이상이 있는 생산단위나 기타 생활단위에는 부문(마을)당조직을 둘 수 있다.

4) 초급당, 부문당 또는 당세포의 조직형성만으로는 당기층 조직구성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초급당조직과 부문당조직 사이에 있는 생산단위나 기타 활동단위에 분초급당위원회를 조직할 수 있다.

5) 이상의 모든 당조직형태가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중앙위원회의 비준을 얻어 실정에 맞는 다른 당조직형성을 취할 수 있다.

43. 당기층조직의 최고지도기관은 해당조직의 총회(대표회)이다.

1) 당세포총회는 1개월에 1회 이상 소집한다.

2) 초급당, 분초급당, 부문(마을)당의 총회(대표회)는 3개월에 1회 이상 소집한다.

초급당조직이 500명 이상의 당원 또는 후보당원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그 솔하 조직들이 널리 분산되어 있을 경우에는 초급당조직의 총회를 1년에 1회 이상 소집할 수 있다.

44. 당의 기층조직은 1년임기의 해당조직 집행기관을 선거한다.

- 1) 당세포는 총회에서 비서와 부비서를 선거한다.
- 2) 초급당위원회, 분초급위원회, 부문(마을)당위원회는 각각 당총회(대표회)에서 선거하며 비서, 부비서는 각각 당위원회 회의에서 선거한다.

초급당 및 분초급당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각 집행위원회를 선거할 수 있다.

초급당위원회는 1개월에 3회 이상, 분초급당위원회와 부문(마을)당위원회는 1개월에 2회 이상 회의를 소집하며 집행위원회가 조직된 초급당 및 분초급당위원회는 1개월에 1회 이상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집행위원회 회의는 1개월에 2회 이상 소집한다.

- 3) 중앙기관의 당조직은 당지도위원회를 조직할 수 있다.

45. 당기층조직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 1) 당원들과 근로대중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확립하며 그들을 당의 유일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그들이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접수하여 끝까지 옹호 관철하도록 하며, 당의 유일사상에 어긋나는 자본주의사상, 봉건적 유교사상, 수정주의, 교조주의, 맹종주의, 종파주의, 지방주의 및 가족주의에 대해 견결히 투쟁하며 주체사상에 기초한 당의 통일과 단결을 끊임없이 강화한다.
- 2) 하급간부대열을 튼튼히 꾸리고 그들을 조직적으로 훈련시키며, 당핵심을 주지, 교양하며 부단히 그 대열을 확대, 강화한다.
- 3) 당원들의 당생활을 강화하고 그들의 당성을 단련한다.

당원들 속에 당규약학습을 정기적으로 조직하며, 그들에게 항상 혁명을 위한 사고와 행동을하도록 하고, 모든 활동에서 선봉적인 역할을하도록 당의 임무를 부여하며, 높은 정치 사상적 수준에서의 당회의

와 당생활 총화를 수행하며 당원의 당생활을 철저히 파악하고, 그들을 교양하며, 당원들을 혁명가로 개조하고 비판을 통한 사상투쟁을 강화한다. 당원이 과오를 범했을 경우에는 책임을 추궁하고 그 과오를 시정하도록 그를 방조한다.

4) 당원 적임자를 발견 등록하며 그들을 조직적으로 교양하여 심사후 자격자를 입당시키며 후보당원과 새로 입당한 당원들을 교양 훈련 시킨다.

5) 당원들과 근로대중의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한다.

당원들과 근로대중에 대해 주체사상, 당정책, 혁명전통교양 및 계급 교양이 주내용인 공산주의 교육과 사회주의적 애국교양을 강화하며 혁명화로동계급화를 통해 그들을 당두리에 결속시킨다.

6) 근로대중의 요구와 의견을 겸손히 접수하고 그것을 제때에 해결하여 주며 그들의 물질문화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며 모든 단위와 직장에서 계통과 질서를 확립하며 반혁명 분자들에 대한 투쟁을 강화한다.

7) 근로대중의 사회조직을 강화하고 그들에게 사업방향과 방법을 제시하며 그들이 자기의 의무를 정확히 수행하도록 감독한다.

8) 모든 사업활동에서 항일유격대식 사업방법 및 청산리정신과 방법을 적용하고 정치사업을 선행시키며 행정 및 경제사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도를 통해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대중이 그들의 혁명과업을 충실히 수행하고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이 혁신을 일으키며 3대혁명 붉은기쟁취운동과 사회주의경쟁운동에 적극 참가하여 기술혁신운동을 촉진하며 로동생산능률을 제고하고 로동규율을 강화하며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와 사회재산을 애호 절약하도록 그들을 조직, 고무한다.

9) 로동적위대를 강화하고 그들의 정치, 사상, 교양 및 군사훈련을 강화하여 당이 부를 때 항시 동원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10) 당원과 후보당원을 등록하며 당비를 거출하여 자기 사업에 관해 상급 당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제 7 장 조선인민군대내 당조직

46. 조선인민군은 항일무장투쟁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계승한 조선로동당의 혁명적 무장력이다.

47. 조선민군대내의 각급 단위에 당조직을 구성하며 조선인민군의 전체 당조직을 망라하는 조선인민군 당위원회를 조직한다.

조선인민군 당위원회는 도(직할시)당위원회와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조선인민군 당위원회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 직속하며 그 지도밑에 사업하고 자기 사업에 대하여 당중앙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48. 조선인민군대내 각급 당조직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전군을 주체사상으로 교양하기 위해 투쟁한다.

당원들과 군인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공고히 확립하며 그들이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해 서슴없이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진정한 혁명전사가 될 수 있도록 단련한다.

간부대열을 강화하며 간부후비대를 육성하고 그들의 당성을 끊임없이 단련하도록 당원의 당생활을 조직, 지도하며 당대열을 확대, 강화한다.

당원과 군인들에 대해 주체사상, 당정책 및 혁명전통교양과 계급교양을 주내용으로 하는 공산주의교양과 사회주의적 애국교양을 강화하며 혁명화로동계급화를 통해 그들을 당두리에 결속시킨다.

조선인민군대내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조직들을 강화하고 그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도록 지도한다.

당군사로선과 주체적 전략전술을 수행하기 위해 군사사업에 관한 당위원회의 집단적 지도를 강화하며 인민군을 일당백의 혁명적인 무장력으로 강화, 발전시키기 위해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붉은기중대운동을 적극 전개한다.

당원과 전사들이 언제나 지체없이 행동할 수 있도록 경계태세를 견지도록 하고 항상 완벽한 전투태세를 갖도록 고무한다.

당원과 전사들에게 높은 혁명적 동지애 및 군관과 전사, 군대와 인민간의 고귀한 전통적 단결정신을 발휘하도록 유도한다.

49. 조선인민군대내 각급 당조직들은 조선로동당의 규약과 당중앙위원회가 비준한 지시와 규정에 따라 조직되고 사업을 수행한다.
50. 조선인민군대내 각급 당조직들은 지방 당조직들과 긴밀한 연계를 가져야 한다.

조선인민군대의 당위원회는 당중앙위원회의 비준을 얻어 정치 및 군사간부를 주둔지역의 도(직할시)·시(구역)·군당위원회 및 공장 기업소의 초급당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제 8 장 정치기관

51. 당중앙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정치, 경제 및 군사분야의 중요한 부문에 정치기관들을 조직한다.

중앙기관에 조직된 정치국(정치부) 및 그들에게 소속한 정치기관들은 해당부문에서 당원들과 근로대중에게 정치사상교양 사업을 조직 수행하며, 해당단위내에 조직된 당위원회 집행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조선인민군 총정치국과 그 소속정치기관은 해당 당위원회의 집행기구로서 당정치사업을 조직하고 수행한다.

52. 조선인민군 총정치국과 중앙기관내에 조직된 정치국(정치부)은 당중앙위원회 직속이며 그 지도하에 사업을 수행하고 담당사업에 관해 당중앙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53. 중앙기관내에 조직된 정치국(정치부)들은 하급정치기관들을 지도함에 있어서 해당 지방당위원회들과 긴밀한 연계를 가져야 한다.
54. 정치기관들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당원들과 근로대중을 동원키 위하여 당열성자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55. 정치기관들은 노동당의 규약과 당중앙위원회가 비준한 지시와 규정에 따라 조직되고 사업한다.

제 9 장 당과 노동대중의 조직

56. 근로대중의 조직들은 광범한 근로대중의 정치조직이며 항일혁명투쟁의 영광스러운 전통을 계승하는 당의 외곽조직이다.

근로대중의 조직들은 광대한 대중의 사상교양조직이며, 당과 대중을 연결하는 인전대이며 당의 충실한 보조자이다.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은 우리의 혁명과업을 직접 계승하는 청년들의 혁명적 조직이며 당의 전투적 후비대이다.

근로대중의 조직들은 당의 지도하에 자기의 사업을 진행한다.

57. 근로대중의 조직들은 동맹원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꾸리며 동맹대열을 강화하며 조직생활과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고 혁명화를 통해 동맹원들을 당두리에 결속시키며 3대 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사회주의경쟁운동을 전개하며 동맹원들을 혁명과 건설에 적극 동원한다.

58. 각급 당조직들은 노동대중의 간부대열들을 강화하고 근로대중조직의 모체를 통하여 대중과의 사업체계를 수립하며 근로대중의 특성에 맞게 사업방향과 방법을 정확히 제시하며 그들이 자발적으로 자기 임무를 수행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제 10 장 당의 재정

59. 당의 재정은 당원들의 당비, 당이 운영하는 기관들과 기업소들로부터의 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된다.
60. 당원 및 후보당원의 당비는 월수입의 2%로 한다.

집필진

강 도 원

통일교육원 교수

고 정 식

통일교육원 교수

권 영 경

통일교육원 교수

김 동 수

통일교육원 교수

박 갑 수

통일교육원 교수

어 명 하

통일교육원 교수

이 정 수

통일교육원 교수

정 부 락

통일교육원 교수

(가나다 순)

북한 이해

통고 96-12-52

인쇄일 1996년 12월 29일

발행일 1996년 12월 31일

발행처 통일원 통일교육원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TEL : 901-7124 FAX : 901-7024

인쇄처 강문인쇄사

〈비매품〉

